

주요국의 조세제도

- 영국편 -

2004. 6.

박 정 수

Kipf 한국조세연구원

서 언

영국 조세제도의 특징은 개인이든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이든 간에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고 이를 주로 서면 또는 인터넷을 통해 국세청(세무서)에 신고하고 이를 조세당국이 심사 후 대부분 개별적·구체적 감세 요인에 의해 과다액을 자동 환급하거나 과소액을 추징받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영국의 내국세입청(Inland Revenue)은 직접세 위주로 소득세, 조세 환급, 법인세, 자본이득세, 유류수입세, 상속세, 국민보험 분담금과 인지세 관련 사항을 그 주업무로 한다. 한편 관세소비세청은 간접세 위주로 관세, 부가가치세 및 기타소비세 관련 사항을 관할한다.

영국과 우리나라 조세제도를 비교해 보면 세목의 종류면에서는 상당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지만 자본이득세 즉, 우리의 양도소득세를 보아도 우리는 주로 부동산에만 한정되어 부과되는 데 반해 영국에서는 포괄적인 과세범위를 갖고 있다. 한편 영국의 간접세는 명목세율이 쉽게 변하지 않는 영구세인 데 반해, 직접세의 경우 매년 세율이 Finance Act에 의해 개정되는 연간세라는 점이 가장 특징적이다.

영국의 조세체계가 세목면에서는 미국과 상당히 유사하지만 개인이나 법인이 납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부터 최종적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은 매우 상이한데 이는 오랜 역사와 전통에 영향을 받아 복잡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예컨대 미국의 신고방식은 개인 스스로 과세대상소득을 모두 열거한 뒤 합산과 공제단계를 거쳐 세액을 계산하여 보고하는 형식인 반면, 영국의 경우 매우 복잡한 세액계산방식 때문에 개인들은 누락하기 쉬운 소득들을 열거해 놓은 신고서에 단순히 공란을 메우는 정도의 노력으로 신고를 끝내고 이러한 정보에 기초하여 내국세입청(Inland Revenue)은 최종세액을 계산하여 개인에게 부과하는 구조이다.

영국 내국세입청은 잘 완비된 인터넷 서비스에 의해 납세자 각자가 인터넷으로 세금 자진 결정을 신청하면 그야말로 조세 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된 온라인 양식을 제공하고, 이 양식에 충실하고 정직하게 답변하면 보통 몇 시간 이내에 완료할 수 있게 된

다. 납세자의 신고사항은 언제든지 국세청의 실사를 받게 될 수 있으며, 만약 고의적인 허위신고가 사후에 발각되면 당장의 법적 책임 이외에 평생 동안 블랙 리스트에 올라 관리를 받게 되며 이러한 이유로 성실신고의 수준은 매우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영국 소득세제 운영과 관련하여 눈여겨 볼 사항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의 틀을 매년 바꾸는 것이 아니라 Finance Act라는 재정법체계를 연간세법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필요한 과표의 현실화, 세율의 미세조정, 공제범위의 조정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형식이다. 내국세입청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 그리고 납세자와 과세자 간의 정보 불형평성을 극복하고 납세순응을 지원하기 위한 세법 다시 쓰기 운동 등도 영국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영국의 개별소비세제도는 석유세, 담배세, 자동차세, 주세를 제외하면 최근 환경을 감안해서 신설된 제도들이 많이 눈에 띈다. 실제 세수효과보다도 환경에 대한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려는 소위 피구세(pigovian tax)적인 요소가 많다. 영국의 지방세제도의 운영이 보조금제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점도 우리로서는 배울 바가 많다. 지방재정의 양대 축은 지방세와 보조금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들 두 제도 간에 연계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 그리고 지방세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평 문제에 대해 보조금제도를 통하여 교정해 나가는 접근도 우리가 보다 깊이 연구해 볼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서울시립대학교 박정수 교수가 집필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세법 다시 쓰기, 조세체계 단순화, 환경세의 도입 및 지방세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연계 등 영국이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고 있는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 국제적인 조세조화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역사적인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하고 있는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는 영국의 조세제도에 대한 본 보고서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04년 6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최 용 선

목 차

I. 서 론	17
1. 영국의 조세관리(tax management) 개요	18
가. 오늘날의 과세제도	18
2. 영국 정부의 세입현황	21
3. 최근 영국의 주요 세법개정 개요	23
가. 1979년~2000년 기간	23
나. 2001년 세제개편	25
다. 2002년 세제개편	25
4. 재정법(Finance Act): 연간세법	27
II. 영국의 평가제도	30
1. 평가관련 과세체계의 개요	30
가. 법률	31
나. 보충적 법규	31
2. 평가기구 및 조직과 운용	33
가. 평가기구 또는 평가조직	33
나. 평가에 대한 분쟁해결 절차	36
III. 소득세제도	38
1. 소득세제도의 개요	38
가. 소득세의 특성	39
나. 소득세 과세원칙	39
다. 총칙규정	40

2. 과세소득	42
가. 소득의 종류	42
나. 과세표준의 계산	47
다. 소득공제제도	48
3. 비과세소득	52
4. 사업소득세(business taxation)	52
가. 사업활동	53
나. 수익의 조정	54
다. 사업소득의 과세표준	57
5. 소득세율	60
가. 비저축소득	60
나. 저축소득	60
다. 배당소득	61
6. 소득세 행정 및 기타 관련 제도	61
가. 신고 및 납부	61
나.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처리	62
다. 이중과세방지제도	63
라. 원천징수제도	64
마. 사회보장기여금 또는 국민연금(NIC)	65
7. 정책시사점	66
IV. 기업과세제도	68
1. 개인사업, 동업 또는 유한회사	68
가. 비법인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와 국민연금기여금	69
나. 자본공제	70
다. 파트너십(partnerships)과세	76
라. 사업손실(Trading Losses)	77
2. 법인 형태인 경우	81

가. 법인세 납세의무	81
나. 법인의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방지(imputation)제도	82
다. 법인세 과세표준	83
라. 비용인정(손금산입)	89
마. 연결납세제도	94
3. 정책시사점	97
V. 국제조세	98
1. 영국의 국제조세정책의 기초	98
가. 경쟁(competition)	99
나. 협력(Cooperation)	99
다. 지배권(Constitution)	100
라. 공개성과 투명성	101
2. 국제조세업무	101
가. 이중과세 방지(Relief for Double Taxation)	102
나. 이중과세협약(Double Taxation Agreements)	103
다. 국제- 상호협약절차(International - Mutual Agreement Procedure)	112
VI. 부가가치세제도	113
1. 부가가치세제 개요	113
가. 소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제도의 단순화	114
나. 부가가치세의 근대화화 단순화	114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114
가. 납세의무자	115
나. 과세대상품목	115
다. 매입과 매출세액	116
라. 공급시기(tax point)	116

마. 과세품목의 가격 및 세율	117
바. 과세품목과 면세품목	118
사. 수입과 수출	121
3. 부가가치세 행정	123
가. 부가가치세 신고	123
나. 세금계산서	124
다. 매입세액공제제도	127
라. 사업자등록과 미등록	131
4.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제 비교와 정책시사점	133
가. 부가가치세 세율	134
나. 세수기여도	136
다. 사업자등록 면제 기준	137
라. 과세·면세업종	137
마. 차등세율 부과	138
VII. 상속세	140
1. 서론	140
2. 과세대상 및 면세	140
가. 면세되는 이전	141
나. 과세의 원칙	143
다. 잠재적 면세이전	144
라. 생애이전에 대한 과세	145
3. 상속세 행정	145
가. 사망시점	145
나. 재산의 평가	148
다. 사업재산공제와 농업재산 공제	150
라. 빠른 상속공제(세대생략상속)	153
마. 생존자권 조항	154

바. 변화하는 재산의 분배	154
사. 무이자 대출	155
아. 납부기한과 벌금	155
자. 세금납부	157
차. 보험의 활용	158
4. 정책시사점	158
VIII. 개별 소비세제도	159
1. 콘크리트 제조용 골재세(Aggregates levy)	159
2. 주세(Alcohol tax)	162
3. 항공여객세 (Air passenger duty)	164
4. 에너지환경세(Climate change levy)	165
5. 도박세(Betting and gambling duties)	167
6. 보험 프리미엄세 (Insurance premium tax)	172
7. 쓰레기 매립세(Landfill tax)	174
8. 석유세(Petrol tax)	175
9. 담배세(Cigarette tax)	177
10. 자동차세(Vehicle excise duty)	178
11. 정책시사점	179
IX. 지방세제도	180
1. 카운슬세(Council tax)	180
가. 도입배경	180
나. 카운슬세의 특징	181
다. 카운슬세의 성격 및 문제점	197
라. 정책 시사점	200
2. 국제형식의 재산세: 비주거 레이트(Non-domestic Rate)	201
가. 서론	201

나. 총칙규정	206
다. 세율 및 과세표준	206
라. 과세평가	208
마. 비과세·감면대상	209
바. 이의신청	211
사. 최근 동향 및 정책시사점	212
X. 자본이득세제도	213
1. 서론	213
가. 도입배경	213
나. 자본이득세의 보완	214
2. 과세대상	215
가. 과세대상	215
나. 과세처분	216
다. 과세자산	216
라. 총 처분수입	217
마. 처분의 잡비용	218
바. 공제비용	219
사. 전면적인 물가연동 공제	219
아. 점차적인 경감(taper relief)	219
자. 사업자산	219
차. 손실	220
3. 세율과 적용	220
가. 과세의 원리	220
나. 세율	221
다. 배우자관계	222
라. 특별한 자본이득세 규칙	222
마. 유가증권 가치평가	225

바. 거주재산과 자본이득세	226
사. 공제	227
4. 정책시사점	230
XI. 인지세(stamp duty)	231
1. 연혁	231
2. 세율과 과세대상	232
가. 부동산 등록세	232
나. 주식거래세(stamp duty reserve tax)	234
3. 인지세 과세범위와 공제	238
가. 범위	238
나. 공제	238
4. 정책시사점	240
XII. 영국의 조세절차법	241
1. 서론	241
2. 과세절차	242
가. 개인소득세 등의 신고와 조사	242
나. 경정절차	242
다. 무신고소득에 대한 과세(결정)	243
3. 행정불복심사절차	244
가. 행정불복심사의 구조	244
나. 일반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244
다. 일반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의 불복절차(직접세의 불복절차)	245
4. 조세소송절차	247
가. 사법제도와 조세소송	247
나. 관할법원과 제소절차	249
다. 집행부정지의 원칙	250

라. 심리 및 판결	250
마. 상소	251
참고문헌	252
<부록 1> 영국 통계	254
<부록 2> 조세관리법(Tax Management Act)	264
<부록 3> 1967년 자본이득세 시행규칙	30
<부록 4> 1988년 자본이득세법	38
<부록 5> 상속세법	30
<부록 6> Schedule- Intangible Fixed Assets(2001. 11. 27)	35
<부록 7> 1994년 부가가치세법	32
<부록 8> 소득 및 법인세법	32
<부록 9> 영국 석유 생산에 대한 과세	48

표목차

<표 I-1> 추정 납세자 수	9
<표 I-2> 영국정부의 세입현황	2
<표 I-3> 영국정부의 세출현황	3
<표 II-1> VOA의 처리실적	3
<표 III-1> Schedular system	4
<표 III-2> 근로 및 자녀세액 공제율과 구간	5
<표 III-3> 소득세 공제(2003~04)	5
<표 III-4> 비저축 과세소득에 대한 세율	6
<표 III-5> 국민연금기여금 요율(2003~04)	6
<표 V-1> 이중과세공제매뉴얼(Double Taxation Relief Manual -DTCONT)의 주요내용	102
<표 V-2> 영국과 협약을 맺은 국가리스트	14
<표 V-3> 미국의 이중과세협약의 관련조항	17
<표 V-4> 영국과 한국의 이중과세협약	19
<표 V-5> 영국과 요르단의 이중과세협약	11
<표 VI-1>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율 구조	15
<표 VI-2> 총 세수입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	16
<표 VII-1> 정상세율액에 대한 백분율	17
<표 VII-2> 빠른 상속에 대한 공제 백분율	18
<표 VII-3> 상속세 납부기한	18
<표 VII-4> 체납세금에 대한 이자율	16
<표 VIII-1> 북아일랜드의 골재세 과세	10
<표 VIII-2> 주세율	13

<표 VIII-3> 에너지환경세율	16
<표 VIII-4> 영업월수와 유형별 세금	17
<표 VIII-5> 도박세 과세	12
<표 VIII-6> 쓰레기 매립세 표준세율	14
<표 VIII-7> 석유세율(2003년 4월)	16
<표 VIII-8> 석유세율(2003년 10월 적용)	17
<표 VIII-9> 자동차세율과 구간(2001년 3월 1일 이후 등록 차량)	19
<표 IX-1> 주택의 평가등급	10
<표 IX-2>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에 대한 카운슬세 가격대	11
<표 IX-3> 부동산 수 (1990~1999)	24
<표 IX-4> 시장임대가치(1990~1999)	25
<표 IX-5> 비주거 레이트 징수율(1998~1999)	25
<표 IX-6> 단순비례세율(uniform business rate)(1990~2001)	27
<표 X-1> 실제 계산사례	27
<표 X-2> 자본이득 과세표준계산 사례	21
<표 X-3> 6,000파운드 초과시 자본이득 과세표준계산 사례	23
<표 X-4> 거주재산 자본이득 과세표준계산 사례	27
<표 XI -1> 토지거래세	23
<표 XI -2> 세율변경 연혁	23
<표 XI -3> 평균 임대료에 대한 리스 등록세	23
<표 XI -4> 프리미엄 등록세	23
<표 XI -5> 주식과 지분 구입시 등록세	24
<표 XI -6> 벌금의 경감(1년 미만)	25
<표 XI -7> 벌금의 경감(1년 이상)	25
<표 XI -8> 지참인 증서 유형에 따른 인지세율	28
<표 XI -9> 불리한 조건을 가진 지역에 대한 공제	29
<부표 1> 중앙정부 세입 중 내국세	25
<부표 2> 납세의무자 수	26

<부표 3> 지역별 소득세 납세의무자 수	27
<부표 4> 조세 상환과 구호금에 대한 세금공제	28
<부표 5> 세금 공제비용	29
<부표 6> 소득세 개인수당과 공제	20
<부표 7> 조세면제 물품과 경비상환	21
<부표 8> 상속세수 통계	22
<부표 9> 주요 조세지출구조 및 규모	23

그림목차

[그림 III-1] Current Year Opening Rules	58
[그림 V-1] 이중과세협약서의 일반적 체계	105
[그림 IX-1] 카운슬세와 주민부담금의 구조비교(조세감면·혜택포함)	198

I. 서론

영국 조세제도의 특징은 한 마디로 개인이든 개인 사업자이든 법인이든 간에 납세자가 연 1회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고 이를 주로 서면 또는 인터넷을 통해 국세청(세무서)에 신고하고 이를 조세당국이 심사 후 대부분 개별적·구체적 감세 요인에 의해 과다액은 자동 환급하거나 또는 과소액을 추징받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영국의 국세청(Inland Revenue)은 직접세 위주로 소득세, 조세 환급, 법인세, 자본이득세, 유류수입세, 상속세, 국민보험 분담금과 인지세 관련 사항을 그 주업무로 한다. 한편 관세소비세청은 간접세 위주로 관세, 부가가치세 및 기타소비세 관련 사항을 관할한다.

영국과 우리나라 조세제도를 비교해보면 세목의 종류면에서는 상당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지만 자본이득세 즉, 우리의 양도소득세를 보아도 우리는 주로 부동산에만 한정되어 부과되는 데 반해 영국에서는 과세범위가 포괄적이다. 한편 영국의 간접세는 명목세율이 쉽게 변하지 않는 영구세인 데 반해, 직접세의 경우 매년 세율이 Finance Act에 의해 개정되는 연간세라는 점이 가장 특징적이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을 위한 재정을 국민연금기여금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개인의 연금계좌에 적립되는 적립방식이 아니라 징수한 금액을 사회보장 수요자에게 재분배하는 구조인 부과방식인 점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영국의 국민연금기여금 수입은 조세수입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하다.

영국의 조세체계가 세목면에서는 미국과 상당히 유사하지만 개인이나 법인이 납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부터 최종적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은 매우 상이한데 이는 오랜 역사와 전통에 영향을 받아 복잡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예컨대 미국의 신고방식은 개인 스스로 과세대상소득을 모두 열거한 뒤 합산과 공제단계를 거쳐 세액을 계산하여 보고하는 형식인 반면, 영국의 경우 매우 복잡한 세액계산방식 때문에 개인들은 누락하기 쉬운 소득들을 열거해 놓은 신고서에 단순히 공란을 메우는 정도의 노력으로 신고를 끝내고 이러한 정보에 기초하여 국세청(Inland Revenue)은 최종세액을

계산하여 개인에게 부과하는 구조이다.

영국 국세청은 잘 완비된 인터넷 서비스에 의해 납세자 각각이 인터넷으로 세금 자진 결정을 신청하면 그야말로 조세 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된 온라인 양식을 제공하고, 이 양식에 충실하고 정직하게 답변하면 보통 몇 시간 이내에 완료할 수 있게 된다. 납세자의 신고사항은 언제든지 국세청의 실사를 받게 될 수 있으며, 만약 고의적인 허위신고가 사후에 발각되면 당장의 법적 책임 이외에 평생 블랙 리스트에 올라 관리를 받게 되며 이러한 이유로 성실신고의 수준은 매우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¹⁾. 이렇게 정해진 양식의 기재가 완료되면 온라인으로 즉시 세금 납부액이 결정되며, 직장인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직장에서 원천징수했던 액수를 공제하게 되고 비직장인의 경우에는 지불 수단과 함께 국세청으로 송부한다. 일정 기간 후 대개는 “세금이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하여 납부된 만큼 귀하는 이러이러한 규정에 따라 면제 또는 감액이 가능하여 환급금의 수취인 기명식 국고수표를 동봉한다” 라는 통지를 자동으로 받게 된다.

1. 영국의 조세관리(tax management) 개요

가. 오늘날의 과세제도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많은 공공부문의 변화와 함께 영국의 국세청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1996/97년에 자진신고 납세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 제도는 납세자가 자신의 과세 수익을 계산하게 하고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계산하도록 한 것이다. 2000/1년에는 87억 9,595만파운드의 세금이 징수되었다. 최근에 납세자들은 국세청(IR)에 전자적으로도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1) 지난 2003년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영국 국세청 및 관세소비세청의 방문 면담조사 결과 이러한 사실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음.

<표 1-1> 추정 납세자 수

	개인소득세	법인세	자본이득세
2001/2	27,400,000	-	120,000
2000/1	27,800,000	-	190,000
1999/0	26,900,000	515,000	220,000
1998/9	26,900,000	470,000	160,000
.	.	-	.
1988/9	25,200,000	355,000	150,000
.	.	-	.
1983/4	24,000,000	230,000	115,000
.	.	-	.
1978/9	25,900,000	185,000	225,000
.	.	-	.
1973/4	23,100,000	175,000	285,000
.	.	.	.

자료: Lymer and Hancock, 2003.

1) 원천징수제도

영국 과세제도의 중요한 특징은 원천과세되는 소득의 범위이다. 예를 들어, 개인 납세자가 은행에 저축해 놓은 예금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은 이자 지불 이전에 이미 공제된다. 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없는 사람들은 대개 국세청에서 이러한 원천징수를 활용한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납세자의 개인적 상황과는 무관하다. 근로자인 납세자는 PAYE(pay as you earn) 시스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다. 비록 이 세금도 원천징수되지만, 징수되는 세액이 납세자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른 원천징수와는 차이가 있다. 소득세 자진신고 납세제도는 일반적인 원천

징수의 대체수단인 직접세의 한 예이다.

2) 소득세와 법인세

1965년까지 개인과 회사(법인)는 동일한 법체계에 따라 과세되었다. 1965년에 법인세가 도입되었지만, 개인과 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간에는 여전히 많은 유사점이 남아 있다. 소득은 Schedules과 Cases에 따라 과세되어진다. 예를 들어, 연금을 포함한 근로 소득은 Schedule E에 따라 과세된다. 전문직 또는 사업수익은 Schedule D Case I에 따라 과세된다. 납세자가 받는 각각의 소득은 Schedule에 따라 과세된다. 각각의 Schedule은 언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무슨 공제가 이루어지며, 얼마의 세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유의 규칙을 가지고 있다. 법인소득도 개인소득세처럼 같은 Schedule과 Case에 따라 과세된다. 중요한 차이는 법인의 세금은 회계기간 말 이후 9개월 이내에 지불하거나, 한 해 네 번에 나눠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 직접세와 간접세

영국에 있어서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분은 이론적인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 여부보다 과세관청이 차이가 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주로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의 경우는 국세청에서, 담세자와 납세자가 다른 간접세의 경우는 관세소비세청에서 관리를 담당한다. 소득세와 법인세, 자본이득세 등이 직접세의 예이며 부가가치세(VAT)는 간접세의 한 예로서, 소매상이 판매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그 물건을 판매한 제조업체에 의해 세금이 징수/납부된다는 점은 우리와 동일하다.

4) 현재의 과세 법령

오늘날 영국에는 수많은 세법이 분화되어 존재한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1988년의 소득세와 법인세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고, 자본공제는 2001년의 자본공제법에 규정되

어 있으며, 자본이득세는 1992년의 자본이득과세법에 의해 과세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1994년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위의 각각의 경우 그 법의 내용은 매년의 재정법(Finance Act)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게다가 1970년의 조세관리법(Tax Management Act)은 조세관련 절차를 다루고 있다. 영국의 세법은 이러한 기본적인 세법에 근간을 두지만 대부분의 개정사항은 매년 Finance Act에서 다루어진다는 점이 또한 특징적이다.

2. 영국 정부의 세입현황

<표 I -2>는 2002/2003년에 운영되는 현행의 세금의 규모를 나타낸 것인데 매년 정부에 의해 징수되는 총세입에서 각각의 세금이 얼마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보여 준다. 정부에 의해 징수되는 세입의 가장 중요한 세원은 소득세, VAT, 법인세 그리고 사회보장기여금이다.

<표 1-2> 영국정부의 세입현황

(단위: 10억파운드)

	세입		세입추계	
	2000~01	2001~02	2002~03	2003~04
국내세입				
소득세(세금공제 포함)	106.0	110.2	117.5	122
법인세	32.4	32.4	33.2	31
세금공제	-1.2	-2.6	-3.9	
석유세	1.5	1.3	1.4	
자본이득세	3.2	2.9	1.8	
상속세	2.2	2.3	2.5	
인지세	8.2	7.1	8.2	
사회보장 기여금	60.6	63.2	65.0	
총국내세입(세금공제 제외)	212.9	216.9	225.6	
부가가치세	58.5	61.1	63.9	67
연료소비세	22.6	21.9	23.1	
	:	:	:	
	:	:	:	
총관세 및 소비세	102.2	104.9	109.7	
	:	:	:	
	:	:	:	
경상수입	383.0	390.8	407.2	428

자료: Lymer and Hancock, 2003.

<표 I-3>은 영국정부가 2002/2003년 사이에 징수한 세입을 어떻게 지출하는가에 대한 세출예산을 보여준다. 정부의 모든 지출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지출되는 부문은 사회, 국방, 보건 그리고 지방정부 부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3> 영국정부의 세출현황

(단위: 10억파운드)

	2000/01	2001/02	2002/03	2003/04
교육과 고용	14.3	17.0	20.2	21.4
보건	43.6	48.8	53.4	58.5
운송과 지역	3.7	4.2	5.2	5.2
지방정부	35.3	36.9	37.4	40.1
내무부	8.4	9.6	9.4	9.6
국방	19.2	18.9	18.9	18.9
외국복지부	1.2	1.3	1.3	1.2
국제개발	2.4	2.8	2.9	3.2
상업과 공업	3.0	3.9	3.7	3.3
스코틀랜드	2.6	14.2	15.3	16.3
아일랜드	6.8	7.7	8.2	8.8
북아일랜드	5.3	6.3	6.3	6.5
근로와 연금	5.9	6.3	6.9	7.5

자료: Lymer and Hancock, 2003.

3. 최근 영국의 주요 세법개정 개요

최근 영국의 주요 세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1979년 이후의 주요 개정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 1979년~2000년 기간

1) 소득세

- 기본세율 33%에서 22%로 인하

- 최고세율 각각 98%(unearned income), 83%(earnings)에서 40%로 인하
- 최저세율 25%에서 10%로 인하
- 독립된 소득세과세제도 도입
- 부부공제가 폐지되고, 아동공제 도입
- 주택용자 소득세 공제가 폐지
- 생명 보험료 공제가 폐지
- PEP, TESSA, ISA가 도입
- 소득세율에 기초한 자본이득세 부과

2) 사회보장기여금

- 피고용인 부담률 6.5%에서 10%로 증가
- 고용자 부담률 13.5%에서 11.9%로 감소
- 고용인에 대한 최고한도제 폐지
- 저소득자에 대한 경감
- 소득세공제와의 하한 연계(Alignment of floor with income tax allowance)
- 부가급부에 대한 NI 부과

3) 부가가치세

- 기준세율 8%에서 17.5%로 증가
- 12.5%의 높은 세율 폐지
- 국내 연료와 기타 선택된 항목들에 대한 저율과세 도입

4) 개별소비세

- 도로연료세의 대폭 인상
- 담배소비세의 소폭 인상

- 맥주세의 약간의 실질적인 인하, 주세(spirits)의 상대적인 대폭 인상
- 와인세의 실질적인 소폭 인상

5) 법인세

- 세율 52%에서 30%로 인하
- 일반적인 100%의 first-year 공제가 25% writing-down 공제로 대체
- 선택된 다른 자본 지출과 관련해서 소규모 사업들에 대한 FYA의 재도입
- 선납 법인세액공제와 반환성 배당세액공제 폐지

6) 지방세

- 거주자재산세(domestic rates)가 인두세를 거쳐 카운슬세로 대체
- 지역적으로 다양한 비거주 재산세율이 폐지되고, 국세 형태인 비거주재산세로 대체

나. 2001년 세제개편

- 소득세의 개인공제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증가
- 아동공제가 부부공제를 대신하여 도입
- 지정된 공장이나 기계에 대한 100% first year 공제가 확대
- 다양한 부가가치세 사업계획에 대한 거래액의 증가

다. 2002년 세제개편

2001년의 상대적으로 미미한 세제의 변화에도 불과하고, 2002년에도 세제의 변화는 적었지만 그 변화 중에는 아주 중요한 변화도 있었다. 즉, 소규모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낮은 세율의 도입, 소규모 사업에 대한 법인세율의 초기 세율(starting rate)이

10%에서 0%로 변화하는 것, 소기업세율이 1%p 감소하여 19%로 낮춰진 것 등이 중요한 변화에 속한다.

1) 소득세

- 소득세 세율은 변하지 않았지만, 소득세의 과세구간기준 변경(starting rate band : 1,880파운드 ⇒ 1,920파운드 / basic rate band : 27,520파운드 ⇒ 27,980파운드 / higher rate band : 29,400파운드 ⇒ 29,900파운드)
- 개인공제 증가(65세에서 75세 : 4,535파운드 ⇒ 4,615파운드 / 75세 이상 : 5,990파운드 ⇒ 6,370파운드)
- 장남공제 1,450파운드에서 30파운드가 증가
- 아동 면제 5,200파운드에서 5,290파운드로 상승
- 65세 이상의 부부만이 이용 가능한 부부공제 상승(65세에서 75세 : 5,365파운드 ⇒ 5,465파운드 / 75세 이상 : 5,435파운드 ⇒ 5,535파운드)

2) 사회보장기여금

- 일주일 소득이 87파운드에서 575파운드일 경우 1그룹에 속하던 고용자들이 89파운드에서 585파운드일 경우에 1그룹에 속하게 됨.
- 1그룹에 속하는 고용자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이 11%로 증가하고 고용주의 부담률도 1%p증가하여 12.8%가 됨.
- 2그룹의 고용인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액은 여전히 일주일에 2파운드이고, 3그룹의 고용인의 국민연금 부담액은 6.85파운드로 증가. 4그룹의 고용인의 국민연금 부담률은 여전히 7%임.

3) 사업세(Business Taxation)

- 사업세의 초기세율(starting rate)이 10%에서 0%로 전환

- 소기업 세율이 19%로 1%p 감소

4) 법인세

- 대규모 사업은 직접적인 연구 개발비 지출에 대해 125%의 감면 신청가능

5)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의 다양한 세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강제적인 등록과 폐지의 한계가 각각 54,000파운드와 52,000파운드에서 55,000파운드와 53,000파운드로 증가
- 보다 의미있는 변화는 적어도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납세순응비용을 줄일 수 있는 단일세율 납부제도의 허용임. 이 단일세율은 모든 사업체에 동일한 것이 아니라 사업부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짐.
- 그러나 소규모 사업체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만을 위해 현행과 같이 세금계산서 하나하나에 별도의 계정을 필요로 하지 않게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도록 하는 선택권을 부여하였음.

4. 재정법(Finance Act): 연간세법

영국의 조세는 영구세(permanent tax)와 연간세(annual tax)로 구분할 수 있다. 간접세는 대부분 영구세이며 세율이 매년 변화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면에 소득세, 법인세 등은 연간세이며, 경제여건이나 조세정책에 따라서 세율과 구간, 감면한도 등이 매년 바뀌게 된다. 그러나 연간세라 하여도 그 세율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법의 형태를 가져야만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연간세법(Finance Act)을 통해서 정해진다.

연간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은 11월에 발표되는 세입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다. 세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1월에 연간세법안으로 발표된다. 1994년부터는 연간세법안을

발표하는 날에 재무성은 일반대중과 국회의원들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충설명자료인 세법해설집(notes on clauses)을 발행하고 있다. 이는 세법의 목표와 각 조항의 내용을 평이한 언어로 알기 쉽게 설명하여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 법안은 보통 1월의 둘째 주 정도에 2차수정안(second reading)이 작성되어 의회의 소위원회에 의해서 각 조항이 세밀히 검토된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는 의회의 최종의결 단계로 넘어가서 5월 초까지는 법이 통과된다.

조세입법에 있어서 기타 입법과정과 다른 특이한 점 중의 하나는 연간세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예산안에서 발표된 내용이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예산에 대해서 승인하는 것만으로도 예산안에 있는 조세조항들을 연간세법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처럼 예산이 통과되면 세제도 변화할 수 있는 근거는 1968년에 제정된 잠정조세징수법(Provisional Collection of Taxes Act of 1968)에서 찾을 수 있다.

연간세법이 의회에서 통과되는 절차는 다른 법이 통과되는 과정과 유사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다. 연간세법은 예산심의회가 끝나는 시점과 2차수정안이 작성되는 시점의 중간에 발생한다. 법안에 대한 2차수정안이 작성된 후에는 의회의 분과위원회에서 검토된다. 이 과정은 국회의원들이 법안 수정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 1967년까지는 법안에 대한 논의가 전체위원회(Committee of the Whole House)에서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과정이 점차 부담스러워져 현재는 대부분이 소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일부 필요한 조항만이 전체위원회에서 검토된다. 최근에는 세법 조항의 4개항만이 전체위원회에 보내졌고, 나머지 조항은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 어떠한 조항이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어떠한 조항이 전체위원회에 넘겨져야 하는지는 정부와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위원회에서의 검토가 끝나고 나면, 법안은 의견서와 함께 3차수정안을 위해 전체 하원에 보내지며 하원에서 작성된 3차수정안은 상원으로 보내진다. 1909년에는 상원에서 법안을 기각한 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1911년 의회법(Parliamentary Act of 1911)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세법은 상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하원에서 상원으로 발송한 지 한 달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국왕의 동의를 받고 법으로서 인정이 되도

록 규정하고 있다. 예산안에 제안된 조세제도 개정이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소득세의 세율과 과세구간 등에 대한 조항은 보통 회계연도의 시작인 4월 6일부터 효력을 가지지만, 간접세의 인상 시점은 다양하게 정해진다. 1977년에 흔히 Rooker-Wise Amendment 라고 불리는 연간세법에 대한 개정이 있었다. 이는 의회가 소득세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세법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 구간과 소득공제액은 매년 전년도 12월의 소비자물가 인상률을 기준으로 하여 자동적으로 인상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지수화에 대한 조항은 1980년에 더욱 정교화되었으며, 1993년의 재정법에서는 지수화를 위한 기준월을 9월로 변경하였다. 지수화는 주요 소득세 개인 소득공제와 과표구간의 조정, 개인과 신탁의 자본이득세의 면세한계점, 상속세의 과표구간 등에 적용된다. 이러한 내용은 지수화 시행령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나 새로운 연간세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법의 규정이 시행령의 효력을 대체하게 된다.

II. 영국의 평가제도²⁾

1. 평가관련 과세체계의 개요

영국의 경우 주요 세제로는 소득세(income tax),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법인세(corporation tax), 상속세(inheritance tax),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관세와 개별소비세(custom and excise duties) 등이 있는데, 평가와 관련된 세목은 자본이득세와 상속세가 중심이고, 그 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등이 관련된다. 평가는 과세표준의 크기를 정하는 중요한 절차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독일과 같이 평가법이라는 단일한 통일법으로 이를 다루고 있지는 않다.

영국의 과세상 평가원칙은 다음 각 장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우리와 대단히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해당 세법에서 과세목적에 적합한 평가원칙을 따로 규정하되, 이들 상호간의 정합성을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무체재산권의 과세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아니하나, 이러한 재산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별도의 평가원칙을 규정하는 대신 회계상의 처리기준에 따르고 있다.

즉, 영국의 경우 개별 세목의 평가규정은 개별 세법에서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1894년 재정법 제7조 제5항에 연원을 둔 것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 규정은 상속세의 평가에 대한 규정이므로 평가의 기준은 상속세법의 것이 가장 기본이 됨을 알 수 있고 실제로 발생하는 대부분의 평가에 대한 사례도 이와 관련된 것이다. 이 점은 토지의 투기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양도소득세가 평가의 중심으로 되어 있는 우리와 사정이 다르다.

영국의 세법에 관한 소위 제정법(성문법)의 체계를 설명하는 것이 규범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필요하다. 일차적인 과세에 관한 규범은 법률이라고 할 수

2) 이 부분은 옥무석(2001)을 주로 참고하였음.

있다. 흔히 조세의 실무는 세무사나 회계사와 같이 비법률적 소양을 가진 전문인들이 집행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 법의 해석문제로 귀착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 불문법국가로 인식하고 있지만 소위 명예혁명 이후 국가가 징수하는 모든 조세는 의회가 승인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따라서 법률은 가장 중요한 법규범이다.

가. 법률

주요 세법을 보면, 1988년 소득세 및 법인세법, 1992년 자본이득세법, 1984년 상속세법, 1994년 부가가치세법, 1891년 인지세법 등이 실제적 과세근거법률이고, 그 외 1970년 조세관리법, 1890년 국세청규정법, 1979년 관세소비세관리법, 1968년 조세징수법 등이 있다. 그리고 영국의 소득세는 입법형식상 영구세가 아니라 연간세(temporary tax) 형식이다. 따라서 영국의 1988년 소득세 및 법인세법 제1조 제2항 및 1968년 조세징수법 제1조 제1항³⁾과 같은 독특한 규정이 삽입되어 있다. 재정법(Finance Act)의 형식으로 세법을 개정하고 징수할 내역을 정하는 것은 바로 예산 단년도주의에 상응하여 세법도 해마다 검토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국의 세법은 이를 일정한 형식과 체계를 가지고 제정(codify)하였다기보다는 기존의 과세규정들을 법별로 통합(consolidate)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판례는 이러한 과세법들이 자리잡고 있는 기초가 되는 원칙을 확인한 것으로 중요한 해석기준으로 활용된다.

나. 보충적 법규

흔히 보충적 법규범에 해당하는 것은 국세청이 작성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Extra-statutory Concessions(조세특례인정통칙)

이 통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를 정하는 것으로 이에 담겨 있는 특례

3) 영국의 모든 세목은 각 연도에 반드시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1조 제1항).

규정은 구체적인 특정사례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형식은 엄격히 성문 형식으로 된 입법유사 형식을 취한다. 그리고 존속기간도 수년간으로 보며, 국세청이 이를 격년으로 재검토한다.

- Statement of Practice(실무처리규정)

이는 국세청이 법률의 규정을 개별사안에 적용 또는 해석하는 일반적인 처리방식을 설명한 것이다. 형식은 위의 ESC보다는 입법의 형식성에서 비교적 덜하다.

- Inland Revenue Interpretations(국세청 해석)

이는 Inland Revenue Tax Bulletin에 의하여 공포되는데, 특정사안에 대한 전문기술적인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위의 SP보다 효력에서 열위에 있다.

- Inland Revenue Decisions(국세청 심결례)

이는 국세청의 심결례를 소개한 것이다.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이유는 각 사례에 나타난 문제점을 공개하여 유사사례의 해결에 지침으로 삼기 위해서다. 특히 예방적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다.

- Press Release(보도자료)

규범의 형식이라기보다는 언론보도자료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자료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특히 전술한 ESC, SP등이 포함되어 있다.

- Manuals(사무처리규정)

매뉴얼은 내부사무처리기준으로 이해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중요한 자료원이 된다. 특히 이를 통하여 재정법안(Finance Bill) 기타 입법자료에 대한 주석(Note)을 공개하고 있다.

- Accounting Practice(회계관행)

영국에서는 과세소득의 계산에서 회계관행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이론이 많은 것

같다. 심지어 회계를 기법인 과학으로 이해하는 대신 미스테리라고 혹평하기도 하였으나, 1970년대에 들어 회계기준을 점차 세법상의 관련 기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회계기준의 규범화작업과 무관하지 않다. 명문의 입법으로는 1999년 4월 6일부터 Sch D Case I, II의 경우 이익은 ‘공정하고 타당한 견해’에 입각한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1998년 재정법 제42조, 제10장)고 하여 일부 법률에서 이익 산정기준으로 도입하고 있다.

2. 평가기구 및 조직과 운용

가. 평가기구 또는 평가조직

1) 개관

주식평가실(The Shares Valuation Division; SVD)⁴⁾은 국세청(The Inland Revenue) 자본이득세국(Capital Taxes Office)의 한 부서이다. 이 기관은 주식 이외의 자산을 포함하여 지방정부·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 Local Government and the Regions (DTLR)), 국세청(National Assembly for Wales (NAW) and Inland Revenue) 그리고 재무부(Our financial targets are set annually by the Treasury as part of the overall financial agreement made with the IR)로부터 평가를 의뢰받는다.

SVD는 1965년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의 도입, 뒤이어 유산세의 폐지와 취득형 상속세 도입, 자본이전세(Capital Transfer Tax)의 도입, 자본이득세의 도입과 폐지, 부유세(Wealth Tax)의 도입논의, 생전 증여와 주식이전에 대한 인지세의 폐지 그리고 현재 인기를 얻고 있는 주식옵션부여제도 등 일련의 제도의 변화 속에서 존속하여 왔다. 정부는 점진적 또는 급진적으로 자본이득세에 대한 과세정책의 변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비상장회사(unquoted company)의 주식 평가에 있어서의 SVD의 역할은 계속될 전망이다.

4) 관련 자료는 다음 웹 사이트 참조(www.voa.gov.uk).

2) 직원

SVD에서의 기술적 평가등급의 결정은 자본이득세국의 전신인 유산세국(Estate Duty Office)의 직원들이 거의 전담하여 왔다. 자본이득세국의 행정조직단계를 폐지하는 대신 영국 국세청의 행정부서로 편입됨에 따라 직원(staff)들은 조사국 출신 공무원(Inspector of Taxes)등 국세청의 다른 부서로부터 충원되었다.

초기의 심사와 통상적인 평가는 payband D(중전에는 'Executive Officer'라고 함)에 해당하는 소수의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기본등급결정을 위한 기술사례업무는 payband C2(중전에는 'higher executive officer'라고 함)이 담당하며, 그 위에 payband B1(중전에는 'Senior Principal'이라고 함)에 해당하는 4명이 있는데, 그 중 2명은 기술적 사례 업무를 전담하고 그 외 2명은 관리를 담당한다. 자본이득세국의 2명의 부국장(Deputy Director; 국세청 내의 차장보 등급) 중 1인은 평가실의 책임자에 해당한다. payband C1과 B2(Senior Executive Officers and Principals)가 실(室)의 중심에 해당하며, 실무자들이 흔히 접촉하는 업무담당 공무원들이다.

1980년대 말에 상위 6개의 회계법인들이 SVD의 숙련된 공무원들을 그들의 전문 평가팀으로 유치하려고 스카웃하였고, 그 외 20위 내의 회계법인들도 스카웃한 바 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전문요원들의 이직을 초래하여 국세청은 이에 대체할 요원의 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에 들어, 직원의 이직현상이 감소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던 문제점도 격감하고 있다고 한다.

3) 조직

국세청 평가원은 국세청 주요 기구의 일부이나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영국과 웨일즈에서는 이 평가원의 조직이 3단계로 되어있다. 즉, 평가원, 11개 지역평가원, 113개의 단위평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약 4천명 가량이며, 4분의 1 정도가 전문평가사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원의 업무는 과세 목적상의 평가 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하여 평가용역을 제공한다. 평가의 30% 정도는 국세 과세와 관련하여 그리고 70%는 지방세 과세 목적으로 각각 활용된다. 스코틀랜드는 별도의 평가원

이 있고 12개의 단위평가원이 있으며, 직원은 230명 가량이 된다. 절반 가량이 전문평가사라고 한다. 1984년 구역 담당 평가사의 직위가 법령에 명시되었다.

실(室)은 4개의 과(課)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과는 일련의 팀(team)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팀은 약 6명의 사례처리담당공무원(caseworker)으로 구성되고 각각 팀장(principal)이 지휘한다. 각 팀별로 전문성을 띠며 대부분 산업상의 분류에 근거한다. 그리고 영국 국외에서 등록된 회사들과 영국 국외에서 주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전담하는 팀을 두고 있다. 이 팀은 또한 영국의 자본이득세 과세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토지가격을 참고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the Wall Street Journal, the Toronto Globe & Mail, 그리고 Australian Financial News와 같은 영어로 된 외국의 신문 자료들을 비치한 도서실을 두고 있다. 그 외에도 각 주요 산업국가들에 대한 상장주식 거래연감(Stock Exchange Year Book) 그리고 장외거래(over the counter) 대상인 상장 미국회사들의 정보를 담고 있는 무디스사 연감(Moody's yearbook)도 비치하고 있다.

주식옵션부여계획의 승인과 관련된 평가, 기타 크고 복잡한 평가 사례는 종전에는 전담 제2팀에서 다루어졌으나, 현재는 여러 팀으로 분산하여 담당하게 하고 있다. 승인된 주식옵션계획에 대한 평가는 옵션을 부여하기 전에 합의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SVD는 옵션부여주식의 평가는 긴급을 요하는 것으로 본다.

산업별 전문분야로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외에, 선박, 비행기, 가축, 우표, 주화, 저작권, 특허와 같은 다양한 종목별로 팀을 달리하여 처리하고 있다.

평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납세자와 협의하여 정하지만, 평가실의 상위 간부들은 협의가 결렬되고 Special Commissioner에 대한 불복청구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영국 국세청의 법무실(the Solicitor Office)로의 송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실제로 Special Commissioner에게 제기되는 사건 수는 매우 적으며, Special Commissioner의 불복결정보고서에 따르면 1년에 5건 미만이라고 한다.

그 외 SVD의 소속부서로서 세무조사관 연락(Inspectors of Taxes)팀이 있다. 이는 소규모의 팀으로, 이 팀은 주식의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대신에 평가실과 지역청(Tax District) 간의 발송 및 보고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평가에 대한 분쟁해결 절차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가 과세처분에서 문제되면 다른 조세사건과 마찬가지로 Special Commissioner에게 불복하여야 하며, 그 절차도 일반적인 조세불복과 동일하다. 우선 원고인 납세자로부터 의뢰받은 평가자와 그를 대리하는 송무변호사는 법규정과 판례에서 요구하는 납세자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증인소환과 당해 비교대상인 다른 회사의 주식평가액과 종전에 형성된 평가 또는 거래가액들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과세청의 공무원과 그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당해 제시된 가격이 부적절한 이유와 관련 법규정과 판례를 언급하여야 한다. 납세자의 의뢰를 받은 평가자는 이에 대하여 항변서와 요약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 증인이 신청된 경우에는 본안심리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를 위하여 실시되는데, 대질심문과 반대심문이 가능하다.

Special Commissioner가 내린 결정은 사실관계에서는 최종 확정하는 종결적인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는 대신 법률판단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다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관련 불복결정례는 CD Rom으로 전문을 수록하여 공개한다. 한편 비상장주식과는 달리 토지의 평가에 대한 불복은 토지불복심판위원회(Land Tribunal)의 소관인 점에서 위에서 설명한 주식의 경우와 다르다⁵⁾.

5) 일반적으로 평가와 관련한 대부분의 분쟁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협의로 해결한다. 평가원에서 실시되는 연간 10만건의 자본이득세 및 상속세 평가 중 약 10% 정도만이 심판기구에서 해결한다. 이들은 모두 독립의 기구로서 다음의 5개가 있다. Land Tribunal/ General Commissioners/ Special Commissioners/VCCTs/VAT Tribunal/기타 상소기구

<표 II-1> VOA의 처리실적

	England	Wales	Total	Estimated outstanding at year end (664,000 at 31/ 03/ 02)
2002/ 03	301,000	19,700	320,700	544,500
2003/ 04	226,500	19,800	246,300	499,400
2004/ 05	203,500	14,700	218,200	482,400
2005/ 06	268,000	17,100	285,100	841,800(1)

자료: Annex C: Rating and Council Tax Plans 2002~2006: Clearance of Rating Appeals

Ⅲ. 소득세제도

1. 소득세제도의 개요

소득세는 나폴레옹 전쟁의 전비 조달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이후 점차 영구적으로 정착된 영국의 기간세목이다. 개인의 소득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이 필수적인 소득세의 특성으로 시행시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소득들을 몇 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이들에 대하여 과세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저축소득, 비저축소득, 배당소득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동일범주 내의 소득을 먼저 파악한 뒤 이들에 대해 각각 누진과세하고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통해 최종세액을 구하는 일종의 분리과세체계를 취하고 있다.

2003/4 재정회계연도 예산 기준으로 개인소득세는 단일세목으로 세수비중(28.5%)이 가장 높으며 소득세의 과세기반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어 현금소득뿐만 아니라 현물소득(benefit in kind)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 및 연료비, 회사가 제공하는 저울 또는 무이자 대부, 무상주택에 따른 혜택 또한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2002/3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간공제액 7,700파운드를 초과하는 순자본이득(자본이득에서 자본손실을 차감한 규모) 또한 과세대상이 된다. 예컨대 단기매매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은 자본이득으로서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

한편 영국의 경우 국제간 인적자원의 이동이 빈번하여 납세의무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어 과세하고 있다.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영국에 거주하거나 4년 연속 영국 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정기적으로 영국을 방문하는 경우 거주자로 간주한다.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취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는 영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가. 소득세의 특성

영국에서 개인은 회계연도(fiscal year) 동안 발생한 그들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다. 회계연도는 4월 6일에서 다음해 4월 5일까지이다. 법령 규정에 따라 각각의 소득에 대해 특별한 규칙을 부여하기 위해 구분과세(Schedular) 시스템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소득은 임금, 자영업 소득, 임대료, 이자, 그리고 배당금 등으로 구성된다.

나. 소득세 과세원칙

일반적으로, 영국 거주민들은 모든 소득에 대해 그것의 출처의 소재와 상관없이 납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영국에 주소지를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영국에 거주하는 개인은 대부분의 경우 해외로부터의 소득에 대해 그것이 영국으로 송금되는 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비거주자들은 일반적으로 영국 내에서의 소득에 대해서만 영국정부에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 근로소득의 경우 그 소득이 영국 내에서의 근로에 의한 것인 한 영국정부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세금을 늦게 내거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자와 벌금이 부과된다. 기혼자들은 세금의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루어진다. 개인은 그들의 일생 동안에 이루어진 증여나 그들이 죽었을 때의 유산의 가치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과세방법은 분류된 이들 소득을 기본적으로 종류별로 분류후 합산하여 세율을 곱함으로써 총세액을 산출하지만 각종 소득에 대해 공제가 존재하며 또한 일정 한도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경우가 있어 모든 소득의 일대일 합산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자본이득의 경우 소득으로 보지 않는 시각이 강해서 1962년 이후에서야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였고 1988년 이후 종합과세를 실시하였으나, 다시 1999년부터 7,100파운드(현재는 7,700파운드) 이상의 자본이득에 대해서 분리과세하고 있다.

소득세 징수시점은 소득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는데 Schedule E 항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보통 PAYE(pay as you earn)제도를 적용하여 소득이 발생할 당시 원천징수하고 소득세 신고납부시 사후 정산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자 납세액을 개인이 직접 계산하지 않고 단지 다양한 소득을 보고하는

수준으로 신고의무를 종결한다.

다. 총칙규정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기준

개인인 납세의무자는 ‘거주자’(resident)와 ‘비거주자’(non-resident)로 구분되며, 거주자는 다시 ‘통상적인 거주자’(ordinary resident)와 ‘비통상적인 거주자’(non-ordinary resident)로 구분된다. 또한 ‘주소’(domicile) 및 ‘영국국민’(British subject)이라는 개념이 있다.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비거주자는 영국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나, 통상의 거주자인가 아닌가, 영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영국의 국민인가 아닌가에 따라 과세소득의 범위가 다르게 되며 극히 복잡하게 된다. 거주자, 통상의 거주자, 주소, 영국국민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가) 거주자

영국에서는 다음의 경우 영국의 거주자로 간주한다.

- 실제로 영국에서 1년에 183일 또는 그 이상을 거주한 자
- 영국에 매년 방문하고 적어도 4년 연속 1년의 방문일수가 평균 91일 또는 그 이상인 자

나) 통상의 거주자

단순한 거주자와 통상의 거주자와의 구분이 판례에서 나타나고 있다. 통상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거주 시간도 중요하기는 하나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생활의식이 어떠한가가 문제로 된다. 그러나 어떤 과세연도에 영국에 살고 있지 않았더라도 그 부존재가 그 자의 통상적인 생활양식에 있어 예외에 불과한 것이면 그는 통상의 거주자가 된다. 또한 영국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거주자로 된 경우에는 통상의 거주자로 되지 않으나, 그 왕래가 규칙적이며, 매년 영국에서 상당한 정도의 기간을 보내는 것이 그 자의 통상 생활양식이 되어 있는

자는 통상의 거주자가 된다.

다) 주소

주소는 세법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영국의 일반법의 개념이며, 국적, 거주자 또는 통상거주자와 구별된다. 한 개인의 주소는, 아주 일반적으로, 그가 그의 영구적인 조국이라고 주장하는 장소이다. 즉, 그의 현 주소가 어디이든 관계없이, 그가 결국 돌아오고자 하는 장소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한 개인이 더 이상 돌아오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주소지가 계속해서 그를 따라다닐 수도 있다.

라) 영국국민

영국국민의 정의는 1948년 국적법에서 정하고 있다. 국적법 일반규정 제1조에 의하면 영국국민이란 UK, 북아일랜드, 영연방제국 또는 식민지에서 출생한 자, 그리고 여기에 귀화한 자를 말한다. 영국국민인가 아닌가는 과세소득의 범위 및 인적공제의 청구에 있어 중요한 것이나 또한 통상의 거주자가 영국국민인 경우에는 국외에 일반적인 주거를 가질 목적만으로 영국을 떠난 경우에도 또한 통상의 거주자로 취급되게 된다.

2)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의 종류는 크게 6개 항목으로 분류하며 이를 A부터 F까지 구분한다. A항목은 토지와 건물로부터 얻는 임대소득, B항목은 사업성 산림소득, C항목은 영국정부나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공채로부터 얻는 소득을 포함한다. D항목은 자영업자소득과 사업소득을 포괄하여 6개 종류로 분류한다. E항목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포함하며 F항목은 배당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다시 말해서 영국에서 소득은 구분과세 시스템 (Schedular system)에 분류된 것에 따라 과세된다. 과세소득의 범위는 Schedule A의 영국 내의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Schedule F의 영국에 본사주소를 둔 회사의 배당소득에까지 이른다. Schedule B 와 C는 폐지된 상태이고, Schedule D의 6가지 형태에는 상업소득(trade profits), 전문직 및 사업소득(profits of a profession or a vocation), 이자 또는 연금소

득(interest, annuities and other annual payments), 해외 유가증권 수익(foreign securities), 기타 해외재산소득(income from foreign possessions), 그리고 다른 Schedule하에서 과세할 수 없는 기타소득이 있다. 그리고 Schedule E에는 과세대상(거주자, 비거주자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있다. 마지막으로 배당소득인 Schedule F항목에는 영국소재 기업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이 포함된다.

3) 사업연도

회계연도를 말하는 것으로 매년 4월 6일에서 다음해 4월 5일까지이다.

2. 과세소득

가. 소득의 종류

1) 근로소득 (Schedule E)

이 소득은 Schedule E에 의해 일반적으로 개인이 근로소득을 얻은 해에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Schedule E는 3가지 종류(Case)로 나뉜다.

- 1종은 소득원천이 무엇이든 간에 영국의 거주자와 통상 거주자의 소득에 적용된다(ICTA 1988s19(1)).
- 2종은 영국의 비거주자이거나, 통상거주자가 아닌 이의 소득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적용된다(ICTA 1988s19(1)).
- 3종은 영국 영토 밖에서 소득을 얻은 영국 거주인의 소득, 영국으로 송금되는 소득, 그리고 1종과 2종에 속하지 않는 이들의 소득에 대해 적용된다(ICTA 1988s19(1~4)).

외국에서 365일 이상 머무는 과정에서 근로를 하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영국의 세금에서 전부 공제된다. 비록 영국의 거주자이고 통상거주자이지만 영국에 주소지가 없는 고용인인 경우, 외국에서 영국 비거주의 고용주와의 고용계약하에서 근로를 한다면, 그의 근로소득은 그 소득이 영국으로 송금되어 들어오는 한에서만,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들의 연금 또한 Schedule E하에서 과세된다.

세금은 대개 Pay As You Earn(PAYE)사업계획인 E항하에서의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의 원천에서 고용주에 의해 원천징수된다. 적절한 경우, 모든 추가적인 납세의무 또는 모든 반환 요구는 연말 이후에 계산된다. 고용주에 의해 직접적으로 피고용인에게 지급되거나, 제3자에 의해 지급되는 부가급부(부대비용에 대한 보상금)는 근로자의 봉급으로 보아 E항하에서 과세될 수 있다. 매우 한정적이지만, 일정한 부가급부는 납세의무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그리고 고용주에 의해 제공되는 편의와 같은 이익의 경우가 그러한 경우이다.

2) 사업소득(Schedule D)

영국에 거주하는 이들은 영국 내에서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수행한 상업이나 전문직 또는 장사로부터의 이익에 근거한 D항의 1종 또는 2종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영국의 거주자가 영국 밖에서의 상업이나, 전문직 또는 자영업을 함으로써 산출한 이익은 D항의 5종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영국 밖에서 영국에 주소지를 가진 사람이 아닌 영국의 거주자에 의해 수행된 상업이나, 전문직 또는 개인사업(자영업)으로부터 나온 이익이 영국으로 송금되는 한도 내에서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영국 거주자가 아닌 사람은 영국 내에서 자영업 또는 전문직을 수행하여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부동산 수입 (Schedule A)

영국의 토지와 부동산으로부터의 모든 소득은 Schedule A에 의해 과세된다. 여기에는 가구가 동반되는 임대, 임대 트레일러, 그리고 숙박시설이 있는 보트도 포함된다. 개인은 영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국의 토지와 부동산으로부터 1년의 회

계연도 동안에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해 과세의 의무를 진다. 과세이익은 토지와 부동산으로부터의 총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모든 지출을 공제함으로써 산출된다. 과세표준은 회계연도 동안에 발생한다. 과세표준은 대개 단기 임대차계약 수익에 근거하기보다는 모든 항목들에 근거해서 발생한다. 즉, 사업에서의 소득과 지출을 계산하는 것에 근거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공제 가능한 지출을 결정하는 규칙은 거래소득에 과세하는 데 사용되는 Schedule D의 Case I에서와 같다. 즉, 현금표준이 사용될 수 있을 때, 부동산으로부터의 소득이 아주 낮지 않다면 증가액(이자, 연체료) 표준이 사용된다. 일정한 경우, 영국에 있는 부동산의 수입은 상업으로 인한 수입처럼 취급된다. 이 경우 그 부동산 수입에 대해서 D항의 1종에 의해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영국에 있는 부동산의 수입에 대해서는 A항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될 것이다. A항하에서는 거주자, 통상거주자 또는 영국에 주소지를 가진 사람이라는 수납인의 지위에 관계없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영국 밖의 영국 거주자에 의한 부동산 수입은 D항의 5종에 의해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영국의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수입이 영국으로 송금되는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된다.

4) 이자와 배당금(Schedule F)

영국에서건 외국에서건, 기본세율(Basic rate) 납세자의 경우 이자와 배당금은 단지 10%의 초기세율(Starting rate)에 의해 세금이 부과된다. 초기세율의 세금은 일반적으로 영국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서 공제된다. 영국의 배당금과 세액공제를 운영하는 전가(imputation) 제도는 Starting rate의 납세의무를 면제한다. 높은 세율(High rate) 납세자는 배당금이나 이자 수입에 대해 40%의 비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그와 같은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20%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영국의 이자나 배당이익에 대한 비영국 거주자들의 소득세 납부의무는 소득의 원천에서 감면되는 세금이나 세금공제에 의해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와 같은 수입에 대해 비거주자들은 High rate의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소

득의 원천에서 공제되는 소득세는 납세액 총액을 초과한다면 환급된다. 그러나 배당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반환되지 않는다.

5) 연금(Schedule E, D)

영국 연금은 E항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된다. 외국 연금은 10%가 공제된 후에 D항의 5종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된다. 종신연금으로부터의 연간 부담금은 자본 수익의 한 부분으로서 다루어진다. 그러한 범위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표 III-1> Schedular system¹⁾

Schedule	소득의 종류	과세의 표준
Schedule A	영국 내 땅과 건물 의 임대료	과세연도 동안의 임대료 - 공제할 수 있는 지출
Schedule D		
Case I	상업 수익	대개 현 과세연도가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순이익이 된다.
Case II	전문직 또는 사업 수익	
Case III	영국의 이자 또는 연금	과세연도에 받은 소득 지출에 대한 공제는 없음
Case IV	외국 유가증권 소득	납세자가 영국의 거주자이나 통상적인 거주자는 아 닌 경우, 또는 영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가 아닌 경우에 그 납세자가 과세연도 동안에 받는 연금으로 부터의 소득에서 백분을 공제에 의해 공제된 소득
Case V	외국 재산 소득	
Case VI	다른 스케줄하에서 과세할 수 없는 소득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 - 승인된 (appropriate) 지 출
Schedule E		
Case I	영국의 거주자이고 통상의 거주자인 노 동자	영국 또는 외국에서 수행된 직무인 경우의 과세연도 에 발생한 모든 소득
Case II	영국의 거주자가 아 닌 노동자 또는 거 주자이되 통상의 거 주자가 아닌 노동자	영국에서의 직무에 대한 소득
Case III	영국의 거주자이고 통상의 거주자인 자 가 완전히 외국에서 벌어들인 '외국봉급' 영국의 거주자이되 통상의 거주자가 아 닌 자의 외국에서의 소득	과세연도에 영국에 송금한 금액
Schedule F	영국-거주회사에 대 한 배당액	과세연도의 배당액 + 수반되는 세금감면권

주): 1) 영국의 구분과세제도

나. 과세표준의 계산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자. 스미스씨는 영국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다. 그는 기혼자이고 영국 회사에 고용되어 있다. 1997년 4월 5일 현재 일년 동안의 그의 소득과 자본이득은 다음과 같다.

		(단위: 파운드)
봉급		75,000
Benefits in kind:		
회사 차	7,000	
사회보장기여금	500	
club 기금	<u>750</u>	
		8,250
은행이자 소득		1,500
배당 소득		250
Capital gains		<u>7,500</u>

스미스씨가 지불한 일년 동안의 연금기금은 3,750파운드이다.

스미스씨의 일년 동안의 과세표준과 과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단위: 파운드)
봉급		75,000
Benefits in kind		<u>8,250</u>
		83,250
공제: 연금 기금		<u>(3,750)</u>
		79,500
은행이자		1,500
배당		<u>250</u>
		81,250
공제: 개인소득		<u>3,765</u>
과세표준		<u>77,485</u>

과세액

(단위: 파운드)

소득에 대한 과세: 저세율 - 3,900파운드@20%	780	
기본세율 - 21,600파운드@24%	5,184	
고세율 - 51,985파운드@40%	<u>20,794</u>	
		26,758
less : 기혼자 소득 1,790파운드@15%		<u>(268)</u>
		26,490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일년 동안의	7,500	
공제 : allowance	<u>(6,300)</u>	
	<u>1,200</u>	
tax thereon@40%		<u>480</u>
총 과세액		<u>26,970</u>

다. 소득공제제도

2003회계연도에 맹인공제, 부부공제, 노령자공제 등은 모두 물가연동 상한을 적용하고 소득세율의 변화는 없다.

1) 공제의 종류

가) 기본공제

근로의 의무를 수행할 때 전적이고, 배타적이며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하는 그러한 비용들만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계산되는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다고 주장된다. 이러한 기준들은 국세청에 의해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결과적으로 공제하기에 적절한 비용은 극히 제한적이다. 일정한 환경하에서는 공제가 제한된 한도 내에서 재배치 비용으로 이용 가능하다. 또한 어떤 제한된 한도 내에서, 연금 기여에 대한 특별한 공제가 있

다. 2002회계연도에 발표된 대로 개인소득공제는 4,615파운드로 동결하고 노령자(65~74세)의 경우 6,610파운드로 인상하고 75세 이상의 경우는 법적 연동을 통해 240파운드를 추가하여 6,720파운드를 적용하였다.

나)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

사업의 목적을 위해 전적으로 그리고 배타적으로 발생된 비용은 납세의무가 있는 이익을 계산할 때 공제될 수 있다. 근로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비교했을 때 '필요성'의 결여는 더 넓은 범위의 비용이 공제될 수 있다.

공제는 자본적 성격의 소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쓸모없지만, 공장과 기계, 산업 건물, 농업건물과 부속시설, 금과 석유 등의 자본공제의 소비에 대해서는 쓸모가 있다. 공제의 차액이나 부채는 그와 같은 자산의 처분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근로소득에 따라 제한된 한계 내에서 연금기여에 대한 특별한 공제가 있다.

다) 부동산 수입에 대한 공제

이자를 포함한 관련된 비용은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부가가치 향상, 증축 또는 개량과 같은 비용에 대해서는 비록 자본공제가 사업소득에서와 같은 식으로 넓게 이용된다고 할지라도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 이자

파트너십에 대해 자금을 공급하거나, 특정 회사들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과 같은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돈을 빌린 것에 대한 이자수입 공제가 있다. 채무자 또는 주거지의 이득을 용자하기 위해 취득된 대부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 제한된 공제가 있다.

마) 세액공제

영국 비거주자 또는 영주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주요한 면세는 소득세의 다른 분야에 나와 있다. 많은 원천소득이 특별하게 세금으로부터 면제되거나 일정량에 이르기까지 면제된다. 이것들은 대부분 승인된 정부의 구제수단이다. 눈에 띄는 면세는 고용의 상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최초의 3,000파운드의 범위에서 면세된다.

총소득에서 소득공제항목의 금액을 차감함으로써 일차세액을 구한 뒤 다음의 조정을 거친다.

- 최고소득 세액공제(top slicing relief)
- 벤처기업투자조합
- 대출금이자
- 부부
- 배우자 잉여 이전분
- 근로
- 자녀

<표 III-2> 근로 및 자녀세액 공제율과 구간

항목	파운드/1년
근로세액공제	
- 기본 요소	1,525
- 부부 요소	1,500
- 30시간 요소	620
- 장애근로자 요소	2,040
- 추가장애근로자 요소	865
- 자녀보육 요소(최고액, 2자녀 이상)	200파운드/1주
자녀세액공제	
- 가족 요소	545
- 자녀 요소	1,445
- 장애자녀추가 요소	2,155
- 추가장애자녀 요소	865
공통특성	
- 첫째 소득구간	5,060
- 둘째 소득구간	50,000

자료: HM Treasury, Budget Report 2003.

2) 과세대상소득의 계산

총소득에서 아래의 소득공제항목의 금액을 차감함으로써 계산한다.

- 손실
- 외국납부세액
- 개인연금지출
- 대출금 이자지급
- 이혼자의 생계부양비
- 주기적 기부금 및 지원금(deeds of covenant and gift aid payments)
- 인적공제
- 연령관련 공제
- 맹인공제
- 임시수당(transitional allowance)

<표 III-3> 소득세 공제(2003~04)

(단위: 파운드/1년)

항목	2002~03	2003~04
기본공제		
- 65세 이하	4,615	4,615
- 65~74세	6,100	6,610
- 75세 이상	6,370	6,720
부부공제 ¹⁾		
- 2000년 4월 6일 이전 65세	5,465	5,565
- 75세 이상	5,535	5,635
최소금액 ²⁾	2,110	2,150
연령관련공제상한	17,900	18,300
맹인공제	1,480	1,510

주: 1) 공제상한 10%,

2) 부부 중 한 사람이 적어도 1935년 4월 6일 이전 출생한 경우 유지비용의 상한

자료: HM Treasury, Budget Report 2003.

3. 비과세소득

다음에 열거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화폐 또는 화폐적 가치로 환원될 수 없는 것
- 국민저축채권의 이자(다만 한도액이 있다) 및 면세이자로 선언된 재무부증권의 이자
- 납세준비증서의 이자
- 일정저축은행의 예금이자(다만 한도액이 있다)
- 상해 및 불구자 은급, 전시하사금, 병사하사금 및 은급금
- 교육시설로서 전일제의 교육을 받은 자가 받는 장학금
- 국민보험제도에 의거하는 생업, 건강, 출산, 생명보험금

4. 사업소득세(business taxation)

비법인 사업은 세금을 목적으로 따로 다루어지지 않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데 구분과세 시스템 (Schedular system)이 사용된다. 사업소득세를 산정하는 데 있어, 과세소득은 Schedule D의 Case I (1종), Case II (2종)에 의해 계산된다. 사업소득은 기본적으로 Schedule D의 Case I에 의해 과세되고, 자영업이나 전문직으로부터 얻은 소득은 Schedule D의 Case II에 의해 과세된다.

영국에서는 노동력의 13%인 대략 350만명에게 Schedule D의 Case I (1종), Case II (2종)에 의해 세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사업자 중 몇몇은 대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사업을 한다.

Schedule D의 Case I (1종)하에서 과세액을 계산하기 이전에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 사업활동

법령에는 사업활동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실제로 사업활동이 일어났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판례법을 보아야 한다. The Royal Commission on the Taxation of Profits and Income은 1995년에 거래가 사업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6가지의 식별기준을 제시했다. 만약 사업활동이 발생한다면, 하나 이상의 식별기준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식별기준 중 어떤 것도 사업활동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검증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1) 사업의 식별기준

가) 거래의 실체물

거래의 실체물을 형성하는 재산이 소유주에게 직접적인 소득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거래는 사업으로 간주되기 쉬울 것이다.

나) 유사한 거래의 횟수

단 한번의 거래도 사업으로 고려될 수도 있지만, 같은 실체물을 반복해서 거래하는 것은 더욱 그러하다.

다) 현금화해야 할 경우

위급시에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사업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라) 재산을 현금화하는 것과 관련된 보충적인 작업

이익을 얻기 위한 계획된 노력이 있다면 과세소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나, 그러한 노력이 없을 때에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마) 거래의 동기

거래를 착수한 목적이 이익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면, 사업활동이 발생한 증거가 된다. 그러나, 이익을 만들기 위한 동기가 없었을 지라도 거래가 사업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그것은 거래의 실체물이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 소유의 기간

소유 기간이 짧은 거래물의 거래일수록 사업활동으로 간주되기 쉽다.

나. 수익의 조정

일정한 상업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과세수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과세수익은 과세 기간 동안의 매출 수령액과 공제 가능한 지출 사이의 차액이다. 과세수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알 필요가 있다.

- 재정연도 동안에 과세 표준을 형성할 회계기간의 결정
- 기준이 되는 기간과 관련된 과세소득과 공제 가능한 지출의 확인

1) 소득과 지출의 인식

어느 기간에 소득과 지출이 인식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세 법에는 이러한 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납세자들은 국세청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소득과 지출을 인식하는 납득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다.

- 권리발생시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 현금 흐름의 발생시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 계산서를 수령하거나 계산서가 발행된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권리발생시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일단 하나의 기준에 동의를 하면, 그 기준은 납세자가 다른 기준을 선택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사용된다. 물론 납세자가 기준을 바꾸기 원한다면, 우선 내국세입청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2) 사업 매출액

서비스나 재화에 대한 지불이라면 그러한 수령액은 사업 매출액이다. 납세자의 자원에 의해 이루어진 지불이라면, 그것은 사업 매출액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사업 매출액이 되기 위해서는 수령액은 자본이 아니라 소득이어야만 한다. 수령액이 소득인지 자본인지는 수행되는 사업의 유형에 달려 있다.

3) 공제할 수 있는 지출

지출이 소득으로부터 공제 가능한 지출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우선 수익 품목이어야 하고, 다음으로 사업이나 전문직을 목적으로 전체적으로 또는 독점적으로 발생해야만 하고, 마지막으로 법에 의해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특별하게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

다음의 것들은 Schedule D의 Case I (1종), Case II (2종)에 해당되는 수익을 계산할 때, 특별하게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 사업, 전문직 또는 장사의 목적으로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지출
- 사업의 유지를 위한 지출
-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빌린 것에 대한 집세
- 건물의 수리나 개조에 소비된 지출액의 초과분
- 사업, 전문직 또는 장사와 관련되지 않은 손실
- 사업, 전문직 또는 장사의 목적으로 접거된 건물의 개선에 사용된 자본
- 심각한 채무가 아닌 모든 채무

- 보험이나 보상조약으로 인해 되찾을 수 있는 금액
- 사업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사적인 목적으로 발생한 지출
- 영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불되는 모든 이자
- 특허의 사용에 대해 지불되는 금액
- 접대에 사용된 대부분의 지출
- 50파운드를 넘는 선물을 고객에게 하는 것 등은 일반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가) 부담금(Charges)과 이자

지불된 부담금은 개인소득세 계산에서 공제되었기 때문에 Schedule D Case I의 계산에서는 공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담금인 장기간의 대부에 대해 지불된 이자는 공제되지 않는다.

나) 벌금

벌금과 과태료 같은 것은 공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고용인이 업무 중에 고용주의 차를 공원에 주차한 것으로 인해 벌금을 낼 경우에 그것은 공제된다.

다) 전문적인 부담금

법적이고 전문적인 부담금이 공제 가능한지를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관련된 품목의 상태를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자본 자산과 비상업 품목에 대해 발생하는 부담금은 공제되지 않는다.

라) 고용인에 대한 지불

고용주들이 사업을 위하여 제공한 고용인에 대한 지불은 대개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직원이 일을 하기 위해 이동할 때 발생한 이동 경비는 공제되지 않지만, 업무중에 발생한 이동 경비는 고용주의 수익으로부터 공제될 수 있다.

마) 전체적이고 독점적인 규칙

지출이 전체적으로 그리고 독점적으로 사업의 목적을 위한 것일 때 공제가 가능하다.

다. 이러한 요구를 벗어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하나는 지분이 늦어져서 사업으로부터 너무 동떨어지게 되어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전체적이고 독점적으로 될 수 없을 때이다. 다른 하나는 지출이 사업적인 목적과 개인적인 목적의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출이 수익으로부터 공제되지 않는다.

바) 사업과 개인적인 사용

거래의 목적을 사업과 개인적인 목적으로 분산시키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르나, 지분과 공제할 수 있는 지출로서의 사업부분으로 분산하는 것은 가능하다.

사) 건물 임대

납세자가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일부분은 공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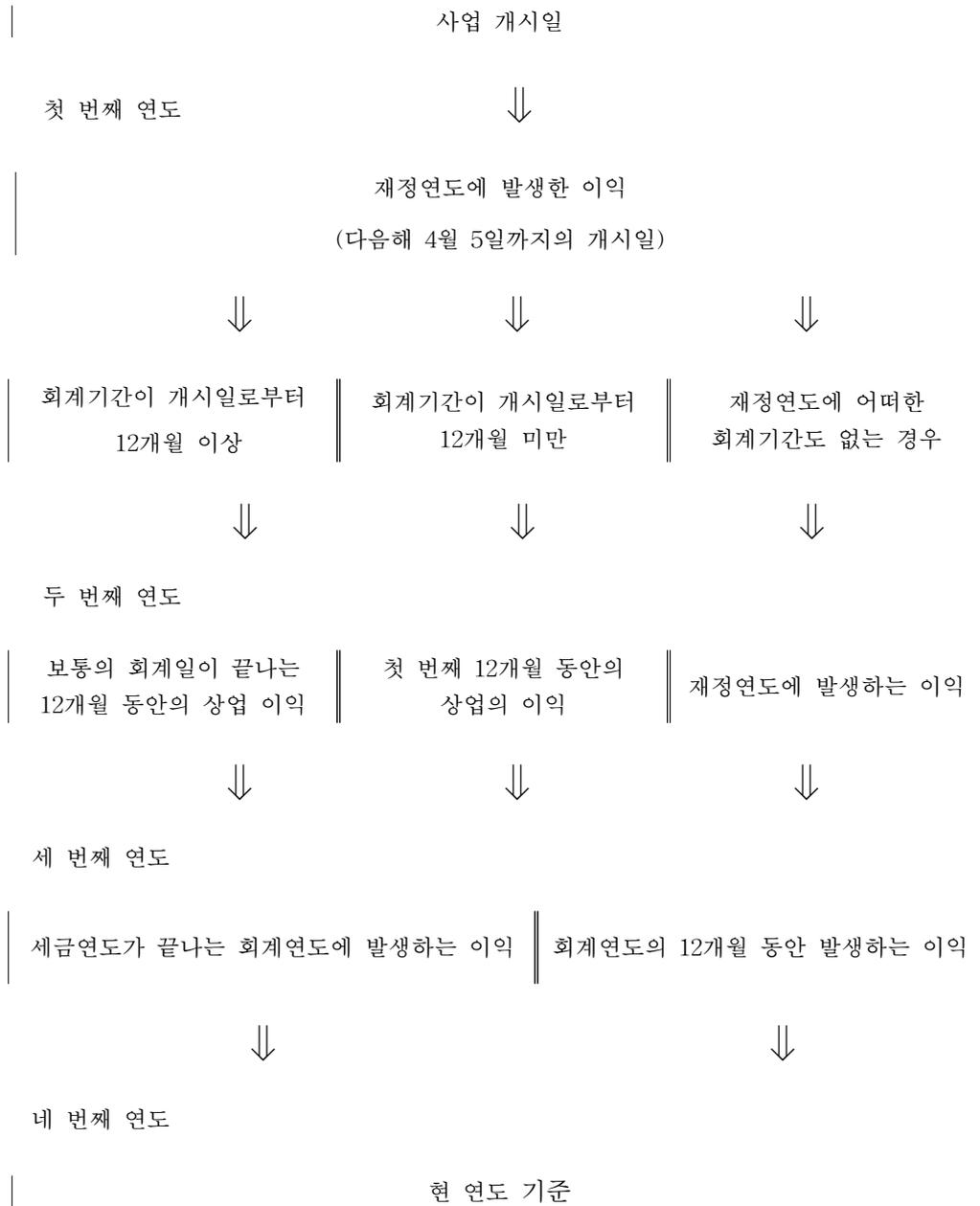
아) 사업 이전에 발생한 지출

사업을 위한 사업 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경우에만 사업소득으로부터 공제되는 지출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업 개시일에 앞서 7년 동안 발생한 지출도 개시연도에 발생한 손실로서 다루어질 수 있다.

다. 사업소득의 과세표준

재정연도(4월 6일에서 다음해 4월 5일까지)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사업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한다. 이것을 '과세연도'라고 한다. 근로자에게 있어 이러한 기간에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단하다. 그러나 자영업자에게 있어 이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득은 그들의 기장된 장부(계산서)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계산서는 대개 12개월의 기간 내에 제공된다. 이 기간은 재정연도와 비교했을 때 1년 동안 다른 시점에서 시작해서 끝날 수도 있다.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과세연도에 분배하는 규칙을 알 필요가 있다.

[그림 III-1] Current Year Opening Rules



1) 현 연도 기준

현 연도의 제도하에서의 일반적인 규칙은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수익은 과세연도에 과세된다는 것이다.

2) 사업 종결연도의 과세

현 연도의 규칙하에서 사업을 그만두는 사업의 과세표준은 마지막 회계기간이다.

3) 이중 수익에 대한 공제

어떤 수익은 한번 이상 과세되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중공제의 방법으로 공제를 한다. 이중공제가 주장될 수 있는 두 가지의 상황이 있다. 하나는 기업이 그것의 회계기간을 12개월 이상으로 바꿀 때 재정연도 동안 이중공제가 주장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기업이 사업을 중단할 때 재정연도 동안 주장될 수 있다.

4) 회계기간의 변화

회계기간은 12개월인 것이 보통이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고, 언제든지 기업은 국세청에게 알리고 회계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회계기간의 변경의 결과는 다음의 세 부류로 나타난다.

- 하나의 회계기간이 12개월보다 적거나
- 하나의 회계기간이 12개월보다 많거나
- 재정연도에 어떠한 회계기간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5. 소득세율

가. 비저축소득

특정소득에 부과되는 세율을 정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한 세가지 유형에는 저축, 비저축, 그리고 배당소득이 있다. FY 2003~2004의 비저축 과세소득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인의 대표적인 소득인 비저축소득의 경우 매년 개정된 세율 또는 과세구간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 특징이다.

<표 III-4> 비저축 과세소득에 대한 세율

(단위: 파운드, %)

세율구간	금액	세율	Band 내에서의 최고 지불액
Starting rate	0 ~ 1,960	10	196.00
Basic rate	1,961 ~ 30,500	22	6,710.00
Higher rate	30,500 이상	40	12,200.00

자료: HM Treasury, Budget Report 2003.

나. 저축소득

저축소득은 초기세율구간(starting rate band)에 속한 소득은 10%, 기본세율구간(basic rate band)는 20%(비저축은 위의 표와 같이 22%), 그리고 고세율구간(higher rate band)에 속한 소득은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저축소득은 다음을 포함한다.

- 은행 이자
- 주택조합(building society) 이자
- 채무부증권(gilt edged securities) 이자

- 회사채(debenture) 이자
 - 연금소득
- 20%세율은 낮은 세율(lower rate)로 불린다.

다. 배당소득

배당소득은 초기 또는 기본세율구간 모두 10%, 고세율구간에 속한 소득은 32.5%가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다른 유형의 소득이 있는 경우 계산의 순서에 따라 분명하게 내야 할 세금의 액수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언제나 비저축소득을 제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저축소득,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당소득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즉, 배당소득은 맨 위의 부분(top slice)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비용과 인적공제는 비저축소득의 총액에서 먼저 빼고, 그리고도 여유가 있는 경우 다음으로 저축소득, 그리고 배당소득의 순으로 공제한다. 영국 거주인과 비거주인 사이의 세율은 다르지 않다.

6. 소득세 행정 및 기타 관련 제도

가. 신고 및 납부

영국의 과세연도는 4월 6일에 시작하여 익년 4월 5일에 종료하지만 조서관은 각 연도의 4월 6일에 법정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람에게 대해 신고서를 송부한다(법정소득이 있는 자는 과세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조서관에게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납세의무자는 신고서의 송부기일(통상은 4월 6일)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만 한다. 영국에서는 신고납부제도가 도입된 후에도 부과과세제도가 보완적으로 취해지고 있으므로 이 신고서는 부과에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로서의 의미밖에 갖지 못하지만, 무신고 등에 대해서는 벌칙이 적용된다.

부과는 스케줄 D 제 1종 및 제 2종 등 전년도주의로 소득에 대해서 과세연도 내에 부과될 수 있으나, 스케줄 A, B 등 당년도주의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연도 종료 후에 소급하여 과세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스케줄 D 제1종 및 제2종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연도의 1월 1일과 익년도의 7월 1일에 반액씩 부과할 것이 인정되고 있으며, 기타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연도의 1월 1일과 과세서명의 익일 중 어느 날이나 뒤에 오는 날짜까지 부과토록 되어 있다.

나.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처리

1) 과세소득의 범위

전술한 바와 같이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영국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가) 급여소득

급여소득은 영국에서 노무의 제공에서 생긴 것에 한해 과세된다. 다만 비거주자인 피용자가 영국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고 또한 비거주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국 국내에서 행해진 노무에 대한 보상일지라도 과세되지 않는다.

나) 자유직업소득

영국에서 현실적으로 수행되는 노무에 귀속하는 범위 내에서 과세된다.

다) 사업소득

(1) 사업의 범위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은 영국 국내의 지점을 통하는 등의 사업경영에서 생긴 것에 한해서만 과세된다. 영국 국내에서의 사업경영이 되기 위해서는 영리활동의 적어도 일부가 계속적으로 영국 국내에서 행해지고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비거주자가 영국 국내에 사업을 행하는 일정장소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2) 소득액의 결정

소득액의 결정은 거주자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행해진다. 이 이외 비거주자의 영국 지점 등이 영국 국내 및 국외의 쌍방에서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영국 지점 등의 이윤 중 영국 국내에서 사업경영에 합리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이 과세소득으로 된다. 또한 사업이 영국 국외에서 제조되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쌍방으로 구성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조이윤으로 되는 부분은 제외되고 판매이익에서만 과세된다.

(3) 기타 소득

이자, 연금, 로열티 등

2)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비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나 영국국민, 아일랜드공화국 시민 등에 대해서는 그의 영국 원천소득이 전세계소득에 접하는 비율을 한도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부과 및 징수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부과된다. 즉 비거주자가 받는 이자, 연금, 로열티 등은 원천과세된다. 원천과세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거주자에 대해 직접 과세되거나 또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부과된다. 통지서의 발송에 관계없이 납부가 되지 않는 경우, 영국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 또는 채권으로부터 징수된다. 또한 대리인이란 ‘비거주자의 정규의 대리인으로 활동할 것을 인정한’ 영국 국내의 지점·관리인 등을 말하며, 대리인은 거주자 경우와 같이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야만 한다.

다. 이중과세방지제도

수익자가 외국에 세금을 지불한 외국에서의 수입이나 취득(원천세를 지불한 경우도

포함)에 대해 영국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외국에 세금을 지불한 부분에 대해 영국에서의 세금의무에 있어서 감면이 일반적으로 주어진다. 그러나 감면은 외국에서의 수입증가에 대한 영국 세금의 증가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허용되는 최대 조세감면을 계산하는 데 있어 각각의 외국에서의 수입은 개별적으로 계산된다. 이중과세 조약이 영국과 외국 나라들 사이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처리가 다를 수도 있다. 영국의 상속세가 증여나 다른 사건 그리고 같은 사건에 관해 지불되는 상속세의 성격과 유사한 외국에서의 세금이 부과될 경우, 이중과세로부터의 공제가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라. 원천징수제도

1) 개인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영국에서의 노무에 대해 지불받은 영국의 비거주자의 보수에 대해 원천징수가 적용된다. 영국의 비거주자는 영국 내에서 수행된 근로의 의무에 관하여는 스케줄 E항의 2종에 의해 세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만약 상업이나, 전문직 또는 자영업을 영국에서 경영했다면 스케줄 D항의 1종이나 2종에 의해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개인이 스케줄 E항에 근거하여 납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의 고용주가 영국에 있다면, 그 고용주는 PAYE라는 세금공제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특별한 원천징수가 영국에서 활동하는 영국의 거주민이 아닌 연예인과 운동선수를 위해 보수에 대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규칙들은 보수가 PAYE 사업계획에 의한 세금공제 후에 주어진다면 적용할 수 없다. 특별한 규칙하에서는 납세자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에 대한 보수로부터 기본 비율인 22%의 비율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원천징수된 보수는 실질적으로 계산되고 부과된 납세의무 때문에 보수로서 취급된다. 납세자에 의해 원천공제된 세금의 대체적인 계산에는 편익이 있지만, 이것은 지불인,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 그리고 국세청의 서면으로 된 동의가 요구된다.

2) 건축산업에서의 도급계약인에 대한 보수

납세자가 건축사업을 포함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는 영국에서 건축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국외의 시설에 관하여 도급계약인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납세자는 만약 수납자가 도급계약인의 국세청으로부터의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거래의 가격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22%의 기본세율로 매출액에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칙은 또한 비록 건설회사 그 자체의 사업에는 아니지만, 건설 회사에 상당한 지출을 초래하는 모든 회사에 적용된다.

3) 이자소득

개인에게 이자를 지불하는 은행이나 회사의 모임들은 만약 이자의 수납인이 그가 통상의 영국 거주인이 아니거나, 비과세대상이거나, 저축액이 면제받은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소득에서 초기세율(Starting rate)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그렇게 공제된 세액은 1년 총과세액에 대하여 감면으로 이용될 수 있고, 초과분은 환급될 수 있다.

4) 지대

지대가 비거주인에게 지불되었을 때, 22%의 기본세율이 대개 소득에서 원천징수되며 분기별로 국세청에 납입한다.

마. 사회보장기여금 또는 국민연금(NIC)

피고용자와 경영주는 소득세에 추가하여, 국민연금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용자의 소득이 최소 기준(일주일에 77파운드 2003/04)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부담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 일주일에 최대 595파운드에 이르는 수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부담금으로 11%가 부과된다. 고용주 역시 처음의 매주 89파운드까지에 대

해서는 부담 의무가 0%이나, 89파운드 이상의 경우 12%에 달하는 부담금을 지불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용자가 연금 계획과 관련하여 주소득의 불참계약을 한 경우 일단의 소득에는 낮은 비율이 적용된다.

<표 III-5> 국민연금기여금 요율(2003~04)

(단위: 파운드, %)

1주당 소득	피고용자(1차)	사용자(2차)
	NIC요율	
~ 77	0	0
77~89	0	0
89~595	11	12.8
595~	1	12.8

자료: HM Treasury, Budget Report 2003.

영국의 국민연금기여금은 사회보장을 위한 것으로 기여금의 수준이 상당히 높고 재분배 성격이 강하다. 기여금의 소득대비 비중이 피고용자와 사용자에게 대해 각기 구분되어 정의되어 있는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버는 근로자에게 기여율이 높으며 특정구간에 대해서만 개인이 직접 부담하는 것이 특징이다.

7. 정책시사점

영국의 개인소득세제도는 구분과세제도, 즉 스케줄러 시스템이 가장 특징적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은 근로자의 임금, 자영업 소득, 임대소득, 이자, 그리고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한다. 과세방법은 분류된 이들 소득을 기본적으로 종류별로 분류 후 합산하여 세율을 곱함으로써 총세액을 산출하지만 각종 소득에 대해 공제가 존재하며 또한 일정 한도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경우가 있어 모든 소득의 일대일 합산과세하

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자본이득의 경우 소득으로 보지 않는 시각이 강해서 1962년 이후에야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였고 1988년 이후 종합과세를 실시하였으나, 다시 1999년부터 7,100파운드(현재는 7,700파운드) 이상의 자본이득에 대해서 분리과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세소득을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 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의 11가지로 구분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과 일면 유사하면서도 포괄의 범위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광범위함을 알 수 있다. 특히 퇴직소득, 산림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분류과세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우리와 최근에 다시 일정금액 이상의 자본이득에 대해서 분리과세하고 있는 영국의 소득세제도는 종합과세화의 우리나라 소득세제 개편방향에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영국 소득세제 운영과 관련하여 눈여겨 볼 사항은 소득세법의 틀을 매년 바꾸는 것이 아니라 Finance Act라는 재정법체계를 연간세법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필요한 과표의 현실화, 세율의 미세 조정, 공제범위의 조정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형식이다. 국세청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 그리고 납세자와 과세자 간의 정보 불형평성을 극복하고 납세순응을 지원하기 위한 세법 다시 쓰기 운동 등도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IV. 기업과세제도

영국의 기업과세제도는 개인사업, 동업,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와 법인 형태인 경우로 나누어 관리된다. 우리나라 법인세에 대비되는 영국의 기업과세제도는 회사의 수익에 부과되고, 매회계연도마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이 적용된다. 1965년까지 회사들은 소득세법하에서 과세되었다. 법인세법은 1965년 세제개혁에서 도입되었는데, 1973년부터는 이윤규모가 작은 소규모법인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한편 법인세율은 1965년 도입 이후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여러 차례의 세율조정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기본세율을 33%에서 30%로 인하하였는데 이는 2004회계연도에도 고정이다. 과세소득 1만파운드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 FY 2001의 경우 10%세율이 적용되던 것이 FY 2002부터는 새로이 0%의 starting 세율이 적용되고, 19%까지의 sliding scale이 적용되며, 10파운드부터 5만파운드까지는 19%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다시 5만파운드부터 30만파운드까지는 19~30%의 sliding scale이 적용된다. 주지하듯이 회사에 법인세가 과세될 때, 소득세로 과세되는 개인 사업이나 동업과 비교하여 많은 유사점이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데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바 이는 법인의 형태에서 자세히 서술하기로 한다.

1. 개인사업, 동업 또는 유한회사

사업을 시작하거나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대한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의 대안으로는 개인사업자가 되거나, 다른 사람과 동업을 하거나,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인사업자 또는 동업자는 사업의 채무에 대해 그들의 개인적인 모든 자산의 범위에서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파산선언을 할 수도 있다. 유한회사 형태 회사의 주주의 의무는 일반적으로 지불되지 않은 주식 가치에 한정된다. 개인자산의 보호는 대개 회사를 통해 사업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또 하나의 요인은 회사의 수익이 350,000파운드 이하이면 회계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가. 비법인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와 국민연금기여금

개인사업자 또는 동업자는 27,100파운드를 초과하는 모든 그들의 수입의 40%를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아내와 남편의 동업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주주의 경우 얼마나 많은 수익을 배당금으로 남기고, 법인세율로 부과될 세금을 얼마나 남길지를 결정할 수 있다(중요한 것은 수입이 회사의 수익으로 처리되기보다는 개인의 수익으로 처리될 때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수익이 300,000파운드 이하일 경우의 법인세율은 21%인데, 이것은 소득세율보다 1%p 낮은 세율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기여금 포지션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개인사업자나 동업자는 클래스 2 국가 보험과, 클래스 4 국가 보험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간 수익이 25,220파운드인 사람의 보험료를 모두 합치면 1년에 1,075파운드 정도를 보험료로 지불하여야 한다. 남편과 아내의 동업의 경우에도 이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회사의 피고용인과 고용주가 함께 지불하는 1년의 국가 보험료는 연간 수익이 25,220파운드인 사람 기준으로 4,778파운드이고, 고용주가 지불하는 보험료를 공제하고 계산하더라도 2,843파운드가 된다(1999년 기준). 전반적인 tax position은 또한 수익이 봉급수익인지 배당수익인지에 따라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왜냐하면 배당을 지불하는 것은 국민연금기여금을 절약하고, 배당에 대해 회사가 지불하는 세금의 20%는 세액공제로서 주주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보 기>	(단위: 파운드)	
	사업자	회사 경영자
수익/봉급	48,780	31,295
개인적 공제	4,195	4,195
과세 소득	44,585	27,100
세금 기준 4,300@20%	860	860
22,800@23%	5,244	5,244
17,485@40%	6,994	
	13,098	44,585
클래스 2 국가보험	330	고용 국가보험
클래스 4 국가보험	1,075	(maximum)
총 개인세와 국가보험	14,503	2,256
		8,360

1) 수익에 대한 세금 지불

과세되어지는 경영자의 봉급과 국가 보험료는 PAYE 사업에 따라 즉각적으로 지불되거나 회계기간 말 이후 9개월 내에 지불하여야 하는 회사의 다른 수익에 대한 법인세와 함께 경영자의 회계장부의 대변에 기입된다.

2) 손실

새로운 사업이 초년에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되면, 각기 다른 손실 공제가 개인과 회사에 적용되게 된다.

나. 자본공제

자본지출에 대한 세금공제는 자본공제의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것은 세금을 목

적으로 한 자본자산의 일관된 처리를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또한 특별한 자산을 특별 과세처리하도록 한다. 자본공제는 사업상의 자본지출에 대해 적용될 수 있다. 자본공제는 세금을 목적으로 한 지출에 이용 가능하다. 자본공제는 또한 회사의 수익을 계산할 때 이용 가능한 공제이다. 자본공제는 과세연도 동안에 주어진다. 이것은 사업의 회계연도와 일치한다. 회계연도의 기간이 12개월이 아닐 때에는 이용 가능한 자본공제는 회계연도의 기간에 맞게 줄어들거나 늘어나게 된다.

1) 공장과 기계

2001년의 CAA(Capital Allowance Act)에는 설비와 기계의 정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것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판례법을 살펴보아야 한다.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설비와 기계의 정의로부터 배제되는 자산의 유형

- 사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지 않은 자산
- 수명이 2년 이하인 자산
- 사업이 수행되는 장소의 일부를 형성하는 자산

나) 자동적으로 설비와 기계로 간주되는 지출

- 사업자에 의해 점유된 건물에 대한 소방관련 규제(fire regulations)를 따르기 위한 장비에 대한 지출
- 산업용 건물의 열 차단장치 구비를 위한 지출
- 운동장에 대한 법정 안정성 요구를 따르기 위한 지출
-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출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이 자본공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목적으로 한 기계나 공장설비에 대한 자본지출이어야만 한다. 매년 과세기간 동안의 공제 가능한 공제액은 가격에서 처분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25%이다.

2) 초년도 공제

초년도 공제는 임대, 자동차, 배, 그리고 철도자산과 같은 설비와 기계에 대한 지출에는 적용될 수 없다. 일반적인 공제와 달리 초년도 공제는 회계기간에 관계없이 자산 가격의 40%로 요구된다.

3) 자본공제의 공식화

	Pool	공제
Written down value b/f	100,000	
+ not qualifying for a FYA	<u>10,000</u>	
	110,000	
처분	<u>20,000</u>	
	90,000	
감가상각 공제(90,000 × 25%)	<u>(22,500)</u>	22,500
	67,500	
+ qualifying for a FYA		
설비	10,000	
초년도 공제율 40%	<u>(4,000)</u>	4,000
Written down value c/f	73,500	
과세연도의 공제		<u>26,500</u>

4) 100% 초년도 공제

100% 초년도 공제는 소규모의 사업을 하는 자가 정보나 통신기술에 투자를 할 때 적용할 수 있다(중간 규모나 큰 규모의 사업은 제외된다). 정보·통신기술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터넷이 가능한 전화가 포함된다. 100% 초년도 공제란 자본 구매의 비용의 전부를 그것을 구매한 연도에 세금공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Pool	Allowances
Written down value b/f		15,000	
WDA 25%		<u>(3,750)</u>	3,750
+ qualifying for a FYA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u>2,500</u>		
FYA(100%)(2,500)			2,500
운송차량 5,500			
초년도 공제율 40%	<u>(2,200)</u>	<u>3,300</u>	2,200
Written down value c/f		14,550	
과세연도의 공제			<u>8,450</u>

5) 내구성 자산

1996년도 예산은 25년 이상의 수명을 가진 설비와 기계에 대한 지출에 대해 감가상각 공제를 25%에서 6%로 줄이기 위한 제안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자산들은 내구성 자산이라고 불린다. 이 줄어든 시스템은 1996년 11월 26일 이후에 발생한 지출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은 내구성 자산에 대하여 매년 100,000파운드 이상의 지출을 하는 사업에만 적용된다. 그리고 다음의 자산들은 비록 내구성 자산이지만, 계속해서 25%의 감가상각 공제가 적용된다.

- 거주하는 집, 소매가게, 전시실, 호텔 또는 사무실로서 주로 사용되는 건물에 있는 기계나 설비
- 2010년 말 이전에 구입했던 배와 철도 자산

6) 자산의 사적인 사용

설비나 기계가 부분적으로만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자본공제는 A/B의 분수에 의해 줄어든다. 여기서 A는 자산이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된 기간이고 B는 자산 소유의 총기간이다.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자산은 자본공제와 구별되어 계산된다. 오직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된 기간만큼의 자산만 자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7) 소모성 자산

납세자는 자산이 처분될 때 균형 있는 공제를 요구하기 위해서 단명 자산으로 취급될 수 있는 특정한 기계와 설비를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은 유용한 특권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납세자가 자산의 단지 25%의 공제만을 받아들이는 대신 자산에 대한 full 공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소모성 자산으로 취급되지 않는 자산은 다음과 같다.

- 배
- 자동차
- 임대로 제공되는 기계 또는 설비

8) 산업건물

산업건물은 다음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이나 건조물이다.

- 제조공장, 공장 또는 다른 부동산에서 수행되는 사업
- 수송, 정박, 하수도, 전력발전 또는 수력발전 사업
- 터널, 교량 또는 도로 등을 만드는 사업
- 공장 또는 상품이나 재료의 저장고를 포함하는 사업
- 광석, 석유 또는 다른 자원과 관련된 사업이나 경작 또는 어업을 목적으로 한

사업

이러한 사업들을 수행하는 사람에 의해 제공된 건물은 산업 건물로 간주하며, 건물들이 사용되기 시작하면 4%의 감가상각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1998년 1월에 100,000파운드로 구입되고 동년 5월에 사용되기 시작한 산업건물의 1999/2000, 2000/01, 2001/02, 2002/03 기간동안의 이용 가능한 산업건물 공제는 다음과 같다.

	Building	Allowances
1999/2000		
비용	100,000	
WDA 4% × 비용	<u>(4,000)</u>	<u>4,000</u>
WDV c/f	96,000	
공제액		<u>4,000</u>
2000/01		
비용		
WDA 4% × 비용	<u>(4,000)</u>	<u>4,000</u>
WDV c/f	92,000	
공제액		<u>4,000</u>
2001/02		
비용		
WDA 4% × 비용	<u>(4,000)</u>	<u>4,000</u>
WDV c/f	88,000	
공제액		<u>4,000</u>
2002/03		
비용		
WDA 4% × 비용	<u>(4,000)</u>	<u>4,000</u>
WDV c/f	84,000	
공제액		<u>4,000</u>

9) 연구와 개발공제

연구개발 지출은 과세대상 사업수익으로부터 공제될 수 있다. 1962년 이래로 과학

연구 지출은 100%의 자본공제를 받아 왔다. 2000년도 예산에서는 중소기업의 사업자들이 더 많은 연구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 법을 조정하였다. 즉 중소기업의 사업자들이 연구개발비로 지출을 할 경우 150%의 자본공제를 해주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면, 100파운드를 연구개발비로 사용하였다면, 150파운드의 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2002년 예산에서는 큰 규모의 회사에까지 이러한 법을 확대시켰는데, 큰 기업들은 연구개발비의 지출에 대해 125%의 자본공제를 받게 된다.

10) 농업 건물

농가, 농장 건물, 시골집, 울타리 등에 대한 자본지출은 자본공제를 받는 것이 적합하다. 매년 4%의 감가상각 공제는 지출이 발생한 해부터 이용 가능하다. 이러한 공제는 산업건물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업건물에도 주어진다. 감가상각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농업건물이 처분될 때에는 자본공제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시간에 따라 분배된다. 예를 들어 만약 판매자의 회계기간이 반이 지난 상태에서 판매가 발생한다면, 판매자는 연간 공제액의 반만을 공제받게 된다.

다. 파트너십(partnerships)과세

1) 과세소득의 결정

1996/97년까지는 파트너십의 상업수익에 대한 과세는 동업자 개개인이 아닌 동업의 상업수익 그 자체에 부과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동업자 개개인이 분리되어 그들 개인별의 수입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 때 동업자 개개인은 사업자로 취급되어 사업과세에 의해 과세된다. 현재의 기준에 의하면, 동업자들은 그들의 모든 수입에 대해 개인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고 국세청은 동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다른 동업자들을 고소할 수 없다. 그러나 동업자들은 그들 동료 동업자들의 태만하고 부정적인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과세에 대한 보통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었을지라도 그들의 배당이익에서의 모든 결과적인 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2) 손실

파트너십 손실에 대한 공제도 비법인 사업손실과 같이 취급된다.

라. 사업손실(Trading Losses)

1) 사업손실 이연(Section 385, ICTA 1988)

손실은 다음 해로 이연되고 이후 발생하는 수익에서 공제된다. 손실은 시간제한 없이 미래로 이연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 즉, 어떤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러한 손실은 미래에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이 전되어 발생한 수익에서 공제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0년 12월 31일 결산에서 7,600파운드의 손실을 보고, 다음해에 2,500파운드의 수익을 얻고, 그 다음해인 2002년 12월 31일 결산에서는 10,300파운드의 수익을 본 상업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되어 과세수익이 계산된다.

	2000/01	2001/02	2002/03
사업수익	0	2,500	10,300
section 385 공제	0	(2,500)	(5,100)
과세수익	0	0	5,200

손실 기록	
사업손실	7,600
- 2001/02 사업손실 주장	(2,500)
	5,100
- 2002/03 사업손실 주장(균형)	(5,100)
	<u>0</u>

2) 초과 사업부채 공제(Section 387, ICTA 1988)

부채는 어떠한 목적으로 발생하였는가에 관계없이 납세자의 모든 수익에서 공제된다. Section 387에서는 부채를 사업부채와 비사업부채로 나누고 있다. 비사업부채가 우선적으로 수익으로부터 공제된다. 이 때 부채가 수익보다 많은 경우 공제하지 못한 만큼의 부채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공제될 수 없다. 만약 비사업부채를 공제하고도 수익이 남는다면, 그 다음으로 사업부채를 공제한다. 예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수익과 지출은 다음과 같다고 하자.

	2001/02	2002/03
사업수익	2,000	30,000
투자수익	4,000	7,000
비사업부채	8,000	8,000
특허사용권	10,000	10,000

총수익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2001/02	2002/03
사업수익	2,000	30,000
- 손실 c/f s387		<u>10,000</u>
	2,000	20,000
투자수익	<u>4,000</u>	<u>7,000</u>
	6,000	27,000
- 비사업부채	<u>6,000</u>	<u>8,000</u>
		19,000
- 사업부채	-	<u>10,000</u>
법정 총수익	nil	9,000

수익에서 비사업부채를 공제한 후 공제하지 못한 2,000파운드는 2001/02에서 공제되지 않고 영원히 없어진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총수입에서 사업손실 공제 (Section, 380 ICTA 1988)

사업손실은 납세자의 법정 총수입에서 공제될 수 있다. 기준연도의 손실은 회계연도의 손실이다. 중복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손실은 회계연도의 전 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380은 납세자에게 유연성을 제공한다. 납세자는 손실이 발생한 해에 그 손실을 손실로 사용할 수 있고, 또는 앞선 회계연도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각 연도에 주장할 수 있는 공제의 양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손실은 충분한 법정 총수익이 있다면 모두 공제되어야만 한다.

사업 현황	
연도 말	(파운드)
1999년 12월 31일	7,000
2000년 12월 31일	(500)
2001년 12월 31일	(12,000)
2002년 12월 31일	1,500

이 사업자의 자본이득	
	(파운드)
1999/2000	1,000
2000/2001	9,000
2001/2002	2,000
2002/2003	500

이 사업자는 매년 건물로부터 4,000파운드의 수익을 얻는다. 자본이득에 대한 연간 공제의 한계는 매년 7,700파운드이다.

	1999/2000 파운드	2000/01 파운드	2001/02 파운드	2002/03 파운드
사업수익	7,000	Nil	Nil	1,500
과세된 이자	<u>4,000</u>	<u>4,000</u>	<u>4,000</u>	<u>4,000</u>
법정 총수익	11,000	4,000	4,000	5,500
- s380 공제	<u>* (500)</u>	<u>** (4,000)</u>	<u>*** (4,000)</u>	<u>Nil</u>
법정 총수익	<u>10,500</u>	Nil	Nil	<u>5,500</u>
과세이득(자본이득)	1,000	9,000	2,000	500
- s380 공제		****(4,000)		
		5,000		
- 연 공제	<u>(7,700)</u>	<u>(7,700)</u>	<u>(7,700)</u>	<u>(7,700)</u>
자본 이득세 의무	Nil	Nil	Nil	Nil

	파운드	파운드
사업손실	500	12,000
s380 *	<u>(500)</u>	
**		(4,000)
***		(4,000)
****		(4,000)

4) 사업이 회사로 이전될 때의 손실에 대한 공제 (Section 386 ICTA 1988)

개인사업체가 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그리고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 경우, 공제는 s386하에서 요구될 수 있다. 공제는 비법인사업의 구제받지 못한 사업손실에 대해 적용될 수 있다. 손실은 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이자수익과 함께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회사의 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5) 최종적인 손실공제 (Section 388, ICTA 1988)

사업이 중단될 때 최종의 손실공제가 활용된다. 첫째로, 손실은 모든 다른 이용 가능한 공제를 사용하여 공제되어야 한다. 그래도 공제되지 않은 손실은 전기로 이전되어 사업을 중단하는 해의 앞선 3년의 재정연도의 총수익에서 공제될 수 있다.

회계연도	수익/(손실)
1998년 12월 31일	15,000
1999년 12월 31일	12,000
2000년 12월 31일	6,000
2001년 12월 31일	1,000
2002년 9월 30일	(9,000)

	1998/1999	1999/2000	2000/01	2001/02
	파운드	파운드	파운드	파운드
사업 수익	15,000	12,000	6,000	1,000
s388 공제		(2,000)	(6,000)	(1,000)
개정된 과세표준	15,000	10,000	0	0

2. 법인 형태인 경우

가. 법인세 납세의무

법인세는 회사나 회원제 클럽(member's clubs)과 같은 동업(partnerships)이 아닌 법인 형태 기업의 이익에 부과된다. 여기서 '이익'이란 모든 수입원을 포함하며 자본이득 또한 포함한다. 법인세는 영국 거주 회사들의 전세계로부터의 수입에 부과된다. 지

사나 대리점을 통해 영국에서 무역을 수행하는 영국 비거주 회사들은 지사나 대리점으로 부터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고, 무역을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사나 대리점에 사용되는 영국에서의 자산의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부과된다.

회사법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 법인격 없는 단체, 신탁재산(unit trust), 외국기업의 지점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며 파트너십은 개인으로 취급된다. 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는 다음의 3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이행하는 데 그치고 회사채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주식회사
- 주주가 회사 해산시 받는 금액을 한도로 회사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주식회사
- 주주가 회사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주식회사

나. 법인의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방지(imputation)제도

법인세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고전적인 제도가 사용되었다. 고전적인 제도하에서는 세금의 계산에 있어 회사와 그 회사의 주주들 사이의 관계가 고려되지 않았다. 회사는 그들의 배당에 관한 정책과 관계없이 그들의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다. 즉, 그 회사의 주주들은 회사에 의해 미리 납부된 세금에 대한 아무런 공제 없이 배당을 받고, 받은 배당에 대해 세금을 또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간단하지만, 분배된 수익이 두 번 과세된다는 결점을 안고 있다. 한번은 회사의 측면에서 과세되고 그런 후에 주주의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과세되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을 포함한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회사수익에 과세되는 방법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법인세 폐지 논의가 일고 있다.

1973년 영국에서 분배된 수익에 대한 이러한 이중과세의 문제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부분조정제도(partial imputation system)로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 부분조정제도는 일단 법인단계에서는 배당분과 유보분을 구별하지 않고 과세하는 대신 개인단계에서는 수취배당액의 25%를 가산한 금액을 과세소득에 산입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수취배

당액의 25%를 공제하고 과세하는 제도이다. 즉 주주가 회사에 의해 이미 납부된 법인세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권을 받는 제도이다. 법인에 대한 각종 특별조치 때문에 실제로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중과세 조정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에 대한 배당을 지불할 때에 세율의 25%로 예납법인세(advanced corporation tax)를 납부하고 예납법인세만큼은 본래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었으나 이 제도는 1999년 4월부터 폐지되었다.

다. 법인세 과세표준

1) 과세될 회계기간 결정

법인세는 회사의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수익에서 가능한 비용공제를 뺀 후의 순수익에 대해 과세된다. 법인세 납부를 목적으로 한 회사의 회계기간은 다음의 경우 시작된다.

- 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대개 사업의 개시를 의미함.
- 회사의 중단 없이 회사의 이전 회계기간을 종료했을 때

법인세를 목적으로 한 회사의 회계기간은 다음의 경우에 종료된다.

- 회계기간의 시작 이후 12개월이 지났을 때
- 회사의 회계일자 또는 회사가 회계기간을 채우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그러한 기간의 종료일
- 폐업시
- 회사가 영국의 거주자가 되는 것을 포기한 날짜
- 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어지는 날짜

주의해야 할 것은 세금을 목적으로 한 회계기간(accounting periods)과 회계를 목적으로 한 회사의 기록기간인 사업기간(period of account)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두 기간이 종종 같을지라도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세금을 목적으로 한 회계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서 사업기간이 12개월보다 긴 경우 그 기간은 세금계산을 위해서 하나 이상의 회계기간으로 분할되어야만 한다. 회계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그 기간이 과세기간이 된다. 이것이 개인사업/동업과 회사 사이의 매우 중요한 차이 중의 하나이다.

2) 회계기간에 대한 수익 분배

만약 15개월의 사업기간이 세금을 목적으로 두 개의 회계기간으로 분할된다면 첫 번째 회계기간은 12개월이 될 것이고 두 번째 회계기간은 3개월이 될 것이다. 이러한 분할이 있는 경우 두 기간 사이의 수익의 분할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루어진다.

- Schedule D Case I, III과 IV 수입은 자본공제 이전에 시간에 기초해서 분배된다. 즉 수익의 12/15는 첫 번째 회계기간에 포함되고, 수익의 3/15는 두 번째 회계기간에 포함된다.
- 균형공제와 부채를 포함한 자본공제는 각각의 회계기간에 계산된다. 점차 줄어드는(tapering) 공제는 또한 짧은 회계기간 동안에는 줄어든다. 회사에 의해 소유된 자산의 사적인 사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본공제도 할 수 없다.
- 다른 수익은 대개 그 수익들이 관계된 기간에 근거하여 분배된다. 예를 들면, 임대수익은 임대료가 지불되는 기간에 분배된다. 그러나 은행이자(은행이자의 발생시에 기초하여) 분배된다.
- 부채는 그것들이 지불되는 시기에 기초하여 분배된다.
- 과세이득은 이득을 얻는 기간에 분배된다.

모 회사의 사업연도는 2003년 3월 31일까지 18개월이다. 다음은 이 회사의 사업연도 동안의 사업 현황이다.

		파운드
자본공제 이전의 상업 수익		300,000
증가된 은행이자 수입	2001년 12월 31일	1,200
	2002년 9월 30일	1,000
	2003년 3월 31일	1,100
과세이득 처분	2001년 12월 31일	5,000
	2002년 6월 6일	3,000
	2002년 12월 31일	7,000
수입에 대한 부채 지급	2001년 12월 31일	15,000
	2002년 12월 31일	20,000

각각의 회계기간에 대한 과세수익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연도는 2002년 9월 30일까지의 12개월과 2003년 3월 31일까지의 6개월인 두 개의 회계기간으로 분할된다.

		2002년 9월 30일까지의 12개월, 2003년 3월 31일까지의 6개월
사업 수익	$12/18 \times 300,000$	200,000
	$6/18 \times 300,000$	100,000
은행이자 수익	2,200	1,100
과세 이득	<u>8,000</u>	<u>7,000</u>
	210,200	108,100
- 수익에 대한 부채	<u>15,000</u>	<u>20,000</u>
	<u>195,200</u>	<u>88,100</u>

3) 법인세 과세 수익

2002년 9월 30일자 회계기간 종료시의 법인세 과세 수익

	파운드
Schedule D Case I (상업 수익 - 자본 공제)	3,000
Schedule D Case III(영국의 이자 또는 연금)	1,000
Schedule D Case V(외국 재산으로부터의 수입)	500
Schedule D Case VI(잡다한 수입)	300
Schedule A(영국 내 땅과 건물의 임대료)	200
과세된 수익(증가)	300
과세이득	<u>700</u>
총수익	6,000
- 수익에 대한 부채	<u>(1,000)</u>
법인세 과세 수익(PCTCT)	<u>5,000</u>

법인세는 회사의 이익, 즉 소득과 자본이득에서 일정한 경비와 공제가능한 항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과세되며 과세대상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영국 내 사업이익
- 자유직업소득
- 이자, 연금, 로열티 및 기타 연차지불금
- 외국의 저당증권, 채권 등에 의한 소득
- 외국소재 재산으로부터의 소득
- 기타소득
- 영국에 있는 부동산에서의 임대료 수입 및 프리미엄
- 국채 또는 지방채의 수익
- 급여소득
- 영국거주법인으로부터의 배당 등

4) 법인세율

법인세율은 2002~03년의 경우 0%~30%구간에서 수익의 규모에 따라 정해진다.

○Financial year 2001~02			(단위 : 파운드)
Starting rate	10%	0 ~ 10,000	
Marginal relief		10,001 ~ 50,000	
Small companies's rate	20%	50,001 ~ 300,000	
Marginal relief		300,001 ~ 1,500,000	
Main rate	30%	1,500,001 or more	
○Financial year 2002~03			(단위 : 파운드)
Starting rate	0%	0 ~ 10,000	
Marginal relief		10,001 ~ 50,000	
Small companies's rate	19%	50,001 ~ 300,000	
Marginal relief		300,001 ~ 1,500,000	
Main rate	30%	1,500,001 or more	

- 회사의 이익이 10,000파운드 이하이면 Starting rate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 회사의 이익이 10,001파운드 이상이고 50,000파운드 이하이면 소기업세율의 적용 받는 대신 한계공제(Marginal relief)가 이루어진다.
- 회사의 이익이 50,001파운드 이상이고 300,000파운드 이하이면 소기업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 회사의 이익이 300,001파운드 이상이고 1,500,000파운드 이하이면 Main rate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대신 한계공제(Marginal relief)가 이루어진다.
- 회사의 이익이 1,500,001 파운드 이상이면 Main rate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1980년대 중반만 해도 법인세율(main rate)은 52%에 달했으나 공장과 기계설비에 대한 초기연도 공제가 사라지면서 35%로 낮아졌다. 최근 구체적으로 1998년 재정법(Finance Act)에서 31%로 낮추었고 1999년에는 30%로 낮추어 오늘에 이른다.

5) 법인세 납부

가) 1999년 7월 이전

1993년 9월 30일부터 1999년 7월까지 법인세는 회계기간의 종료일 이후 9개월 동안 납부할 수 있었다. 회사들은 심지어 의무화된 날짜까지 정확한 과세액이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부과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만 했다. 그런 후 회사는 완전한 평가와 계산 그리고 수익을 계산하고, 모든 법인세는 회계기간 종료일 이후 12개월 뒤에 나타나는 보고서에 표기된다. 이러한 제도는 'pay and file'이라 불리었다. 세액이 늦게 납부되거나 또는 납부된 세액이 적은 경우 회사는 이자를 지불하거나 벌금(가산금)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둘 모두를 지불하여야 한다.

나) 1999년 7월 이후

1999년 7월 이후 회사의 회계기간 종료에 대한 새로운 신고납부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self-assessment for companies'라고 불린다. 이 제도가 이전의 제도와 다른 점은 어떠한 과세를 위한 평가도 (부과)국세청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회사는 자사의 세금계산을 스스로 하고 그 계산에 따라 납부의무가 있는 날에 납부를 하면 되는 것이다. 이 때 회사들은 그들이 세금계산에 사용한 모든 정보의 기록을 과세기간 종료 이후 6년 동안 보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 납기일

대부분의 회사들은 자회사의 회계기간 종료 이후 9개월 내에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1999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자사의 법인세 의무를 4번으로 분할해서 지불하는 것이다.

회계기간 종료일이 2002년 12월 31일인 대기업의 법인세 지불일 계산

첫 번째 분할 납부일	2002년 7월 14일
두 번째 분할 납부일	2002년 10월 14일
세 번째 분할 납부일	2003년 1월 14일
마지막 분할 납부일	2003년 4월 14일

라) 부채와 이자와 관련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

경우에 따라서 회사는 세금이 공제된 이후에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현재는 매우 제한적이다. 순수익이 들어올 때, 그 소득은 세금을 낸 수익으로 취급되거나, 명확하지 않은 투자수익으로 취급된다. 명확하지 않은 수입의 증가는 회사의 법인세 과세수익에 포함되고, 이미 세금이 지급된 수익은 법인세 납부의무로부터 공제된다.

라. 비용인정(손금산입)

비용으로 공제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비용이 발생하였을 때 비록 개인에게 과세하는 것과 회사에 과세하는 것 사이에는 약간의 유사한 면이 있지만, 서로 완전히 분리해서 다루는 것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손실은 다양하게 발생하고, 그러한 손실을 공제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업결손(trade loss) : 사업손실은 같은 회계연도의 수입에서 공제될 수 있고, 전기로 이전되어 이전 해의 회계연도의 수입에서 공제될 수도 있으며, 다음 해로 이월되어 다음해의 사업수익으로부터 공제될 수도 있다.
- 비사업손실 : 비사업손실은 사업손실에 대한 예외로서 비사업수익에서 공제된다.
- 자본손실 : 자본손실은 현재 또는 미래연도의 자본이득에서 공제될 수 있다. 즉 수익에서 공제해서는 안되고, 자본이득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Schedule A(영국 내 땅과 건물의 임대료) 손실 : Schedule A 손실은 회사의 같은 해의 non-Schedule A 수익과 이득에서 공제된다. 이때 손실이 남는 경우 이러한 손실은 앞으로 Schedule A 사업이 운영되어 생기는 모든 유형의 미래의 수입에서 공제된다.
- Schedule D Case IV(외국 유가증권 소득, 외국 재산소득) : 현재 또는 미래의 Schedule D Case IV의 수익에서만 공제될 수 있다.

1) 미래 사업수익에서의 손실공제(Section 393(1) ICTA 1988)

사업을 하던 회사가 그러한 사업에서 같은 회계연도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회사는 그 손실을 법인세 감면을 목적으로, 미래의 회계기동간의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사업수익에서 공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단, 회사의 경영자가 바뀌거나, 수행되는 사업의 구조나 성격이 현저하게 바뀌는 경우,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발생한 손실은 미래로 이월될 수 없다.

2002년 3월 31일자로 사업손실이 500,000파운드이다.

3월 31일

	2003 (파운드)	2004 (파운드)
사업수익	300,000	2,000,000
은행이자	10,000	70,000
과세이득	30,000	70,000

2002년 3월 31일자로 사업손실이 500,000파운드이다.

3월 31일		
	2003 (파운드)	2004 (파운드)
사업수익	300,000	2,000,000
은행이자	<u>(300,000)</u>	<u>(20,000)</u>
	0	1,800,000
영국의 이자 또는 연금(Schedule D Case III)	10,000	70,000
과세이득	<u>30,000</u>	<u>70,000</u>
PCTCT(Profit Chargeable To Corporation Tax)	<u>40,000</u>	<u>1,940,000</u>
손실 기록		(파운드)
2002년 3월 31일자 손실		500,000
- 2003년 3월 31일 S393(1)		<u>300,000</u>
		200,000
- 2004년 3월 31일 S393(1)		<u>200,000</u>

가) 비용(charges)

회계기간 동안 지불된 비용이 수익을 초과할 경우, 비용은 수익에서 공제되고도 남게 되는데, 그러한 공제되지 않은 사업비용은 미래의 사업손실에 추가된다. 단, 비사업비용은 section 393(1)하에서는 공제될 수 없다. 대신 비사업비용이 지불되는 해에 사업 손실을 공제하고도 수익이 남는 경우 비사업비용이 사업비용에 앞서 공제될 수 있다.

모 기업의 2003년 3월 31일 까지의 3년간의 사업 현황

	연도 말		
	2001. 3. 31 (파운드)	2002. 3. 31 (파운드)	2003. 3. 31 (파운드)
사업수익(손실)	(10,000)	6,500	6,000
자선기부 (비사업비용)	500	500	500
특허사용료 (사업부채)	800	800	800

	연도 말		
	2001. 3. 31 (파운드)	2002. 3. 31 (파운드)	2003. 3. 31 (파운드)
사업수익	Nil	6,500	6,000
- s393(1) 손실공제		(6,500)	(5,100)
비사업비용	0	0	(500)
사업비용	0	0	<u>(400)</u>
PCTCT	0	0	<u>0</u>
손실 기록			
2001년 3월 31일자 사업손실			10,000
+ 2001년 3월 31일의 공제되지 않은 사업비용			<u>800</u>
- 이월손실			10,800
- 2002년 3월 31일 손실공제			<u>(6,500)</u>
			4,300
+ 2002년 3월 31일의 공제되지 않은 사업비용			<u>800</u>
- 이월손실			5,100
- 2003년 3월 31일 손실공제			<u>(5,100)</u>
			0
+ 2003년 3월 31일의 공제되지 않은 사업비용			400
- 이월손실			400

나) 총수익에서의 손실공제(Section 393A(1) ICTA 1988)

회사가 손실을 발생시키는 경우, 비용에 앞서 손실이 발생하는 회계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수익으로부터 공제를 요구할 수 있고, 손실이 발생한 후 이전 12개월 동안에 발생한 모든 수익에 대해서 비사업비용에 앞서 공제를 요구할 수 있다.

모 기업의 2001년 9월 1일부터 2003년 3월 31일까지의 3년간의 사업 현황

	2001년 9월 1일까지 1년 (파운드)	2002년 3월 31일까지 6개월 (파운드)	2003년 3월 31일까지 1년 (파운드)
사업 수익(손실)	30,000	26,000	(75,000)
(사업비용)	2,000	4,000	-
(비사업비용)	1,000	2,000	3,000

	2001년 9월 1일까지 1년 (파운드)	2002년 3월 31일까지 6개월 (파운드)	2003년 3월 31일까지 1년 (파운드)
사업수익(손실)	30,000	26,000	-
비사업비용	(1,000)		
사업비용	<u>(2,000)</u>	<u>(4,000)</u>	-
	27,000	22,000	
- s393A 공제	<u>(14,000)</u>	<u>(22,000)</u>	-
PCTC	13,000	<u>Nil</u>	<u>Nil</u>
공제되지 않은 비사업비용		<u>2,000</u>	<u>3,000</u>

	손실 기록	파운드
2003년 3월 31일자 손실		75,000
- s393A 공제		<u>(22,000)</u>
2002년 3월 31일까지 6개월 12개월까지 벌충하기 위해		53,000
2001년 9월 1일까지 (30,000파운드 - 2,000파운드) × 6/12		<u>(14,000)</u>
s393(1)에 따른 전기 이전손실		37,000

다) 소유의 변화

손실이 발생한 시기와 그러한 손실을 공제할 수 있는 수익이 발생한 시기 사이에 소유주가 바뀌게 되는 경우 상업손실공제는 적용될 수 없다. 즉 section 393A(1)에 따른 손실의 전기 이연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section 393(1)에 따른 손실의 미래로의 이월도 되지 않는다.

마. 연결납세제도⁶⁾

영국의 연결납세제도는 기업집단에 대한 과세특례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룹 공제(group relief)라는 특별조치가 그 대표적인 제도이다. 기업그룹의 계열사는 배당금과 부과금 등 기업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독립법인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영국은 1967년 그룹공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일관되게 손실이전모델(loss transfer model)을 사용하여 왔다.

그룹공제는 기업집단 내의 청구회사(claimant company)가 그룹 내의 다른 대체회사(surrendering company)의 당기에 발생한 사업손실 등을 이전받아 자사의 과세소득과 상계하는 제도를 말한다.

1) 적용기업

그룹공제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75%그룹회사와 컨소시엄회사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일방이 다른 타방의 75% 자회사인 경우 또는 쌍방이 함께 공동모회사의 75% 자회사인 경우로 영국 거주법인에 적용된다. 보통 주식자본의 75% 이상이 단독 또는 복수의 다른 내국법인에 의하여 보유되고, 또한 지분이 각기 5% 이상인 컨소시엄회사는 청구회사 또는 대체회사가 되어 다음 중 한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컨소시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회사는 특정 구성원인 다음 회사의 75% 자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6) 이 부분은 김진수·이준규(2002)를 주로 참고하였음.

- 컨소시엄그룹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사업회사
- 컨소시엄그룹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지주회사의 90% 자회사인 사업회사
- 컨소시엄그룹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지주회사

2) 이전대상

그룹공제는 대체회사의 당해연도 이익과 상계되지 않은 사업손실, 투자회사의 관리비, 감가상각비(자본공제) 및 특정비용등 4개항목이 그 대상이 된다.

가) 사업손실(trading loss)

대체회사의 사업손실은 그에 상응하는 사업연도, 즉 그룹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 손실이 발생한 대체회사의 사업회계연도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사업회계연도 기간 동안의 청구회사의 총이익에 대해 공제할 수 있다.

나) 세무상 감가상각비(capital allowance)

대체회사는 당기 세무상 감가상각비 중 당기의 과세소득금액의 계산상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청구회사의 상응기간에 대하여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대체는 당기에 발생한 금액에 한하고 공제부족액의 전기로부터의 이월분은 대체될 수 없다. 대체될 수 있는 감가상각비의 한도는 당해 과세연도 공제와 관련된 소득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이다.

다) 관리비

투자회사의 당기 관리비 중 당기 총소득금액으로부터 공제되지 않는 금액은 청구회사의 상응기간에 대해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공제부족액의 전기로부터의 이월분은 이전되지 않는다. 다른 사업회계연도에서 발생한 투자회사의 관리비, 사업손실 및 감가상각비는 모두 대체회사의 이익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 특정비용(charges on income)

대체회사가 제출한 당기의 특정비용이 당기의 총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

과액을 청구회사의 상응기간에 대해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공제부족액의 전기로부터의 이월분은 이전되지 않는다.

3) 이전공제의 계산

이전대상이 되는 사업손실 등은 이전회사의 당기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에 한한다. 청구회사에서의 그룹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은 자사의 당기 사업손실이나 이월사업손실을 공제하고 특히 당기에 지불된 특정비용 등을 공제한 후의 소득이다. 그룹공제 적용회사들의 사업연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룹공제한도액은 공통기간 동안의 청구회사의 이익과 대체회사의 손실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대부분의 경우 사업손실은 순수한 인수 또는 합병에 따른 소유권 변경에 따라 아무런 제한없이 이전된다. 사업손실의 경우에는 소유권이 변경된 후 3년 이내에 사업의 본질이나 사업활동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때에는 이월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 사업손익을 계산할 때에는 감가상각비가 포함된다. 따라서 기업의 이전에 따른 별도의 미사용 감가상각비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미사용된 자본손실은 그대로 유지되며 그 기업의 모든 미래수익에 대해 상계할 수 있게 된다.

4) 적용 제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룹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그룹공제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 국외사업에서 발생한 결손 또는 이익획득을 의도하지 않는 비상업사업에서 발생한 결손
- 이중거주 투자회사의 사업결손

5) 그룹멤버의 가입과 탈퇴

연결그룹에 대한 신규가입을 규율하는 특별한 규정이나 그 가입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검사절차도 없으며 그룹공제 목적의 연결그룹을 이탈하는 것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건이나 검사과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업회계연도가 종료하기 이전에 새로운 기업이 그룹에 가입하거나 기존 가입기업이 그룹을 탈퇴하는 경우 그 시점에서 가입회사와 탈퇴회사의 기존 사업회계연도는 종료되며 새로운 사업회계연도가 시작된다. 청구회사와 대체회사는 대체회사의 사업연도와 청구회사의 상응하는 기간에 동일한 그룹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3. 정책시사점

영국의 법인세는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사업에 해당하는 자영업 그리고 파트너십에 대한 과세가 business tax로 상당히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고, 법인의 경우에 적용되는 법인세의 경우는 우리와 상당히 비슷한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중반만 해도 법인세율(main rate)은 52%에 달했으나 공장과 기계설비에 대한 초기연도 공제가 사라지면서 35%로 낮아졌다. 최근 구체적으로 1998년 재정법(Finance Act)에서 31%로 낮추었고 1999년에는 30%로 낮추어 오늘에 이른다. 최근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1억원을 기준으로 15%나 27%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조합법인은 12%) 영국이 채택하고 있는 sliding scheme(marginal relief)을 고려해볼 만하다. 기본세율이 영국의 경우는 main rate 30%, 소기업 19%로 우리의 27%, 15%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1999년 7월 이후 회사의 회계기간 종료에 대한 새로운 신고납부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self-assessment for companies'라고 불린다. 이 제도가 이전의 제도와 다른 점은 어떠한 과세를 위한 평가도 (부과)국세청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회사는 자사의 세금계산을 스스로 하고 그 계산에 따라 납부의무가 있는 날에 납부를 하면 되는 것이다. 이 때 회사들은 그들의 세금계산에 사용한 모든 정보의 기록을 과세기간 종료 이후 6년 동안 보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전자신고납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와 비슷한 제도와 수준인 것으로 생각된다.

V. 국제조세

영국의 국제조세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 방식은 경쟁(competition), 협력(cooperation), 지배권(constitution)으로 요약될 수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경쟁을 촉진시키는 조세정책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호협력의 문화를 장려하면서도 조세시스템에 대한 국가지배권(sovcreignty)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견고하게 하는 주요 가치는 공개성과 투명성이다.

국제조세정책이라고 해서 국내조세정책과 별개의 가치체계를 갖는 것은 아니다. 가능한 한 세부담을 낮추면서 노동, 저축과 투자를 권장하고 재정에 충당할 세수를 징수하는 것이야말로 국제조세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규범이다. 영국의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유치, 법인세율의 조화, 그리고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원칙 적용을 통해 조세로 인한 시장의 왜곡과 실패를 줄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낡은 규제와 제한을 가능한 한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1. 영국의 국제조세정책의 기초

국제조세정책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조세정책의 틀 안에 존재한다. 정부는 조세정책의 주요한 목적을 조세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수입을 거두는 것으로 본다. 조세정책은 명확한 원칙에 근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칙이라 함은 근로, 저축,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다. 모든 이해관계자 사이의 공평성이 바람직하지 못한 부작용을 회피하고 순응비용을 줄이기 위해 중요하다.

국제적인 경쟁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가능한 한 투자를 많이 유치하며 기업에게 낮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과세시스템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개혁의 핵심은 경쟁왜곡과 시장실패를 감소시키고,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고, 조세회피를 막을

수 있는 낮은 세율의 광범위한 기본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다.

가. 경쟁(competition)

21세기 국제화된 경제의 초점은 경쟁을 포함한 세계조세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다. 또한 국제화와 자본시장 민영화는 개인과 기업의 자본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다르게 국가들 간의 독점성은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영국은 공정한 조세경쟁, 반경쟁적 조세관행을 개혁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불공정한 국가보조금, 불공정한 규제를 철폐하고 이웃을 궁핍하게 하는 결과(beggar thy neighbour consequences)를 가져오는 경쟁왜곡적 시장규제를 줄여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와 자본시장 자유화는 개인과 기업의 이동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이로 인해 시장확대 및 개선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위협으로도 다가온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한 국가가 기업유치를 위하여 다른 나라의 부담으로 다가올 감면 등을 통한 위해한 조세경쟁을 하는 경우 공정경쟁구조를 왜곡하게 된다. 외국기업을 제약하는 조치를 통해 기업을 유치하려는 경우 자유롭고 열린 시장경제 원칙에 반한다. 이미 영국에서는 OECD에서 권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해한 조세경쟁(predatory harmful tax competition)을 제한하는 법규(anti-avoidance legislation)를 제정하였다. 단일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다른 나라의 조치로 자국의 재정주권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어느 나라도 먼저 이러한 공정한 경쟁구조를 위한 위해한 조세조항을 고치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패키지로써 OECD 회원국 전체의 공동보조가 중요하다. 조세피난처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영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표준에 기초하여 적정수준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 협력(Cooperation)

국제화의 기본적인 결론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협력할 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힘은 연대를 구축할 수 있는 힘에 달려 있다. 그래서 협력은 경쟁과 함께 영국의 국제조세정책의 주요한 기반 중의 하나인 것이다.

OECD 모델조세협약과 지침은 국제적으로 모든 나라들의 양자 수준, 다자수준협력에 기여하고 있다. 영국은 이전가격제도의 완비 및 가장 많은 나라들과 조세협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세귀착의 예를 들어보자. 세계는 국제이중과세 방지에 대해 나름대로 입장을 정하고 있다. 각국은 주권국가로서 과세권한을 가지지만 납세자의 입장에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정(arbitrage) 이슈가 중요하다. 모든 납세자들에게 공정한 중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통해 적극적으로 각국의 조세시스템 차이를 악용하는 것으로 시장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보다 구조화된 이전가격 문제, 배당의 0세율 원천징수 연장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다.

또한 탈세에 대한 공조체계의 구축도 중요한 이슈다. 정보공유와 공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탈세를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국가경계를 초월하여 자동적으로 정보교환 및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전자상거래와 국제조세 문제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되어 있는바, 디지털상품의 무차별적인 취급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조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다. 지배권(Constitution)

영국 국제조세정책의 주요 특징은 자신의 과세시스템에 대한 국가지배권의 중요성이다. 모든 국가는 국가조세정책에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선호를 가지고 있다. 모든 국가는 공공서비스(보건, 교육, 교통 등)제공, 그리고 그러한 서비스의 자금을 지원하는 세금(법인세, 개인소득세, 직접세, 간접세, 소비세 등)의 속성, 수준, 균형과 관련된 다른 요건과 선호를 가지고 있다. 현재 영국은 국가생산물 특히 조세업무에 관해 지배권을 방어하는 데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영국은 조세정책과 관련하여 자국의 재정주권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화, 공조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공공서비스공급에 있어서 자국의 다양한 선호 및 수요를 반영하여 조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라. 공개성과 투명성

공개성과 투명성은 영국 국제조세정책의 핵심이다. 더 나아가 21세기의 조세시스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세계는 급속한 개혁을 겪고 있으며 자본시장은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는 세계경제의 안정성과 성장에 대한 좋은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많은 기회가 있는 동시에 위험도 존재하고 있다. 투명성과 공개성은 이러한 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세계는 빠른 혁신과 자본시장의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공개와 투명성을 더욱 강조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조세당국에게는 기회와 위협의 양면을 함께 제공한다. 정보공유의 필요성과 투명성의 제고야말로 국제조세정책의 핵심이다.

2. 국제조세업무

현재 가브리엘 매크로프(Gabriel Makhlouf)가 이끄는 국제조세팀이 담당하는 구체적인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영국민의 외국소득 및 국제거래를 통한 수익에 대한 과세
- 외국인에 의해 영국에서 수취된 소득에 대한 과세
- 북해석유 및 가스수익에 대한 과세
- 해운업계의 수익에 대한 톤세과세
- 유럽연합(EU)에 있어서 영국이해의 보호 및 증진과 유럽연합과 조세조화
- 다른 나라와의 직접세 관련 협력 및 영국의 이해 증진 및 보호

구체적으로 조세분야에 관한 OECD, EU 및 국제협력의 장에 있어서 영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영국이 이를 주도할 수 있도록 국제파트너와의 관계를 유지한다.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대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가. 이중과세 방지(Relief for Double Taxation)

이중과세는 소득이 발생한 국가와 납세자의 거주국가가 상이한 경우 이 두 국가에 의해 모두 소득이 과세될 때 문제가 된다. 이중과세 공제(double taxation relief)는 해외투자자로 인한 이러한 이중과세로 인한 경제성장 저해 등 역인센티브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것이다. 영국은 회계연도 1999/2000 동안 이러한 이중과세 공제규모가 소득세(income tax)와 법인세(corporation tax)에 있어서 55억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과세(underlying tax)와 관련하여 수많은 이중과세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기업들이 배당금을 지불한 것 중에서 이윤에 대해 자기기업(子企業; subsidiary companies)에 의해 지불된 세금이다.

2000년과 2001년 재정법 개정을 통해 영국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업에게 이중과세 공제를 해주는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영국 국세청이 변화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이러한 지침서의 기록들은 이중과세 매뉴얼상(Double Taxation Manual)에 구체화되며 정기적으로 갱신된다. 지침서 기록은 영국에 지불된 배당금을 다루는 DT995에서 DT1100 조항에서 잘 나타나 있다.

<표 V-1> 이중과세 공제매뉴얼(Double Taxation Relief Manual-DTCONT)의 주요내용

-
- 최근 변화 (Recent Changes to this Manual)
 - DT1700+ 영국에서 발생하는 비거주자의 소득(income arising in the United Kingdom to non-residents)
 - DT2100+ 특별협약- 승인할 수 있는 것과 승인할 수 없는 세금(particular agreements - admissible and inadmissible taxes)
-

나. 이중과세협약(Double Taxation Agreements)

이중과세협약 (double taxation agreement)은 양국 간에 동일 소득에 이중과세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국경을 통과하는 거래에 대한 처리의 확실성을 보장하고 영국 기업의 이해가 해외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중과세 방지협약은 영국정부의 과세권을 보호하는 한편 영국의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 목적도 함께 갖는다. 아울러 당사국과 조세관련 정보교환을 위한 조항도 포함한다. 영국은 100여개국과 가장 넓은 조세협약을 맺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1,300여 이중과세협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협약은 크게 두 가지로서 현재까지 발효중인 협약과 서명을 했으나 발효가 안된 협약이 있다. 현재 영국과 협약을 체결하여 발효중인 국가로는 쿠웨이트, 요르단, 리투아니아, 남아프리카, 대만, 미국 등이 존재한다. 서명을 했으나 발효가 안된 조세협약국은 호주, 캐나다, 칠레, 프랑스, 모리셔스, 뉴질랜드가 있다. 이러한 조약은 법률형식을 취한다.

1) 이중과세협약서(Double Taxation Agreements)

이중과세조약은 두 국가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장하기 위한 협약이다.

- 동일한 소득이 두 국가에서 과세될 수 있는 이중과세의 위험에 대한 대처
- 국가간의 무역거래의 확실성을 제공
- 해외의 영국기업이익에 대한 조세차별의 방지

이중과세조약은 영국정부의 조세권을 보호하고 영국 국민의 조세의무(liability)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또한 이중과세조약에는 국가의 조세당국 간의 정보교환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세계각국과 1,300여개 이중과세협약이 존재하고 있으며 영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110개 국가 이상이 포함된 가장 큰 이중과세 방지협약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영국은 국가간의 경제활동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장려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무역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OECD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적으로 영국과 협약한 국가들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표 V-2> 영국과 협약을 맺은 국가리스트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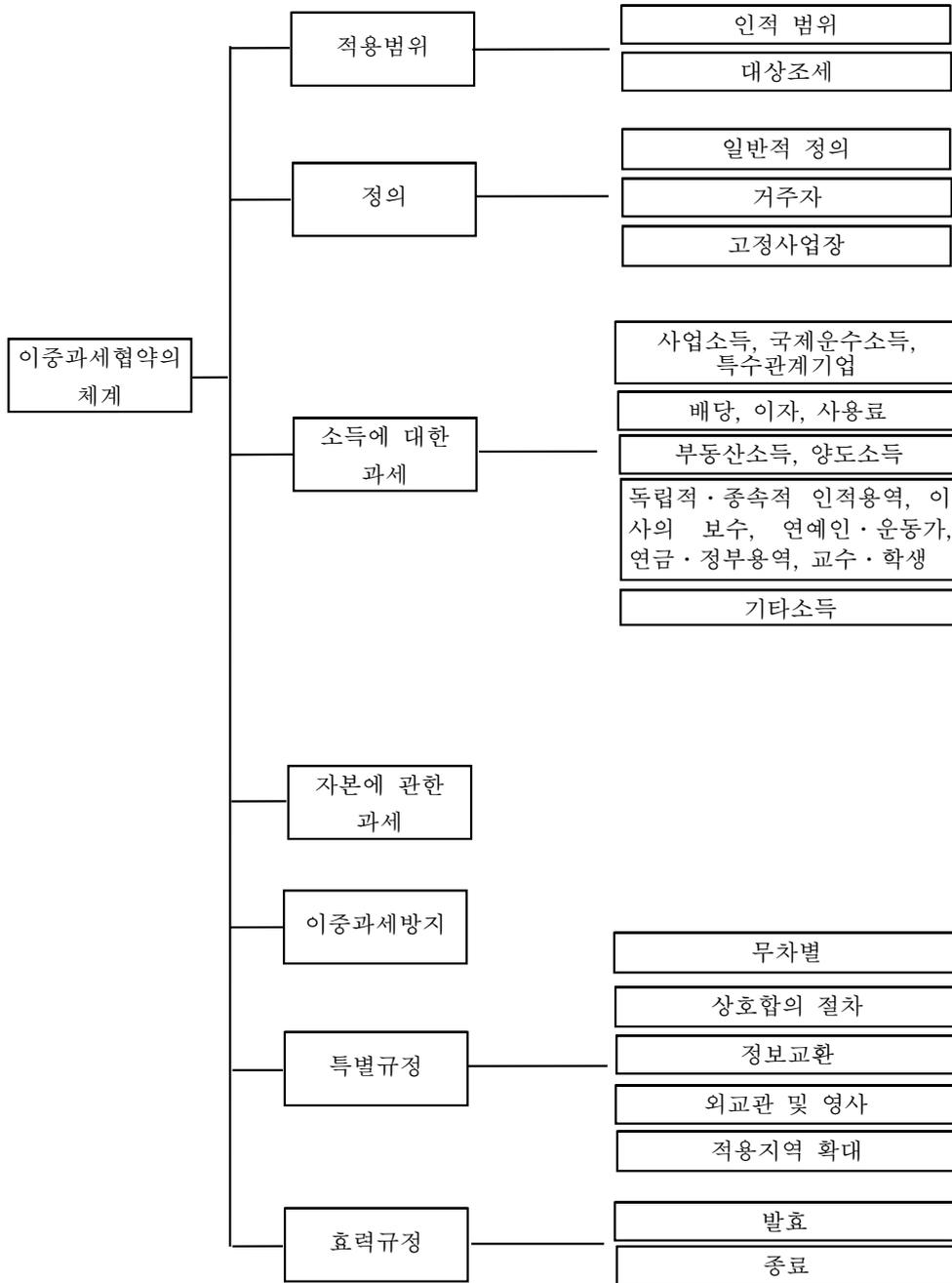
Antigua and Barbuda, Argentina, Australia, Austria, Azerbaijan, Bangladesh, Barbados, Belarus, Belgium, Belize, Bolivia, Botswana, Brunei, Bulgaria, Canada, China,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gypt, Estonia, Falkland Islands, Fiji, Finland, France, Gambia, Germany, Ghana, Greece, Grenada, Guernsey, Guyana, Hungary, Iceland, India, Indonesia, Ireland (Republic of), Isle of Man, Israel, Italy, Ivory Coast (Cote d'Ivoire), Jamaica, Japan, Jersey, Kazakhstan, Kenya, Kiribati, Korea (Republic of), Kuwait, Latvia, Lesotho, Luxembourg, Macedonia, Malawi, Malaysia, Malta, Mauritius, Mexico, Mongolia, Montserrat, Morocco, Myanmar (Burma), Namibia, Netherlands, New Zealand, Nigeria, Norway, Oman, Pakistan, Papua New Guinea, Philippines, Poland, Portugal, Romania, Russian Federation, St Kitts and Nevis, Sierra Leone, Singapore, Slovak Republic (Slovakia), Slovenia, Solomon Islands, South Africa, Spain, Sri Lanka, Sudan, Swaziland, Sweden, Switzerland, Thailand, Trinidad and Tobago, Tunisia, Turkey, Tuvalu, Uganda, Ukraine, United States of America, Uzbekistan, Venezuela, Vietnam, Yugoslavia (Federal Republic), Zambia, Zimbabwe etc.

2) 이중과세협약서의 체계

이중과세협약서의 일반적인 체계는 적용범위, 정의, 소득세에 대한 과세, 자본에 대한 과세, 이중과세 방지, 특별규정, 효력규정으로 크게 나누어진다(<http://www.thenaen.net/tax/joyaig.htm>). 이러한 협약서를 체결한 국가 중 영국과 가장 큰 규모로 무역거래를 하는 미국⁷⁾과 우리나라, 요르단, EU국가인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7) 2002년도 영국의 총수출의 25%, 총수입의 18%를 차지함(영국 통계청).

[그림 V-1] 이중과세협약서의 일반적 체계



가) 영국과 미국의 이중과세협약

영국과 미국의 이중과세협약(UK/USA Double Taxation Convention)은 2001년 7월 24일에 서명되었고 수정된 협약(amending protocol)은 2002년 7월 19일에 서명되었다. 영국에서는 2003년 4월 1일부터 법인세, 2003년 4월 6일부터 소득세, 자본이득세, 2003년 5월 1일부터 원천징수세(taxes withheld at source), 2004년 1월부터 석유수입세가 각각 발효가 되었다. 미국의 경우 2003년 5월 1일부터 원천징수세, 2004년 1월 1일부터 기타 모든 미국과세가 각각 발효되었다.

미국의 이중과세협약의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V-3> 미국의 이중과세협약의 관련조항

영국과 미국의 이중과세 협약	제1조: 일반적 범위(general scope)	
	제2조: 대상과세(taxes covered)	미국: 연방소득세, 연방부가가치세 영국: 소득세, 자본양도소득세, 법인 세, 석유수입세
	제3조: 일반정의(general definitions)	
	제4조: 거주자(residence)	
	제5조: 고정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	a. 관리장소 b. 지점 c. 사무소 d. 공장 e. 작업장 f. 광산·유전·가스정·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제6조: 부동산소득 (income from real property)	
	제7조: 사업이익(business profit)	
	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 (shipping and air transport)	
	제9조: 특수관계기업 (associated enterprises)	
	제10조: 배당금	
	제11조: 이자	
	제12조: 사용료(royalties)	
	제13조: 이득(gains)	
	제14조: 고용으로부터의 소득 (income from employment)	
	제15조: 임원의 보수(director's fees)	

<표 V-3>의 계속

영국과 미국의 이중과세 협약	제16조: 예능인 및 체육인 (entertainers and sportsmen)	
	제17조: 연금, 사회보장, 부양, 어린이 지원(pensions, social security, annuities, alimony, and child support)	
	제18조: 연금 체계(pension schemes)	
	제19조: 정부서비스 (government service)	
	제20조: 학생(students)	
	제21조: 국외탐사와 개발행위 (offshore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activities)	
	제22조: 기타소득(other income)	
	제23조: 이익제한 (limitation on benefits)	
	제24조: 이중과세공제 (relief from double taxation)	
	제25조: 무차별(non-discrimination)	
	제26조: 상호협약절차 (mutual agreement procedure)	
	제27조: 정보교환과 행정지원 (exchange of information and administrative assistance)	
	제28조: 외교·상주사절 및 영사관 구성원(diplomatic agents and consular officers)	
	제29조: 발효(entry into force)	
제30조: 종결(termination)		

나) 영국과 우리나라의 이중과세협약

우리나라와 영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은 1996년 10월 25일에 서명되었고 1996년 12월 29일부터 발효되었다.

<표 V-4> 영국과 한국의 이중과세협약

영국과 한국의 이중과세 협약	제1조: 인적범위	
	제2조: 대상조세	가. 한국의 경우 (1)소득세 (2)법인세 (3)주민세 및 (4)농어촌 특별세 나.영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자본양도소득세
	제3조: 일반적 정의	
	제4조: 거주자	
	제5조: 고정사업장	a. 관리장소 b. 지점 c. 사무소 d. 공장 e. 작업장 f. 광산·유전·가스정·채석장 또는 기 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제6조: 부동산소득	
	제7조: 사업이윤	
	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	
	제9조: 특수관계기업	
	제10조: 배당	
	제11조: 이자	
	제12조: 사용료	
	제13조: 양도소득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제16조: 임원의 보수	
	제17조: 예능인 및 체육인	
	제18조: 연금	
	제19조: 정부용역	
	제20조: 교사	
	제21조: 학생과 견습생	
	제22조: 기타소득	
	제23조: 이중과세의 회피	
	제24조: 경감의 제한	
	제25조: 무차별	
	제26조: 상호합의 절차	
	제27조: 정보교환	
	제28조: 외교·상주사절 및 영사관 구성원	
	제29조: 발효	
	제30조: 종료	

다) 영국과 요르단의 이중과세협약

2001년 7월 22일에 서명되었고 2002년 4월 24일부터 발효되었다.

영국에서는 2003년 4월 1일부터 법인세가 발효되었으며, 2003년 4월 6일부터는 소득세와 자본양도소득세가 발효되었다. 요르단에서는 2003년 1월 1일부터 발효됐다.

<표 V-5> 영국과 요르단의 이중과세협약

영국과 요르단의 이중과세 협약	제1조: 인적 범위	
	제2조: 대상과세	요르단: 소득세, 배분세, 사회서비스세 영국: 소득세, 법인세, 자본양도소득세
	제3조: 일반 정의	
	제4조: 거주자	
	제5조: 고정사업장	a. 관리장소 b. 지점 c. 사무소 d. 공장 e. 작업장 f. 광산·유전·가스정·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제6조: 움직일 수 없는 재산으로부터의 소득(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제7조: 사업이익	
	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	
	제9조: 특수관계기업	
	제10조: 배당금	
	제11조: 이자	
	제12조: 사용료(royalties)	
	제13조: 자본이득(capital gains)	

<표 V-5>의 계속

영국과 요르단의 이중과세 협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제16조: 임원의 보수	
	제17조: 예술가와 스포츠 운동가	
	제18조: 연금	
	제19조: 정부서비스	
	제20조: 교사와 연구원	
	제21조: 학생과 훈련생	
	제22조: 기타소득	
	제23조: 이중과세 배제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제24조: 무차별	
	제25조: 상호협약절차	
	제26조: 정보교환	
	제27조: 외교·상주사절 및 영사관 구성원	
제28조: 발효		
제29조: 종결		

라) 새로운 UK/노르웨이 이중과세협약: 국외활동과 관련된 변화(23조)

(1) 국외고용주를 위한 정보(Information for Offshore Employers)

새로운 포괄적인 이중과세협약은 노르웨이와 협상하여 2001년 12월 21에 발효되었다. 협약에 관한 규정은 2001년 4월 6일부터 소득세(income tax)와 관련하여 영국에 적용된다.

(2) 종업원의 과세: 고용주의 행동(Taxation of Employee: Action by Employers)

해외활동에 관한 협약 제23조의 일부 변화가 있으며, 이것은 2001년 4월 6일자부터 노르웨이에 있는 영국종업원의 소득(earnings)의 처리방법에 영향을 준다.

노르웨이에서 일하는 영국종업원의 소득은 이전 협약에 의하면 영국세금으로부터 면제를 받았다. 노르웨이에서 일하자마자 영국종업원은 원천과세가 중지되며 노르웨이 세금을 공제하기 시작한다. 종업원이 영국으로 돌아올 경우 절차는 바뀌게 된다.

새로운 협약하에서 노르웨이에서 일하는 영국종업원은 여전히 노르웨이에서 세금을 부담해야 하고 지금은 노르웨이 세금으로 통용되는 신용대부(credit)로 영국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고용주는 노르웨이에서 일할 때 노르웨이 과세를 공제해야 할뿐만 아니라 4월 6일부터 종업원에게 원천과세를 행하여야만 한다. 과세고용주(tax employers)가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노르웨이에서 수입에서 과세공제의 원천과세기법네트워크를 운영해야만 한다.

다. 국제- 상호협약절차(International - Mutual Agreement Procedure)

영국의 이중과세협약의 대부분은 상호협약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협약절차가 준수되어야 할 예는 다음과 같다. 이중과세협약과 일치하지 않는 일반적인 과세근거 중의 하나는 한 국가 이상이 동일한 이윤에 과세를 행하는 이전가격평가조정(transfer pricing adjustment)이다. 예를 들어 이전가격평가감사 이후에 국가는 영국 관련기업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 조정된 수익에는 이미 영국 과세수익과 이중과세성과에 포함된다. 영국기업은 불만을 시정하기 위해 소관관청에 상호협약절차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VI. 부가가치세제도

1. 부가가치세제 개요

부가가치세는 1973년에 도입된 이후로 영국 정부의 소득의 원천으로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재무부는 2002/2003년에 부가가치세로 639억파운드를 징수하였는바, 영국정부에 있어서 소득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영국의 부가가치세는 영국 내에서 창출되는 재화, 용역의 공급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주요 간접세로 관세·소비세청(HM Customs and Excise)에서 담당한다. 유아용품, 식품, 급여, 지방세, 기부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의 부가가치세율(VAT rate)은 17.5%이다. 현재 EU 내 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원산지국 (Country of Origin)부과방식을 따르고 있고, 수입국은 수입물품에 대해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영국이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1973년 4월에 부분적으로 도입되었다. 그것은 구매세(Purchase Tax)와 선별적 고용세(Selective Employment Tax)를 대체하는 것으로, 도입 당시의 세율은 10%였으나 여러 차례의 등락을 거친 후 1991년부터는 현재의 표준세율인 17.5%가 적용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법률상의 근거는 부가가치세법(VAT Act 1994)과 재정법(Finance Act)에서 담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광범위한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영국 관세·소비세청에서 집행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관리를 포함하는 법률은 1979년의 관세소비관리법(Customs and Excise Management Act 1979)에서 담고 있다. 관세·소비세청장은 재무부 외청 형식이나 국왕에 의해 임명된다. 청장은 징수와 회계의 책임, 관세·소비세청의 세입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영국 부가가치세제의 개편내용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가. 소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제도의 단순화

영국정부는 소기업과 새로 영업을 시작하는 기업의 VAT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현금흐름을 개선하며 VAT시스템으로의 정착을 돕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2003년 4월 10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 물가상승을 감안해 등록최저한을 55,000파운드에서 56,000파운드로 인상
- 부가가치세 flat rate 적용대상을 매출액 15만파운드로 인상
- 부가가치세 매년 회계체계에 즉각 등록되는 매출액 한도도 새롭게 15만파운드로 인상

나. 부가가치세의 근대화화 단순화

2003년 12월 1일부터 수입업자가 수입부가가치세 납세 담보를 위한 은행담보 수준을 하향조정하였다. 또한 2003년 10월 1일부터 기업의 접대물품한도를 50파운드로 상향조정하며 2003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공급지원칙을 변경하여 전자상거래지침에 부합하도록 EU 회원국이 아닌 공급자가 EU 소비자에게 전자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등록의무, VAT 회계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부과된다. 아울러 VAT 고의적 탈세(fraud)에 대응하기 위해 2003년 4월 16일부터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에 대해서는 환급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2003년 8월 1일부터 새로운 규칙이 적용되어 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서 1년에 한 차례씩 계속된 거래내역에 관한 회계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주지하듯이 부가가치세는 간접세 또는 최종 소비자에 의해 부담되어지는 소비세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영업 중에 세금이 붙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때마다 부과된다. 매출액에 입각한 과세이며, 직접세와 같은 다른 조세처럼 이익에 입각한 과세는 아니다.

가.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과세공급자 또는 과세공급을 의도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여 등록하거나 등록이 요구되는 자이다. 즉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의도하는 자로서 개인과 기업, 법인격 없는 단체, 법인, 기타의 단체를 포괄한다. 사업자는 총매출액이 연간등록한도(2002/03: 55,000파운드)에 도달하였을 때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에 등록되지만, 일정한 영역의 사업자는 매출액의 수준에 상관없이 등록할 수도 있다. 세액산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을 따른다.

나. 과세대상품목

과세대상품목은 대가를 창출하는 모든 형태의 사업품목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다음의 이전이 과세대상 품목이 된다.

- 소유물의 이전을 재화의 공급이라 하고, 점유자산 또는 공유자산의 이전이 용역의 공급이라 한다. 점유재화가 재화의 판매를 통해서 이전되거나, 소유물은 또한 미래에 언젠가 양도될 것이 명백한 계약을 통해 이전될 때, 그후에 지불이 완전히 이루어지며 그것이 재화의 공급이다.
- 대가가 있든 없든 등록된 사업자에게로 이전을 포함하는 고정자산 또는 유동자산
- 과세대상이 되는 영업활동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활동이다. 그 전환이나 양도가 증여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상품의 증여 또는 증여자가 50파운드 미만의 원가로 한 기업축진 증여가 아니거나 또는 한 형태에서 산업기준에 따른 기업의 실제 또는 잠재적인 소비자에 대한 증여가 대중에 대한 판매를 위해 보통 이용되지 않을 때이다.
-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이 소유한 상품, 개인이 사용하거나 사용된 상품, 또는 등록된 사업자를 포함하는 어떠한 사람에게 유용함을 제공하는 재화
- 외부기업의 누군가에게 빌려주거나, 누군가에게 빌린 재화는 과세대상품목이다.

다. 매입과 매출세액

과세대상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제한 것이 부가가치세액이다.

- 어떠한 재화 또는 용역을 사람들에게 공급하였을 때
-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재화를 취득하였을 때
- EU 회원국 외로부터 재화를 수입하였을 때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한다.

공급되었거나 그렇게 될 예정인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대상에 의해 경영되는 회사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과세대상의 매출세액은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재화를 취득하거나 그들이 제조하는 생산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이다. 과세대상의 매입세액과 매출세액 간의 차이가 정부에 지불하는 총액이다.

라. 공급시기(tax point)

기본적인 공급시기 인식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행된 것으로 간주되는 공급 날짜이다. 거래의 소유물이 반품으로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거래 날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재화가 다음과 같이 수행될 때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 이전되었을 때
- 이전되지 않고, 공급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될 때
- 공급이 수행될 것인지 아닌지를 알기 전에 이전될 때: 공급이 수행될 것이 확실해졌을 때 또는 곧 그렇게 될 때

용역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 아닌 과세품목이다. 용역의 공급은 그 용역이 실행되었을 때 공급이 수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사업자는 기본과세시점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는 공급이 수행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송된다. 청장은 납세자의 요구가 있을 때 그 기간을 14일보다 더 오랜 기간으로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떠한 회사는 매달 말에 계산서를 발송한다. 이 경우 그 날짜가 공급날짜로 간주되며 공급으로 간주된 날짜를 과세시점으로 본다.

마. 과세품목의 가격 및 세율

상품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면, 그 보상은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으로 재화와 용역의 가격에 상관없이 추가된다. 금전적 대가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이상으로 받아진다면 대가의 귀착은 당연히 그것을 소유하는 과세품목으로 간주된다. 재화와 서비스의 완전시장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상호관련이 없는 사람에 의해 지불되는 금액으로 간주된다.

최근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은 17.5%이며, 총지불비율(total consideration)은 $17.5/(100+17.5)=7/47$ 이다. 이 비율을 부가가치세 비율(VAT fraction)이라 부르며, 이 비율을 통해 전체 구매가격 중에서 부가가치세액 부분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2002년 4월 1일 이후	2001년 4월 1일 이후
표준세율	17.5%	17.5%
연간 등록한도	£55,000	£54,000
비등록 한도	53,000	£52,000
VAT 분수	7/47	7/47
현금주의회계 - 최고매출액	£600,000	£600,000
발생주의회계 - 최고매출액	£600,000	£600,000
선택적 고정요금체계 - 최고매출액	£100,000	

바. 과세품목과 면세품목

1) 면세품목

면세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자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면세가 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을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되지만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시켜서 그것을 공급받는 상대방에게 전가한다. 따라서 면세제도는 당해 단계에서 매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으나, 그 전 단계에서 매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는 취소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부분면세라고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면세품은 부가가치세법(1994)의 부칙9에 열거되어 있다. 부칙에는 다수의 그룹을 포함하고 있으며, 면세대상 재화와 용역의 중요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Group 1- 토지

- 토지에 대한 권리의 양여
- 휴가 편의시설
- 정박을 포함하는 계선 설비 요금

Group 2- 보험

Group 3-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우편 서비스

Group 4- 내기, 도박, 복권

Group 5- 금융서비스

- 예금 공제
- 유가증권(security) 또는 이차증권의 발행, 이전 또는 수취

Group 6- 교육

- 교육 또는 연구소의 학술연구에 대한 공제, 적격의 학회 또는 대학, 독립적 사립 교사
- 교육, 훈련, 재교육설비에 대한 재화 또는 서비스 공급의 잡비

Group 7- 보건과 복지

- 등록된 개업의사(검안의, 내과의, 치과의)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
- 교육 또는 목상회의 과정의 부분으로서 종교단체에 의한 종교적 복지설비

Group 8- 장례

Group 9- 노동조합과 직업단체의 경비

Group 10- 스포츠 경쟁을 위한 출장경비

Group 11- 예술품의 공공단체에서의 처분

Group 12- 자선사업이나 다른 적격단체에 의한 기금마련행사(참가이벤트와 인터넷을 통한 행사도 포함)

Group 13- 문화서비스설비(예를 들어, 박물관, 동물원, 미술관, 전람회의 입장요금)

Group 14- 매입세액을 되찾을 수 없는 재화의 공급

Group 15- 투자목적에 위해 구매할 금

만약 면세품목만을 생산한다면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자로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2) 영세율 품목

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영(0)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영세율을 적용하면 당해 거래에 대한 세액은 영이 되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하지 않게 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이미 부담한 세액을 환급받게 된다. 즉 영세율은 매출세액 면제 및 매입세액의 환급을 허용하는 것이며, 따라서 영세율제도는 당해 단계에서 매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 매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까지 취소하는 결과가 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완전면세라고 할 수 있다.

영세율의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1983)의 부칙 8에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다수의 그룹이 포함하며 몇 가지 중요한 예는 다음과 같다.

Group 1- 식료품

- 사람들이 소비하는 음식
- 동물이 섭취하는 음식물

식품군에서 다음을 제외하며, 대신에 표준세율에 따른다.

- 점포에서 소비하는 모든 음식물과 모든 뜨거운 음식물을 포함하며, 음식물 조달 과정에 의한 공급
- 아이스크림, 과자류와 초콜렛 및 비스킷
- 알코올, 맥주와 포도주
- 애완동물 음식

Group 2- 하수설비 서비스와 비상업 용수

Group 3- 서적

- 서적, 작은 책자, 가제본한 책자, 팜플릿과 광고전단
- 신문, 정기간행물과 잡지

Group 4- 맹인 및 장애자용 용품(말하는 책과 무선전화세트)

Group 5- 거주와 자선 목적을 위한 건물의 건설과 개조

Group 6- 거주나 자선사업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 '방호빌딩(protected building)' 을 복구하는 건축업자에 의한 판매

Group 7- 특정 국제서비스

Group 8- 수송(10개 좌석 미만은 표준세율에 따른다 - 12개 또는 그 이상으로부터 감소하였다.)

Group 9- 이동주택과 숙박시설이 있는 요트

Group 10- 금

Group 11- 지폐

Group 12- 개업의에 의해 처방된 의약품과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

Group 13- 일정한 수출품

Group 14- 면세점

Group 15- 특정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

Group 16- 아동 의류와 신발류 그리고 몇 가지 보호의류(예를 들어, 안전헬멧)

부가가치세 체계는 복잡하고 예외도 많은데, 예를 들어 개인 니트 양식은 과세품목이지만, 하나의 패턴 이상을 포함하는 작은 책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인 품목은 0%로 계산하지만 면세품목과는 다른데, 즉 영세율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은 과세자로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3) 저세율 품목

소수의 품목이 보통 표준세율의 범주로 분류되며, 몇몇 특별한 예외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 국산(domestic) 연료 또는 전력(또는 자선단체에서 사용하는 연료나 전력)
- 가정 또는 자선단체의 소유물 중 에너지 절약기구의 설비
- 가정용 중앙난방시스템의 수리 및 보수
- 연금 수령자 가정에 설비된 보안재화
- 여성용 위생품
- 아기용 좌석

저세율 품목에서 부가가치세 분수는 $1/21$ (즉, $5/(100+5)$)이다.

사. 수입과 수출

1) 수입품

수입은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 또는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될 수 있는데, 수입에 대한 과세처리는 재화의 공급자에 따라 좌우된다. 먼저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세금은 관세율에 따라 부과되며, 세율은 등록된 사업자에 의해

내부시장에 공급되는 재화에 적용되는 세율과 같다. EU 회원국 외의 국가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는 사람은 EU 관세차입금(customs debt)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될 재화가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신고되었을 때, 등록된 사업자는 그 재화에 대한 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등록된 사업자는 지불을 연기하기 위해 관세율 규정(1976)의 승인을 얻고자 신청하면, 관세소비세청장은 지불날짜까지 관세의 지불연기를 허가한다. 지불날짜의 개시기간은 그 달의 16일이며 그 다음달 15일에 끝난다.

용역이 해외(EU 회원국이거나 그 외의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에 의해 영국에 거주하는 등록사업자에게 공급된다면, 수신인 지불 시스템이 적용된다. 관련 용역은 다음과 같다.

- 저작권, 특허권, 인가서, 등록상표와 유사권리의 양도 및 이전
- 광고서비스
- 컨설턴트, 기사, 법률가, 회계사 및 유사 용역: 자료처리와 정보제공
- 은행업, 금융 및 재보험을 포함한 보험서비스

2003년 7월부터는 영국의 비등록 수령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EU 비회원국의 공급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취지에 맞는 그룹으로 등록된 다국적 회사가 부가가치세의 회계가 없는 해외로부터 서비스를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수신인 지불 시스템만이 기업의 과세품목에 대한 매입세액인 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면세품목에 대한 부과금과 관련한 수신인 지불은 환급받을 수 없다.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로부터 영국 기업에 공급되는 전자통신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가 있다.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로부터의 예술품, 골동품, 수집가의 작품의 수입은 2.5%의 저세율로 부가가치세를 적용받는다.

2) 수출품

다음의 재화의 수출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 EU 회원국 외의 국가로의 수출
- 최종 목적지가 영국 외부인 재화가 선박 또는 항공기로 수송될 때, 또는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어 소매상에 의해 판매되는 상품일 때

현재 EU 회원국내 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원산지국 (Country of Origin) 부과방식을 따르고 있다.

3. 부가가치세 행정

가. 부가가치세 신고

등록된 사업자는 과세기간의 마지막 한달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포함하는 기간으로, 보통 3달에 걸쳐 이루어진다. 관세·소비세청은 무역(trades)과 사업(businesses)으로 분류하고, 기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로 등록되었을 때 수행되는 거래의 유형을 참조하여 과세기간을 배분한다. 관세·소비세청은 그들의 업무를 일년 내내 고르게 전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변경할 수 있다. 즉 3달의 과세기간을 한 달로 그 기간을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 그것은 정기적으로 부가가치세의 환급(즉,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였을 때)을 받는 사업자에게는 매력적일 것이며, 또한 그들의 현금유동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나, 일년 동안의 완결된 부가가치세 관련 회계보고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거래는 과세가 발생하는 시점인 과세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부가가치를 대상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과세시점일에 보편화되는 부가가치세의 비율에 따라야 한다. VAT 100이라 불리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각각의 과세기간 말에 신고가 이행되며, 관세·소비세청으로 보내진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 과세기간 동안에 징수된 매출세액
- 과세기간 동안에 지불된 매입세액
- 지불해야 하거나 상환해야 할 순총액
- 다른 EU회원국에 있어서 상품의 가격
- 다른 EU회원국으로부터의 취득물에 대해 당연히 지불되어야 할 부가가치세 관련 정보

매출세액이 매입세액을 초과한다면 그 차액을 관세·소비세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세금계산서

영국의 부가가치세 기본골격은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대체적으로 같은 구조로 되어 있으나 과세베이스는 그다지 넓지 않은 편이다. 세율은 표준세율(17.5%) 외에 수출 등에 대하여는 영(0)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4분기(3개월)마다 신고·납부한다. 영국은 일반소비세로서 부가가치세제도를 채택·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Tax invoice) 등 영수증이 기본적인 서류로서 부가가치세제 시행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다만, 세금계산서 등에 관하여 우리나라처럼 법정서식이나 교부절차 등에 대한 복잡하고 세부적인 규제가 없으며 세금계산서 등의 제출제도도 없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과세거래를 할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서식은 법정하고 있지 않지만 다만 그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는 VAT규정(Regulation)에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공급일로부터 30일 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공급시기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통상적으로 기본적인 공급시기 이전에는 재화의 인도(용역의 완료)일과 대가의 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빠른 일자가 공급시기가 되며 공급시기 이후 14일 이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는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정규 세금계산서는 이러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완비된 것이라야 한다.

- 공급자의 이름, 주소, 등록번호
- 공급일
- 계산서번호
- 거래처의 이름과 주소
- 재화 또는 용역의 품목의 각각 유형을 포함하여 기재
 - 구매물품 수량
 - 세액
 - 세금을 제외한 총액
 - 공급의 유형, 예를 들어 판매 또는 임차
 - 이용 가능한 현금할인율, 영세율품목과 면세품목에 적용되는 각각의 총현금 할인율

여기에서 특기할 사항은 매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정부제출과 제출된 세금계산서의 상호대사를 예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거래와 영세율 거래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에 준하는 형태의 계산서를 발행하여 과세거래와의 구분을 명백히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납세의무자는 구입재화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전 단계까지의 매입세액을 판매 등에 의하여 계산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것에 대하여는 전 단계 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자동차
- 교제비(다만, 종업원에 대한 것 및 외국고객에 대한 것을 제외)
- 거주용 건물의 건축업자에 의해 제공된 일부 재료
- 중고품시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에 포함되어 있는 세액
-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

한편, 소매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개별 공급가액이 100파운드 이하인 경우에는 고객이 특별히 정규의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한 기재사항이 간단한 간이 계산서(Less Detailed Tax Invoice)를 발행할 수 있는데, 이를 소매명세서(Retailers' Invoice)라고 한다.

- 공급자 이름, 주소와 등록번호
- 공급날짜
-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의 기재
- 적용세율
-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공급금액

주차장에서와 같이 현금을 기계로 관리하는 경우, 즉 총가격이 25파운드 미만으로 제공될 때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때때로 재화와 용역은 한 단위로 판매되기도 하지만, 사실상 표준세율과 영세율, 면세품목으로 혼합되어 구성된다. 예를 들어 도서와 카세트테이프가 동시에 판매된다면, 이 중 도서는 영세율로, 테이프는 표준세율에 따를 것이다. 이러한 사례에 있어서 공급자는 공정한 원리를 사용하여 각각의 구성요소 간의 공급가격을 배분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적절한 비율로 각각의 상품에 대해 부과된다. 법률은 가격을 배분하는데 사용되는 한 가지 방법을 제공하지 않으나, 무난한 방법은 구성요소의 공급자에 있어서의 비용과 각 구성요소의 공개시장가격을 참조하여 배분한다. 때때로 이러한 방식으로 가격을 배분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도 있다. 즉, 복합적 상품으로서 판매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필수적일 때에는 하나의 비율로 전체 상품에 적용될 것이다. 새로운 계산서 발부규칙에 따라, 소규모 거래에 대한 계산서 발부와, 적은 가격으로 사정된 품목의 간소화를 허용하며,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부가가치세 계산서의 전자적 수수가 가능하다.

부가가치세에 관한 회계기록 및 세금계산서는 적어도 6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때 세금계산서는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포함한다. 또한 부가가치세에 관한 회계기록은 정기적으로 관세·소비세청의 조사관에 의해 검사받는다. 영국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매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매출총액과 납부세액, 환급세액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간편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세무신고를 마친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납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거나 상호대사하는 등의 별도의 절차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부당환급, 탈세 등의 혐의가 있을 때 관련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그 진위 여부를 판단하며 이를 위해서 납세자에게 장부나 영수증 등 관련기록을 6년간 보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영수증의 교부·수취가 부가가치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한 본인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의 발행의무를 납세자에게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도 없다. 다만, 정당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나 장부의 보관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100%의 벌과금을 부과하며 심한 경우에는 형사범으로 다루어 300%의 벌과금이나 최고 6개월간의 징역 형에 처한다. 한편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제외하고는, 현금할인은 계산서가 늦지 않게 처리되기 위해 제공되며, 부가가치세는 순현금할인 물품의 가격에 의거하여 부과된다.

다. 매입세액공제제도

1) 자본지출(capital expenditure)

자본지출은 부가가치세의 취지에 맞는 세입의 지출과 구별되지 않으며, 따라서 모든 매입세액은 완전히 환급된다. 다만 자동차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만 예외로 적용되는 바,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다. 그와 동시에, 등록된 사업자들은 이익을 얻고 팔지 않는 한 매출세액을 회계할 필요가 없으며, 그때의 매출세액은 이득이라는 요소에 대해 부과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규칙에는 얼마간의 예외가 있다. 부가가치세는 다음의 경우 자동차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

- 새로 취득하고 팔릴 예정일 때(자동차 판매상의 경우)
- 임대할 예정이거나 택시업무로 사용할 때, 임대하여 손수 운전하거나 운전학교에

서 사용하는 자동차

- 주로 임대라는, 완전히 영업목적으로 1995년 8월 1일 이후 구입한 자동차. 만약 개인적 모니터링의 용도로 자동차를 사용한다면 매입부가가치세는 50%만 되찾을 수 있다.

자동차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를 되찾을 수 있을 경우, 매출부가가치세는 자동차가 최종적으로 어떠한 용도로 배분되는지에 따라 계산된다.

2) 회수불능의 부채

어떤 사람이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하고 상품에 대한 세금을 지불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대가의 일부나 전체가 그 사람의 회수불능의 부채로 간주되면, 지불기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 그 사람은 미결제액에 부과되어야 할 세액의 상환에 대한 권리가 있다. 상품의 가격이 공개시장가격보다 적거나 같을 때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화의 경우에 있어서, 재화에 대한 권리는 사업자로부터 다른 구매자 또는 권리를 얻어낸 사람에게로 양도된다. 채무자가 다음에 모두 또는 부채의 일부를 상환한다면 부가가치세에 상응하는 몫의 상환은 관세소비세청에 상환해야 한다.

재무장관은 1996년 11월 예산에서 새로운 법안을 도입하였는데, 그 법안은 회수불능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관세소비세청에 자격을 부여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연차회계 체계를 사용하고 따라서 일년에 한번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이행하는 등록된 사업자는 매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같은 신고서에서 회수불능의 부채경감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3) 비환급 매입세액

등록된 사업자일지라도 다음의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없다.

- 소득세나 법인세의 취지에 무방한 지출
- 관리자를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지출
- 비거래 품목은 영업보고서에 기록된다. 과세품목이 부분적으로 영업목적과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된 것이라면, 등록된 사업자는 모든 매입세액을 환급받고 사적목적으로 취득한 품목의 가격에 매출세액을 회계하거나, 영업요소의 매입세액만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과세품목이 용역이라면, 두 번째 방법만 사용할 수 있다.

4) 혼합된 매출

매입세액은 등록사업자가 사업자에 의해 생산된 과세품목인 상품에 대한 값을 지불하였을 때만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사업자의 생산품이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기본적인 원칙은 과세해야 할 생산품과 관련한 매입세액만 환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사업자는 '부분적 면세자'로 적용된다.

이러한 보조는 첫째로, 면세생산품과 과세품목에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매입세액의 결정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과세품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완전히 환급받을 수 있으며, 면세품목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세금공제가 되지 않는다. 잔여 소득세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과세대상 거래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거래액 × 100)의 계산에서 소숫점을 반올림하여 사용하는 퍼센트를 사용함으로써 과세대상 물품과 면세 물품 사이에서 분배된다.

다음 품목은 계산에서 제외된다.

- 어떠한 업무의 수행 없이 취득하거나 판매한 재화에 대한 세금
- 자급(self-supplies)과 관련한 세금. 자급은 사업자가 매매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하였을 때 발생한다.
- 상점 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본재에 대한 세금

관세소비세청은 과세품목과 면세품목 간의 매입세액을 배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선택적 원리를 사용한다. 매입세액의 총액이 평균 600파운드 이하인 면세품목과 관련이 된다고 간주된다면, 한 달에 그 이상의 배분은 승인하지 않으며 모든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수 있다.

5) 자동차와 여행비용

새 자동차의 취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환급되지 않으나, 부속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휘발유와 정비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설명한다. 유지·보수에 드는 모든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그 자동차가 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환급이 가능하다. 사적목적으로 이용하는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마일당 운임 또는 연료비용의 상환에 의해 그 연료를 상환하는 피고용인이 구매하였을지라도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사적목적으로 연료를 사용하는 종업원이 있고, 그 종업원이 그 연료비용을 완전히 부담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생산된 과세품목을 신고한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휘발유에 대한 매입세액을 되찾을 수 있지만, 또한 요금률을 사용하는 매출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이 연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환급 받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매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부가가치세 연료 요금률표는 관세소비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사적목적으로 이용된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종업원이 연료비용을 완전히 상환하지 않으면 또한 세금공제가 된다. 그러나 기업은 요금률(3개월 또는 1개월마다)에 따라 매출세액을 신고해야만 한다. 만약 종업원이 자동차의 사용이든 사적연료에 대한 비용을 고용인에게 상환한다면, 부가가치세에 대한 지불은 사적연료비용과 같거나 초과한다.

6) 자가공급

어떤 사람이 스스로 상품을 생산하였다면, 그 품목에 대한 매입세액은 그 상품에 부과되는 매출세액의 수준까지가 무방하다. 즉, 매입세액은 그 품목에 대한 매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등록된 사업자가 자동차를 자급하였다면,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다. 이 법률은 또한 사업자가 원래 택시, 임대자동차의 자가운전, 운전학교 자동차의 용도로 자동차를 취득하고 사용하였다면 매입세액은 환급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라. 사업자등록과 미등록

1) 초기등록

다음의 사업자는 과세품목을 만들지만, 부가가치세 납부자로 등록되지 않았으면 등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연간 매출액이 55,000파운드를 초과하였을 때
- 개시 30일 동안에 매출액이 55,000파운드를 초과할 때

등록은 과세품목이 다음 30일 동안 연간 최대액을 초과할 것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적당한 근거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관세소비세청장이 등록하기 위해 요구되는 그 날로부터 일년 동안의 사업자의 매출액 55,000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는 사업자는 등록 의무가 없다. 관세소비세청장은 이와 관련한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

- 사업자는 생산하거나, 과세품목을 만들었으며,
- 총활동 중 하나의 부분으로서 그러한 과세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의 활동은 영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그것은 목적에 따라 기술된다. 다른 활동은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인원에 의해 수행된다.
- 그 기업의 모든 과세품목이 회계된다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등록의무가 있다.
- 활동의 수행과 관계되는 지정인을 두는 주된 이유는 등록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등록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등록사업자는 그들이 등록된 날짜로부터 과세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생긴다.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금의 징수가 불가능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영세율 품목만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등록으로부터 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면제대상 사업자는 그 품목에 변화가 생길시에는 관세·소비세청에 신고해야할 책임이 있다.

2) 자발적 등록

자발적 등록은 여러 가지 혜택과 단점이 있다. 먼저 자발적 등록에 대한 이점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 목적으로 등록된 거래처는 그들에게 부과된 매출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 사업자는 그들의 실제 사업보다 성장하게 될 것이며, 거래처와 함께 그들의 지위도 확장될 것이다.

자발적 등록에 대한 단점은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를 등록하지 않는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지만 사업자는 비등록 거래처로서 경쟁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 등록에 대한 행정적 책임에 대해서 감독되지 않는다.

사업자에 있어 거래처의 과세상태(tax status)가 자발적 등록이 유리한지 아닌지에 대한 의사 결정시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3) 미등록

미등록은 자발적이거나 강제적 미등록으로 구분된다. 부가가치세의 취지에 따라 등록의무가 있는 사람에 대해, 등록사업자들이 과세품목을 만들지 않고 또한 지침(VAT Act 1994 Sch 1 s3)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감독관이 납득하게 된다면 등록 책임이 끝나게 될 것이고 따라서 미등록자가 된다. 또한 사업자의 다음연도 과세품목과 순부가가치세가 53,000파운드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세소비세청이 인정한다면 사업자는 자발적으로 미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이 판매를 중지할 의향이 있거나 또는 다음연도에 30일 또는 그 이상의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과세품목의 생산을 중단할 경우에 사업자는 자발적으로 미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자발적 등록사업자가 과세품목의 생산의지 또는 생산을 중단할 시에는 30일 이내에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등록사업자가 비영업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취득할 때에, 예를 들어 소매상인이 자급(self-consumption)하기 위해 재화를 취득하였을 때, 부가가치세는 판매가격이라기보다는 그들의 비용에 대해 부과된다.

4.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제 비교와 정책시사점

여기서는 영국의 부가가치세제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정리하기보다는 부가가치세가 OECD 역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범위를 확대하여 OECD 여러나라의 부가가치세제가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OECD의 조세분류방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즉, 일반소비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대여, 이전, 인도, 그리고 판매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일반소비세는 국내에서 생산·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한다. 생산 또는 분배의 어느 단계에서 과세되었는가에 따라서 그 명칭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소비세, 다단계 누적세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최근 OECD 제국의 일반소비세는 부가가치세가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조세수입의 약 20%를 점하고 있다.

가. 부가가치세 세율

OECD 24개국의 부가가치세 도입 초기 표준세율평균은 12.4%이며, 2000년 기준 표준세율은 17.2%로 약 5%포인트 정도 상승하였다. 2000년 7월부터 GST(Good and Service Tax)를 도입한 호주를 포함하여 계산된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율은 평균 17.7%로서 1994년 이후 줄곧 17%를 상회하고 있다.

2000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표준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국가는 헝가리, 덴마크, 스웨덴으로 25%의 표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으로 도입 초기(1989년)표준세율이 3%로 가장 낮았고, 1998년에 5%로 인상되었으나 아직까지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세율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 10%는 OECD 국가들 중에서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낮은 국가로는 일본(5%)과 스위스(7.5%)가 있고, 캐나다는 지역에 따라 7%와 15%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이들 3개국은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국가들이다. 또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복수(다수)세율의 부가가치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표 VI-1>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율 구조

(단위: %)

	경감세율	표준세율			
		2000	1998	1996	1994
호 주	-	10.0	-	-	-
오스트리아	10.0/12.0	20.0	20.0	20.0	20.0
벨 기 에	0.0/6.0/12.0	21.0	21.0	21.0	20.5
캐 나 다	0.0	7.0/15.0	7.0/15.0	7.0	7.0
체 코	5.0	22.0	22.0	-	-
덴 마 크	-	25.0	25.0	25.0	25.0
핀 란 드	8.0/17.0	22.0	22.0	22.0	22.0
프 랑 스	2.2/5.5	20.6	20.6	20.6	18.6
독 일	7.0	16.0	16.0	15.0	15.0
그 리 스	4.0/8.0	18.0	18.0	18.0	18.0
헝 가 리	0.0/12.0	25.0	25.0	-	-
아이슬란드	14.0	24.5	24.5	24.5	24.5
아일랜드	0.0/3.3/10/12.5	21.0	21.0	21.0	21.0
이탈리아	4.0/10.0	20.0	20.0	19.0	19.0
일 본	-	5.0	5.0	3.0	3.0
한 국	-	10.0	10.0	-	-
룩셈부르크	3.0/6.0/12.0	15.0	15.0	15.0	15.0
멕 시 코	0.0/10.0	15.0	15.0	15.0	10.0
네덜란드	6.0	17.5	17.5	17.5	17.5
뉴질랜드	-	12.5	12.5	12.5	12.5
노르웨이	0.0	23.0	23.0	23.0	22.0
폴 란 드	7.0	22.0	22.0	22.0	22.0
포르투갈	5.0/12.0	17.0	17.0	17.0	16.0
스 페 인	4.0/7.0	16.0	16.0	16.0	15.0
스 웨 덴	0.0/6.0/12.0	25.0	25.0	25.0	25.0
스 위 스	2.3/3.5	7.5	6.5	6.5	6.5
터 키	1.0/8.0	17.0	15.0	15.0	15.0
영국	0.0/5.0	17.5	17.5	17.5	17.5
단순평균	-	17.7	17.7	17.2	17.1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01.

나. 세수기여도

OECD 국가들의 부가가치세 수입이 GDP 혹은 총 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에의 가장 큰 이유는 장기간에 걸친 세율인상을 들 수 있다.

<표 VI-2> 총 세수입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

(단위: %)

	1975	1980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한 국	12.7	22.0	21.1	20.4	18.9	18.7	20.1	16.5
OECD 단순평균	13.3	14.1	15.8	17.4	17.5	17.7	17.9	17.9
OECD America	9.7	11.4	12.3	14.3	13.0	13.0	13.0	13.7
OECD Pacific	7.1	9.4	9.8	13.8	13.9	14.0	14.9	15.0
OECD Europe	15.0	15.6	17.5	18.6	18.8	19.0	19.2	19.1
EU 15	15.2	16.0	16.6	18.2	17.8	17.8	17.8	17.9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01.

OECD 국가들의 부가가치세 수입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개별소비세(tax on specific goods and service)의 세수입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도소매 거래에 부과되는 세제(wholesale and retail taxes)가 부가가치세 혹은 GST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미국만이 부가가치세 유형의 세제가 없다. 2000년 7월 호주가 GST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이 EU에 가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하였고 동구권 국가들도 세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하였다. 두 번째 이유로는 장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세율이 상승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다. 사업자등록 면제 기준

OECD 국가들 중에서 한국과 스페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자등록을 면제하여 사실상 비과세하고 있다. 일본은 등록 면제 기준이 29만달러를 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그 다음으로 멕시코가 일본의 절반 정도인 14만달러 수준이다. 반면 네덜란드는 2천달러가 안 되는 1,932달러로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는 등록면제기준을 1만 6,700달러에서 7만 8,191달러로 매우 크게 올렸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도 납세적응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기장 등의 측면에서 납세협력의무 수준을 완화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을 경감시켜 주고자 간이과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간이과세 범위는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이들에 대해서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10%를 곱한 세율이 부과된다. 또한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국가별로 여건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면제수준의 높고 낮음을 직접 비교·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

라. 과세·면세업종

모든 OECD 국가들은 특정 재화와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OECD 표준면세(standard exemption) 대상은 다음과 같다.

구분	면세대상
OECD 표준면세 (standard exemption)	우편서비스, 의료서비스, 금융서비스, 보험, 교육, 문화사업, 자선사업, 부동산의 임대, 복권, 토지와 건물의 공급, 비영리단체의 비상업적인 활동, 자선사업 등

OECD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01년까지 각 국가들의 면세범위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 일부 국가들이 한 두 분야에 대해 면세를 과세로 혹은 과세를 면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었을 뿐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표준면세를 주축으로 면세범위를 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는 표준면세 범위를 고수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도 표준면세 중에서 임대(개인주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으며, 그리스는 문화서비스에 대해 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각국의 다양한 여건에 의해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예외조항 중에서 공통적인 것으로 첫째, 표준면세 중에서 과세되는 업종으로 우편서비스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임대가 있고 둘째, 표준면세 외에 면세되는 업종으로 여객수송과 장의(funeral rites)등을 열거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 특정 기초식료품과 음료, 물, 교통 등에 대해 면세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달리 우편서비스, 스포츠 서비스, 종교를 제외한 문화서비스, 건강보험을 제외한 보험 등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다. 이런 과세는 뉴질랜드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며 특히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일부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뉴질랜드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표준면세 범위 이외의 분야에는 거의 면세를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표준면세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대체로 과세하고 있다는 것이다. 뉴질랜드에서는 금(gold)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근래 EU 회원국들도 EU 지침(Directive, 98/80/CE)을 통해 금 거래를 투자로 보는 경우에 한해 면세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차등세율 부과

OECD 국가들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는 그다지 많은 분야에 대해 허용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영세율 적용은 우리나라에 비해 많은 편이며, 또 상당히 넓은 분야에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즉, 많은 OECD 국가들이 부가가치세에 대해 차등세율을 두고 있다. 차등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품목이 각국에 따라 다양하듯이 이 또한 각국마다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OECD 보고서에 의하면 고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회원국으로는 체코와 터키 두 국가

가 있다. 이들 국가가 고세율을 적용하는 품목은 차, TV, 세탁기, 보석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별소비세 부과를 통해 이와 같은 효과를 시현하고 있다.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음식과 농업에 대해 영세율 혹은 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음식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로는 멕시코, 영국, 아일랜드가 있으며, 농업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로는 캐나다와 아일랜드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문화서비스, 장애인용 기구, 스포츠, 신문, 서적 등에 대해 저세율 혹은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VII. 상속세

1. 서론

상속세는 한 개인의 생애 동안의 증여와 그가 죽은 시점에서의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이전세(transfer tax)'라고 불리곤 했었다. 상속세는 1975년에 estate duty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 법은 1984년의 상속세법과 부차적인 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우리의 경우 증여세가 상속세와 함께 보완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는 데 반해 영국의 경우 상속세만이 존재할 뿐 증여는 자본이득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에서도 높은 면세점 수준으로 96% 이상의 유산이 전혀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우리와 비슷한 점이라 하겠다. 현재(2001년 4월 6일에 또는 이후 사망시) 시점의 면세점은 242,000파운드이며 유산규모(사망시점 이전 7년간 증여 자산 포함)가 이보다 적은 경우 면세된다. 상속세율은 40%이다. 상속세 행정은 국세청 자본세(capital taxes)를 담당하는 노팅검, 에딘버러, 벨파스트 사무소에서 담당한다.

2. 과세대상 및 면세

영국에 주소가 있는 개인들은 세계 모든 곳에서의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영국에 주소가 없는 자들은 영국 내의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남편과 아내는 개별적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래서 모든 유용한 공제들은 그들 각각에 적용된다. 그리고 그들 각각은 'nil-rate'⁸⁾ 경계까지는 상속세 납부 의무 없이 재산의 이전을 할 수 있다.

8) 과세대상인 재산이전의 총액의 최초의 200,000파운드에 대해서는 0%의 과세율이 부과되는데, 이것을 'nil-rate'이라 한다. Inheritance tax threshold 2001~02 (242,000파운드), 2002~03

‘주소’는 법적 용어로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으나, 본질적으로 본인이 ‘본국(고국)’으로 간주하는 나라를 의미한다. ‘주소’라는 단어는 상속세와 관련하여 2차적인 뜻을 가지는데, 만약 다음의 경우라면 영국에 주소가 있는 자로 간주된다.

- 1974년 12월 10일 이후부터 영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고, 이주를 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1974년 12월 10일 이후부터 영국의 거주민이었고 이주한 해를 포함해서 적어도 20년 중 17년은 영국 거주민이었던 경우

이중과세 공제는 자산의 이전이 영국에서 만큼의 외국 조세부담을 유발시킬 때 적용된다.

가. 면세되는 이전

1) 생애증여에 대한 면제

많은 증여들이 세금에서 완전히 면제된다. 다른 증여들은 그것이 증여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질 때만 면제된다. ‘생애증여’⁹⁾의 면제는 다음과 같다.

- 동일인에 대한 작은 규모의 증여
 - 어떤 사람에게 한 해 동안 주어지는 명백한 증여의 총액이 250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는 그러한 생애증여는 면제된다.
- 결혼과 연관된 증여
 - 5,000파운드 이하의 아버지로부터의 증여, 2,500파운드 이하의 할아버지로부터의 증여, 2,500파운드 이하의 결혼 당사자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의 증여, 또는 1,000파운드 이하의 그 밖의 사람들에 의한 증여는 면제된다.

(250,000파운드)

9) 증여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 수입 외의 일반 지출
 - 면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증여가 일반 지출의 일부분이어야만 하고, 평범한 삶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 이하로 이용 가능한 순소득을 줄여서는 안된다.
- 급료와 배당에 대한 포기
 - 급료에 대한 포기나 상환은 상속세를 유발시키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배당에 대한 어떤 권리가 발생하기 이전의 12개월 안에 이루어진 배당의 포기 또한 그러하다.
- 가족 부양에 대한 자본 이전
 - 개인은 때때로 가족의 부양을 위해 또는 독립적인 친인척에 대한 적당한 공급을 위해 자본을 이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이혼을 함에 따라 남편과 아내 사이의 자본이전에 대한 보통의 면세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경우 자본이전에 대해 면세된다.
- 3,000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는 한 해의 자본이전
 - 어떤 과세연도 내에서 생애이전의 최초의 3,000파운드는 면세된다. 면세되지 않은 부분은 면세된 후에 다음해에 사용하기 위해 1년 뒤로 이월될 수 있다.

2) 그 외의 면세

다른 면세는 증여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이전이나 죽었을 때의 이전에 적용될 수 있다.

-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이전
 -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루어지는 자본이전은 영국 내에 거주하는 남편 또는 아내가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액이 55,000파운드 이하일 때에 면세된다.
- 자선단체에 대한 증여
 - 자선을 목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루어졌거나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자선단체에

대한 증여는 면세된다.

- 정당에 대한 증여
 - 의회에 적어도 두 명 이상의 의원을 확보하거나, 한 명의 의원을 보유하되 가장 최근의 보통선거에서 적어도 150,000표를 획득한 정당에 대한 증여는 면세된다.
- 공인된 단체에 대한 땅의 증여
- 국가적 목적을 위한 증여
- 유산(전통재산)에 대한 조건부 면세
 - public access와 같은 다양한 사업들이 주어진다면, 조건부의 면세가 우수한 국가적, 과학적, 역사적, 예술적, 건축적 또는 유산 재산으로서 재무부에 의해 선정된 재산의 이전에 적용된다. 그러한 선정에 대한 요구는 이전(transfer) 날짜, 또는 잠재적 면세대상인 이전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상속인(transferor)이 죽은 날짜 이후 2년 안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사업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기부를 받는 자는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유산(전통재산) 유지 기금
 - 재무부의 선정이 상속일 이후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선정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유산의 유지, 보수 또는 보호를 위해 설립된 기구에 이전하는 것은 면세된다.
- 상호이전
 - 잠재적 면세대상인 이전 또는 과세대상인 이전이 이루어지고, 기부를 받은 자가 기부자에게 증여로 보답하는 경우, 만약 기부자가 7년 안에 사망한다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다.

나. 과세의 원칙

과세대상인 생애이전의 계속해서 증가된 총합이 경계(threshold)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생애증여나 사망 시점에서의 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어떠한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이전에 대한 경계는 1998년 4월 6일 이후에 215,000파운드에서 223,000파운드로 증

가했고 2001년 4월 6일 이후에는 242,000파운드로 증가했다. 경계를 넘는 이전에 대한 과세율(full rate)은 40%이지만, 생애증여를 조장하기 위해서 nil-rate 경계를 넘는 과세대상인 생애이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전이 이루어진 지 7년이 경과하면 이전은 총합에서 제외된다. 의회가 다른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경계는 매년 증가된다. 어떠한 해마다의 경계의 증가도 지난해의 이전에 대해 과세된 세금을 되찾을 수는 없다.

다. 잠재적 면세이전

생애 동안에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이전은 세금으로부터 완전히 면제되거나, 또는 잠재적으로 면제된다. 그리고는 이전이 이루어진 지 7년 안에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된다. 심지어는, 그와 같은 잠재적 면세이전의 총액이 nil-rate 경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잠재적 면세 이전액은 사망시의 자산의 가치에서 얼마나 많은 영 대역(nil band)을 공제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데 계산될 것이다.

이전을 한 지 7년 이내에 사망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의 이전이 된 잠재적 면세이전은 이전을 했을 때의 증여의 가치로 계산되고, 세금은 그러한 이전이 있기 전 7년 이내의 어떠한 과세대상인 이전을 고려하면서 계산된다. 그러나 적용되는 nil-rate 경계와 세율은 사망시점의 nil-rate 경계와 세율이다. 그러므로 생애증여에 의해 이전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가능하고, 자산의 평가 시세가 오르는 경우 이것은 특별히 유용하다, 왜냐하면 이후의 자산의 가치의 증가는 피증여자의 지배하에 놓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이득세 효과는 고려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과세대상인 자산의 생애증여는 증여 공제조항들을 사용하면서 이득이 연기될 수 없다면, 자본이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 반면에 만약 자산의 사망 시기까지의 가치의 증가는 자본이득세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잠재적 면세이전인 증여에 부과되는 모든 자본이득세는 만약 그러한 증여가 상속세를 내야 할 의무가 생기면 차감 계산될 수 없다. 만약 자본이득세 증여공제를 이용할 수 있고, 잠재적 면세이전이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대상이 된다면, 모든 상속세 의무는 증여를 받는 자가 실질적으로 자산을 처분할 때 그의 이득의

계산에서 공제될 것이다.

라. 생애이전에 대한 과세

즉각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생애이전들의 주된 영역은 임의의 위탁에 대한 이전이다 (즉 위탁수입에 대한 권리를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고, 만약 그러한 권리를 가진 자가 있다면, 그들이 배분하는 수입의 양은 수탁자에게 달려있다). 242,000파운드의 nil-rate 경계는 그것이 이전(earlier)의 과세대상인 이전에 이미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이용 가능하다. 그리고 해마다의 면세도 또한 그러하다. 잠재적 면세이전으로서, 만약 기부자가 기부를 한 지 7년 이내에 사망한다면 그리고 세금이 그것에 기초하여 정상세율(full rate)로 다시 계산된다면, 과세대상인 이전은 이전이 있기 전 7년 이내의 어떤 과세대상인 이전(과세대상인 이전이 된 잠재적 면세이전을 포함한다)을 고려하면서, 사망 시점까지 계속해서 증가된 총액에서 고려된다.

만약 증여된 자산이 자본이득세에 대해 과세대상인 자산이었다면, 그리고 그 이득이 증여공제조항하에서 연기되었다면, 즉각적으로 또는 증여자의 7년 이내의 사망에 근거해서 지불된 모든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자산을 실질적으로 처분할 때 그의 이득을 계산하는 데서 공제된다. 과세대상인 생애증여에 대한 세금은 대개 수령자에 의해 지불된다. 그러나 기부자에 의해 지불될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증여자가 증여한 재산 중 일부를 역산(grossing up)해서 추정한다. 만약 기부자가 증여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자본이득세는 수령자에 의해 지불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상속세를 계산하는 데 있어 증여의 가치로부터 공제된다.

3. 상속세 행정

가. 사망시점

사망시, 총 재산의 최후의 이전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앞선 7년 이내의 잠재적 면세이전과 과세대상인 생애이전의 총액에 근거해서 자산에 세금이 부과된다. 재산

은 모든 자산의 총액으로서 재산은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 연합 소유로서의 재산

- 연합소유 재산은 자동적으로 사망과 동시에 다른 연합 소유자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그 재산은 여전히 세금계산을 위한 피상속인 재산의 일부를 형성한다 (이것은 그가 원하면 처분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목적에서 그의 자산으로 형성되는 그러한 각각의 개인이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지분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소유로서의 지분과는 다르다).

○ 위탁수입(소유에서 발생하는 이자라 불린다)의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 위탁기금의 자본가치

위탁기금에 있는 자본을 피상속인의 자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함께, 비록 그 자본에 대한 세금은 수탁자에 의해 지불되지만, 피상속인은 기금에 있는 자본을 과세이전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누군가가 위탁기금이 후원자본의 일부로 배분되는 것으로부터 수입의 권리를 부여받았을 때에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본은 이미 그의 재산의 일부로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사망시 자산이 영국내 거주자인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어떠한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면세액이 55,000파운드의 한계를 넘지 않는 경우).

1) 사망 전 7년 이내에 이루어진 이전

과세 생애증여를 한 경우, 그것의 일부 또는 전부는 20%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증여를 한 지 7년 이내에 사망시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된다. 왜냐하면 이전이 있기 전 7년 이내의 다른 과세이전(과세대상인 이전이 된 잠재적 면세이전을 포함한다)을 고려하면서, 죽음의 시점에서 적용 가능한 정상세율(full scale rate)로 세금이 다시 계산되기 때문이다(그리고 사망시점에서 적용 가능한 nil-rate 경계를 적용한 후).

만약 사망 이전 7년 동안 잠재적 면세이전을 했다면, 어떤 과세 생애이전과 함께 세금이 부과될 것이고, 증가하는 총액에 따라 계산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세금의 부과는

각각의 이전이 발생한 날짜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추가납부의무를 유발시키면서, 더 이상 nil-rate경계가 부과된 과세 생애이전에 대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증여된 자산의 평가가치가 증여와 사망시점 사이에 하락한다면, 그리고 그 자산이 유형의 동산이 아니라면 하락된 낮은 가치가 세금을 계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예를 들면 자동차). 판매 수익은, 만약 증여가 이루어졌을 때보다 낮다면, 기부자의 사망 이전에 기부를 받은 자가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에, 제3자에 의해 자유롭게 협상된 가격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된다.

2) 체감 공제(tapering relief)

사망 이전 7년 동안 이루어진 증여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 또는 추가적인 세금을 계산할 때, 만약 피상속인이 증여를 한 지 3년 이상 생존하는 경우 세금은 점진적으로 감소한다. 점진적으로 체감되는 과세 full scale rate액에 대한 백분율은 다음과 같다.

<표 VII-1> 정상세율액에 대한 백분율

과세 증여와 사망시점 사이의 기간	과세 full scale rate액에 대한 백분율(%)
3년 이하	100
3년 이상 4년 이하	80
4년 이상 5년 이하	60
5년 이상 6년 이하	40
6년 이상 7년 이하	20

기부를 받은 자는 생애증여에 대해 지불한 과세액을 초과하는 과세 full scale rate액의 적절한 백분율에서의 세액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설사 생애증여의 과세액이 사망 과세액을 초과한다 할지라도, 환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 재산의 평가

상속세 계산을 위한 재산의 가치는 그것이 만약 경쟁적인 시장에서 팔릴 경우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가격이다. 그러나 그 가격은 한 때에 시장에 내놓아진 전 재산에 기초해서 줄어들지 않는다. 만약 이전된 자산이 자본이득세 납부의무를 발생시킨다면, 그리고 기부를 받은 자가 그 세금을 납부하는 데 동의한다면, 이전된 가치는 이미 지불된 자본이득세에 의해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때때로 유물 공제 때문에 증여에 대해 자본이득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

1) 사망시 재산의 평가

사망시의 재산이 평가되는 방법은, 그리고 이용 가능한 공제는 아래와 같이 다루어진다¹⁰⁾. 배제된 재산의 이전은 사망시의 재산을 평가하는 데에서 제외된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배제된 재산은 다음의 두 가지 경우이다.

- 외국에 있는 재산의 소유주가 영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
- 위탁기금에 있는 복귀 재산(수입에 대한 현재의 수익자의 권리가 만기되었을 때, 그 자본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생명보험정책과 관계없이, 사망시의 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의 가치는 사망보다 앞선다. 사망의 결과에 따른 재산의 가치의 변화들이 계산된다. 예를 들면 증가된 생명보험정책의 가치와 사망한 이의 개인적인 자질에 의존한 신용의 가치의 하락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합리적인 장래 비용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진다. 해외재산의 경우, 재산가치의 5%로 해외재산의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진다.

10) 면세의 이용 가능성은 '3.면세되는 이전'부분을 참조.

2) 사망시에 이전된 시세 평가된 유가증권과 토지

사망시의 재산이 시세 평가된 유가증권을 포함할 경우, 그리고 그것들이 사망 이후 12개월 이내에 대리인에 의해 팔릴 경우, 지출이전의 총판매수익은 사망시의 가치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수정된 가치는 사망후 12개월 이내에 거래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위탁증권(quoted securities)이 포함된다. 만약 재산이 사망 이후 4년 내에 대리인에 의해 팔린 토지를 포함한다면, 지출이 있기 전 총판매수익에 비교된 가치의 하락에 대해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3) 관련재산

만약 자산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고 그 부분이 남편 또는 아내에 의해 소유된다면, 또는 자선단체, 정당, 또는 국가기관에 자산의 일부를 면세이전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여전히 그 기관들에 의해 소유되거나, 앞선 5년 동안 소유되어왔다면, 관련재산조항이 적용된다. 관련재산조항들은 주로 시세가 평가되지 않은 지분과, 연합적으로 소유된 자유보유권 재산 또는 토지임차권 재산의 이전가치와 관련된다.

만약 관련재산이 그것이 관련되지 않았을 때의 재산의 가치보다 높은 가치를 생산한다면, 관련재산부분의 가치는 모든 재산의 총가치에 적절한 부분으로서 취해질 것이다. 만약 관련재산이 사망 이후 3년 내에 연고가 없는 이에게 팔린다면, 사망시의 세금이 관련 재산의 관련되지 않았을 때의 가치를 사용하여 다시 계산된다.

4) 생명보험정책

생명보험계약의 가치는 이전이 생애 동안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기부자의 사망시에 이루어졌는지에 달려 있다. 생애 동안 이전된 생명보험계약은 지불된 양도가치와 보험료 이상으로 가치 평가된다. 때때로 그것은 계약이라기보다는 가치의 이전인 계약 보험료이다. 그러한 경우 각각의 보험료 지불은 그것이 이미 수입외의 증여 또는 작은 증여로서 면세되지 않았다면 또는 매년의 면세 때문이 아니라면, 잠재적 면세 이전이 될

것이다.

사망시에 한 개인의 삶을 대가로 취득되는 생명보험계약 만기 가치는 그것이 생애 동안 다른 이에게 할당되지 않는다면, 또는 그것이 누군가의 이익으로 위해 기금으로 쓰이지 않는다면, 그의 재산에 포함될 것이다.

다. 사업재산공제와 농업재산공제

사업재산공제는, 기업의 종류와 소유의 기간에 따라 어떠한 조건이 만족된다면, 기업재산의 이전을 가치평가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1992년 3월 10일 이후의 이전과, 죽은 날짜 이후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앞선 이전에 대한 세금의 재계산에 대해, 공제는 다음의 비율로 이루어진다.

- 기업 또는 기업의 주식(파트너십의 지분을 포함) 100%
- 시세 평가되지 않은 주식 이외의 이전 100%
- 시세 평가된 회사의 지배 주식 이외의 이전(관련 재산 주식을 통한 통제를 포함) 50%
- 기업에서 사용된 토지, 건물, 기계, 또는 공장 50%

AIM의 지분은 시세가 평가되지 않은 지분으로서 다루어진다. 시세가 평가된 지분 이건 시세가 평가되지 않은 지분이건, 만약 회사의 사업이 다음 단락에 나오는 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공제는 불가능하다.

이전된 재산은 보통 앞선 2년 동안 기부자에 의해 소유되었어야 한다. 1996년 4월 6일 이전의 시세가 평가되지 않은 주식 이외의 이전에 대해서 기부자는 지분권의 25% 이상을 100%의 비율의 공제를 얻기 위한 이전이 있기 전 2년 동안 소유할 필요가 있다. 사업이 주식과 지분을 다루거나, 토지와 건물을 또는 채권 투자를 다루는 것으로

구성된 경우 사업재산 공제는 이용할 수 없다. 공제는 요구 없이 자동적으로 적용되고 농업재산공제 이후에 주어진다.

농업재산공제는 농업재산의 이전이 다양한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이용할 수 있다. 농업재산은 농업용 토지 또는 목장, 가축이나 물고기를 기르기 위해 사용되는 산림지와 건물들(산림지와 건물들의 점유가 농업용 토지의 부수적인 것인 경우), 그리고 집, 농업용 토지에 종속된 농장건물과 농장집이다. 사업재산공제와 같이, 공제율은 1992년 3월 10일 이후에 이전(transfer)과 사망 날짜 이후에 사망에 따른 사전의 이전에 대한 세금의 모든 재계산에 대해서 100% 또는 50% 증가되었다. 그러한 공제는 유일하게 농업재산의 가치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농업재산에 대해 담보된 부채의 가치는 공제되어야 한다.

농업재산은 이전의 시점에서 반드시 이전이 있기 전 2년 동안 농업을 위해 기부자에 의해 소유되었어야 하거나, 앞선 7년 동안 기부자에 의해 소유되거나, 그 또는 그 밖의 사람들에 의해 그러한 기간 동안 농업을 위해 점유되었어야 한다. 이것은 농업투자재산에 공제가 주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어떠한 환경에서 이러한 규범들은 만약 이전된 재산이 다른 농업재산을 위한 대체로서 받아들여진다면 수정된다.

공제는 농업재산 그 자체의 이전에 대해서도, 그리고 농업회사의 지배주식 이외의 이전에 대해서도 이용될 수 있다. 공제는 기증자가 양도이전에 바로 점유자가 없는 재산에 대한 인수, 또는 다음 24개월 이내에 점유자가 없는 소유권을 획득한 재산에 대해 100%의 비율을 적용한다. 또한 재산이 점유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점유자가 없는 소유물의 가격으로 평가받을 경우 100%의 비율로 공제된다. 다른 임차된 농업 재산에 있어 공제는 임대가 1995년 9월 1일 이후에 착수된 경우 이전재산의 100%이다. 그리고 그 날짜 이전에 임대된 재산 이전의 50%이다. 기부자가 효과적으로 1981년 3월 10일 이전의 재산에 있는 그의 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조항들은 임차된 농업 재산에 100%의 비율로 공제가 요구되는 것을 가능케 한다.

농업재산이 사업재산공제에 대한 조건들을 만족시킬 경우, 농업재산공제가 우선 주어지고 사업재산공제는 비농업적 가치에 근거해서 주어진다. 사업재산공제와 같이 농업재산공제는 요구 없이 주어진다.

1) 판매에 대한 구속력 있는 계약

만약 재산이 구속력 있는 판매계약에 얽혀 있는 경우 그 재산은 사업 또는 농업공제에 대한 자격이 없다. 그들의 죽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동업자나 회사의 이사진들에 의해 동의된 구매 및 판매는 국세청에 의해 그러한 계약을 한 것으로 고려된다. 그러나 죽은 자의 개인적인 대리인이 판매할 선택권을 가지고, 동업자나 이사진들이 구매할 선택권을 가지는 이중 선택의 동의는 그렇지 아니하다.

2) 7년 이내의 사망에 따르는 생애이전에 대한 세금의 계산

농업과 사업재산의 많은 생애증여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 잠재적으로 면세된다. 그러한 증여는 후에 기부자가 7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 자유재량 위탁으로의 이전과 같은 특정한 시기에 과세되어지는 이전의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기부자가 7년 이내에 사망했기 때문에 세금은 full scale rates에서 다시 계산되어야 한다. 사망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과세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 사업재산과 농업재산 공제는 다음에 한해서 적용될 수 있다.

- 최초의 재산이 이전(transfer)일을 시작으로 기부자의 사망일을 끝으로 하는 기간 동안 기부를 받은 사람에 의해 소유되었다. 만약 한정된 재산의 판매와 다른 재산의 획득 사이에 3년의 기간이 있다면 이러한 조건은 만족된 것으로 간주된다.
- 기부자의 사망에 앞서, 재산은 한정된 사업재산 또는 농업재산이다. 시세가 평가되지 않은 지분이 한정된 사업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기부자의 사망시 그것들은 여전히 시세가 평가되어 있지 말아야 한다.

기부자의 사망 이전에 기부를 받은 자가 사망하는 경우, 위의 두 조건에서의 기간은 증여일에서 기부를 받은 자의 사망일까지이다. 재산의 일부가 매각되는 것처럼, 재산의 일부만이 계속해서 제한되는 경우 적절한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사망일까지의 자산의 가치의 모든 증가가 또한 자본 이득세로부터 면제되므로, 사업재산 또는 농업

재산공제의 100%의 유용성은 재산 계획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다. 왜냐하면, 그것을 적용할 경우 잠재적 면세 생애증여가 이루어 질 때 발생하는 이익에 어떠한 세금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세금제도가 지금처럼 호의적이게 남게 될지는 확실치 않다.

라. 빠른 상속공제(세대생략상속)

기부를 받은 자가 과세이전을 받은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한 경우, 그 이전은 사망시의 그의 자산을 증가시키고, 결국 그의 자산에 이른 이전의 시기에 부과된 것만큼의 세금을 유발한다. 공제는 세대생략 상속이 있는 후 5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에 이루어진다. 이전에 의해 포함된 실질적인 자산을 계속 유지하려는 어떠한 요구도 없다.

과세재산에 대한 총과세액은 보통의 방법으로 계산되고 빠른 상속공제에 의해 줄어든다. 그 공제는 다음의 계산에 의해 도출된다.

$$\frac{\text{앞선 이전의 순수이익}}{\text{앞선 이전의 총액}} \times \text{앞선 이전에 과세된 세금} \times \text{공제 백분율}$$

공제 백분율은 다음과 같다.

<표 VII-2> 빠른 상속에 대한 공제 백분율

증여와 사망 사이의 기간	공제 백분율
1년 이하	100%
1년 이상 2년 이하	80%
2년 이상 3년 이하	60%
3년 이상 4년 이하	40%
4년 이상 5년 이하	20%

빠른 상속공제는 소유에서 발생하는 이익인 위탁재산에 대해 5년 이내에 상속의 변화가 있는 경우 또한 이용 가능하다. 공제율은 빠른 상속공제율과 같다. 기부를 받은 자가 사망시 그에게 주어진 이전이 기부자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이유로 여전히 잠재적 면세이전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기부자가 비록 기부를 받은 자가 사망한 이후이지만, 기부를 받은 지 7년 이내에 기부자가 사망할 수 있다. 그래서 잠재적 면세이전은 기부를 받은 자의 개인적 대리인이 과세자가 되면서 기부자의 재산이 과세대상이 된다. 빠른 상속공제는 그러한 세금을 참고하여 기부를 받은 자의 자산에서 이용될 수 있다.

마. 생존자권 조항

비록 상속의 이전에 대한 세금이 처음의 이전 이후 기부를 받은 자가 5년 내에 사망할 경우 빠른 상속공제에 의해 줄어들지라도, 세금이 전혀 없는 것만큼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기부를 받을 자가 죽은 후 6개월 이상 기부자가 살아 있을 경우 기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하는 계약을 맺는다면 생존자권 조항이 가능해질 것이다. 생존자권 조항은 2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바. 변화하는 재산의 분배

사망시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분배는 그것에 대한 권한들로 인해 아마도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유산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포기될 것이다. 사망 이후 2년 내에 이러한 것이 발생할 경우, 변화 또는 포기 이후 6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통지서가 주어지면, 변화 또는 포기는 가치의 개별적인 이전이 아니다. 이것은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의해 승인되어야 하며, 만약 그것이 그들에 의해 지불될 추가적인 세금으로 인한 것이라면 개인적인 대리인에 의해서도 승인되어야 한다. 상속세는 마치 사망시에 수정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부과될 것이다. 변화가 상속세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자본이득세에도 적용되거나, 변화가 상속세가 아니라 오직 자본이득세에만 적용되는 어떤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

사. 무이자 대출

대출이 무이자로 되는 경우, 어떠한 자본의 이전도 없고, 이자를 수입외의 지출로 간주하는 것이 가능해서 면세된다. 그러나 만약 정해진 기간동안 대출이 이루어지거나 요구에 대응해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대출은 대출액과 상환이 이루어지는 미래의 현가치 사이의 차액과 같은 가치의 이전으로서 다루어진다.

아. 납부기한과 벌금

일반적인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표 VII-3> 상속세 납부기한

4월 6일에서 9월 30일 사이의 생애이전과세	다음해 4월 30일까지
10월 1일에서 4월 5일 사이의 생애이전과세	이전이 이루어진 달의 말일 이후 6개월까지
사망 - 생애이전과세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과 과세대상이 된 잠재적 면세이전에 대한 세금	사망한 달의 말일 이후 6개월까지

그러나 개인적인 대리인은 그들이 유언을 적용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과세의무에 대해 모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심지어 그 시기가 위의 납부일 전이라 할지라도 그러하다.

지불기한이 넘은 세금에 대해 지불해야 할 이자율(또는 초과 지불된 세금에 대해 상환 받을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표 VII-4> 체납세금에 대한 이자율

1999년 6월 3일부터	4.00%
2000년 6월 2일부터	5.00%
2001년 6월 5일부터	4.00%
2001년 6월 11일부터	3.00%

이전이 조건부로 면세되어 세금이 지불되지 않은 경우, 납부일은 과세원인이 발생한 달의 말일 이후 6개월 이내가 된다.

1) 분할납부

세금은 한정된 자산에 대해 10년에 걸쳐 매년 같은 금액으로 분할납부될 수 있다. 이것은 사망시에 자산이 이전되었을 경우에 적용할 수 있고, 또한 기부를 받은 자가 세금을 납부한다면 과세생애이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분할납부에 의한 납부의 선택은 또한 기부를 받은 자가 기부된 재산을 기부자의 사망일까지 소유하고 있는 한에서, 기부자가 증여 이후 7년 이내에 사망하여 과세대상이 된 한정된 자산의 잠재적 과세이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최초의 분할납부는 일반적인 납부일에 과세생애이전에 대해 이루어지고, 사망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세금의 경우에는 사망이 발생한 달의 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다.

분할납부의 선택은 그것이 어디에 위치하던 토지에도 적용되고, 사업이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앞선 사망에 대한 계산에서 제외되어 남겨진 이후 과세대상이 된 목재(timber), 그리고 어떠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시세가 평가되지 않은 지분에도 적용된다. 분할납부는 투자회사의 토지의 경우에도, 지분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두 경우의 이자는 일반적인 납부일 이후에 지불되지 않고 남아있는 총액에 대해 과세되어진다. 그 이자는 각각의 분할 납부에 추가될 것이다. 재산이 매각되면, 미결제의 세금은 즉각적으로 납부되어야 한다.

2) 벌금

납부기한이 넘은 세금에 대한 연체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태만으로 인한 세금손실에 50파운드를 더한 액수까지 또는 사기로 인한 세금 손실의 2배에 50파운드를 더한 액수까지 부과될 수 있다. 세금에 대한 납부의무가 없는 누군가에 의해 제공된 정보가 태만에 대한 것일 경우 최고벌금은 250파운드이고, 사기에 대한 것일 경우 최고벌금은 500파운드이다. 잘못된 것으로 나타난 정보를 정정하는 데 비합리적인 지연이 있는 경우 같은 만큼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득세와 자본이득세에 대한 벌금과 같이, 벌금은 처리된 증여재산에서 줄어들 것이다.

자. 세금납부

위탁 기금에 있는 자산의 이전과 기부자에게 남아 있는 납부의 우선적인 의무를 제외하고 생애이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기부자와 기부를 받는 자는 그들 중 누가 납부할 것인지에 동의해야 하고, 만약 기부자가 납부한다면, 과세이전액은 과세액을 포함해서 계산된다. 자유재량의 위탁인 재산의 생애이전의 경우, 우선적인 납부의무는 위탁을 받는 이에게 생긴다. 사망시 개인적인 대리인은 그들의 손에 들어오는 자산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반면에, 사망시에 부과되는 위탁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는 위탁을 받는 자에게 남겨진다.

7년 이내의 기부자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애이전에 추가적으로 붙는 세금이나, 과세대상이 된 잠재적 면세이전의 경우, 세금을 납부할 우선적인 책임은 기부를 받는 자에게 있다. 개인적인 대리인에게는 기부자가 사망한 달의 말일 이후 12개월 동안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또는 과세액이 기부를 받은 자에 의해 소유되는 증여된 자산의 가치를 초과할 경우에 한해서만 납부의무가 생긴다.

위에서 언급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들도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대개가 세금이 납부일 이후에도 지불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이다. 세금이 국세청에 납부되지 않는 경우 대개 관련된 재산을 차압할 수 있다.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사람은 궁극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일 필요는 없

다. 증여재산의 위탁을 받은 자는 위탁기금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모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을 얻는 다음 사람 또는 위탁기금으로 인해 세금의 의무가 있는 자분을 받는 사람은 관련성이 낮다. 개인적인 대리인은 사망시에 고인의 자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잔여의 유산을 받는 자는 그것들에 대한 이용 가능한 모든 공제를 통해 세금을 허용할 것이다.

차. 보험의 활용

상속세 조항에는 잠재적 납세의무가, 기부자가 7년 이내에 사망하면 추가적인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세금이 부과될 때가 아니라 명백하게 잠재적 면세 이전이 이루어진 시기인 이전의 시기로 알려지지 않은 많은 예들이 있다. 기부자가 기부를 하고 3년 이상 살 경우의 잠재적 납세의무의 감소를 고려하기 위해 일시적인 보험을 기부자의 생애 동안 들 수 있다. 이 경우 기부자의 죽음으로 인해 잠재적 면세 이전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그 세금은 보험으로 처리된다.

4. 정책시사점

영국의 상속세는 자본소득, 저축소득의 일환으로 큰 범주의 자본이득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매년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하여 3억 4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만 소득세의 기본세율과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자산(부동산과 금융자산 포함)이 포함되며 우리나라가 30억원의 한도를 정하고 있는 배우자공제의 경우 영국에서는 아예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앞서서도 지적했지만 영국의 증여는 자본이득세의 과세대상이지만 사망이전 7년간의 증여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다. 이 때도 일정한도의 결혼과 관련된 증여나 그밖의 일상적인 증여(선물)에 대해서는 면제규정을 두고 있다. 요컨대 영국의 상속세는 자본소득세의 보완과세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단지 4%의 유산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상속세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VIII. 개별 소비세제도

역사적으로 개별 소비세(excise duties)는 1643년 시민전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맥주에 대한 과세를 한 데서 시작된다. 현재는 매우 많은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이외에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특정재화에 대해 부과되는 소비세는 세수증대라는 목적 이외에 외부효과(externalities)를 가격에 반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도 강하다. 이는 1990년대 들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환경관련세가 도입되고 강화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관세소비세청(HM Customs and Excise)은 부가가치세 이외에 다양한 소비과세를 책임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국내에서 생산한 특정 물품에 대한 소비과세는 가장 오래된 맥주세로부터 최근 1994년 11월에 도입된 항공여객세까지 다양한 형태로 부과되고 있으며 정부의 주요한 세입원이 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기타소비세 의존도가 더 높은 수준이며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소비세는 판매 시점이 아니라 생산단계에서 과세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1. 콘크리트 제조용 골재세(Aggregates levy)

2000년 3월 예산안에서 예고된 대로 콘크리트 골재세가 2002년 4월 1일부터 도입되었다. 동 세금은 2001년 재정법(Finance Act)에 규정된 바 있다.

과세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골재채취행위로 인한 환경비용(소음, 먼지, 주거환경 악화, 시각적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해 환경세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 둘째, 골재수요 관리와 대체물질 사용을 권장하기 위함이다.

□ 과세범위와 구조는 아래와 같다.

- 영국에서 모래, 자갈, 바위 등을 상업적으로 채취하는 경우 적용하며 12마일 한도의 해저로부터 준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단단계과세로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매입세를 환급받을 수 없으며, 톤당 1.60파운드 과세(0.5톤의 경우 1.60파운드의 반인 0.80파운드를 과세)된다.

<표 VIII-1> 북아일랜드의 골재세 과세

(단위: 파운드)

2003년 4월 1일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	0.32
2004년 4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0.64
2005년 4월 1일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	0.96
2006년 4월 1일부터 207년 3월 31일까지	1.28
2007년 4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1.60

- 수입은 대략 첫째 3억 500만파운드 수준으로 모든 수입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부담금의 0.1% 저감형태로 산업체로 환수되고 새로이 만들어진 지속가능기금(Sustainability Fund) 및 환경사업에 사용되므로 순수한 재정수입의 추가는 아니다.

□ 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 영국에서 상업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자로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등록의 경계(threshold)는 없다.
 - 단독 사업자, 상사, 유한회사, 지방자치단체 당국, 비법인체, 신탁단체 등으로 구분된다.
-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의 의무는 없으나 신고는 필요하다.
 - 석탄, 갈탄, 슬레이트 또는 이판암의 채취와 그 후의 분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고령토, ball clay, 발굴에 따른 흙이나 폐기물

- 신고서에는 상호, 회사주소, 책임자 명, 채취한 물질유형, 채취 물질의 연간 용적 톤 수 등 기재하여야 한다.
- 영국에 거주하지 않는 자의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며, 대리인은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 대리인 업무수행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감면과 공제 규정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 석탄, 철광석, 산업광물의 채취나 시멘트, 석회석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광범위한 감면이 이루어진다.
 - 점토, 흙, 유기물질석탄, 갈탄, 슬레이트, 이판암
 - 채취 후에 다른 골재로부터의 석탄, 갈탄, 슬레이트 또는 이판암의 분리의 결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 공업연소 과정 또는 금속의 용해 또는 제련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폐기물, 예를 들어 공업용 슬래그, 분쇄된 연료재와 주조용 모래
 - 영국 영해 내에서의 석유탐사를 위한 개착, Petroleum Act(1998) 또는 Petroleum (Production) Act(1964)에서 허가된 영국 내에서의 토지굴착
 - New Roads and Street Works Act(1991), Roads (Northern Ireland) Order(1993) 또는 Street Works (Northern Ireland) Order(1995) 아래 수행되는 공익 설비업무로부터 발생하는 부산물, 예를 들어 설비가스 또는 수도관, 전 화선
- 다음 물질에 대해서는 완전 면세가 이루어진다.
 - 고령토 폐기물
 - 산업용 광물의 채취 후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예를 들어 형석, 나트륨, 염화물, 활석
 - 건축부지, 항행 준설, 간선도로 건설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골재
- 석재, 건축석재, 판석, 슬레이트 등은 비과세된다.
- 콘크리트 골재가 산업 또는 농업과정을 거쳐 수출되는 경우 공제대상이 되며
- 중개자를 통한 판매시 중개자의 최종 이용의 증거제공에 따라 공제 청구가 가능하다.

- 수출의 경우 공제선정 3달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공제가 이루어진다.
 - EU회원국내 수출의 경우 통상수송문서, 거래처의 주문서, 지불증서, 거래보고서, 회사간 거래문서, 판매송장 사본, 보험 또는 화물운송료 세목, 해외골재영수증서 등의 서류 제출
 - 기타 국가로의 수출의 경우 판매계약서, 수출 송장사본, 위탁판매 명세서 등의 추가 서류 제출
- 수입의 경우 영국내 첫 판매시 과세되며
- 거래처가 파산하였을 경우 다음의 조건에 따라 불량대부 공제 요구가 가능하다.
 - 거래처의 지불불능 증명
 - 발행한 계산서 사본
 - 지불증빙 신고서 사본

□ 과세행정과 징수와 관련하여

- 단독과세 형태이나 가능한 한 쓰레기매립과세 및 에너지환경과세 자료를 활용한다.
- 부가가치세를 등록하였다면, 신고는 보통 3달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며 오류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정정이 가능하다.
- 시한내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활동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금의 5% 또는 250파운드의 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고의가 아닌 과실에 대해서는 부과금의 5%에 상응하는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금의 105%에 상응하는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 등록되었거나 등록의 의무가 있는 영국내 비거주자인 납세자가 납세대리인의 임명을 승인받지 않을 경우 10,000파운드의 벌금을 납부한다.

2. 주세(Alcohol tax)

- 맥주는 영국에서 가장 널리 소비되는 주류중의 하나로 영국내 주류소비의 47%에 달하며, 2002~2003년의 맥주세는 약 29억파운드 이상에 달하였고 총주세 수령액의

40%에 달한다.

□ 맥주와 화주(spirits)는 알코올 도수에 따라 과세된다.

- 포도주, 과일주 등은 한 병 등 특정한 방식에 따라 과세되며 2003년 4월 13일 이후 새로운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표 VIII-2> 주세율

	Rate per litre of pure alcohol
Spirits	19.56
Spirits-based RTDs	19.56
Wine and made-wine: Exceeding 22% abv	19.56
	Rate per hectolitre per cent of alcohol
Beer	12.22
Cider and Perry: 1.2% ~7.5%	25.61
Cider and Perry: 7.5% ~8.5%	38.43
Sparkling Cider and Perry: 1.2% ~5.5%	25.61
Sparkling Cider and Perry: 5.5% ~8.5%	166.70
Wine and made-wine: 1.2% ~4%	48.91
Wine and made-wine: 4%~5.5%	67.25
Wine and made-wine: 5.5% ~15%	158.69
Wine and made-wine: 15% ~22%	211.58
Sparkling wine and made-wine: 5.5% ~8.5%	166.70
Sparkling wine and made-wine: 8.5% ~15%	220.54

□ 소규모 양조장 공제규정에 따라

- 1993년 이전까지 맥주는 모두 같은 세율로 적용되었으나, 1993년부터는 최종 생산품의 알콜 함유량에 따라 계산된다.

- 대규모 양조장에 비해 소규모 양조장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저조함에 따라 도입된 규정으로
 - 연간 생산량이 5,000헥토리터 미만일 경우 주 맥주세율의 절반의 할인세율을 적용한다.
 - 연간 생산량이 5,000~30,000헥토리터일 경우 생산수준에 따라 할인세율을 적용한다.

3. 항공여객세 (Air passenger duty)

- 항공여객세(1994년 11월 도입)는 영국공항으로부터 출국하는 승객에 대해 과세된다.
 - 2001년 4월 1일 현재 표준세율
 - 10파운드 유럽국가(유럽연합과 스위스)와 부속령
 - 40파운드 기타 목적지
 - 저세율(최저등급여객)
 - 5파운드 유럽국가(유럽연합과 스위스)와 부속령
 - 20파운드 기타 목적지
- 과세대상 항공기
 - 10톤 이하 또는 승객용 좌석이 20개 이하인 소형 항공기의 경우 면제되며
 - 소형 항공기의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민간 항공기가 과세대상이다.
 - 등급 또는 좌석배열이 하나인 항공기의 경우 모든 승객은 저세율(5파운드 또는 20파운드), 고급좌석의 경우 표준세율(10파운드 또는 40파운드), 최저등급여객은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 다음의 경우 항공여객세가 면제된다.
 - 승무원, 객실안내원, 유지 보수 및 보안업무 수행자, 위생 및 조리사
 - 2세 미만의 어린아이의 경우 면제되나, 유아용 좌석으로 구매되었을 경우 과세

- 무임승차 여객, 단거리(60분 미만) 비행객, 군용 항공기, NATO 군사령부 항공기

□ 영국공항으로부터 과세대상 승객을 수송하기 위해 항공기를 운행하는 경우 7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 28일 이내에 등록자에게 등록증명서 송달

- 등록번호(5 digits)
- 이름 및 사업자명
- 등록 유효일 및 주소

□ 벌금 및 이자

- 업무에 대한 변화사항 신고 불이행 및 회계대리인 임명의 불이행시 각각의 위반에 대해 250파운드의 고정 벌금을 내야 하며

- 250파운드 또는 과세액의 5%의 조정 벌금이 부과된다.

- 납기일 내에 완전납부 불이행시에는 250파운드 + 각각의 날짜당 20파운드의 벌금이 추가된다.

4. 에너지환경세(Climature change levy)

□ 환경적 목표와 행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환경세를 부과(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 납세순응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소비시점이 아니라 산업체나 상업목적 소비자에게 공급될 때 부과하는 단일단계 과세형식으로

- 납세 대상품목의 공급자는 관세소비청에 등록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농, 산, 상업 또는 행정목적으로 발전, 난방, 동력을 공급하는 경우 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된다.

□ 세금부과대상 상품으로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 전기(Electricity)
- 천연가스(Natural gas as supplied by a gas utility)
- 석유류(Petroleum and hydrocarbon gas in a liquid state)
- 석탄류(Coal and lignite)
- 코우크스(Coke, and semi-coke of coal or lignite; and Petroleum coke)

□ 그러나 다음의 상품은 비과세 대상이다.

- 기름(Oil)
- 자동차연료(Road fuel gas)
- 열(Heat)
- 증기(Steam)
- 톤 당 15.00파운드 이하 저가치 고체연료 등
- 그 외의 규칙으로 규정된 폐기물

□ 세율은 에너지의 명목단위당 특정 세율로 적용된다.

- 각 유형별 세율체계가 상이하고
- 세율은 에너지의 내용에 기초하고 가스와 전기는 킬로와트-시간 (kw/h), 그리고 석유가스와 기타 품목은 킬로그램으로 과세된다.

<표 VIII-3> 에너지환경세율

(단위: 파운드)

과세대상	세율
전력	킬로와트-시간당 0.0043
가스(Gas)	킬로와트-시간당 0.0015
액화석유가스류	킬로그램당 0.0096
기타	킬로그램당 0.0117

□ 감면과 공제

- 소규모 공급자, 자선단체를 포함한 가정용 품목은 에너지환경세에서 제외되고
- 원예생산자의 경우 완전세율의 절반으로 과세하며, 에너지 집약적 사용자는 완전세율의 20%인 저세율로 과세된다.
- 영국에서 소비하지 않는 경우 및 전기 또는 가스 이외의 과세품목의 재판매의 경우 면제대상이 된다.
- 전기 이외의 과세품목의 생산용
- 연료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 재생가능 원료로부터 발생하는 전기
- 수송용의 경우도 감면이 이루어진다.

□ 과세상품을 수입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거나 자신이 최종소비자인 영국내 거주자는 에너지환경세 목적으로 등록의무가 있다.

- 비EU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세율에 상관없이 관세소비세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 공급이후 14일 이내에 부가가치세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전기와 가스의 공급은 공급 이후 15주(소규모 소비자) 또는 6주(기타) 이전에 에너지환경세 회계문서(CCLAD)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전기 또는 가스의 공급량
 - 공급시기
 - 공급자명 및 주소
 - 거래처명 및 주소
 - 공급자의 조회번호(reference number)
 - 제출날짜

5. 도박세(Betting and gambling duties)

□ 도박 또는 게임과 관련한 세금에는 다음의 6종류가 있다.

- 복권과 빙고는 종가세 형태이며 상금구조에 따라 달리 정해진다.

- 오락기계면허세는 기계설치에 부과되고, 양도가 가능하다.
- 도박세는 이윤에 기초하여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 세율은 아래와 같다.

- 복권세(Lottery duty) - 전체 매출총액의 12%
- 일반도박세(General betting duty) - 순배팅수입의 15%
- 풀도박세(Pool betting duty) - 순배팅수입의 15%
- 빙고세(Bingo duty) - 경기자의 배팅금액 10% 더하기 매주 상금의 1/9

□ 일반도박세(General betting duty)의 경우

- 장외 경마(off-course bets)에 대해서도 과세되며, 3년 동안 신고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 고정 확률 내기(fixed odds bets) 15%의 세율
 - hedged or laid-off bets
 - spread bets-financial spread bets 3%의 세율, 그 외의 모든 spread bets은 10%의 세율
 - 브로커를 통한 내기
 - 에이전트로 활동하는 마권업자의 배팅
 - Horserace Totalisator Board에 의해 제공되는 설비의 수입으로서 후원되는 풀도박
 - 경기일에 공인된 경마장을 관리하는 총액 계산기의 수단으로서 풀도박
 - free bets
- 장내 경마(on-course bets)에 대해서는 공제가 이루어진다.
 - 편터가 자리에 참석했으며 그 자리에서 배팅을 한다고 전제한 on-course 마권업자에 의한 배팅이 공제대상이며, 대신에 그 자리에 참가하지 않은 편터를 대신한 어느 누군가에 의한 배팅은 포함하지 않는다.
 - on-course 마권업자와 off-course 마권업자에 의해 행해지는 장애물 경기 및 마권업자로 활동하는 도박브로커에 의해 행해지는 장애물경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폴도박세(Pool betting duty)의 경우

- Horserace Totalisator Board 에 의해 주관되는 폴도박,
- 총액 계산기의 수입으로서 운영되는 공인된 경마장에서 이루어지는 배팅에 과세된다.
- 공동체 수익에 대해서는 일정 공제(주사위나 복권은 도박에서 제외)가 이루어진다.
- 폴도박세 신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다.
 - 순배팅수입 계산
 - 과세기간 동안의 순배팅수입에 대한 납부세액
 - 이전 신고서에서의 오차액
 - 총 폴도박세 납부액
- 평가 및 명령에 대한 재고를 위해서는 평가 45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빙고세

- 배팅금액 또는 상금이 하루 500파운드를 초과하지 않거나 일주에 1,500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 게임장에 대해서는 면제된다.
 - 카드지불로서 한 게임당 총취득액이 100파운드(북아일랜드의 경우 30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 오락장
 - 상금이 15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는 오락장

□ 크레인그랩 기계, 어린이용 탈 것, 탁자축구게임, 스누커 및 당구, 자동판매기, 주크 박스는 오락기계면허세가 면제된다.

- 한번 경기하는 데 2펜니 미만인 오락기계
- 10펜스 미만의 소규모 상금게임기
- 한번 경기하는 데 50펜스 미만인 비디오기계
- 한번 경기하는 데 50펜스 미만이며, 상금을 제공하지 않는 핀볼 및 비디오 기계
- 자선단체의 오락용으로 제공된 오락기계

□ 오락기계면허세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Category A
 - 한번 경기하는 데 50펜스 이상인 비디오기계, 핀볼기계, 퀴즈기계 등
- Category B
 - 한번 경기하는 데 10펜스 이상으로 소규모 상금 게임기로 상금이 8파운드가 넘지 않는 경우
 - 중규모 상금게임기로 상금이 8파운드에서 25파운드 사이며 한번 경기에 5펜스 이하 비용인 경우
 - 잭팟게임기로 상금은 25파운드 이상 한번 경기 비용은 5펜스 이하
- Category C
 - 중규모 상금게임기로 상금이 8파운드에서 25파운드 사이이며 한번 경기에 5펜스 이상 비용인 경우
- Category D
 - 잭팟게임기로 상금은 25파운드 이상, 한번 경기 비용은 5펜스에서 10 펜스 사이인 경우
- Category E
 - 기타 기계와 잭팟게임기로 상금은 25파운드 이상, 한번 경기 비용이 10펜스 이상인 경우

<표 VIII-4> 영업월수와 유형별 세금

(단위: 파운드)

영업월수	Category A	Category B	Category C	Category D	Category E
1	30	80	80	165	225
2	50	150	160	320	435
3	75	220	235	470	630
4	95	285	305	605	820
5	120	345	370	735	990
6	140	400	430	855	1155
7	160	450	485	965	1300
8	185	500	535	1065	1440
9	205	540	585	1155	1560
10	225	580	625	1240	1675
11	240	615	665	1310	1775
12	250	645	695	1375	1860

□ 게임세(Gaming duty)

- 도박법(Gaming Act-1968) 규정하의 도박 면허를 취득한 자, 과세대상 도박을 위한 장소를 제공한 자는 게임의 제공시점의 14일 이전에 등록의 의무가 있다.
- 시한내 등록의 불이행시 총도박이윤의 40%를 도박세로 과세한다.
- Pontoon, Big six, Crown and Anchor, Punto Banco,Blackjack, Faro, French Roulette, Boule, Faro Bank, American Roulette, Sic Bo, Chemin de Fer, Hazard, Trente et Quarante, Chuck-a-Luck, Poker Dice, Vingt-et-un, Wheel of Fortune, Casino Stud Poker, Super Pan 9, Three Card Poker 등의 게임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진다.
- 게임세(Gaming duty)는 6개월마다 신고 및 과세가 이루어지며 2002년 4월 1일부

터 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표 VIII-5> 도박세 과세

처음 게임수입의 £488,000	2.5%
그 다음 수입 £1,083,500	12.5%
그 다음 수입 £1,083,500	20%
그 다음 수입 £1,897,000	30%
그 이상	40%

6. 보험 프리미엄세 (Insurance premium tax)

□ 보험 프리미엄세는 일반적인 보험료에 붙는 세금으로 표준세율은 5%, 여행보험과 자동차보험, 전기기기 등에는 높은 세율인 17.5%로 부과된다.

- 장기보험의 경우 재보험과 마찬가지로 면제되며
- 신고 불이행시 관련세액의 5% 또는 250파운드의 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거래 중지에도 대해서도 30일 이내에 신고 불이행시 250파운드 벌금이 부과된다.

□ 배경

- 이 세금은 1994년 10월 1일에 도입되었고 1997년 3월 31일까지 단일 세율 2.5% 적용되었으며
- 1997년 4월 1일 세율이 4%로 인상되고 높은 세율 17.5%가 도입되었다.
- 1999년 7월 1일부터 표준세율이 5%로 인상되었다.

□ 다음의 공제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 재보험
- 생명보험, 건강보험 및 의료보험을 제외한 기타 장기만기의 보험
- 상업용 항공기와 관련보험

- 상업용 선박과 관련보험
- 구조선 및 구조선 설비
- 국제 철도회전주식 및 관련 보험
- 수출금융
- 국제적으로 통행하는 상업용 상품
- 영국의외 보험금
- Channel Tunnel

□ 보험금관리 유형에 따른 보험 프리미엄세는

- 'Cost plus' schemes으로 운영된다.
 - 사용자가 치료수익으로 종업원에게 지불하는 총액으로서 치료비용 더하기 운영 비용
 - 신탁자금 또는 보험계약에 의해 운영
- 자가보험에 의한 보험재정에 대해서 계약 발생시 보험프리미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공제조항이 있는 보험증권(Deductibles)에 대해서는 할인된 프리미엄이 적용되며
- 수의적 보유초과금액(Voluntary excess)
 - 보유초과금액에 대한 독지가의 경우 저프리미엄의 급부 수령
- 전문적 보상금(Professional indemnity funds)
 - 보험계약이 없는 경우 보험프리미엄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 재무기구(Financial instruments)
- 노변 원조보험(Roadside assistance insurance)
- 공동 보험업자(Mutual insurers)
- 서비스 계약(Service contracts)
- 보증(Warranties)
- 보증서(Guarantees)

7. 쓰레기 매립세(Landfill tax)

□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하는 경우 landfill tax를 납부해야 한다.

- 과세대상 처분의 14일 이내에 쓰레기 매립세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증명번호, 제출일, 등록번호, 거래처 기록(이름 및 주소), 적용세율, 납부총액 기록
- 두 종류의 세율이 존재한다.
 - 무게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며 낮은 세율과 높은 세율의 두 종류
 - 낮은 세율과 표준세율
- 낮은 세율은 Landfill Tax (Qualifying Material) Order 1996에 올라 있는 비활성화(inactive/ inertia) 매립지의 경우에 적용된다.

<표 VIII-6> 쓰레기 매립세 표준세율

2000년 4월 1일부터 2001년 3월 31일까지	톤당 1펜스
2001년 4월 1일부터 2002년 3월 31일까지	톤당 2펜스
2002년 4월 1일부터 2003년 3월 31일까지	톤당 3펜스
2003년 4월 1일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	톤당 4펜스
2004년 4월 1일부터	톤당 5펜스

- 1999년 정부는 예산법 통과시 국회의 동의하에 2004년까지 매년 세율 인상계획을 발표하였다.

□ 다음의 경우 공제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 수로 및 항구, 독, 운하의 준설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
- 채광과 채석
- 애완동물 묘지
- 오염지(Contaminated land)
 - 다른 항목과는 달리 세관에 증명서 제출

- US forces
- 쓰레기 매립지의 복구(Restoration of landfill sites)
 - 폐기물 관리면허/업무계획, 환경감시자와의 조화 및 복구계약 등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 채석장의 흙(Filling of quarries)

8. 석유세(Petrol tax)

Biodiesel과 Bioblend에 과세된다.

- 요리용 기름 폐기물 또는 바이오 mass로부터 생산되는 액화연료(Biodiesel)
 - 에스테르 중량이 적어도 96.5% 함유
 - 유황 함유량이 0.005% 초과하지 않는 연료
 - 리터당 20펜스 세율
 - 난방연료 및 수출용으로 보급할 경우 소비세 대상제외
- 믹싱으로 생산된 혼합가스(Bioblend)
 - 탄화수소 오일에 대한 소비세를 납부하지 않는 중유

자동차연료를 포함한 석유류에 소비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매년 경제·사회·환경 변수를 감안하여 재무장관이 예산편성시 결정한다.

□ 2003년 4월 예산을 통해 책정된 최근 세율은 다음과 같다.

<표 Ⅷ-7> 석유세율(2003년 4월)

경유	리터당 펜스
Ultra-low sulphur petrol (ULSP)	45.82
Unleaded petrol which is not ULSP	48.82
Light oil (ULSP, 무연석유, 항공기연료와 난방연료 제외)	54.68
Aviation gasoline (AVGAS)	27.34
Light oil delivered to an approved person for use as furnace fuel	3.82
중유	리터당 펜스
Ultra-low sulphur diesel (ULSD)	45.82
Heavy oil which is not ULSD	51.82
Marked gas oil and ULSD oil not for road fuel use	4.22
Fuel oil	3.82
연료대체재	리터당 펜스
Biodiesel for use as a road fuel	25.82
자동차 연료	kg당 펜스
Gas for use as road fuel	9.00

□ 2003년 10월 1일부터 적용될 세율(Hydrocarbon oils)은 다음과 같다.

<표 VIII-8> 석유세율(2003년 10월 적용)

경유	리터당 펜스
Ultra-low sulphur petrol (ULSP)	47.10
Light oil (ULSP, 무연석유, 항공기연료와 난방연료 제외)	56.20
Unleaded petrol which is not ULSP	50.19
Aviation gasoline (AVGAS)	28.10
중유	리터당 펜스
Ultra-low sulphur diesel (ULSD)	47.10
Heavy oil which is not ULSD	53.27
연료대체재	리터당 펜스
Biodiesel	27.10

□ 환경오염 저감에 대해 인센티브 시스템이 도입(2003년) 되었다.

- 경유(Sulphur-free petrol)의 경우
 - ultra-low sulphur petrol의 비율(rate)보다 낮을 경우 리터당 0.5페니
- 중유(Sulphur-free diesel)의 경우
 - ultra-low sulphur diesel의 비율보다 낮을 경우 리터당 0.5페니
- 연료대체재(Bioethanol for road fuel use)의 경우
 - sulphur free petrol의 비율보다 낮을 경우 리터당 20펜스

9. 담배세(Cigarette tax)

□ 시가, 말아피우는 담배, 씹는 담배 등에 담배세가 종량세로 부과된다.

- 켈련의 경우 여기에 종가세 세금이 추가된다.

□ 2003년 4월 9일 저녁 6시 이후 세율은 다음과 같다.

- 켈련(Cigarettes)
 - 권장소비자가격에 22%에 더해 96.88파운드/천개비당
- 시가(Cigars)
 - 141.10파운드/kilogram당
- 엽켈련(Hand-rolling tobacco)
 - 101.42파운드/kilogram당
- 기타 피우는 담배와 씹는 담배(Other smoking tobacco and chewing tobacco)
 - 62.03파운드/kilogram당

10. 자동차세(Vehicle excise duty)

□ 2003년 5월 1일부터 가장 오염물질 배출이 작은 새로운 자동차세 구간(AAA)이 도입되었다.

- 그밖에 모든 자동차와 밴의 자동차세는 5파운드씩 인상
- 저오염버스, 저오염 트럭, 무역면허트레일러 등의 세금도 5파운드 인상
- 대형트럭 등은 7파운드 인상

<표 VIII-9> 자동차세율과 구간(2001년 3월 1일 이후 등록 차량)

(단위: 파운드)

VED 구간	CO ₂ 배출(g/km)	대안연료	휘발유	경유
AAA	~100	55	65	75
AA	101~120	65	75	85
A	121~150	95	105	115
B	151~165	115	125	135
C	166~185	135	145	155
D	186~	155	160	165

주: 2001년 3월 1일 이전 등록 차량의 경우는 1549cc 이하는 110파운드, 그 이상은 165파운드를 부과.
 자료: HM Treasury, Budget Report 2003.

11. 정책시사점

영국의 개별 소비세제도는 석유세, 담배세, 자동차세, 주세를 제외하면 최근 환경을 감안해서 신설된 제도들이 많이 눈에 띈다. 실제 세수효과보다도 환경에 대한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려는 소위 피구세(Pigovian tax)적인 요소가 많다. 우리와 같은 일반과세의 역진성을 보완하는 특별소비세 형태는 존재하지 않으며 주세를 알코올의 도수에 따른 차별, 자동차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차별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환경세를 도입하자는 논의만 무성하지만 실제 주세나 교통세의 경우 외부효과에 대한 차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 영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각종 환경관련 개별 소비세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IX. 지방세제도

1. 카운슬세(Council tax)¹¹⁾

가. 도입배경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주거레이트제도가 폐지되고 주민부담금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1990년 3월 31일 런던에서는 최악의 폭동 사태가 발생했다. 400명 이상의 데모 군중과 경찰관들이 부상을 입었고, 341명이 습격·방화·약탈죄로 체포되었다. 그 사건의 도화선이 된 것은 그 뒷날인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부담금제도였다. 주민부담금제도는 인두세(poll tax)로서 종전의 재산세인 레이트(rates)가 부동산 소유자와 임차자에게 가구당 기준으로 과세되어 지방행정 수요와 세부담의 연계성이 없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18세 이상의 성인들에 대해 빈부를 불문하고 단일세율(flat rate)로 과세되었다. 국민들은 이를 재산 보유 정도의 차이를 고려함이 없는 불공평한 세금으로 생각하였다. 이 사건의 파장으로 납세거부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마침내 대처정권이 붕괴되고 메이저정권이 탄생하게 되었다.

대처 수상의 사임 후 1990년 11월에 새롭게 취임한 보수당의 존 메이저(John Major) 수상은 즉시 사회적 불만의 대상이 된 주민부담금제도를 다른 형태의 주민세로 변화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당시 환경성 장관(지방자치 관련 문제를 관장하는 부서)은 주민부담금제도의 불합리성을 인식하고 곧이어 지방재정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하는 정책자문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새로운 지방세(A New Tax for Local Government)』라는 제목의 이 정책보고서에서는 지방세제도 개편을 포함하여 지방재정 전반에 걸치는 검토와 계획안이 담겨 있었다.

11) 이 부분은 임성일·최영출(2001)을 주로 참고하였음.

그후 1991년 4월 영국 정부는 1993년부터 주민부담금제도가 폐지되고 그대신 새로운 카운슬세(Council Tax)가 도입될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이러한 정부의 발표는 그대로 실시되었다. 1993년부터 영국의 유일한 지방세로 자리잡은 카운슬세는 노동당 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계속해서 확고한 지방세의 위치를 굳히고 있다.

메이저 정부에 의해 1993년부터 시행된 카운슬세는 종래의 주거레이트와 주민부담금제도를 절충한 것으로 가구별 주택의 자산 가치와 18세 이상의 성인수를 기초로 부과되는 영국의 유일한 지방세로서 지방세입 예산의 약 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카운슬세 과세에 한도(rate-capping)를 설정하여 표준지출평가(Standard Spending Assessment)의 1.12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카운슬세가 지방세로 처음 도입된 1993/94 회계연도중 잉글랜드의 총카운슬세 수입은 89.11억파운드이며, 이 중에서 각종 조세감면 등을 제외하면 실제 카운슬세 수입은 70.47억파운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운슬세가 도입된 이후 총징수액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왔으며, 주민부담금과 비교해서 가구별 지방세 부담은 카운슬세의 경우 더 많아졌다.

나. 카운슬세의 특징

카운슬세는 종래의 주거레이트와 주민부담금을 절충시킨 것으로 각 가구별로 주택의 자산가치와 주택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성인 수를 기초로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카운슬세의 징수액은 주택의 평가액이 속하는 등급(valuation band)과 주택에 거주하는 성인의 수, 그리고 조세감면 내지 할인의 대상 여부 이들 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조세 성격면에서 카운슬세는 재산과세적 특성을 기본으로 하면서 부분적으로 인두세와 소득과세적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러나 세금정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자산 가치이므로 어떤 면에서 카운슬세의 도입은 종전 레이트제도로의 복귀를 뜻하기도 한다.

1)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카운슬세의 과세대상은 주택의 자산가치와 해당주택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성인 수이다. 주택의 자산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점에서는 레이트와 비슷하고 성인 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점에서는 주민부담금과 비슷하다. 여기서 주택이라 함은 단독주택, 아파트, 방갈로, 2층 아파트(maisonette) 등 최소한 부분적이거나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부속건물이라도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것은 별개의 주택으로 본다. 이동식 주택(mobile home)과 선박주택(houseboat)도 특정인의 주된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본다. 2가구 이상이 취사 및 세탁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시설은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카운슬세의 과표산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인 수가 아니라 자산가치이다. 다시 말해서, 카운슬세의 인두세적 성격은 기본적으로 자산가치에 의존하고 있다. 카운슬세는 각 주거단위(dwelling), 즉 가구별로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통상 주택의 거주자가 된다. 이때 거주자는 보통 집주인이거나 주택을 임대하는 임차인이 된다. 여러 사람이 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이면 보통 가장이 부담하지만, 가족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거주하는 성인들이 공동으로 카운슬세를 분담한다. 카운슬세는 주택 1구당 기준으로 부과한다. 주택이라 함은 일반주택, 방갈로, 아파트, 연립아파트(maisonette), 이동주택(mobile home), 선상주택(houseboat) 등으로서 소유 또는 임차 여부를 불문한다.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 ① 주택의 소유자로서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resident freeholder)
- ② 주택의 임차자로서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resident leaseholder)
- ③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의 임차인(tenant)
- ④ 허가를 받아 거주하는 자(resident licensee)
- ⑤ 거주자(resident)
- ⑥ 거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

여기서 거주자(resident)라 함은 18세 이상으로서 유일한 주택 또는 주된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주로 납세의무자가 되는 사람들은 소유자인 거주자와 임차자인 거주자이다. 주택이 빈집이거나 어느 누구의 주된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카운슬세가 도입되면서 종전 주민부담금제도하에서 약 4,100만명의 성인에게 부과되던 것이 약 2,200만가구로 그 과세대상이 변화하였다.

가) 거주자가 납세의무자가 아닌 경우

아래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거주자가 아닌 소유자(owner)가 카운슬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 ① 2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가구별로 임대료를 각각 따로 내는 주택과 취사 및 세탁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합숙소(hostel), 단칸 아파트.bed-sit) 등의 주택
- ② 각종 요양소
- ③ 수도원·수녀원 등 각종 종교 시설
- ④ 소유자의 주된 주택(main home)은 아니지만, 소유자가 고용하고 있는 자의 주된 주택
- ⑤ 목사의 사택, 성공회(Church of England)의 성직자가 소유·사용하고 있는 사택은 교회가 납세의무자임
- ⑥ 이민 및 망명법(Immigration and Asylum Act 1999)에 의한 망명자 수용 시설 위와 같은 주택에 대해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납세의무가 없다.

나) 하나의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특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에 대해 2인 이상이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공동소유자나 공동임차자는 공동으로 납세의무를 진다. 부부가 같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동 납세의무자 중 1인이 정신질환이 심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다) 공동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

지방자치단체(council)는 공동 납세의무자 중 1인 또는 일부, 각자에 대해 고지를 한다.

라) 납세의무자의 파악

지방의회는 누가 납세의무를 지게 될 것인지를 묻는 신고서식을 발송한다. 이를 받은 사람들은 그 서식을 작성하여 반드시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파운드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마) 납세의무자의 결정에 대한 불복

지방의회에서 결정한 납세의무자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의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회신이 없으면 청구인은 평가법원(Valuation Tribunal)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재판 계류중인 경우에도 납세의무는 중지되지 않는다.

2) 비과세·감면혜택 및 가산세

카운슬세에도 종전 레이트나 주민부담금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재분배의 목적을 갖는 조세감면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카운슬세는 주민부담금제도가 학생이나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인색한 조세혜택을 부여한 데 대한 불만을 고려하여 100% 전액을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와 동시에 생활보호대상보다는 조금 더 나은 저소득층들에 대해서도 카운슬세의 일정비율을 환급해 주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이때 환급에 필요한 재원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이나 보조금 형식을 통해서 조달된다.

카운슬세에는 개인의 지위나 상태를 고려하는 할인제도(status discount)가 있다. 대표적으로 전업학생이 이러한 할인대상(25%할인)이 되며 이들은 과세목적상 성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 주택에 어른과 대학생이 같이 생활하는 경우 이 가구에 대해서는 정상 카운슬세액의 75%가 부과된다. 또 빈집이나 제2의 주택(second home)인 경우에도 50% 경감 대상이 된다. 1구의 주택에 3인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세액은 더 늘어나지 않는다. 2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두 번째 주택에 대하여 50%를 감면해 준다. 그밖에도 약 70만호 정도가 공가, 학생용 주거시설, 군용 주거시설 등의 이유로

면세 내지 50%의 감면혜택을 보고 있다.

영국정부는 주민부담금제도를 도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카운슬세의 도입에 따르는 주민의 세부담, 지역간 상대격차문제 등을 완화할 목적으로 카운슬세 잠정조치(council tax transitional scheme)를 마련하고 약 3.4억파운드를 지원하였다. 이 제도의 핵심은 8등급으로 구분된 카운슬세의 각 등급별로 차등적으로 일정액수를 감면해 주는 데 있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카운슬세제의 도입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평가자산(H등급)을 보유하면서 가구 내 성인 수가 적은 세대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경감혜택을 부여하였다. 대체로 보아 카운슬세가 도입되면서 저소득층과 가구 내 성인 수가 적은 그룹이 상대적으로 조세혜택을 보게 되었다.

가) 거주자 수의 계산시 제외되는 자

① 견습생(apprentices)

국립직업자격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Vocational Qualifications)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견습중인 자는 거주자 수를 계산하는 데에서 제외된다. 견습생으로서의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급이 160파운드 이내이어야 한다.

② 청년 피훈련자(youth training trainees)

청년훈련계획(Youth Training Scheme)에 따라 훈련을 받고 있는 25세 이하의 청년도 거주자의 수에서 제외된다.

③ 학생(students)

정규 학생(외국인 학생 포함)과 공인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자가 이에 해당된다. 구체적인 학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년 이상 또는 연간 24주 이상의 대학 과정에 출석하는 자와 학기중 주 21시간 이상의 수업을 받는 자
- 자격 취득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주당 12시간 이상 수업을 받는 20세 이하인 자

④ 학생 간호원(student nurses)

대학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 간호원도 거주자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입원 환자(resident hospital patients)

병원이 입원한 환자의 유일한 또는 주된 주거지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수를 계산하는

데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단기간 입원하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소재지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⑥ 각종 요양기관에 입원중인 자

각종 요양기관에 입원중인 자의 유일한 주거지가 그 요양기관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수에서 제외된다.

⑦ 정신질환자

중증 정신질환자는 거주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치매나 이와 유사한 정신질환 등이 이에 해당된다. 중증 정신질환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

⑧ 숙박업소 등의 체류자

숙박업소(hostel) 또는 구세군이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수용시설이 유일한 또는 주된 주거지인 자

⑨ 성직자 또는 수녀

종교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별도의 소득(종전의 직업으로부터 받는 연금 포함)이 없이 종교단체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성직자 또는 수녀

⑩ 18세 또는 19세인 자

18세 또는 19세인 자로서 정규 학생인 자(고등 교육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18세 또는 19세인 자로서 4월 30일 이후에 졸업을 한 경우에는 그 해의 11월 1일까지는 제외된다.

⑪ 장애인 보호자(carers)

장애인과 거주하며 장애인 수당 또는 연금을 받는 장애인을 주평균 35시간 이상 보살피 주는 사람은 거주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배우자를 보살피 주는 경우에는 거주자 수에 포함된다.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는 동거부부의 경우도 같다. 또한 주급 36파운드 이하를 받는 자로서 노인 또는 장애인을 돌보는 자도 거주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⑫ 수감자(people in prison)

구금 또는 수감되어 있는 자는 거주자 수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카운슬세를 체납하여 구속된 자는 제외되지 않는다.

⑬ 외교관(diplomats)

외교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와 부양가족도 거주자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비과세

카운슬세의 비과세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다.

- ① 학생들이 거주하는 주택 또는 학기 동안의 학생 수용시설
- ② 18세 이하인 자들이 거주하는 주택
- ③ 군인 수용시설 또는 외교관용 주택
- ④ 중증 정신질환자가 점유하는 주택. 다만, 소유자 또는 보호자가 납세자인 경우는 제외
- ⑤ 1구의 주택을 구성하고 있는 별도로 구분된 주택으로 소유자의 친족이 거주하는 주택

다음의 주택은 제한된 기간 내에 한하여 비과세이다.

- ① 빈집으로 남아 있는 주택은 6월을 한도로 비과세
- ② 수리를 요하거나 수리중인 주택은 1년을 한도로 비과세
- ③ 사망자의 주택으로서 거주자가 없는 주택은 6월을 한도로 비과세

다음 주택은 거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이다.

- ① 학생인 소유자가 주된 주택으로 사용했던 주택
- ② 수감자가 수감 이전에 주된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수감이 되어 거주자가 없는 경우
- ③ 거주자가 치료 또는 요양을 받기 위해 떠나 거주자가 없는 주택
- ④ 거주자가 타인을 돌보기(personal care) 위해 떠나 거주자가 없는 주택
- ⑤ 주된 건물로 분리할 수 없는 종된 건물(annex)
- ⑥ 파산 신청에 있어 수탁인(trustee)이 납세자인 경우
- ⑦ 법령에 의하여 거주가 금지된 주택 또는 강제처분이 임박하여 거주자가 없는 주택

- ⑧ 성직자가 직무 수행을 위해 거주하게 될 주택
- ⑨ 저당권자에 의해 압류된 주택

위와 같은 비과세대상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카운슬세의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주택의 평가 가액이 어느 정도인지와 비과세대상이 아니었다면 납부해야 할 세액을 통보한다. 지방의회가 비과세대상이라고 통보한 주택일지라도 납세자가 비과세대상이 아님을 알았다면 납세자는 그 사실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을 물게 된다.

카운슬 정부가 비과세대상 주택이 아니라고 한 결정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하는 경우 그 납세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카운슬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카운슬 정부는 2월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납세자가 이 결정에 대해 불복하거나, 2월 이내에 회신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납세의무는 중지되지 않는다.

다) 장애자에 대한 감면

아래와 같은 장애자용 시설을 갖춘 주택에 대해서는 카운슬세가 경감된다.

- ① 화장실, 부엌을 제외한 장애자가 주로 사용하는 방. 예를 들면, 장애자용 휠체어 등을 보관하는 방 등이 이에 해당된다.
- ② 장애자를 위한 욕실 또는 부엌
- ③ 휠체어 사용을 위한 주택 내의 추가 공간

감면대상이 되는 방은 장애자를 위해 특별히 건축된 것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장애자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면 족하다. 카운슬세는 평가 가액이 가장 낮은 A부터 가장 높은 H까지 8등급으로 나누어진다. 장애자 경감 대상 주택은 실제보다 1등급이 낮은 등급을 적용하여 세부담이 낮아지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D등급(band D)에 속하면 실제 과세시에는 C등급을 적용하게 된다. 장애자를 가진 가정에서는 지방의회에 서식에 의한 장애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입증서류는 예를 들면, 의사, 직업 치료사 등이 그 장애인이 별도로 주택 내에서 공간이 필요한 자임을 입증하는 장

애인이어야 한다.

장애자가 있는 가구에 대해 지방의회가 일단 과세를 하게 되면 납세자는 감면대상자에 해당되는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지방의회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2월 이내에 이를 결정하고 회신해야 한다. 이 결정에 불복하거나, 2월 이내에 회신을 받지 못하면 평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에도 납세의무는 이행해야 한다.

라) 가산세의 부과

지방의회는 납세자가 법령에 규정한 과세정보 제공을 하지 않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납세자가 가산세 부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우선 카운슬 정부와 이를 상의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부과일로부터 2월 이내에 평가법원에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가산세는 카운슬세와는 달리 평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판결이 있을 때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3) 과표산정 및 세율

가) 평가의 전제 및 평가

평가가 동일한 기준에서 공정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법령에 정해진 평가 전제는 다음과 같다.

- ① 주택은 빈집인 상태로 매매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 ② 주택의 매매는 보유기간의 제한이 없는 자유매매를 전제로 한다.
- ③ 주택은 거주에 불편이 없도록 수리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 ④ 아파트는 99년간 임대한다는 조건으로 매매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⑤ 주택의 규모, 건축양식 및 특성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1993년 4월 1일 기준으로 한다. 만약 그 이후 변경이 있었다면 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주택의 평가는 국가기관인 평가청(Valuation Office Agency)에 의해 이루어진다. 평가 결과는 가격대에 따라 A~H까지 8개의 평가등급(valuation band)으로 나누어진

다. 이 평가등급은 개별 주택의 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어느 가격대의 범위에 속하는가를 나타낸다.

<표 IX-1> 주택의 평가등급

등급(band)	가격범위(range of values)
A	40,000파운드 이하
B	40,000파운드 초과 52,000파운드 이하
C	52,000파운드 초과 68,000파운드 이하
D	68,000파운드 초과 88,000파운드 이하
E	88,000파운드 초과 120,000파운드 이하
F	120,000파운드 초과 160,000파운드 이하
G	160,000파운드 초과 320,000파운드 이하
H	320,000파운드 초과

카운슬세는 자산의 평가가치와 가구의 성인 수를 기초로 그 최종세액이 결정되므로 카운슬세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 첫 번째 단계는 해당 주택의 자산가치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잠정세액을 산출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산출된 세액을 해당주택에 거주하는 성인 수와 연계시켜 최종적으로 세액을 산정하는 단계이다.

① 제 1단계

영국정부는 카운슬세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과표산정에 있어서 가격대 방식(banded system)을 채택하였다. 가격대 방식은 자산의 평가가치가 낮은 A등급으로부터 가장 높은 H등급의 8등급으로 구분하고 그 속에 영국내의 모든 주거용 자산이 포함되도록 만들어졌다.

<표 IX-2>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지역의 각 가격대별 가격과 상대세율을 보여준다. 상대세율은 D등급을 일종의 기준으로 삼고 H등급의 주택은 D등급의 2배, A등급의 3배를 부담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리고 A와 H등급 사이에 속하는 B, C, E, F,

G 등급은 각각 기준등급 D 세율의 7/9, 8/9, 11/9, 13/9, 15/9 수준이 되도록 만들어졌다. 그 결과 각 등급간에는 1/9~3/9의 세율 차이가 나며, 동일 지방정부 내에서 최고·최저세율간의 차이는 3배가 된다. 이와 같이 지역 내 자산간의 최고·최저세율을 3배차로 한 것은 조세원리 중 능력원리보다 혜택원리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표 IX-2>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에 대한 카운슬세 가격대

(단위: 천파운드)

가격대	가격대D에 대한 비율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A	6/9(67%)	40 이하	30 이하	27 이하
B	7/9(78%)	40 초과 52	30 초과 39	27 초과 35
C	8/9(89%)	52 초과 68	39 초과 51	35 초과 45
D	1(100%)	68 초과 88	51 초과 66	45 초과 58
E	11/9(122%)	88 초과 120	66 초과 90	58 초과 80
F	13/9(144%)	120 초과 160	90 초과 120	80 초과 106
G	15/9(167%)	160 초과 320	120 초과 240	106 초과 212
H	2(200%)	320 초과	240 초과	212 초과

자료: Christopher Giles and M. Ridge, "The Impact on Households of the 1993 Budget and the Council Tax", Vol. 14, No. 3, 1993, p. 13.

이러한 가격대 방식이 지니는 장점은 각 가격대의 구간 폭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자산가치를 빈번하게 재평가할 필요성이 없어 행정상 편리하다는 것이다. 영국정부는 가격대 방식을 채택하면서 자산의 평가 가격면에서 각 구간별로 상당한 가격차가 있도록 만들었다. 예를 들어, 잉글랜드의 경우 A~D등급까지는 등급간에 12,000~20,000파운드 차이가 나고, 상대적으로 비싼 주택이 속하는 E~H등급에서는 등급간에 32,000~160,000파운드의 차이가 난다. 그리고 일단 자산가치가 최저등급인 A등급이나 최고등급인 H등급에 속하게 되면 해당자산에 적용되는 세율이 더 이상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산가치는 세액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내에서도 지방정부 단위로 과세대상의 가격대 분포가 다르게 나타난다. 주택의 평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런던 등 대도시의 경우 과세대상이 C, D가격대에 밀집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B, C가격대에 밀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카운슬세의 세액은 과세대상의 자산가치평가액(과표)을 가격대 기준표에 적용시켜 해당자산의 등급을 확정짓고, 각 등급별 기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산출된다. 이때 기준가격대 D의 평균과세액이 먼저 산출되어야 하고, 이것이 되면 나머지 구간의 과세액은 D가격대의 과세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세율을 곱함으로써 산출된다.

즉, 특정 지방정부의 카운슬세 수입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만일 Ni가 8등급 중 어떤 i가격대에 포함되는 해당 지방정부 내의 가구수이고, X가 기준 가격대 D에 해당하는 자산의 과세액이라면 특정지역의 조세수입 T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T = Na \cdot 0.67X + Nb \cdot 0.78X + Nc \cdot 0.89X + Nd \cdot 1.0X + Ne \cdot 1.22X + Nf \cdot 1.44X + Ng \cdot 1.67X + Nh \cdot 2.0X \text{ (여기에서 } a \sim h \text{는 8등급의 조세가격대임)}$$

잉글랜드의 경우 평균 자산평가액은 약 80,000파운드이고 이것은 D가격대에 해당한다. 카운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평가가치는 1991년 4월 1일 현재의 공개시장 가치(open market value of a property)를 기준으로 정의되었다. 여기에서 공개시장가치란, 특정자산이 1991년 4월 1일 현재 공개시장을 통하여 거래된다고 가정할 때 주택의 판매자가 합리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적정가격을 뜻한다. 당시 자산의 과표산정 방법으로서 레이트과표를 산정할 때 사용하던 임대가격을 비롯하여 주택의 자본가격, 재건축가격 등의 접근방법이 고려되었다. 1991년에 있었던 자산평가는 실제 시장가격을 엄격히 적용하기보다는 과세기초에 필요한 상대평가를 하는 데 중점이 주어졌다.

② 제 2단계

자산가치를 토대로 잠정세액이 산정되면 제2단계로 거주 성인 수를 기준으로 최종 세액을 산정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성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세액의 100%가 과세되고, 1인인 경우에는 기본세액의 75%가 과세된다. 그러므로 한 가구에 두 사람 이상의 과세대상자가 거주하면 그 가구는 정상납부, 즉 전액을 부담한다. 이러한 경우 카운슬세는 다만 자산가치를 토대로 세액이 결정된다. 그리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경우 소유자가 카운슬세의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웨일즈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결정에 따라 25%까지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영국정부가 거주 성인 수를 2인 기준으로 100% 과세하기로 결정한 근거는 각 세대별로 18세 이상의 성인이 2인 거주하는 경우가 영국 전체가구의 약 54%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나) 평가등급의 조정

개별 주택의 평가가액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다.

- ① 주택의 일부가 파손되어 재산가치가 감소하거나,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의 변경 또는 주택을 장애자가 사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개조한 경우
- ② 주택의 일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하거나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 ③ 주택의 개량 또는 확장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매매가 이루어지기 이전까지는 등급의 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재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평가등급의 재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1991년 4월 1일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평가한다. 납세자는 평가등급의 재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이의신청 및 근거

평가청의 지역사무소(과세권을 행사하는 카운슬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아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제안(proposal)의 형태를 띠게 되며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청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① 카운슬세의 납세의무자
- ② 주택의 소유자

③ 과세권을 행사하는 지방의회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평가청 지역사무소의 등록공무원과 접촉해야 한다. 지역사무소의 소재지는 카운슬세의 고지서에 명기되어 있다. 등록공무원은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제공해 준다. 이의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①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 ② 과세대상 주택에 대한 지위(소유자 또는 임차인)
- ③ 평가등급에 대한 이의 내용과 수정되어야 할 사항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등록공무원이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보다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다시 접촉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청문(hearing)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납세자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등록공무원은 평가등급을 수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카운슬세를 과세한 지방의회에서는 세액을 수정하게 된다. 등록공무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신청 내용의 일부 인용에 불복하는 경우와 이의신청일로부터 6월 이내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법원(Valuation Tribunal)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구제 절차는 단순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어떠한 종류의 전문가 도움 없이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전문가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등록공무원이 이의신청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평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4) 카운슬세 행정

가) 카운슬세의 고지

카운슬세는 통상 3월 또는 4월에 고지된다. 고지서에는 납부세액과 산출근거를 담고 있다. 또 고지서에는 분할 납부세액과 매회 분할 납부할 세액 및 납부일자도 기재되어 있다. 보통 분할 납부횟수는 10회이다. 그러나 4월 말 이후에 고지되는 경우에는 그보

다 줄어든다.

나) 고지 오류의 정정

고지된 세액이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면 납세자는 즉시 카운슬정부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정정된 고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납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 세액 변경

경감 대상이 되거나 다른 세제감면 혜택을 받게 되면 카운슬정부는 새로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한다. 이 고지서에는 연중 납부해야 할 세액과 분할 납부해야 할 세액이 기재된다.

라)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발생하면 납세자는 즉시 카운슬정부에 이를 신고하고 세금경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마)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세자가 분할 납부세액을 체납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납부를 최고하는 독촉장을 받게 된다. 납세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납세를 하지 않거나, 두 번째의 독촉을 받고도 납세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 혜택을 박탈당하고 연간세액 중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잔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세 징수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바) 체납세의 징수

카운슬정부는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지방법원(magistrates' court)에 납부명령(liability order)을 신청한다. 지방법원은 납세자에게 체납세와 납부명령 신청에 따른 비용의 납부명령을 검토하고 있음을 납세자에게 통보한다. 지방법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납세자는 법원에 출석하여 납부명령이 집행되지 않아야 한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만약 납세자가 법원에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카운슬정부 또는 시민참여

국(Citizens Advice Bureau)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사) 납부명령의 효력

법원의 납부명령이 승인되면 카운슬정부는 체납세 징수방법의 결정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직업, 소득 등의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카운슬정부의 이러한 정보 요구권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그것은 납세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주요 체납징수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소득 원천징수 명령(attachment of earnings orders)

카운슬정부는 체납자의 고용주에 대해 체납자의 급여로부터 소득세, 국민보험료, 체납세 징수비용 1파운드를 공제한 금액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 소득보조금 공제(deductions from income support)

체납자가 소득보조를 받는 경우 카운슬정부는 소득보조금의 5%의 비율로 공제할 수 있다.

③ 체납처분(distress)

카운슬정부는 체납세 징수 절차(the levy of distress)를 진행시키기 위해 집행관(bailiff)을 고용할 수 있다. 카운슬정부는 먼저 체납자에게 서면으로 체납처분 절차를 개시하게 됨을 통보한다. 체납자가 체납처분에 따른 추가 비용을 내지 않고 이 단계에서 체납세를 완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체납자가 체납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집행관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 소유권 유지 조건부 약정(walking possession agreement)

- 집행관과 체납자가 체납세 납부 이행에 관한 약정을 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하지 않는다.

○ 소유권 행사 잠정 중지(close possession)

- 체납세가 완납될 때까지 소유권 행사를 잠정 중지시키고 납부 불이행시는 재산을 처분하여 체납세를 징수한다.

○ 재산압류(remove the goods)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처분한다.

그 외에도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파산절차(bankruptcy proceedings)에 의하는 방법이 있다.

아) 체납자의 구속

카운슬정부는 체납자에 대해 위와 같은 수단을 사용하여도 체납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체납자의 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앞서 법원은 체납자의 자산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구속영장은 법원이 체납자가 고의적으로 체납을 했거나 책임을 물을 만한 태만으로 납세의무를 불이행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발부된다. 구속기간은 최장 3개월이다.

자) 가산세의 부과

지방의회는 납세자가 법령에 규정한 과세정보 제공을 하지 않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납세자가 가산세 부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우선 카운슬정부와 이를 상의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부과일로부터 2월 이내에 평가법원에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가산세는 카운슬세와는 달리 평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판결이 있을 때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 카운슬세의 성격 및 문제점

카운슬세는 대체로 공평성, 단순 용이성, 비용 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비교적 양호한 새로운 지방세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동시에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 성격

카운슬세는 몇가지 조세특성이 복합적으로 가미된 지방세이다. 기본적으로 카운슬세는 재산과세의 성격을 지니면서 소득세적 특성과 인두세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가미되어 있다.

첫째, 카운슬세는 종전의 레이트와 마찬가지로 주택의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재산세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뿐 아니라 카운슬세는 가구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둘째, 카운슬세는 레이트나 주민부담금제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에 대한 환급제도 등 각종 조세감면장치를 통하여 소득재분배기능을 하므로 소득과세적 특성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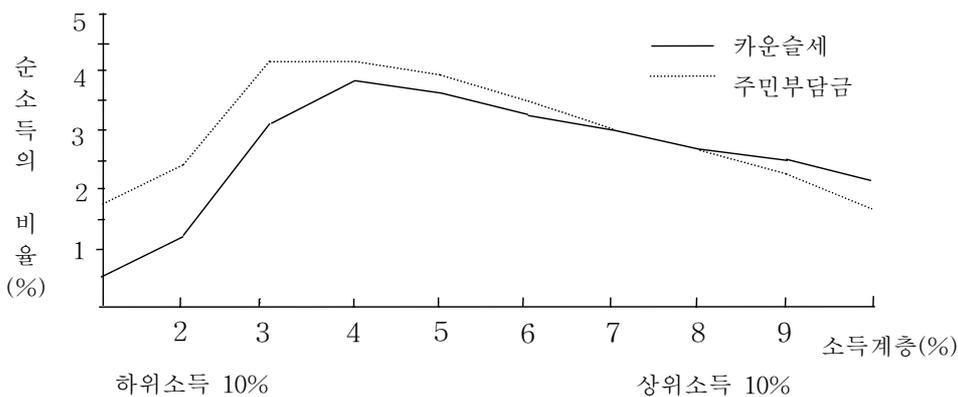
셋째, 카운슬세는 대물과세와 대인과세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대물과세적인 성격은 카운슬세가 주택의 자산가치를 기초로 산출된다는 데서 발견되며, 대인과세적인 성격은 카운슬세가 주택에 거주하는 성인 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데 있다.

넷째, 조세원리면에서 카운슬세는 능력과세원리(ability principle)와 편익과세원리(benefit principle)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

2) 문제점

카운슬세가 지니는 문제점은 조세의 역진성이다. 카운슬세의 역진도는 주민부담금보다는 낮지만, 특히 상대적으로 고가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구간대가 형성되어서 레이트보다는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림 IX-1] 카운슬세와 주민부담금의 구조비교(조세감면·혜택포함)



[그림 IX-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소득 상위 두 계층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순소득에 대한 주민부담이 카운슬세가 주민부담금보다 적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가장 소득이 낮은 30% 계층이 카운슬세가 도입됨으로 인하여 조세부담이 상당히 경감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카운슬세를 도입하면서 정책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혜택을 종전보다 많이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레이트제도와 마찬가지로 지역간의 조세부담 격차를 크게 줄이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역진성 문제외에도 카운슬세는 복합과세 특성으로 인한 조세행정상의 문제, 가격대의 구성, 지역별 부담액 격차, 기어효과, 가격대제도로 인한 중앙정부의 지방세제에 대한 간접적 개입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가격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실상 영국의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상·하한을 규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3) 기어효과

주민부담금과 마찬가지로 지방정부의 지출수준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카운슬세에 상당히 큰 부담을 주어야 한다. 그것은 카운슬세가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밑도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지출규모를 약간만 인상시키고자 하더라도 지방세인 카운슬세 부담액을 몇 퍼센트씩 증가시켜야 하는 소위 ‘기어효과(gearing effect)’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어효과는 다양한 행정수요가 존재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자산가치가 낮은 지역에서 주로 크게 나타나 지방재정의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4) 카운슬세와 지방세 상한제

카운슬세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실시되어온 재정지출상한제(capping)는 카운슬세의 도입 이후, 종전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군소 자치단체에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지출상한제는 지방재정의 지출을 약 2%가량 감축시켰고 아울러 지방세 수입을 약 10% 내외 감소시킨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노동당은 지방정부법에서 모

든 지방정부에서 적용되는 캡핑(capping)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통제권(New Reserve Power)’ 개념을 도입하였다. 두 제도 모두 지방재정의 남용과 비효율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책 목적을 지니지만 후자가 통제권한, 통제방식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방의 자율성을 다소 인정하는 접근을 취한다.

라. 정책 시사점

카운슬세는 주민부담금제가 지니는 문제점들— 주민에 대한 세금인상, 조세의 역진성, 전통과 국민정서의 무시 등—을 보완하면서 종전의 레이트와 주민부담금제도를 절충시킨 지방세이다. 카운슬세는 기본적으로 재산과세적인 성격을 지니면서도 가구세·인두세·소득세의 성격이 복합적으로 가미되어 여전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영국사회에서 비교적 무난한 지방세로 수용되고 있다. 카운슬세는 도입된 지가 10여년밖에 되지 않아 아직은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이 많지 않지만 대체로 보아 조세의 공평성, 징세 편이성, 비용 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양호한 지방세로 정착하고 있다.

지금까지 영국의 지방세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의 지방세는 전통적으로 레이트제도를 활용하다가 1990년대에 들면서 잠시 주민부담금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는 카운슬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가 단일세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지방재정에서 지방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은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재정의 독립성을 잃게 하는 동시에 나아가 영국의 지방자치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제라든가 편익과세원리와 능력과세원리의 조화, 그리고 지방세제의 운영·관리면에서 합리성과 효율성은 우리들이 배울 점이 많이 있지만, 단일세목의 지방세 구조는 자체재원을 확보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영국식의 극단적인 체계를 선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영국의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과세자주권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다만, 초기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에게 과세자주권을 허용하게 되면 국가적으로나 자치단체들간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둘러싼 환경변화를 고려하면서 점

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시 말해, 단기적으로는 현재 일부 시행되는 탄력세율제도를 보다 적절히 활용하면서 장기적으로 과세자주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국의 지방세제도의 운영이 보조금제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점도 우리로서는 배울 바가 크다. 지방재정의 양대 축은 지방세와 보조금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들 두 제도 간에 연계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 그리고 지방세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평 문제에 대해 보조금제도를 통하여 교정해 나가는 접근도 우리가 보다 깊이 연구해 볼 부문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세제도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는 정책우선순위와 이론적 논리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정서와 배치되거나 사회 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경우 그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2. 국제형식의 재산세: 비주거 레이트(Non-domestic Rate)¹²⁾

가. 서론

영국은 소득과세의 비중이 54.1%, 소비과세 비중이 35.0%인 소비과세를 가미한 소득과세형 국가에 속한다. 그러나 행정계층별 과세구조를 살펴보면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중앙정부의 경우는 소득과세 : 소비과세 : 재산과세가 48.08 : 42.85 : 9.07로 소비과세와 소득과세가 유사한 비중을 가진 세수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소득과세와 소비과세가 없는 재산과세 중심의 세수구조를 가지고 있다. 영국의 재산과세는 지방세인 카운슬세(카운슬 Tax Rates)와 국제인 비주거 레이트(Non-domestic Rates)가 중심이다. 비주거 레이트는 국가에서 징수하지만 지방에 배분하는 일종의 조정재원이다.

비주거 레이트는 전액 지방의 재원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지방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중앙정부가 세수를 징수하고 이를 지방에 배분한다는 점에서 보조금과 유사한

12) 이 부분은 P. K. Brown and M. A. Hepworth(2002)을 주로 참고하였음.

성격도 가지고 있다. 비주거 레이트는 지방정부가 기업으로부터 조달하는 조세이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직접 지방기업과세를 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 중앙정부가 효율적으로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비주거 레이트를 징수한다. 그리고 징수한 세수를 인구 수를 기준으로 지방정부별로 배분한다. 2계층의 지역에서는 각각 그 지역에 배정된 세수를 나눈다. 사실상 비주거 레이트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일반보조금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정부는 현재 개별정부가 비주거 레이트로부터의 수입에 재량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1) 배경

영국의 재산과세의 중심세목은 카운슬세와 비주거 레이트이다. 카운슬세는 지방세이며, 비주거 레이트는 지방세와 일반보조금의 중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카운슬세의 과세대상은 주택과 해당주택 거주자이며, 비주거 레이트의 과세대상은 기업용 자산이다. 세율구조를 살펴보면, 카운슬세는 구간별 차등세율로 되어 있으며, 비주거 레이트는 단일세율로 되어 있다.

비주거 레이트에 관한 주요 법규정은 지방재정법(1988)에 포함된다. 비주거 레이트는 1601년부터 시행해 온 역사가 긴 조세로서, 그에 따라 변호사들의 법률 해석을 원조하는 법적 전례의 논거의 실체를 가지고 수세기에 걸쳐 발달하여왔다. 비주거 레이트는 ‘부동산’에 대해 지불하는 과세목적은 가지는 재산점유에 대한 조세이다. 확실한 평가는 어떠한 재산이 부동산으로 선정되는지를 규정하며, 시세를 부담해야 할 점유자가 되는 납세자는 전례에 의해 규정된 확실한 평가에 응해야만 한다.

각 소유지는 보험 가격과 완전한 보상의 연간차용을 위해 세를 놓는 재산의 지대라는 ‘시장임대가격(rateable value)’ 조건에 근거한 과세를 위해 평가된다. 과세일은 2000년 Rating List를 위한 1998년 4월 1일의 규칙에 의해 규정된 것에 근거하며, ‘시장임대가격’에 대한 해석은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생산설비와 기계류의 일정한 항목 또한 평가가 가능하며 그 가격은 또한 세액평가에 반영될 것이다. Rating List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Billing Authority의 지역 내의 모든 재산과 관련된 지방평가액목록이며, 두 번째는 가스·물과 같은 네트워크 유형의 재산의 평가를 포함하는

중앙평가액목록이다.

재산에 관하여 지불해야 할 지방세 납부자(지방세를 부담해야 할 점유자)의 사실상 총계는 그의 세액 평가에 의해 결정되며 단순비례세율(Uniform Business Rate: UBR)에 의해 증가된다. 단순비례세율은 각 연도마다 의회에 의해 결정되는 잉글랜드에 적용되는 단일 형태이며, 웨일즈와 스코틀랜드는 분리 결정된다. 공제제도는 한 가지 평가목록에서의 납세자들의 책임의 변경을 위해 1990년에 단계적으로 도입된 시스템으로, 이러한 변화는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켰다.

현대적인 평가가격이라는 과세근거를 보유하기 위해 5년마다 재평가하며, 재평가라는 것은 모든 재산이 '선행 평가일(antecedent valuations date)' 기간의 새로운 과세근거에 따라 재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재평가는 2000년 4월 1일에 이루어 졌으며, 1998년 4월 1일의 가격에 근거한다. 다음 재평가는 2005년 4월 1일부터 유효하다. 과세평가목록의 5년 주기 동안의 실제적인 재산의 변화로 인해 평가가 상향 또는 하향으로 재평가될 수 있다. 변화한 재산의 공정한 과세근거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시장임대가 가격에 의해 평가되며, 납세의무자는 평가에 대해 이의신청할 권리를 가진다.

2) 통계

<표 IX-3>에서는 1990년에서 1999년도까지의 Rating List상에 나타나는 주요 재산의 범주로 분류되는 부동산의 수를 보여주고 있다.

<표 IX-3> 부동산 수 (1990~1999)

(단위: 십만건)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영리용 재산	1,190	1,211	1,227	1,230	1,227	1,223	1,228	1,225	1,223	1,279
상점 & 카페	576	572	570	567	565	562	497	491	488	484
사무실	223	234	243	248	251	252	255	255	257	258
그외	392	405	413	415	411	409	476	479	478	537
주류판매허가점	55	55	55	55	55	60	59	59	59	60
오락	95	95	94	93	92	87	87	87	81	80
공익사업	15	15	15	15	15	9	8	8	9	9
교육용 시설	42	42	42	42	41	41	41	41	41	41
혼합식 건물	53	53	59	58	58	56	55	55	56	56
총합	1,450	1,471	1,492	1,493	1,488	1,476	1,478	1,475	1,469	1,525

자료: www.doeni.gov.uk/lgd

<표 IX-4>는 잉글랜드에서의 각각의 범주의 재산분류에서 나타나는 시장임대가치를 나타낸다. 1973년 이후 1990년에 모든 영리적 목적의 재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한편 재평가는 매5년마다 평가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평가청은 재산의 변화, 새로운 재산, 새 재산이 된 건물, 파괴, 용도의 변화에 대해 업데이트된 평가항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표 IX-4> 시장임대가치 (1990~1999)

(단위: 십만파운드)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모든 등급	32,916	34,214	35,608	35,263	34,129	33,912	34,245	34,299	33,906	33,649
영리용 재산	19,566	20,659	21,440	21,336	20,662	19,626	19,822	19,859	19,733	20,649
상점 & 카페	7,229	7,382	7,472	7,335	7,068	7,780	6,049	5,959	5,860	5,840
사무실	6,787	7,545	8,093	8,239	8,027	5,587	5,630	5,640	5,624	5,575
그외	5,550	5,732	5,876	5,762	5,568	6,260	8,098	8,259	8,249	9,234
주류판매허가점	679	691	696	679	642	968	969	970	680	997
오락	951	994	1,025	1,022	988	1,009	1,018	1,033	1,044	1,045
공익사업	3,485	3,493	3,518	3,505	3,424	3,445	3,469	3,448	3,380	3,361
교육용 시설	1,981	1,994	1,970	1,883	1,813	1,873	1,883	1,894	1,773	1,672
혼합식 건물	806	324	1,375	1,367	1,319	1,429	1,500	1,494	1,494	1,439
산업용	5,448	5,559	5,593	5,470	5,280	5,550	5,584	5,561	5,540	5,463

자료: www.doeni.gov.uk/lgd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세금징수율은 다른 과세형식에 비해 매우 호의적인 이유로 오랫동안 거의 96%에 달하며, 지방세인 카운슬세보다도 높은 징수율을 보인다.

<표 IX-5> 비주거 레이트 징수율(1998~1999)

(단위: %)

	1998	1999
영국 전체	96.7	97.1
런던 내 자치도시(런던포함)	95.6	97.0
런던 외부 자치도시	93.8	95.1
런던 자치도시	94.9	96.2
Metropolitan Districts	97.1	97.0
Unitary Authorities	96.8	97.0
Shire Districts	97.7	97.7

자료: www.doeni.gov.uk/lgd

나. 총칙규정

1)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비주거 레이트는 모든 비주거용 부동산의 '세를 부담해야 할 점유자'에 대해 과세하며, 세를 부담해야 할 점유자는 보통 임대하거나 소유자인 재산의 보유자이다. 즉, 납세의무자는 비주거용 재산의 점유자(occupier)이다. 점유자는 소유자가 사용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자, 임대용 재산인 경우에는 임차인을 말한다. 플랜트, 기계장치, 네트워크 형식으로 된 재산인 가스, 급수,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설 등도 과세대상이다. 과세근거법은 지방정부재정법(Local Government Finance Act 1998)이다.

2) 납부

납세고지서는 과세연도의 직전 연도 3월에 납세의무자에게 송부되며, 여기에는 납세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수록되어 있다. 대부분의 납세의무자들은 과세연도의 4월부터 10개월간 분할납부를 하고 있다. 그렇지 못한 납세의무자들은 4월과 9월에 세액을 이등분하여 납세하고 있다.

다. 세율 및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토지와 건물의 (순)임대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 점유가치이다. 비주거 레이트의 세율은 단순비례세율(uniform business rate)로서 세율 인상은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물가지수를 감안하여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표 IX-6> 단순비례세율(uniform business rate)(1990~2001)

(단위: 퍼센트)

연도	단순비례세율(UBR)	연도	단순비례세율(UBR)
1990/91	0.347	1996/97	0.449
1991/92	0.386	1997/98	0.458
1992/93	0.402	1998/99	0.474
1993/94	0.416	1999/00	0.489
1994/95	0.424	2000/01	0.416
1995/96	0.432		

자료: www.doeni.gov.uk/lgd

비주거 레이트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에서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수입은 중앙정부가 거두어들인 후에 각 지역의 성인 수를 기준으로 재분배된다. 세액은 5년에 한번씩 평가하는 시장임대가치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다. 평가사무소는 비주거 레이트의 목적을 위해 모든 재산의 평가가격을 결정할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Billing Authorities는 모든 세금의 징수와 집행의 책임을 가진다.

평가청은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점유하는 재산의 임대조건을 보고하는 형식을 갖추기 위해 재산의 점유자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형식은 각 장소 내에서

임대가격의 지출수준을 결정하는 평가청의 평가자에 의해 분석된다. 소유자가 점유자 또는 임대자인지에 따라 법적 근거에 있어 각 재산 평가가 가능하다. 이러한 평가와 분석에 있어서 최종 조정은 컴퓨터에 의해, 개선은 평가자에 의해 수행된다. 평가목록의 초안은 효력이 발생하기 직전연도 12월에 발표되며, 실제 평가목록은 재평가가 이루어진 해의 4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평가청의 평가목록은 다른 요소뿐만 아니라 재산 점유의 확장, 소멸, 새로운 재산의 생성 등과 같은 변화에 대한 고려도 포함한다. 또한 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모든 의문이나 항소에 대해 취급할 책임이 있다.

라. 과세평가

1) 평가의 원칙

비주거용 레이트는 오직 비주거용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과세에는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적용된다. 첫 번째로, '세를 부담해야 할 점유자'가 있어야만 하며, 두 번째로 '세를 부담해야 할 부동산'이 있어야만 한다. 평가의 원칙은 지방정부재정법(1988)의 부칙 6에 잘 나타나 있다.

주거용 재산 그리고 재산이 없는 경우로 이루어진 즉, 비주거용 부동산이 없는 경우의 평가는 지방의 비주거 레이트가 면제된다. 매년마다 임대가 기대되는 부동산의 평가는 다음 세 가지의 가정에 따른다.

- ① 임차는 이미 결정된 것을 참고로 하여 착수된다.
- ② 부동산의 정식적인 적당한 수리가 임차이전에 직접 착수되며, 정당한 주인이 비경제적이라고 여기는 수리에 대해서는 이러한 가정으로부터 제외된다.
- ③ 보유자는 보통의 보유자 레이트, 수리와 보험비용을 지불할 의무를 지닌다.

주거용, 비주거용 설비를 포함하는 재산(예를 들어 주상복합건물)은 '복합적인 부동산'의 용어로 표현한다. 이 법률이 평가체제의 해석 또는 이행에 있어 지침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평가자에게 안내를 제공하는 중요한 전례를 제공한다. 평가는 다음 가정에 따른다.

- 세입자와 주인은 실제 재산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가정

에서 부담가격의 법률적 정의를 파악한다.

- 한편 부담가격의 법률적 정의는, 재산의 임대기간의 변화와 관련한 보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임대를 지속할 가망성이 있다는 가정하에 재산을 일년 동안 임대한다는 것을 규정한다.
- 소유지가 비어 있고 세를 놓았거나, 즉시 점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가정을 한다.
- 소유지는 그것이 현존하는 대로 평가되어야만 하며, 구조상의 교체 또는 상이한 형태 그리고 용도의 범주를 파악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2) 평가주기

지방정부재정법(1988)의 41항은 평가목록이 1990년 4월 1일부터 매5년마다 개정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재산의 공정하고 정당한 평가를 위해서 '선행평가일(antecedent valuation date)'의 조건하에 각각의 재평가를 위해 조정된 평가일을 규정한다. 따라서 모든 재산은 선행된 평가일에 재평가된다. 평가를 위해 평가청(Valuation Office)은 점유자에게 임대기간 등을 신고토록 하고 있다.

마. 비과세·감면대상

지방정부재정법(1988)의 부칙 5에서 비주거 레이트로부터의 면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용 토지- 지방정부재정법(1988) 부칙 5의 1항

면제는 농업용 토지와 건물에 대해 적용되며, 농업용 토지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① 경지, 목초지로 이용되거나 방목장으로 이용되는 토지
- ② 농원 또는 숲, 수요가 있는 덩불의 재배로 이용되는 토지
- ③ 0.1헥타르를 초과하는 토지, 닭·거위·오리 등의 가금농장의 목적으로 이용

되는 토지

④ 시장을 상대로 하는 채소밭, 보육장소, 과수원으로 이용되는 토지

농업용 토지에서 다음은 제외된다.

- ① 주차장과 같이 한 주택이 함께 점유하는 토지
- ② 정원(채소밭과는 다름)
- ③ 오락용 장소
- ④ 독점적으로 또는 주로 스포츠 또는 휴양장소로 이용되는 토지
- ⑤ 경주장으로 이용되는 토지

2) 종교적인 예배장소-지방정부재정법(1988)의 부칙 5의 11항

일반적으로 교회와 교회의 강당은 비주거 레이트에서 면제된다. 그 재산이 잉글랜드, 웨일즈의 교회와는 다른 조직에 의해 점유된다면 종교적인 예배장소로 등록되어야 한다.

3) 장애인을 위해 사용되는 소유지- 지방정부재정법(1988) 부칙 5의 16항

장애인은 눈·귀가 멀었거나 말을 못하는 사람 또는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 그리고 National Assistance Act(1948)의 29항에서 기술된 병, 상해, 선천적 기형 또는 다른 장애로 영구적으로 곤란을 겪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오로지 다음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재산에 대해서 면제된다.

- ① 훈련을 위한 설비 또는 장애인이나 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이 점유하는 설비
- ②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제공하는 설비
- ③ 장애인(고용)법(1944)의 15항에서 규정하는 설비
- ④ 장애인(고용)법(1958)의 3항에서 규정하는 작업장 또는 다른 설비

그 외에도 어장, 하수처리장 시설건물, 도선사 협회, 공원, 공습보호장소, 활발한 정박장소, 산업진흥면세지역, 운하가 통과하는 길, 군대에 의해 점유된 재산, 외교공관(소유권 귀속이 아닌 이용 용도에 따른 비과세 제도)에 대해 면제한다.

4) 자선단체

자선단체에 의해 점유된 재산은 부담세액의 최소 80%가 경감되며, 재무성은 자선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과세의 재평가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자선단체의 과세에 대한 재평가는 1999년 3월에 제정되었다.

5) 농촌지역 상점 및 우체국

지방세법(1997)의 부칙 1에 규정된 시골상점과 우체국은 세액의 50%가 경감된다.

6) 소유자가 없는 재산

소유자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점유가격의 50%로 제한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창고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 ①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점유자가 없는 상태
- ② 산업용 부동산으로 규정된 상태
- ③ 부담해야 할 가격이 1,900파운드 이하일 때

그 외에도 공장용지(북아일랜드 15%, 스코틀랜드 50%), 정부청사 등이 감면된다.

바. 이의신청

납세의무자 또는 그들의 대표자들은 부담해야 할 가격에 반하여 항소할 수 있으며, 목록을 변경하기 위한 건의는 다음의 조건에 따른다.

- ① 부동산 목록에서 제시하는 부담세액이 부정확할 때
- ② 목록에 나타나야 할 부동산이 목록에 나타나지 않을 때
- ③ 주거용 재산으로 산정되거나, 비주거 레이트로 면제되어야 하나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 ④ 부동산 주소가 틀렸을 때
- ⑤ 부동산에 대한 설명이 틀렸을 때
- ⑥ 부동산에 대한 진술에 있어서 목록으로부터 생략되었을 때

사. 최근 동향 및 정책시사점

비주거 레이트에 있어서 개정될 것으로 제안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 영업용 레이트의 도입이다. 지방정부의 외부 통제가 가능하고, 국가적으로 조정되는 단순비례세율(uniform business rate)이 강조된다. 그리하여 정부는 지방정부가 단순비례세율에 추가적으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최대 세액은 단순비례세율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며, 연간 단순비례세율의 1%보다 많이 증가시킬 수 없다.

둘째, 소규모 기업을 위한 추가적 경감이다. 정부는 50%로 강제된 경감이 3,000파운드 미만의 세액을 부담하는 소규모 기업에도 주어질 것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 빈번한 재평가에 대한 조정으로 영국 정부는 빈번한 재평가에 대해 -5년마다의 재평가- 여전히 적당한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넷째, 영국정부는 비주거 레이트의 개편을 준비하면서 또한 그들은 self-financing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준비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신설을 둘러싸고 이의 모형이 영국의 비주거 레이트 형식이 논의되고 있다. 일단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하고 이를 다시 인별로 종합합산하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부과되 지방자치단체 납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는 형식이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의 비주거 레이트는 임차인에 대한 과세이며 단일세율과세라는 점에서 정부가 구상하는 보유과세 부담의 증대

라는 차원, 토지투기대책의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영국의 비주거 레이트 모델보다는 토지대과세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것이다.

X. 자본이득세제도

1. 서론

영국에서는 1965년에 자본이득세가 도입되기 전에는 자본이득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었다. 따라서 자본이득으로 개인의 총재산이 늘어나는 경우 그 부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자본이득과세가 도입된 지금은, 비록 자본이득과세와 소득과세의 운영에는 차이가 있지만, 자본이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별할 실익은 없다. 여기서는 회사가 아닌 개인을 상대로 한 자본이득과세의 기본적 원리와 적용을 살펴본다.

가. 도입배경

자본이득과세는 1965년에 James Callaghan에 의해 소득에 종속되지 않는 수익에 대해 과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인지하듯이, 세제가 더욱 공정하게 보이기 위해 도입된 세제중의 하나이다. 최근에 여러 공제의 도입으로 자본이득과세에 의한 직접적 과세는 줄어들어 왔다. 1970년대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자산의 가치가 증가했고, 이러한 실질적 자산의 증가에 대해서도 과세되었다. 1982년에서 1998년 사이에는 실질적인 이득만이 자본이득과세 대상에 포함되었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산의 가치증가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았다.

오늘날 자본이득과세는 국가 조세수입의 2~3% 수준에 불과하지만, 당시에 Callaghan은 자본이득과세가 국가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도입되었다고 말했다. 자본이득과세는 또한 사람들이 소득이 아닌 자본이득으로 수입을 조작하는 유인을 줄였다. 영국의 세제는 비록 이중과세에 대한 법률이 없지만, 소득과세와 자본이득과세를 동시에 부담하는 경우는 없다. 예를 들어, 자본이득은 연

금을 위한 순관련소득 계산에 산입되지 않는다.

세금이 소급되어 부과되는 것을 의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1965년 4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이득에 대해서만 자본이득세가 부과된다. 자본이득세 부과를 위한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965년 4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이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Budget day value'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Time apportion' 방법으로, 자본 소유의 기간을 시간에 근거해서 1965년 4월 6일 이전과 이후를 분배한 후 이후의 기간의 소유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자본이득과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규칙은 여기서 서술한 것보다 복잡하겠지만, 원리들은 단순하다.

나. 자본이득세의 보완

자본이득세는 도입된 이후 법규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1971년에는 자본이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납세자가 사망할 경우에만 발생한다는 조항이 폐지되고, 1982년에는 납세자에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제를 해주는 측정수단을 도입했다.

1) 인플레이션의 공제

자본이득과세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기 전에, 세금은 자산의 취득과 처분의 기간 사이에 다르게 부과되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자산의 적정한 가치보다 높게 과세되는 현상을 나타나게 했다. 이에 1985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제를 고려한 자본이득과세법의 수정이 있었다.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이 측정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나타났고, 공제율은 소매가격지수(Retail Price Index)에서 측정된 증가치를 사용하여 결정되었다.

2)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개인에 대한 공제

1998년 예산에서 개인에 대한 자본이득세의 개혁은 개인들이 상대적으로 장기간 동안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장기간의 투자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을 의도했다. 이것은 장

기간 자본을 소유할수록 과세율이 줄어들도록 되어 있는 단계적 공제 때문이다. 이러한 단계적 공제는 비사업자산보다 사업자산에서 더 의미가 있고, 일반적이다. 3년 동안의 비사업자산의 소유에 대해서는 5% 범위의 비율로, 2년 동안의 사업자산의 소유에 대해서는 75% 범위의 비율로 단계적으로 공제된다. 사업자산에 대한 비율은 2000년까지 상당히 감소했으나, 2002년의 예산에서 더욱 가속화되어 2002년 4월 5일 이후의 자산처분에 대한 최고 공제는, 이전에는 4년 동안 소유해야 했던 자산이 2년만 소유하여 왔으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2. 과세대상

과를 이해하기 위해 이들 용어들과 자본이득과세 면자본이득과세에 대한 의무는 과세대상의 자산을 처분했을 때 발생한다. 자본이득과세의 효제대상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가. 과세대상

1) 과세대상

- 과세처분이 발생하는 과세연도의 기간 동안 영국에 거주(resident)하거나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자¹³⁾
- 가계상속자
- 사업의 동업자

2) 자본이득과세 면제대상

- 자선을 목적으로 이득을 사용하는 자선행위

13) 총칙규정 참조

- 승인된 노후기금
- 지방당국
- 등록된 친목회
- 승인된 과학연구단체
- 권한을 부여받은 단체와 투자기금

나. 과세처분

과세처분이란 단어는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것은 또한 자산의 상실, 주식거래를 통한 자산의 할당, 그리고 자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한 자본총계의 수령을 포함한다.

비과세처분은 다음과 같다.

- 사망시의 자산의 이전 -이러한 자산들은 사망시의 그것들의 가치로 새로운 소유자가 받아들여도록 되어 있다.
- 대출이나 저당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이전
-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와 국가유산단체(national heritage bodies)

다. 과세자산

만약 특별하게 자본이득과세로부터 제외되지 않는다면 모든 자산은 과세자산이다. 자본이득과세로부터 제외되는 자산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납세자가 이러한 자산을 처분할 때는 과세되지 않는다.

- 자동차
- 국가저축증권, 보험보증금, SAYE 예금
- 개인적 사용을 위해 제공된 외국통화
- 과세대상에 의해 구입되지 않은 상환
- 사적 또는 개인적 상해에 대한 배상금

- 국가적 목적을 위한 예술활동 또는 과학적 수익금
- 재무부 채권, 재무부 주식, 국고 채권, 그리고 전시 채권과 같은 우량담보증권
- 한정된 법인채권
- 담보된 채무가 아닌, 원래의 채권자에 의해 정리되는 채무
- 연금과 수급권리(annuity rights)
- 도박상금
- 개인저축계좌에 있는 투자금
- 동산이라고 불리는 유형의 유동재산

<표 X-1> 실제 계산사례

(단위: 파운드)

과세이득 계산 견적	
처분의 총 수입	20,000
(-)처분의 잡비용	<u>(1,000)</u>
순수입	19,000
(-)공제액	<u>(4,000)</u>
물가연동공제되지 않고 점차적인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untapered) 이득	15,000
(-)전면적인 물가연동 공제	<u>(5,000)</u>
물가연동 공제되었으나 점차적인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득	10,000
Losses	<u>(2,000)</u>
물가연동 공제되었으나 점차적인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순수 이득	<u>8,000</u>
점차적인 삭감이 이루어진 순수 이득 £8,000 × 70%	<u>5,600</u>

라. 총처분수입

일반적으로 처분수입은 공정한(arm's length) 거래로부터 얻어진 수입이다. 공정거

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그들 사이의 가격 협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발생한다. 즉, 가격은 거래상대방들이 상호 동의한 가격이다. 그러나 만약 처분이 공정거래가 아닌 특수관계자간 매매계약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으로 고려된 가치와 관계없이 가격은 자산의 시장가치로 평가한다. 특수관계자간의 처분은 항상 공정거래가 아닌 당사자간 매매계약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우에도 또한 처분에 대한 가격이 평가될 수 없다면 시장가치가 사용된다.

특수관계자들은 1992년 TCGA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

- 한 개인과 그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부모, 직계자손과 그들의 배우자
- 한 회사와 공통의 통제하에 있는 회사들
- 한 개인과 그의 동업자와 동업자의 배우자와 친척
- 위탁자와 수탁인

납세자들은 가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하나씩 처분함으로써 과세의무를 줄이려고 할 수 있다. 대주주가 주식을 차기 대주주에게 소량을 연속적으로 증여하는 경우가 그러한 경우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주식을 한번의 거래로 이전하는 경우보다 시장가치가 낮게 된다.

그러나 만약 납세자가 관련자산을 연결된 사람과 연속해서 처분한다면, 그러한 각각의 처분에 대한 처분수입은 이전자산의 총계가치에 포함되게 된다. 처분들이 서로 6년 이내에 발생한다면, 연속적인 처분으로 간주된다.

마. 처분의 잡비용

처분의 잡비용은 법적 비용, 평가 비용, 그리고 광고비용과 같이 매각과 관련된 모든 수수료와 요금을 포함한다. 이러한 것들은 순수입을 얻기 위해 총수입에서 공제된다.

바. 공제비용

공제비용은 다음과 같다.

- 자사취득의 기본적인 비용 - 이것은 일반적으로 구매가격이 될 것이며, 그 구매 가격은 경우에 따라 아주 다양할 것이다.
- 법적 요금과 같은 취득의 모든 잡다한 비용
- 자산의 가격을 높이거나, 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거나, 보존하거나, 수립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자본지출

사. 전면적인 물가연동 공제

전면적인 물가연동 공제는 1982년 3월 이후의 소매가격 상승률을 보상하기 위해 계획되었고, 잡비용 공제를 제외한 모든 공제비용의 항목에 적용될 수 있다.

아. 점차적인 경감(taper relief)

점차적인 경감은 자본이득과세에 종속된 과세이득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된다. 유용한 점차적인 경감의 양은 1998년 4월과 처분일 사이의 자산소유기간과 자산이 사업자산인지 비사업자산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자. 사업자산

- 개인에 의해 수행되거나 그러한 개인에 한정되는 회사에 의해 수행되는 거래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산
- 한정된 일이나 고용을 목적으로 보유된 자산
- 개인에 의해 소유되는 한정된 회사의 주식
- 무제한 거래 회사들의 모든 주식과 유가증권
- 모든 유형의 회사의 모든 주식과 유가증권

- 개인이 회사 지분의 5% 이상을 가질 수 있으나 피고용인으로 있지 않는 일정한 회사의 모든 주식과 유가증권

차. 손실

납세자가 1년의 재정연도 동안 자본손실을 발생시키는 경우, 손실은 같은 재정연도에 물가연동되지 않고, 점차적으로 삭감되지 않은 이익에서 빠지게 된다. 그러한 손실은 자동적으로 납세자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공제된다. 납세자가 1년의 재정연도 기간에 순손실을 발생시키는 경우, 즉 물가연동되고 점차적으로 삭감되지 않은 이익을 초과하는 손실이 있는 경우, 순손실은 다음의 재정연도로 이월된다. 다음해로 이월된 손실은 그 해에 발생하는 손실이 이득에서 우선적으로 공제된 다음 남은 이득에서 공제된다.

3. 세율과 적용

가. 과세의 원리

자본이득세에 대한 과세의 원리는 그 이득이 회사에 의한 것인가, 개인에 의한 것인가에 달려 있다. 회사는 자본이득세를 부담할 의무는 없지만, 따로 법인세를 부담한다. 개인이 부담하는 자본이득세는 다음의 공제 이후에 과세연도 동안 발생하는 과세이득에 부과된다.

- 1년 동안 발생하는 공제 가능한 손실
- 과세이득으로부터 이미 공제되지 않은 과세연도 이전에 발생하는 모든 공제 가능한 손실

공제 가능한 손실은 납세자가 사망하지 않는 한 전기로 이월될 수 없다. 개인의 자본이득세에 대한 과세연도는 4월 6일에서 다음해 4월 5일까지이다. 자본이득세는 당해

연도에 기초해서 부과된다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것). 세금은 과세연도 다음해 1월 31일에 낸다. 그러므로 재정연도 2002/03년에 발생한 처분에 대한 세금은 2004년 1월 31일에 납부하는 것이다. 처분과 세금 지불 사이의 기간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처분은 가능한 한 재정연도의 초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나. 서울

개인에게는 매년 연말공제가 주어진다. 2002/3년의 공제한도는 7,700파운드이다. 비록 자본이득세가 소득세와 분리되어 있지만, 서울은 소득세 표준에 기초한 연말공제의 한계를 초과하는 순수 과세이득에 적용된다. 이득이 초기(starting)서울 표준액이 되면 10%의 비율로 과세되고, 이득이 기본(basic)서울 표준액이 되면 20%, 이득이 고(high)서울 표준액이 되면 40%로 과세된다.

<표 X-2> 자본이득 과세표준계산 사례

	(단위: 프랑)
소득:	
Schedule E	24,000
(-)인적공제	<u>(4,615)</u>
과세대상소득	19,385
자본이득세:	20,000
부과대상이득	<u>(7,700)</u>
(-) 장기보유공제(annual exemption)	<u>12,300</u>
자본이득세액	
(29,900-19,385)=10,515 x 20%	<u>2,103</u>
<u>1,785</u> x 40%	<u>714</u>
12,300	2,817

위 사례는 2000/3년 근로소득이 24,000파운드이며 순과세대상자본이득(net chargeable gains)이 20,000파운드인 경우 자본이득세액을 계산한 것이다.

다. 배우자관계

자본이득세는 배우자 관계에서는 다루기가 약간 복잡하다. 대부분의 경우 남편과 아내는 서로 별개의 개인으로 취급된다. 그들은 각각 연말공제액의 상한을 두고 있고, 그들 각각의 자본이득에 따라 세금을 낸다. 서로 분리되어 다루어지기 때문에 손실을 상대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본이 공동으로 소유된 경우, 과세이득이나 손실공제는 자산에 있는 그들 각각의 이익과 관련하여 남편과 아내 사이에 배분될 것이다.

함께 사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처분은 이득이나 손실로 취급되지 않는다. 자산이 배우자간에 이전될 때, 자산의 연속적인 처분에 기초한 점차적인 공제가 양 배우자의 결혼기간과 관련하여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규칙들은 세금 계획에 많은 여지를 남긴다. 사람들은 연말공제와 낮은 한계세율을 이용하기 위해 최종의 처분 이전에 배우자에게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 법규 또한 자본 손실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을 최대화하는 기회를 준다.

라. 특별한 자본이득세 규칙

자본이득세를 계산하는 데 있어 두 가지의 잠재적 어려움이 있다. 하나는, 처분이 일어났을 때 실질적으로 받는 이익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제비용 분배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많은 땅을 산 다음, 그 중의 작은 일부를 파는 부분처분을 했을 때, 팔리는 부분보다 사서 남아 있는 부분의 땅이 더 비쌀 것이다. 만일 납세자가 팔린 작은 땅과 관련하여 공제비용을 분배받는다면, 남아 있는 많은 땅과 팔린 작은 땅의 각각의 시장가치와 관련하여 공제비용을 분배받는 것보다 낮은 과세이득이 발생할 것이다. 인지하다시피, 법규는 처분시의 시장가치에 따라 공제비용이 분배된다.

1) 동산

동산이란, 유형의 유동재산을 말한다. 자동차, 그림 그리고 말과 같은 자산이 동산이다. 유가증권과 토지는 동산이 아니다. 소모성 동산은 50년 이하의 기간 동안 유용하다고 측정된 동산이다. 따라서 말은 소모성 자산이지만, 그림은 소모성 자산이 아니다. 소모성 자산은 대개 자본이득세로부터 공제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규칙에 대해 고려해야 할 두 가지의 특별한 예외가 있다. 하나는, 자동차는 어떤 식으로든 자본이득세에서 완전히 면세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거래, 전문직, 또는 천직의 과정 동안 사용된 소모성 자산은 자본이득세에 대해 자본공제가 적합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는 물가연동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하였는가, 발생하지 않았는가에 달려 있다. 만약 물가연동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더 낮은 물가 연동되지 않은 손실과 자본공제로 인해 공제비용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된 과세이득과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된 과세이득 중 더 낮은 과세이득이 최종 과세이득이 된다.

판매 수익이 6,000파운드 이하인 경우, 자본이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판매 수익이 6,000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의 과세이득은 다음과 같다.

$$5/3 \times (\text{총 수익} - 6,000\text{파운드})$$

<표 X-3> 6,000파운드 초과시 자본이득 과세표준계산 사례

	(단위: 파운드)
이익	6,600
- 비용	(100)
물가 연동되지 않고 점차적인 삭감되지 않은 이득	6,500
물가연동 공제 0.788×100	(79)
	6,421
점차적 삭감된 이득 $6,421 \times 85\%$	5,457
$5/3 \times (6,600 - 6,000) = 1,000$	

5,457파운드와 1,000파운드 중 더 낮은 것이 과세이득이다. 그러므로 과세이득은 1,000파운드이다.

2) 부분처분

납세자는 자산의 일부만을 처분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소유하고 있는 4개의 의자 중 하나의 의자를 처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나머지 자산이 여전히 소요되고 있다 할지라도 부분 처분은 과세대상인 처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세액을 정하기 위해 특별한 규칙이 적용된다.

공제비용의 일부만이 자본이득세의 계산에 포함될 것이고, 전체 공제비용에서 이러한 공제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식이 도입된다.

$$\frac{A}{A+B}$$

A는 부분 처분의 가치이고, B는 남아 있는 자산의 시장가치이다. 물가연동 공제에 대한 것도 이와 같이 계산될 것이다. 이러한 법규는 어떤 경우 세금회피를 막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의자의 예를 적용해 보면, 4개의 의자의 가치는 팔린 하나의 의자와 남은 세 개의 의자의 가치의 합보다 더 클 것이다. 즉, 3개의 의자의 가치는 4개의 의자의 가치의 3/4 보다 작을 것이다. 이것은 적은 공제 비용과 물가연동 공제를 만들어 내고, 그래서 높은 과세이득을 만들어 낸다.

3) 무용한 가치의 요구

자산이 가치가 없게 되면, 납세자는 그것의 시장가치에 팔기로 되어 있는 자산에 대해 무용한 가치 요구를 할 수 있고, 그와 동시에 시장가치에 팔리기로 되어 있는 것과 같은 가치를 수령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공제될 수 있는 자본공제를 납세자가 만들어 내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물론, 모든 연속적인 처분에 대한 공제 비용은 무

용한 가치 요구를 한 날의 시장가치이다.

마. 유가증권 가치평가

납세자는 같은 유가증권을 가지고 많은 거래를 하고, 이러한 경우 ‘경합의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가치 평가된 유가증권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자본이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칙들이 필요하다. 납세자가 수일에 걸쳐 한 회사의 많은 보통 주식을 매입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가 그것을 처분할 때 주식의 공제비용을 계산할 필요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각각의 주식은 심증팔구 다른 가격으로 구입되었을 것이고, 때문에 어느 가격에 구입된 주식이 실질적으로 팔렸는지를 알 수 있는 규칙이 필요할 것이다. 게다가, 어떠한 경우에는 권리와 보너스 문제와 같은 것들 때문에 적절한 공제비용을 정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영역에서의 규칙은 1998년 이후에 새로이 형성되었다. 여기서는 현재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규칙에 중점을 두고 설명한다. 그러나 우선, ‘경합의 규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98년 4월 5일 이후에 구입된 모든 주식에 대해서 개인은 각각의 구입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만 한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느 주식이 팔렸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1998년 4월 6일 이후의 개인에 의한 주식과 유가증권의 처분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경합된다.

- 같은 날에 이루어진 취득
- 처분 이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진 취득
- 1998년 4월 5일과 LIFO에 근거한 처분일 사이의 취득
- 1985년의 재정법 풀에서의 주식 (1982년 4월 6일 이후에 취득되어 1985년 4월 6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 1985년 4월 6일과 1998년 4월 5일 사이에 취득한 주식)
- 1982년의 재정법 풀에서의 주식 (1965년 4월 6일과 1982년 4월 5일 사이에 취득된 같은 종류와 같은 회사의 모든 주식)
- 1965년 4월 6일 이전에 취득된 주식
- 처분일 이후에 취득된 주식

마지막 항목은 특이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주식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는 그들이 아직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팔 수도 있다. 이것은 ‘단타 (selling short)’라고 불리고 합법적인 것이다.

1) 보너스 문제와 주식 분할

개인의 주식 소유권은 매매에 의한 이유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바뀔 수 있다. 가장 단순한 사례는 보너스 문제이다. 이것은 몇몇 회사의 지분이 자본화되어 주주들이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주식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다른 간단한 경우는 주식 분할이다. 이것은 주식의 분할이 있어, 기존의 주식이 새로운 주식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말한다. 좀 더 복잡한 경우로는 권리문제, 경영권 취득과 합병, 그리고 자본 배분이 있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소유 주식의 양이 변하는 것이다.

2) 권리의 문제

현존하는 주주에게 새로운 주식에 대해 어떤 가격이 적정할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권리가 주어질 때 발생한다.

3) 경영권 취득과 합병

주식의 변화는 합병이나, 경영권 취득시에 발생한다. 그리고 기존의 소유에 대한 대가로 받아들여지는 새로운 주식과 유가증권은 자본이득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바. 거주재산과 자본이득세

5,000평방미터 이하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은 소유기간 동안 그 지역을 거주지로서 점유하고 있었다면, 그것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자본이득세에서 공제를 받는다.

자본이득세로부터 공제되는 이득부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982년 3월 31일 이후로 거주지로 점유하고 있었다고 간주되는 기간

1982년 3월 31일 이후로 소유한 총기간

1982년 3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252개월의 소유 기간 중 172개월을 거주지로 점유하고 있었던 집을 판매한 경우의 과세이득 계산 사례는 아래와 같다.

<표 X-4> 거주재산 자본이득 과세표준계산 사례

	(단위: 파운드)
총수익	120,000
처분의 잡비용	5,000
순수이득	115,000
- 82년 3월 31일의 가치	45,000
물가연동되지 않고 점차적 삭감이 되지 않은 이득	70,000
- 물가연동된 공제 $1.047 \times 45,000$ 파운드	47,115
사적인 거주 공제: $172/252 \times 22,885$	22,885
	15,620
물가연동된 이득	7,265
점차적 공제된 이득 $7,265 \times 85\%$	6,175

사. 공제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자본이득세는 공정하고 균등한 세금제도를 만들어 내려고 의도된 것이다. 그러나 공제가 자본이득세의 영향력을 바꿀 수 있는 수많은 상황이 있다. 예를 들면, 납세자의 사적인 거주지를 매각할 때 발생하는 이익은 자본이득세로

부터 공제된다. 은퇴한 사람에 대해서도 또한 특별한 공제가 주어진다. 납세자들은 종종 연금에 기여하기보다는 사업의 성장에 투자하면서 은퇴를 맞이한다.

사업가들은 종종 새로운 자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한다. 예를 들면, 한 사업가가 새로운 부지로 사업장소를 옮기게 되어 새로운 재산을 구입하기 위해 기존의 땅과 건물을 매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만약 자산의 매각으로 발생한 이익을 새로운 자산에 투자한다면, 과세이연(rollover) 공제가 사용될 수 있다. 새로운 자산이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이라면 납세자는 rollover공제보다는 holdover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 납세자가 자산의 시장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과세처분을 한다면, 일부 또는 전부의 과세이익이 증여공제의 수단에 의해 이전될 수 있다. 이들 각각의 경우 점차적 삭감액은 교환되는 자산의 소유기간에 달려 있다.

1) 퇴직공제

50세 이상의 나이거나 비록 50세 이하의 나이지만, 병으로 은퇴를 하게 되는 개인은 그의 사업자산을 처분할 때 자본이득세에 대해 공제를 받는다. 이 때, 50세 이상의 개인이 그의 사업자산을 매각할 때 그가 실제로 일을 그만 두는지와 상관없이 은퇴를 주장할 수 있다.

2) Rollover공제

자산의 처분이 사업을 목적으로 한 다른 자산을 받아들이는 거래의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rollover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자산과 새로운 자산은 아래의 분류에 속해 있어야 한다.

- 분류1 -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된 건물,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 건물의 일부가 아닌 고정된 공장 또는 기계
- 분류2 - 배, 비행기 그리고 호버크라프트
- 분류3 - 인공위성, 우주정거장 그리고 우주선

- 분류4 - 상호
- 분류5 - 우유 quotas와 감자 quotas
- 분류6 - ewe(암양)과 suckler cow premium quotas
- 분류7 - 물고기 quota

3) Holdover공제

교환되는 자산이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이라면 rollover공제가 요구될 수 없다. 보통 기계나 공장과 같은 소모성 자산이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으로 취급된다. 반면에 건물이나 토지는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이 될 수 없다. Holdover공제는 수익이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에 재투자될 때 rollover공제 대신에 사용될 수 있다.

4) 회사설립공제

Holdover공제는 또한 사업과 사업자산 모두가 새로운 회사로 이전될 때 이용 가능하다. 즉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자산을 구입할 때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회사설립공제라 한다. 납세자가 회사설립공제를 받으려면, 간단하게 국세청에 알리기만 하면 된다.

5) 증여공제

증여공제는 시장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자산이 처리될 때 이용 가능하다. 매각자와 매입자는 매매가격이 nil경계까지 줄어들도록 합의할 수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매입자는 이득보다 적은 시장가격으로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 납세자가 자선이나 국가적 목적 또는 공제 손실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증여공제의 방식으로 처분을 한다면, 그때의 처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득도 손실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다.

4. 정책시사점

앞에서 영국의 자본이득과세가 국가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도입되었다고 말했다. 자본이득과세는 또한 사람들이 소득이 아닌 자본이득으로 수입을 조작하는 유인을 줄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과세가 도입되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에도 실거래에 의한 자본이득과세가 정착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영국이 자본이득과세를 도입하기 위해 고민하고 또한 도입 이후 발생하는 문제점을 꾸준히 보완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투기가 만연한 우리나라의 현실, 그리고 주식시장이 배당을 목적으로 장기투자가 이루어지기보다는 단기 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투자가 일상적인 현실을 감안할 때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러한 소득에 대해 반드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현실에 적절한 본격적인 의미의 자본이득과세의 도입과 평가제도의 혁신을 위해 국세청에 평가원(VOA)을 설치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는 좋은 벤치마킹 대상이 된다.

XI. 인지세(stamp duty)

인지세라 함은 우리나라의 경우 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收入印紙)로써 납부하는 모든 조세, 즉 인지수입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사업에 관한 것이든 아니든간에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을 증명하는 문서 및 통장으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것에 대하여는 그 작성명의자가 납세할 의무가 있는 국세를 의미한다. 인지세는 그 성질상 간접세·유통세·물세·정액세 및 문서세로서 국가의 세입예산상에 계상되는 세입계정 중 인지세이거나 수수료수입을 막론하고 정부가 발행한 수입인지의 판매대금 전체를 말하는 인지수입과는 조세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러한 우리의 인지세에 대한 이해와 문서에 대한 세금(tax on document) 형식의 영국 인지세의 이해가 그리 다르지 않다.

1. 연혁

인지세의 기원은 멀리 보는 경우 로마시대까지 연혁을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지만 분의 역사학자들은 1624년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형태를 현재 인지세의 기원으로 꼽는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조세를 찾으려는 경쟁의 결과로 산출되었다. 법으로 공증하는 문서에 인지를 첨부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과세기회를 마련하였다.

영국에서는 1694년 윌리엄과 메리왕정시대 프랑스와의 전비 마련을 위해 양피지, 송아지피지를 활용한 문서에 1페니부터 40실링까지 세금을 부과하였다. 법원 송사, 작위 수여, 행정문서, 유언의 공증 등에 활용되었고 인지세를 통해 한해에 50,000파운드 정도를 징수했다. 1765년 보스톤 차사건 등 식민지에서의 인지세 부과에 대한 저항에 직면하였고 1793년에는 종가세 형태의 인지세가 도입되었다. 1797년 윌리엄 핏이 한 시정연설에서 인지세는 행정적으로 아주 편리한 세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1808년 양도거래에 부과되었다.

1870년에 인지세 관련 3법, 즉 the Stamp Act, the Stamp Duties Management Act, 그리고 the Inland Revenue Appeal Act가 마련되었다. 1986년 재정법 개정을 통해 Stamp Duty Reserve Tax가 도입되었는데, 동년 10월 27일부터 전자적 방식(CREST)을 통한 주식거래 마감에 대해 인지유보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1994년에는 인지세 도입 30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으며 현재는 약폼레이블, 카드, 주사위 및 장기놀이 등에 까지 과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등록 및 주식거래에 부과하는 인지세가 주종이다.

결국 인지세는 국세청이 징수하는 가장 오래된 세금이며 규모면에서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나 한 해 8~10억파운드의 세금을 효율적이고 저비용 행정을 통해 징수하고 있다. 2003년 현재 인지세무서는 벨파스트, 런던, 버밍엄, 워딩, 브리스톨, 맨체스터, 에딘버러, 뉴캐슬 등 8곳에 위치 운영되고 있다.

2. 세율과 과세대상

가. 부동산 등록세

□ 인지세는 문서에 대한 과세

- 인지세는 재산상의 이전 및 다른 법적 문서에 대한 과세
- 문서 없이 양도될 수 있는 재산의 경우, 양도되었다는 문서가 없기 때문에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주택, 토지, 증권과 같은 재산은 규정된 법률적 형태로만 이전이 가능
- 과세소득의 계층구분이 아닌, 지불가격에 따라 세율 결정
 - 단일세율은 총판매가격에 과세

<표 XI-1> 토지거래세

60,000파운드까지	nil(면세)
60,000~250,000파운드까지	1%
250,000~500,000파운드까지	3%
500,000파운드 이상	4%

* 과거세율 1%, 2.5%, 그리고 3.5%는 거래가 2000년 3월 21일까지 이루어진 경우 적용

<표 XI-2> 서울변경 연혁

1997년 7월 7일까지	1%
1997년 7월 8일부터 1998년 3월 23일까지	1%, 1.5%, 2%
1998년 3월 24일부터 1999년 3월 15일까지	1%, 2%, 3%
1999년 3월 16일부터 2000년 3월 27일까지	1%, 2.5%, 3.5%

<표 XI-3> 평균 임대료에 대한 리스 등록세

7년 이하 또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1%
7년 이상 35년 이하	2%
35년 이상 100년 이하	12%
100년 이상	24%

<표 XI-4> 프리미엄 등록세

60,000파운드까지, 임대료 600파운드 이하	nil(면세)
60,000~250,000파운드까지	1%
250,000~500,000파운드까지	3%
500,000파운드 이상	4%

- 1년 이하 가구가 갖춰진 임대료 임대료가 5,000파운드 이상인 경우 5파운드 정액세
 - 7년 이하 임대료가 5,000파운드 이하거나 1년 이하 임대료 5,000파운드 이하인 경우 면세

나. 주식거래세(stamp duty reserve tax)

- 주식거래와 같이 문서가 필요없는 거래에 대해서도 1986년부터 인지세가 과세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재무부가 인정한 전자주식거래 시스템(CREST)을 활용하여 징수하고 있다.

<표 XI-5> 주식과 지분 구입시 등록세

구입가격	세금(파운드)
1,000파운드 이하	5
1,001~2,000	10
2,001~3,000	15
3,001~4,000	20
4,001~5,000	25
5,001~6,000	30
6,001~7,000	35
7,001~8,000	40
8,001~9,000	45
9,001~10,000	50
10,000 이상	0.5%(5파운드의 배수로 반올림)

- 세율
 - 종가세와 고정세의 형태로 구성
 -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는 재정법(1999)의 규정에 따라 과세되며, 주과세대상은
 - 매매(양도 또는 매매를 통한 이전)

- 임대
- 매매에 포함되지 않는 이전의 경우에는 5파운드의 고정세율
- 주식매매에 대한 과세
 - 주식의 이전은 보통 거래가격의 0.5% 과세, 예탁영수 가격의 1.5%
- 길드
 - 조합과 몇몇 소유권 관련 자본대부(loan capital)를 제외하고는 면세대상

□ 공제

- 자선단체의 양도 및 임차
- Registered Social Landlords로의 양도
- 협회의 한 그룹 소속원 간의 임차 및 양도
- 소유권의 변화가 없는 회사 재건
- EEA거래소 또는 승인된 외국 거래소 멤버인 중개인을 통한 주식 구매
- 주식대부 거래소
- 계약형 투자신탁의 합병 및 중도변경 가능한 투자회사에 대한 임시적 공제
- 계약형 투자신탁의 중도변경 가능한 투자회사로의 전환에 대한 공제

□ 인지가 필요한 법률 문서(Instruments that require the produced stamp)

- 토지 또는 광물의 단순봉토권의 매매를 통한 양도 및 이전
- 7년 이상의 채광 면허의 양도 및 토지 임차에 대한 증서
- 종가세 부과대상이든 아니든 7년 이상의 임대를 위한 계약
- 7년 이상된 임대기한의 갱신 또는 연장

□ 인지가 필요 없는 법률문서

- 계약상의 약인이 없거나, 선물 또는 애정의 정표로 표현되었을 때의 양도 또는 이전
- 계약상의 약인이 없는 계약 또는 양도
- 7년 미만 기한의 임대

- 지역권 증서 및 권리의 양도증서
- 임대 사본 및 신탁증서

□ 벌금의 경감

- 종가세의 경우 1년이 경과하였을 시

<표 XI-6> 벌금의 경감(1년 미만)

(단위: 파운드)

월별	300미만	305 ~ 700	705 ~ 1,350	1,355 ~ 2,500	2,505 ~ 5,000	5,000 이상
3달 미만	nil	20	40	60	80	100
6달 미만	20	40	60	80	100	150
9달 미만	40	60	80	100	150	200
12달 미만	60	80	100	150	200	300

- 종가세의 경우 1년 이상 경과하였을 시

<표 XI-7> 벌금의 경감(1년 이상)

(단위: 파운드)

월별	5,000 이상
15달 미만	15% or 최고 100
18달 미만	25% or 최고 150
21달 미만	35% or 최고 200
24달 미만	45% or 최고 250

- 고정세는 1년 이상~2년 미만의 경우 10파운드, 2년 이상의 경우 25파운드

□ 날인하기 위한 문서 제출의 지연이 용인되는 경우

-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질병 및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
- 거래를 취급하는 사무변호사의 사망
- 원본문서가 홍수 및 화재 또는 여타 천재지변으로 파괴되었거나 손상되었을 시

□ 과세대상인 약인으로서 채무

- 재산의 이전을 위한 약인으로서 채무의 양도
- 구매자에 의해 인수된 채무
- 금전적 지급 또는 양도된 주식

□ 매매계약

- 부동산 또는 주식의 거래를 위한 계약은 인지세 비과세
- 종가세는 거래를 위한 계약 또는 모든 협정에 부과
 - 형평법상 유효한 재산 또는 재산의 이익
 - 다음을 제외한 재산권 또는 재산의 이익
 - 토지
 - 동산, 장식품, 상품
 - 주식 또는 시장성이 높은 증권
 - 특허권, 등록상표, 설계 및 저작권
 - 보트 및 선박
 - 영국 외에 위치한 재산

□ 지참인 증서(Bearer Instrument)

- 인도에 의해 양도가능한 매매할 수 있는 담보물
- 보증이나 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주식 위임장 또는 증권
- 지참인에게 기탁하였다는 증명서
- 기타 양도증서
- 비영국회사에 의해 발행된 증서

<표 XI-8> 지참인 증서 유형에 따른 인지세율

Bearer Instrument	증서의 수입에 의해 양도하거나 제정된 주식 시장가 격의 1.5%
관례상 비영국 회사에 의해 발행된 Bearer Instrument	증서의 수입에 의해 양도하거나 제정된 주식 시장가 격의 0.2%
단일 비영국 회사의 주식 기탁 증권	증서의 수입에 의해 양도하거나 제정된 주식 시장가 격의 0.2%
대리인 Bearer Instrument	5파운드의 고정세

3. 인지세 과세범위와 공제

가. 범위

인지세법(1891년 제정된 법 Section 14(4))의 영향은 범죄행위의 증거를 제외하고는 인지가 첨부되지 아니한 문서는 법률 목적에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토지나 회사 주식의 거래에 대한 등록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인지유보세(stamp duty reserve tax)의 경우 영국회사, 영국에 소재한 외국회사, 영국과 합자회사에 모두 적용된다. 1.5%의 예탁영수체제(depositary receipt schemes) 부과는 영국지분에만 적용되고 영국에 등록된 회사라 하더라도 외국인 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공제

인지세와 인지유보세에 다음과 같은 사례에 다양한 공제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 자선단체에의 양도나 리스
- 등록된 사회임대업자(social landlords)에게 양도
- 인지세의 경우 그룹계열사 간의 양도나 리스
- 소유권의 변동 없는 기업재건
- EEA회원인 중개인에 의한 주식구입, 인지된 외환거래

- 교환 주식양여거래(on-exchange stock lending transaction)
- 승인된 단위신탁기금(unit trust)과 무제한(open-ended) 투자회사의 통합에 대한 임시공제
- 승인된 단위신탁기금의 무한투자회사로의 전환

□ 비과세대상

-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주요 항목은 자유보유권 재산 및 부동산 정착물, 임차재산에서 발생하는 합법적 이익
 - 주식, 무상환 사채권 및 유가증권
 - 특허권, 등록상표, 설계 및 저작권
 - 사용하지 않는 설비 및 기계류, 재고품 및 가재도구
 - 해외에 있는 재산
 - 선박
 - 수중에 있거나 계좌에 있는 현금
 - 저당권에 의해 확보된 채무

□ 임대에 대한 공제

- 조합공제
- 장관 또는 재무부 변호사에 대한 공제(Crown Exemption)
- 자선사업에 대한 공제
- 불리한 조건을 가진 지역

<표 XI-9> 불리한 조건을 가진 지역에 대한 공제

Country	Type of Area	Effective Date of Index
잉글랜드	Ward	7 May 1998
북아일랜드	Ward	21 April 1991
스코틀랜드	Postcode	21 April 1991
웨일즈	Electoral Division	1 April 1998

□ 공제청구를 위한 서한에서는 다음을 동봉

- 서한에 언급된 문서의 원본
- 다른 문서들의 공인된 사본
- 모든 보조자와 중개인이 등록멤버임을 증명하는 사본
- 계약의 일부가 간접적으로 연합된 가계도
- 양수인의 최근 계좌 사본
- 약인의 제공에 대한 제 3자와의 계약서 사본

□ 인지세 감면(stamp allowance)을 청구할 수 있는 자

- 세금을 지불한 고객
- 변호사 또는 세금을 지불한 고객을 위해 활동한 다른 대행자
-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사망한 자의 합법적 대리인
- 세금을 지불한 파산자의 파산 관재인
- 세금을 지불하고 회사의 부채를 청산한 청산자 또는 재산 관리인

4. 정책시사점

영국의 인지세는 우리나라의 수입인지세와는 달리 광범위한 과세대상을 포함하는 등록세 형식임을 알 수 있다. 토지거래의 경우 최고 4%에 달하는 등록세를 징수하고 있어 우리나라 등록세 주택의 경우 3%도 주택가격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국에서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자본이득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거래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증권거래세로 상장주식에 대한 세금을 종결하는 조치는 행정편의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XII. 영국의 조세절차법¹⁴⁾

1. 서론

영국의 조세는 이를 국세청(the Commissioners of Inland Revenue: TMA에서는 'the Board'라고 약칭하고 있다)이 관장하는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및 자본이득세)와 관세소비세청(the Commissioners of Customs and Excise)이 관장하는 간접세(관세 및 소비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1970년의 조세관리법(Taxes Management Act, 이하 'TMA'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세를 중심으로 조세절차와 조세쟁송제도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영국에는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조세법원 또는 프랑스와 같은 행정법원도 없고, 고유한 세무소송제도도 두고 있지 않다. 조세쟁송제도에 있어서는 행정불복 전치주의가 채택되어, 국세청의 과세처분(경정 또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납세자는 먼저 통상의 경우에는 일반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불복신청(appeal)을 하여 결정을 받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의 사법법원에 제소하여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각 불복신청의 재결기관은 국세청으로부터 완전히 분리 독립되어 있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국세청과 납세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준사법적(quasi-judicial) 기능을 가진 심판기관이다. 조세분쟁의 사실관계는 행정불복신청의 결정단계에서 확정되며, 일반법원은 법률문제만을 심리의 대상으로 한다. 이 점에서 영국의 행정불복심사 제도는 우리나라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14) 이 부분은 www.ir.gov.uk와 옥무석(2000)을 주로 참조.

2. 과세절차

가. 개인소득세 등의 신고와 조사

영국은 조세채권의 확정방식으로서 종래 부과과세방식을 취하였으나(부가가치세 제외), 1997년 4월 6일 이후 신고납세방식(self-assessment)으로 전환되었다. 개인소득세와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 ; capital gains tax)의 경우, 과세청의 공무원으로부터 과세연도의 신고안내서(a notice requiring a return)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연도(year of assessment)의 다음해 1월 말까지 과세표준과 이의 근거가 되는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정보를 과세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안내서가 과세연도의 다음 해 10월 31일 후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 신고안내서가 송달된 날부터 3월이 경과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수정신고도 가능하다. 과세연도에 신고안내서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도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소득세 및 자본이득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소득세 및 자본이득세의 신고는 당해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self-assessment). 법인세의 경우에도 개인소득세나 자본이득세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납세자의 개인소득세와 자본이득세의 신고, 또는 법인세의 신고를 접수한 세무공무원(조사관: inspector)은 사전에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신고 또는 수정신고 내용의 진실성을 조사할 수 있다. 그 조사기간에 제한이 있는바, 개인소득세와 자본이득세의 경우 납세자가 기한 내에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 또는 수정신고일로부터 1년 내에, 신고 기한 후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 또는 수정신고일로부터 1년 후의 날이 속하는 4분기 첫 달의 말일까지 조사하여야 한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그 조사기간은 개인소득세 및 자본이득세의 경우와 같다.

나. 경정절차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신고 또는 수정신고의 내용을 조사한 후 신고세액이 과소한 경우에는 그 세액을 경정할 수 있고, 납세자도 수정신고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1) 세무공무원의 경정

세무공무원은 조사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납세자의 신고세액이 과소한 것으로 판단되고, 납세자에 의하여 그 부족액(deficiency)이 즉시 수정되지 않는 때에는 경정(amendment of self-assessment)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조사종료 후 수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수정신고한 세액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조사종료 후 30일(납세자의 수정신고기한이다)이 경과한 날부터 다시 30일 내에 경정할 수 있다.

2) 조사종료의 통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신고(수정신고)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조사의 종료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 통지에는 조사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종결하고도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을 때에는, 납세자는 서면으로 그 결과통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결과통지의 신청은 불복절차로 취급되어 위원회(일반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가 관장하며, 심리한 위원회가 세무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에게 그 결과통지를 명령하여야 한다.

3)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에 의한 경정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조사통지서에 기재된 세무공무원의 의견에 따라 자기의 세액신고를 경정할 수 있다.

다. 무신고소득에 대한 과세(결정)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신고안내서를 받고도 개인소득세, 자본이득세 및 법인세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며, 그 결정내용

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과세청의 세액 결정은 납세자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 내에 하여야 한다(제척기간). 그러나 이에 대한 특례로서, 납세자 또는 그 대리인의 사기 또는 중과실(fraudulent or negligent conduct)에 의하여 발생한 과세 부족분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종료 후 20년(법인세의 경우는 21년) 내에 과세결정을 할 수 있다.

3. 행정불복심사절차

가. 행정불복심사의 구조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및 자본이득세)의 불복절차에 관해서는 조세관리법(TMA, 1970) 제44조 내지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납세자의 불복신청에 대한 재결기관은 일반위원회(General Commissioners)와 특별위원회(Special Commissioners)가 있다. 이 재결기관은 과세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사건의 성질에 따라 납세자는 이 두 기관 중 하나에 불복신청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건은 일반위원회의 관할이고, 특별위원회는 특별히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건만을 관할한다.

간접세(부가가치세,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불복절차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Value Added Tax Act, 1994: 이하 'VATA'라 한다) 제82조 내지 제8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와 관세(customs) 및 소비세(excise)에 관한 불복사건은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심판소(VAT and Duties Tribunal: VADT)가 관할한다.

나. 일반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일반위원회는 영국의 전통적인 배심제도의 산물로서, 납세자가 지역적 편의를 누리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결기관이다. 일반위원회는 일반위원(Commissioners for the general purposes of the income tax: 세법에서는 'General Commissioners'라고 약칭한다)으로 구성되는데, 일반위원은 세무지역(separate areas: 이를 'division'이라 한다)마다 임명된다. 잉글랜드와 웨일즈 또는 북아일랜드에서는 대법관(the Lord Chancellor)

이 임명하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지방장관(the Secretary of State)이 임명한다.

특별위원회는 전문적인 심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재결기관으로서, 특별위원(Commissioners for the Special Purpose of the Income Tax Acts: 세법에서는 ‘Special Commissioners’라고 약칭한다)으로 구성된다. 특별위원은 대법관이 검찰총장(the Lord Advocate)의 의견을 들어 임명하며, 대법관은 특별위원 중에서 위원장(the presiding Special Commissioner)을 임명한다.

다. 일반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의 불복절차(직접세의 불복절차)

1) 불복대상 및 불복기간

불복대상은 과세청의 공무원이 한 납세자의 확정신고(a self-assessment)에 대한 경정(amendment) 또는 불신고에 대한 결정(assessment)이다. 납세자는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통지(notice of amendment) 또는 불신고에 대한 결정통지(notice of assessment)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서면으로 불복청구서(notice of appeal)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세무공무원이 조사기간중에 경정을 한 경우에는 조사종료의 통지를 받은 후에 비로소 불복할 수 있다.

불복기간을 경과한 불복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세무공무원(검사관: inspector) 또는 국세청장이 납세자가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reasonable excuse)가 있었고,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지체없이 불복청구를 하였다고 인정하여 일반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적법한 불복청구로 본다. 그러나 조사관 또는 국세청장이 지연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아니할 때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2) 불복청구서와 불복이유

불복청구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경정 또는 결정의 통지를 한 당해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불복청구서에는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따라서 추후에 불

복이유를 추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당해 불복을 심리하는 일반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납세자가 불복이유를 누락한 것이 고의적이거나 또는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복청구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불복이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3) 일반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관할

가) 일반위원회의 관할

불복사건은 통상 일반위원회가 관할한다. 다만, 납세자(청구인: appellant)는 일정한 요건 아래 관할할 위원회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위원회의 대신으로 특별위원회를 선택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납세자가 특별위원회를 선택하려면, 미리 불복기간 내에 불복청구서 또는 다른 서면의 신청서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조사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특별위원회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선택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위원회의 관할로 된다.

나) 특별위원회의 관할

국세청장의 세액결정 또는 소득세 및 법인세법(the Income and Corporation Taxes Act, 1988: TA) 제350조에 의한 세액결정에 대한 불복사건은 특별위원회가 관할한다. 소득세 및 법인세법(TA) 제350조에서는 과세소득 중 스케줄 D의 케이스 III에 해당하는 연금이나 연차지급금(이자를 제외한다) 또는 특허권사용료 등의 소득에 관하여 그 지급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지급금의 계산서(an account of the payment)를 교부하여 그 지급시에 세무공무원이 소득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일반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관할을 조정하는 규정(regulations)을 제정할 수 있으며, 또한 일반위원회 간의 관할 세무지역(division)을 조정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조세관리법은 다음과 같이, 특별한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다.

- 첫째, 내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 주식 또는 증권의 평가에 관한 문제는 특별위원회
의 관할로 한다.
- 둘째, 다음의 소득세 및 법인세법(TA)의 각 규정의 적용상의 문제는 특별위원
회의 관할로 한다.
 - ① TA 제15편 제 I A장(재산양도자의 납세의무) 또는 제 I B장(재산양도자에
게 지급된 자본총액에 관한 규정)
 - ② TA 제16편(상속재산에 대한 관리)
 - ③ TA 제740조 및 제743조 제1항(해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
 - ④ TA 제747조 제4항 (a)(외국법인의 납세의무)
- 셋째, 다음 각 법률규정의 적용상의 문제는 특별위원회의 관할로 한다.
 - ① TA 제830조(영해와 지정구역)
 - ② 과세이득세법(Taxation of Chargeable Gains Act, 1992: TCGA) 제276조
(영해와 대륙붕)
- 넷째, 불복재송에 국세청에 대한 청구와 관련된 문제, 또는 다음의 소득세 및 법
인세법(TA)의 각 규정의 적용상의 문제는 특별위원회의 관할로 한다.
 - ① TA 제121조 제1항 및 제2항(채광권 소유자의 관리비용)
 - ② TA 제459조 및 제460조(일정한 친교단체의 면세)
 - ③ TA 제467조(일정한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의 면세)
 - ④ TA 제527조, 제534조, 제536조 및 제538조(특허권사용료, 저작권사용료 등
의 공제)
 - ⑤ TA 제18편 제 I 장(자본의 면세)

4. 조세소송절차

가. 사법제도와 조세소송

영국은 잉글랜드와 웨일즈(England and Wales), 스코틀랜드(Scotland) 및 북아일
랜드(Northern Ireland)의 3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국은 각각 다른 사법제도(법원

및 법관)를 가지고 있다. 영국의 최고법원에 해당하는 상원(the House of Lords)은 이들 국가에 대한 최종심의 상소법원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상원 아래 2심급의 법원이 있다. 즉, 잉글랜드와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에는 제1심급인 고등법원(the High Court)과 그 항소심인 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이 있는데, 고등법원은 우리의 지방법원에 해당하고, 항소법원은 우리의 고등법원에 해당한다. 스코틀랜드에는 스코틀랜드 항소법원(the Court of Session in Scotland)이 있고, 북아일랜드에도 북아일랜드 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 in Northern Ireland)이 있다.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서는 통상의 민사분쟁은 하급법원(County Court)에서 재판하는 소액의 분쟁을 제외하고는 먼저 고등법원에 제소하고, 그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법원에 항소하며, 그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상고허가를 받아 상원에 상고하여 재판하게 되는 3심급제를 채택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에서도 그 재판절차가 이와 유사하다고 한다. 고등법원에서는 단독판사가 심리하지만 항소법원에서는 판사 3인이 심리하며, 상원에서는 판사 5인이 심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영국에는 조세소송으로서 고유의 재판제도는 없고, 일반의 소송제도에 의하게 된다. 영국에서 조세사건에 대한 사법심사의 방식에는 상소(tax appeal)와 재심리(judicial review)가 있다. 상소는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이나 행정심판기관(일반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심판소)의 판결이나 결정에 관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실정법에 의해서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정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소에 의한 사법구제를 받을 수 없다. 납세자가 과세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쳐 법원에 제소하는 방법이 이에 해당한다. 일반위원회, 특별위원회 또는 심판소에의 불복단계에서는 분쟁의 사실관계가 확정되며, 분쟁의 법률문제만이 법원으로 넘어간다.

이에 반하여 재심리는 법원이 하급의 행정심사기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감시적 관할권(supervisory jurisdiction)의 행사로 이해할 수 있는데, 구체적 기능의 측면에서 보면 상소에 의한 법정 사법구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재심리의 존재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재심리는 실정법에 의하지 않는 사법구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세행정권의 행사에 대하여 불복하는 납세자는 일정한 상황, 예컨대 ① 과세청이 직권을 과잉 행사하였거나 남용한 경우 ② 자연적 정의의 법칙(the rules of natural justice)에 반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또는 ③ 일반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가 불공정

하거나 부당하게 결정한 경우에는 직무집행명장(mandamus), 금지명령(prohibition) 또는 사건 이송명령에 관한 대권적 명령(prerogative orders) 중 하나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이 곧 최고법원법(Supreme Court Act, 1981) 제31조 및 최고법원규칙(the Rules of the Supreme Court)의 order 53에 의한 사법적 재심리의 신청이다.

여기서는 상소에 의한 사법구제만을 다루기로 한다.

나. 관할법원과 제소절차

영국에는 조세사건을 전담하는 조세법원이나 행정법원이 없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일반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청구인(납세자) 또는 검사관이나 국세청의 세무공무원은 법률문제(a question of law)에 대하여 사법심으로서 제1심에 해당하는 고등법원(High Court)의 대법관부(the Chancery Division)에 제소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납세자만이 심판결정에 불복하여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 대하여, 영국에서는 납세자뿐만 아니라 조사관 및 국세청의 세무공무원도 행정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제소할 수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에 항소할 수 있으며, 그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최종심인 상원(the House of Lord)에 상고할 수 있다. 그런데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다음의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직접 항소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당사자 쌍방이 동의한 경우
- 당해 특별위원회가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위원들 앞에서 충분히 주장되고 심리된 법률의 제정에 관련되는 법률적 쟁점에 관한 것임을 증명한 경우
- 항소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스코틀랜드에서 일반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고등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은 재정법원(the Court of Exchequer)으로 개정하는 스코틀랜드

항소법원(the Court of Session in Scotland)이 관할하며, 납세자가 그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상원에 상고하여야 한다. 북아일랜드에서도 사법심의 제1심 관할은 북아일랜드 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 in Northern Ireland)에 있다.

다. 집행부정지의 원칙

조세사건이 제소되어 고등법원이나 항소법원에 계류중이라도 세액은 당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납부하여야 한다.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채택되고 있다. 이 점은 행정불복심사단계에서의 집행부정지의 원칙과 같다. 다만, 행정불복심사단계에서는 납세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조세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라. 심리 및 판결

법원에 제소를 함에 있어서는 법률문제를 심리대상으로 하므로, 어떤 문제가 법률문제인가 사실문제인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원회는 유일한 사실에 관한 심리기관이지만, 모든 조세사건에는 사실문제와 동시에 법률문제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사실관계에 대하여 적용할 법률의 해석 및 적용요건에 관한 것은 물론 법률문제이다.

또한 사실인정에 있어서 제1차적 사실(primary fact)과 제2차적 사실(secondary fact)로 나누어 생각할 때, 제2차적 사실은 제1차적 사실로부터 추단(inference)되거나 연역된 사실의 결론이라고 할 것인바, 위원회가 제1차적 사실로부터 제2차적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타당한 법적 증거에 의하여 사실의 결론을 추단 또는 연역하였는가의 문제는 법률문제로 된다. 법원은 제소된 법률문제를 심리 및 판단하고, 판결로서 사실 기재서에 의한 위원회 결정을 파기, 인용, 변경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위원회에 이송(remit)하거나 적당한 기타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당사자의 합의사항을 승인할 권한은 없다.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에 대하여 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점은 행정불복심사단계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다.

마. 상소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소는 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에, 다시 상고의 허가를 받아 상원(the House of Lord)에 상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항소법원(The Court of Session) 및 북아일랜드 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 in Northern Ireland)의 각 판결에 대한 상고는 허가 없이 상원에 상고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권성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 -계산서와 신용카드 거래를 중심으로-」, 『강남대 논문집』 제35집, 강남대학교, 2000.
- 김대영, 「외국의 재산과세제도」, 『지방세』 통권 74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2.
- 김진수·이준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2.
- 류금렬, 「유럽국가들의 재산세제」, 『지방세』 통권 70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2.
- 옥무석, 『mimeo』, 2001.
- _____, 『mimeo』, 2002.
- 임성일·최영출, 『영국의 지방정부와 공공개혁』, 법경사, 2001.
- 임주영 외, 『주요국의 조세제도』, 한국조세연구원, 1996.
- 최준욱, 『영국의 재정』, 한국조세연구원, 1996.
-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각호.
- _____, 『주요국의 최신 조세·재정동향』, 2003.
- CCH Editions limited, *British Master Tax Guide*, 1989~99.
-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ation and the Regions,
<http://www.detr.gov.uk>
- HM Customs and Excise, <http://www.hmce.gov.uk>
- HM Inland Revenue, www.inlandrevenue.gov.uk
- _____, *Bicentenary of Income Tax*, 2000.
- _____, *Annual Report*, 2002.
- _____, *A Briefing for Charter Mark*, 2003.
- HM Treasury, *Budget Report 2003*.
- KPMG, *Investment in the UK*, 1997.

Lymer, Andy and Dora Hancock, *Taxation Policy and Practice*, 9th ed., 2002/2003,
Thompson: London, 2003.

P. K. Brown and M. A. Hepworth, *A Study of European Land Tax Systems*,
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 Working Paper, 2002.

Richards, David and Martin J. Smith, *Governance and Public Policy in the UK*,
Oxford Univ. Press, 2002.

<부록 1> 영국 통계

<부표 1> 중앙정부 세입 중 내국세¹⁾

(단위: 백만파운드, %)

	내국세 ²⁾	관세 & 소비세	자동차 중과세	선택고용세 & NI 추징금	총계 ³⁾	총계 중 내국세 비율
1968~69	6,532	4,601	393	1,363	12,888	50.7
1969~70	7,476	4,953	417	1,888	14,733	50.7
1970~71	8,175	4,709	421	1,990	15,295	53.4
.
1979~80	28,153	18,032	1,149	2,987	50,321	55.9
1980~81	32,982	22,095	1,419	3,542	60,038	54.9
.
1989~90	76,674	52,190	2,918	1	131,783	58.2
1990~91	82,322	55,337	2,972	1	140,632	58.5
1991~92	79,510	61,827	2,946	-	144,283	55.1
1992~93	76,346	63,398	3,198	-	142,942	53.4
1993~94	77,271	66,885	3,752	-	147,908	52.2
1994~95	87,230	72,486	3,806	-	163,522	53.3
1995~96	97,101	76,670	4,044	-	177,815	54.6
1996~97	103,892	82,351	4,217	-	190,460	54.5
1997~98	117,633	89,841	4,543	-	212,017	55.5
1998~99	128,250	94,027	4,666	-	226,943	56.5
1999~00	139,384	97,292	4,893	-	241,569	57.7
2000~01	149,085	104,855	4,642	-	255,895	58.3
2001~02	145,898	108,749	4,399	-	259,046	56.3

주: 1) National Insurance Fund로 직접 지불된 금액을 포함.

2) 활동기구의 세금공제와 기타 세금공제.

3) 몇 가지 소규모의 세입원은 제외하여 계산하였음.

<부표 2> 납세의무자 수

(단위: 천명)

	소득세 ¹⁾		부가세 (surtax)	법인세	자본 이득세	상속세	
	납세의무자 의 수 ²⁾	개인의 수 ³⁾				사망에 따른 이전	생애 중 이전
1938~39	3,800	..	105	-	-	153	-
1948~49	14,500	..	218	-	-	58	-
1958~59	17,700	..	393	-	-	66	-
1968~69	20,700	..	474	..	355	81	-
1972~73	18,900	..	370	..	410	36	-
1973~74	19,700	23,100	-	175	285	47	-
1974~75	20,400	24,300	-	175	170	42	-
1975~76	20,800	25,300	-	175	210	48	1
.
1980~81	21,000	24,900	-	195	155	21	5
1981~82	20,800	24,800	-	205	140	24	5
.
1989~90	21,500	25,000	-	370	145	24	7
1990~91	..	26,100	-	350	110	21	7
1991~92	..	25,700	-	340	85	19	6
.
1999~00 ⁴⁾	-	510	220 ⁵⁾	21	2
2000~01	..	29,300 ⁵⁾	-	520	210 ⁵⁾	22	2
2001~02	..	29,000 ⁶⁾	-	..	130 ⁶⁾	23	2
2002~03	..	29,400 ⁶⁾	-	..	90 ⁶⁾	25	2

주: 1) 소득세 산정은 개인소득 조사에 근거하였음.

2) 결혼한 부부는 1로 계산함.

3) 남편과 아내를 분리하여 계산함.

4) 개인소득조사에 근거한 추정치는 임시적으로 제거함.

5) 잠정적임.

6) 2003년 4월 예산보고서에서 입안되었으나, 이들 계획은 국가통계범위에서 제외됨.

<부표 3> 지역별 소득세 납세의무자 수

(단위: 천명)

	영국 ¹⁾	잉글랜드 ¹⁾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1990~91 ²⁾	26,100	24,100 ⁶⁾	-	2,340	540
1991~92 ²⁾	25,700	23,500 ⁶⁾	-	2,320	510
1992~93 ²⁾	25,400	22,800 ⁶⁾	-	2,280	578
1993~94	25,000	22,300 ⁶⁾	-	2,190	541
1994~95	25,300	22,400 ⁶⁾	-	2,340	593
1995~96	25,800	23,000 ⁶⁾	-	2,230	575
1996~97	25,700	21,500	1,170	2,330	566
1997~98	26,200	21,900	1,190	2,370	570
1998~99	26,900	22,700	1,140	2,310	630
1999~00 ³⁾
2000~01	29,300	24,700	1,330	2,490	670
2001~02 ⁴⁾	29,000	24,400	1,310	2,470	660
2002~03 ⁴⁾	29,400	24,800	1,330	2,500	670
2003~04 ⁵⁾	30,700	25,900	1,410	2,610	700

주: 1) 영국군대, 상선단, 해외거주자, 주소지가 알려지지 않은 몇몇 사람들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포함되었음.

2) 잉글랜드,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수는 Mortgage Interest Relief at Source (MIRAS)를 제외하여 계산된 조세의무에 근거하였음.

3) 개인소득조사에 근거한 추정치는 임시적으로 제거함.

4) 잠정적임.

5) 2003년 4월 예산보고서에서 입안되었으나, 이들 계획은 국가통계 범위에서 제외됨.

6) 웨일즈 포함.

<부표 4> 조세 상환과 구호금에 대한 세금공제

(단위: 백만파운드)

연도	총계	상환의 범주			
		증여 원조	계약	U.K 조합의 세금공제 이익 환급금 ¹⁾	세금공제 하에서 얻어진 소득 ²⁾
1990~91	474	11	206	169	88
1991~92	559	54	216	195	94
1992~93	578	73	197	211	97
1993~94	612	82	210	216	104
1994~95	674	114	224	239	97
1995~96	738	110	235	282	111
1996~97	755	134	251	288	82
1997~98	732	177	259	237	59
1998~99	819	306	290	173	50
1999~00	821	208	305	264	44
2000~01 ³⁾	649	222	188	195	44
2001~02	627	415	22	150	40
2002~03 ⁴⁾	643	506	6	97	34

주: 1) 2000~01부터 10% 급료총액을 추가로 증여함.

2) 인세 포함.

3) 2000년 예산에 따르면 기업 증여가 전반적으로 지불되었으나, 조세상환을 포함하지 않아서 제외됨.

4) 잠정적임.

<부표 5> 세금 공제비용

(단위: 백만파운드)

	조세 상황	Payroll 증여 ¹⁾	고비용 공제 선물원조와 계약 ²⁾	구호금의 총수입 ³⁾	상속세	국가 비주거 레이트	부가가 치세	전적 공제
1990~91	474	2	20	500	-	-	-	-
1991~92	559	3	20	580	-	-	-	-
1992~93	578	4	20	600	-	-	-	-
1993~94	612	4	30	650	190	470	200	1,510
1994~95	674	4	30	710	210	500	200	1,620
1995~96	738	5	30	770	250	540	200	1,760
1996~97	755	5	60	820	280	580	200	1,880
1997~98	732	7	90	830	250	590	150	1,820
1998~99	819	7	100	930	310	610	150	2,000
1999~00	821	9	100	930	310	630	150	2,020
2000~01 ⁴⁾	649	15	140	800	370	660	150	1,980
2001~02	627	18	190	830	340	710	150	2,030
2002~03 ⁵⁾	643	20	220	890	330	740	200	2,160

주: 1) 급료총액 추가 증여 10%는 조세상황에 포함됨.

2) 또한 2000~01년도에서 앞으로 약 40m에서 50m의 자본의 증여에 대한 공제를 포함.

3) 이 구성요소는 총계에 합산되지 않음.

4) 2000년 예산에 따르면 기업 증여가 전반적으로 지불되었으나, 조세상황을 포함하지 않아서 제외 됨.

5) 잠정적임.

<부표 6> 소득세 개인수당과 공제

(단위: 파운드)

	비정년 수당			정년 수당				
	개인	부부 ¹⁾	맹인 ²⁾	개인		부부		소득 제한 ³⁾
				65~74	74+	65~74	74+	
1991~92	3,295	1,720	1,080	4,020	4,180	2,355	2,395	13,500
1992~93	3,445	1,720	1,080	4,200	4,370	2,465	2,505	14,200
1993~94	3,445	1,720	1,080	4,200	4,370	2,465	2,505	14,200
1994~95	3,445	1,720 ⁴⁾	1,200	4,200	4,370	2,665 ⁴⁾	2,705 ⁴⁾	14,200
1995~96	3,525	1,720	1,200	4,630	4,800	2,995 ⁵⁾	3,035 ⁵⁾	14,600
1996~97	3,765	1,790 ⁵⁾	1,250	4,910	5,090	3,115 ⁵⁾	3,155 ⁵⁾	15,200
1997~98	4,045	1,830 ⁵⁾	1,280	5,220	5,400	3,185 ⁵⁾	3,225 ⁵⁾	15,600
1998~99	4,195	1,900 ⁵⁾	1,330	5,410	5,600	3,305 ⁵⁾	3,345 ⁵⁾	16,200
1999~00	4,335	1,970 ⁶⁾	1,380	5,720	5,980	5,125 ⁶⁾	5,195 ⁶⁾	16,800
2000~01	4,385	-	1,400	5,790	6,050	5,185 ⁶⁾⁷⁾	5,255 ⁶⁾	17,000
2001~02	4,535	-	1,450	5,990	6,260	5,365 ⁶⁾⁷⁾	5,435 ⁶⁾	17,600
2002~03	4,615	-	1,480	6,100	6,370	5,465 ⁶⁾⁷⁾	5,535 ⁶⁾	17,900
2003~04	4,615	-	1,510	6,610	6,720	5,565 ⁶⁾⁷⁾	5,635 ⁶⁾	18,300

주: 1) 부가적 개인수당과 미망인 수당은 결혼한 부부 수당으로 계산.

2) 두 배우자 모두 맹인일 때 개인 총액의 두배를 받는다.

3) marginal fraction은 1/2.

4) 가용수당은 고정요금의 20%비율.

5) 가용수당은 고정요금의 15%비율.

6) 가용수당은 고정요금의 10%비율.

7) 적어도 파트너 중 한 사람은 2000년 4월 6일 이전에 65세가 되었어야 한다.

<부표 7> 조세면제 물품과 경비상환

(단위: 천건, %, 백만파운드)

급부 유형	수령		면제			납세의무		NIC 부담	
	건수	비율	건수	평균	비율	총액	평균	총액	평균
자동차	1,600	40	5,770	3,600	54	1,960	1,220	700	440
연료	850	21	1,790	2,110	17	610	720	220	260
사립 차·의과	2,050	51	900	440	8	300	140	110	50
수익채	120	3	80	670	1	30	220	10	80
일반수당	230	6	230	980	2	80	340	30	130
여행과 생계	260	7	620	2,400	6	210	820	80	320
오락	130	3	140	1,100	1	50	410	20	140
국내 전화	180	5	60	340	1	20	120	10	50
부임 수당	240	6	280	1,170	3	80	350	40	170
기부금	120	3	60	460	1	20	170	10	60
소형 트럭	220	6	70	340	1	20	70	10	40
서비스제공	40	1	30	610	0	10	210	3	80
인환권/신용카드	80	2	110	1,310	1	40	440	20	190
양도자산	20	1	30	1,720	0	10	640	10	460
편의 제공	30	1	110	3,860	1	40	1,240	10	470
교육적 보조	4	0	10	1,680	0	3	640	1	200
종업원 보수	20	1	60	2,580	1	20	970	10	330
기타 수당	280	7	120	430	1	30	110	20	70
기타 급부	200	5	210	1,030	2	70	370	30	140
총계	4,000	100	10,660	2,670	100	3,600	770	1,340	330

<부표 8> 상속세수 통계

(단위: 백만파운드)

	1995~96	1996~97	1997~98	1998~99 ¹⁾	1999~00 ¹⁾	2000~01 ¹⁾	2001~02 ¹⁾
임의 신탁	29.5	42.9	28.6	25	22.6	57.7	24.7
개인에 대한 이전	5.2	5.3	9.3	4.9	9.1	6.7	9
생애 중 이전 총계	34.6	48.1	37.9	29.9	31.7	64.4	33.8
사망에 따른 이전	1,426.0	1,531.4	1,641.8	1,751.8	2,013.5	2,155.7	2,320.5
예금액의 변화	55.9	-24	-	-	-	-	-
상속세 총계 ²⁾	1,516.5	1,555.50	1,679.7	1,781.7	2,045.2	2,220.1	2,354.3
재산세	2.6	2.5	4.3	3.9	1.7	1.1	1.1
예금액의 변화	-1.1	-	-	-	-	-	-
순 수령액	1,518.0	1,558.0	1,684.0	1,785.6	2,046.9	2,221.2	2,355.4

주: 1) 1998~99(9.1백만파운드), 1999~2000(6.7백만파운드), 2000~2001(13.4백만파운드), 2001~02(5.8백만파운드)의 대납(non-cash payments)을 제외.

2) 소액의 자본이전세를 포함.

<부표 9> 주요 조세지출구조 및 규모

(단위: 백만파운드)

세목 및 항목	2001/02	2002/03
소득세	13,000	13,700
비과세(relief)	190	100
- approved pension schemes	40	150
- approved profit sharing schemes	240	160
- share incentive plan	700	575
- approved savings-related share option schemes	725	825
- personal equity plans	60	35
- individual savings accounts	260	240
- venture capital trusts	50	50
- professional subscriptions	100	100
- rent a room		
감면(exemption)	850	850
- first 30,000 of payments on termination of employment	170	160
- interest of National Savings Certificates	150	100
- tax exempt special savings account interest	110	90
- premium bond prizes	850	900
- income of charities	70	80
- foreign service allowance paid to Crown servants abroad	300	300
- first 8,000 of reimbursed relocation packages provided by employers		
세액공제		
- life assurance premiums	95	85
- children's tax credit	2,100	2,300
- working families' tax credit	5,500	6,300
- disabled person's tax credit	130	160
소득세와 법인세		
- film tax relief	240	300
법인세		
- R&D tax credits	150	600

<부표 9> 계속

세목 및 항목	2001/02	2002/03
국민연금기여(비과세)		
- approved profit-sharing schemes	130	70
- share incentive plan	20	90
- approved savings-related share option schemes	160	110
- employer contributions to approved pension schemes	4,800	4,900
자본이득세		
- exemption of gains arising on disposal of only main residence	6,000	11,000
- retirement relief	70	30
상속세(비과세)		
- agricultural property	110	120
- business property	110	90
- exemption of transfers to charities on death	340	330
부가가치세		
영세율		
- food	9,150	9,350
- construction of new dwellings	3,050	3,400
- domestic passenger transport	1,650	1,750
- int'l passenger transport(UK portion)	200	250
- books, newspapers and magazines	1,400	1,450
- children's clothing	800	800
- water and sewerage services	950	950
- drugs and supplies on prescription	750	800
- supplies to charities	150	200
- ships and aircraft above a certain size	450	500
- vehicles and other supplies to disabled people	350	400
낮은 세율		
- domestic fuel and power	1,750	1,850
- certain residential conversions	100	100

<부록 2> 조세관리법(Tax Management Act)

Section 17 납세신고

배경(Background)

1. 1970년 조세관리법의 section 17에서 우리는 지불되거나 대출된 이자의 납세신고를 요구하고 있다. section 17 규정은 이자가 지불될 수 있는 돈을 받거나 보유할 수 있는 사업의 일반적인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다. section 17은 지불된 이자와 대출된 이자정보와 특정 조세연도에 이자가 지불되거나 대출된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한 정보를 요구한다. 정보는 규정에 명시된 형식의 중의 하나로 신고되어야만 한다(paragraph 11과 paragraph 12참고).
2. 법해석과 관련된 지침서는 section 17 규정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결정한다. section 17 규정은 이 규정에 해당되는 수취인이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도와주기 위함이다.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 '이자(interest)'는 건설공제조합에 의해 지불된 배당금도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3. 이러한 지침서를 읽은 이후에 좀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Miss Pat Blanchard

Room S1

West Wing

Somerset House

Stand

London

Wc2R 1LB

Tel: 020 7438 6261

Fax: 020 7438 7752

e-mail: pat. blanchard@ir.gsi.gov.uk

납세신고에 대한 좀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납세신고양식 혹은 기입하는 방법에 대한 지문을 위해 다음 주소로 연락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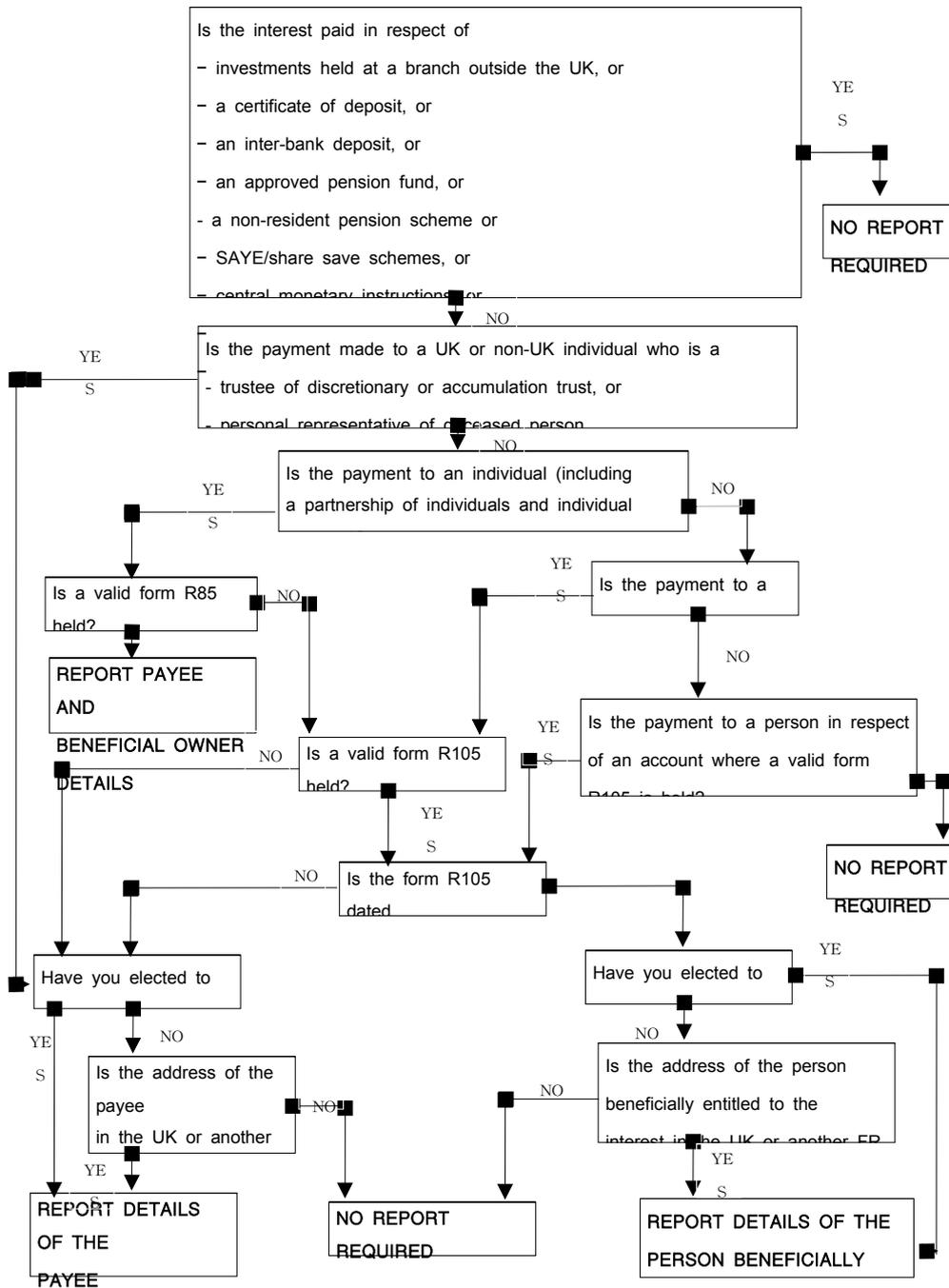
Mr. Chris Sexton at the address shown in paragraph 11.

e-mail: chris.sexton@ir.gsi.gov.uk

흐름도(Flowchart)

흐름도는 납세신고가 요구될 때와 어떠한 정보가 신고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Section 17 (bank and building society interest)



납세신고(Returns)

누가 납세신고를 해야 하는가?(Who needs to make a return?)

5. section 17 통지를 받은 모든 사람은 납세신고를 해야만 한다. section 17 보고는 기탁수취인(deposit-takers)과 건설공제조합(building society)에 한정된다. 또한 때때로 기탁수취인과 건설공제조합은 section 18 TMA하에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section 17하에 신고된 정보가 있으면 section 18하에서 이자를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6. section 18 TMA하에서 보고될 수 있는 일정 이자는 section 17하에 신고되는 것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 영구적인 이자를 담고 있는 몫(PIBS; Permanent Interest Bearing Shares)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building society는 section 18 TMA하에 이러한 이자를 엄격하게 보고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section 17 납세신고와 관련하여 개인들에게 PIBS에 대해 지불된 이자를 포함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행할 수 있다.
 - 지방정부는 엄격하게 section 18하에 개인들에게 지불되거나 대출된 이자를 보고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들이 section 17 양식과 지침서를 사용하는 section 17하에서 신고를 원한다면 그렇게 행할 수 있다.
 - 국가저축&투자는 section 18하에 그들의 생산품의 일부에 지불된 이자를 엄격하게 보고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들이 section 17 양식과 지침서를 사용하는 section 17하에서 신고를 원한다면 그렇게 행할 수 있다

납세신고책임의 이양(Deligation of the responsibility to make a return)

7. 당신이 신고를 요구하는 통지서를 받는다면 제3자가 당신 대신에 기입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통지를 준수할 책임이 여전히 존재한다.

언제 통지서가 발행되는가?(When does notices issue?)

8. 우리는 정기적으로 보고연도 말 이전에 2월에 이자로부터 공제된 세금과 투자자들에게 지불된 이자납세신고서를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행한다. 그러나 우리는 과세연도 말 이후 3년까지 언제든지 통지서를 발행할 수 있다. 통지서는 갖추어진 납세신고서를 보낼 장소에 대한 지침서를 포함한다.

납세신고를 하는 데 시간제약은 없는가?(What is the time limit for making returns?)

9.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탁수취인과 building society에 의해 제출되는 연차납세신고를 요구한다. 납세신고에 대한 시간제약은 통지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과세연도 통지 말 이후와 관련하여 6월 30일까지 혹은 통지발행일 이후 4개월이며, 이 중 어느 것이든지 간에 시간이 늦은 것이 기준이 된다.
10. 예를 들자면 2002/03년도 과세연도에 우리는 2003년 2월에 통지서를 발행했고 당신은 우리에게 2003년도 6월 30일까지 납세신고서를 보내야만 한다. 통지서가 만약 2003년도 3월 31일에 발행되었다면 당신은 2003년 7월 31일까지 납세신고서를 우리에게 보내야만 한다.

납세신고양식(Form of the return)

11. 당신은 마그네틱 파일이거나 서류로써 납세신고를 행할 수 있다. 당신은 우리가 구체화 시킨 양식으로 납세신고파일을 전송해야만 한다. 우리는 1/2n 자기 테이프와 3.5m(720k/1.44m)플로피 디스크 혹은 콤팩트 디스크로 자료를 접수할 수 있다. 당신은 www.inlandrevenue.gov.uk/s17-18guidance/index.htm 혹은 국세청 회계국(Inland Revenue Audit Unit)에서 자기 미디어 내역서의 사본을 볼 수 있다.

12. 당신이 서류로 납세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paragraph 11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준수해야만 한다. 우리는 사진사본은 접수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양식에 기입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서를 보낼 것이다(<부록 3>참조).

어떤 이자가 납세신고서에 포함되지 말아야 하는가?(What interest should not be included on the return)

13. 다음과 같은 사항에 지불하는 이자는 신고하지 않는다.

- 국외에 있는 영국사람에게 계좌(account)가 영국 외부의 주소를 가지고 있고 계좌 보유자가 개인이라기보다는 집단(entity)으로서 기탁수취인과 건설공제회의 장부와 기록부에 적혀 있을 경우 보고할 필요는 없다. 집단은 개인 참여를 포함하지 않는다(배제의 효과는 비거주 기업들이다(그리고 다른 비개인들은 보고되지 않아야 한다). 몇몇 경우에 수취인 대신에 수혜자의 내역서가 요구된다. R105 양식으로 2001년 4월 6일이나 그 이후에 납세신고서가 접수된다면 paragraph 40과 paragraph 41을 참조하라.
- 중앙금융기관과 국제조직(section 324 지침에 규정됨)
- 적립증명서(양도증서를 포함)
- ISAs(paragraph 14 참조)
- PEPs(paragraph 14 참조)
- TESSAs(paragraph 14 참조)
- 은행간(building society를 포함)적립금(중개업자를 통한 적립을 포함하여)(이러한 배제에는 기탁수취인이거나 building society가 적립금을 소유함으로써 중개업자에게 이자를 지불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중개업자를 통해 예치되는 모든 적립금을 배제할 수 없다.
- 영국외부에서 위치에 있는 지소(branch)에서 이루어지는 투자
- 소득공제 기법(SAYE/Share Save Schemes)
- 승인된 연금 기법(paragraph 60 참조)

- 비거주자 연금 기법
- syndicate 대부이자(loan interest)

BISAs, PEPs and TESSAs

당신은 지불되거나 대출된 이자를 법적 효력이 없는 ISA 혹은 PEP 혹은 TESSA에 보고하거나 최근에 수정된 ISA에게 보고해야만 한다. ISA가 수정되거나 당신이 우리에게 납세신고서를 보내기 이전에는 ISA/PEP/TESSA가 무효인 것으로 밝혀진다면 당신은 납세보고서에 대한 정확한 상태(position)를 보여야만 한다. 그러나 당신이 이미 우리에게 납세보고서를 보냈다면 당신은 우리에게 더 이상 납세보고서를 보낼 필요가 없으나 당신은 청구시 우리에게 조정(adjustment)의 세부사항을 기록해야만 한다.

어떠한 정보가 신고되어야 하는가?(What Information must be return?)

15. 납세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만 한다.

- 지불되거나 대출된 이자를 소유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 혜택을 받는 소유자의 세부 사항은 수취인 대신에 혹은 이외에 요구된다.
- 세금공제 이전에 지불된 이자의 금액, 해외 원천과세가 공제된다면 당신은 해외원천과세의 공제 이후의 금액을 보고할 수 있거나 당신이 지속적으로 보고한다는 조건하에 공제되기 이전의 총금액을 보고할 수 있다.
- 공제된 영국조세
- 공동예금계좌(joint account)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와 관련당사자 수
- 출생일과 계좌에 관련하여 제공되는 수취인의 국가 보험번호(R85 양식이 있는 paragraph 37참조)
- 분류코드나 지점을 포함한 계좌번호
- 최초로 지불되어 오고 있는 이자에 관한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 외화를 나타내는 SWIFT 표준코드를 지닌 영국화폐 이상으로 현금으로 지불되거나

신고됨을 보여주는 지표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6. 법에 근거하여 당신은 section 17에 명시된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따라서 정보는 정보보호법 section 35(1)에 의거하여 1998년 정보공개법의 비공개규정으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이러한 면제는 공지(notice)에 구체화된 정보와 정보보호법하의 책임을 이행할 경우에 국한된다. 공지에 구체화되지 않은 어떠한 정보도 요구할 수 없다.

완전히 신고의무가 있는 국가(Fully reportable countries)

영국에 있는 투자자와 FR국가에서의 투자자의 납세신고의 제한(Restricting returns to investors in the UK and FR Country)

17. 우리가 발표한 표준공지는 당신이 영국주소를 가진 모든 투자자와 FR(fully reportable) 국가에 보고할 수 있는 주소를 지닌 개인적 투자자에게 보고해야만 하는 거래를 제한한다. 그러나 주소와 관련 없이 모든 개인에 대한 관련 거래를 보고할 때는 paragraph 19에서 21까지 또한 참조하라.

18. FR국가의 리스트는 <부록 2>에 있다. 우리는 FR국가의 리스트에 대한 변화에 대해 6개월 통지를 부여할 것이다.

주소와 관련 없이 모든 개인들에게 보고하는 것(Reporting for all individuals, regardless of address)

19. 영국과 다른 'fully reportable' 국가 어떤 경우에 있어(특히 컴퓨터에 의해 발생되는 보고서가 있는 곳) 개인의 보고를 제한하는 것은 불균형적으로 많은 비용이

드는 작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의무의 보고를 제한하는 비용에 대해 균형을 맞춘 이후에 당신은 표준공지에 의해 요구되는 보고서를 제한하는 것이 불균형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게 될 것이며, 당신은 영국과 다른 'fully reportable' 국가에서의 개인들에 대한 관련거래를 보고하도록 하는 표준통지서가 발행된 이후 3개월 이내에 회계기관에 paragraph 11에 있는 주소를 알려야만 한다.

그런 이후에 우리는 주소와 관련 없이 모든 개인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보고할 수 있는 통지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한 통지서는 보고연도 동안 발행된 이전 통지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초기 통지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당신의 납세신고서를 보내야 한다(paragraph 9 and 10).

20. 'Full' 보고는 당해연도와 다음해에 적용될 것이다. 우리는 당신에게 주소와 관련 없이 모든 개인에게 관련된 거래를 보고하는 데 필요한 통지서를 보낼 것이다. 예를 들자면 2004년 2월에 당신이 영국에서 개인들과 2003/04년 'fully reportable' 국가와 관련된 거래를 보고하는 통지서를 받는다면 당신은 우리 회계기관에 당신이 그 해 의문시되는 보고가 2003/04년과 모든 차기 연도에도 완벽히 납세신고를 할 의도가 있음을 말해야만 한다.

21. 이러한 협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정확한 통지를 수령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야만 한다. 당신이 표준화된 통지를 수령했다는 완벽한 보고를 했다면, 1998년 정보보호법을 근거로 당신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paragraph 16).

22. (해당되는 내용없음)

개인이 아닌 사단법인이나 자연인에게 신고하는 것(Reporting on persons and bodies of persons other than individually)

23. 당신이 표준통지서나 (paragraph 17) 혹은 주소와 관련 없이(paragraphs 19~21) 모든 개인에게 신고할 필수요건을 포함한 통지서를 수령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당

신은 영국의외부에 신고할 만한 주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개인의 파트너십 이외에 사단법인이나 자연인에게 신고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당신이 비거주자 회사에게 신고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마그네틱 매체를 통한 신고(Report on magnetic media)

24. 당신은 단지 테이프나 디스크로도 보고할 수도 있다. 대안적으로 분리된 테이프/디스크는 각각 신고의무가 있는 국가로 전송될 수 있다.

주소(Address)

25. 당신이 신고하는 주소는 정상적으로 기탁수취인(deposit-takers)과 building society에 의해 사용되는 수취인의 통신주소일 것이다. 혹은 당신은 이자가 지불되는 사람의 주소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26. 이것은 이자가 신고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자면 당신이 러시아 투자자인 경우에 프랑스(완전히 납세신고국가)에서의 통신주소를 보유하고 있다면, 당신이 완전한 납세신고국이 아닌 러시아에서 투자자의 주소를 보유하고 있다면, 당신은 투자자 계좌의 세부사항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

유사하게 당신은 프랑스 회사에 정상적으로 이자를 신고할 수 없으나 당신이 그 회사의 영국 통신주소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보고해야만 한다.

그러나 감사시 당신이 납세신고될 수 있는 주소가 지불되었거나 대출되었던 사람의 주소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

주소변경(Changes of address)

27. 일반적으로, 납세보고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은 과세연도의 4월 5일에 있어 개인의 주소이다(paragraph 29 참조). 투자자가 그날에 보고할 수 있는 주소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납세보고서에 포함되어야만 한다.

28. 당신의 시스템이 우리가 수용할 대출이거나 이자 지불일에 이용 가능한 정보에 근거한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구축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불의 포함이거나 배제가 감사시 질문된다면 당신은 왜 그러한 지불이 납세보고서에 포함되었는지 혹은 포함되지 않았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한다.

계좌의 폐쇄(Closure of accounts)

29. 몇 년 동안 계좌가 폐쇄되었고 폐쇄된 날짜로 신고할 수 있는 주소가 있다면 당신은 지불된 이자를 신고해야만 한다. 혹은 당신이 당신의 시스템에 최근의 주소를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의 기초(basis)로서 사용될 수 있다(혹은 최근의 주소가 NFR국가에 해당된다면 신고대상이 아님).

우체함 주소(P.O. Box address)

30. 우체함 주소는 통신주소이거나 수취인 주소로서 신고될 수 있다. 그러나 우체함 주소는 국가에 대한 거주자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 주요한 거주자 주소로서 신고될 수 있다. 기탁수취인(deposit-takers)과 building society는 우체함 주소가 국가기준인지를 점검해야 한다. 점검기록은 감사 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31. 당신은 투자자로부터 우체함 주소가 그들의 거주 주소이고 국가 전반 혹은 국가의 부분적 기준이라는, 예를 들어 그러한 국가의 다른 투자자와의 거래로부터 당신이 정반대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확신을 받을 수 있다. 당신은 우체함 주소가 주요한 거주 주소로 신고될 수 있고 감사 목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유지할 수 있

도록 모든 사례에서 확신을 구해야만 한다.

32. 2001년 4월 6일 혹은 이후에 만들어진 R105 신고서에는 투자자의 주요 거주 주소를 포함해야만 한다. BFPO 혹은 C/o 주소는 투자자의 주요한 거주자 주소로서 R105 서식에서 나타난 모든 경우에 의문시되어야만 한다. 기탁수취인(deposit-takers)과 building society가 거주자의 주된 주소라는 것을 투자자로부터 확신을 추구해야만 하고 그러한 확신은 감사 목적으로 유지되어야만 한다.

‘Hold Mail’ address

33. 2001년 4월 5일 이전에 개설된 계좌에 있어 ‘Hold Mail’는 그것이 기탁수취인(deposit-takers)과 building society에 의한 시스템에서 의해 보유된 주소라면 납세신고될 수 있다. 그러나 2001년 4월 6일 이후에 개설된 계좌의 경우, 우리는 ‘Hold Mail’을 받아들일 수 없고 당신은 완벽한 주소(full address)로 신고해야만 한다. ‘Hold Mail’ 지침이 없다면 주소통신지로 보내질 것이다. 유일한 예외는 2001년 4월 6일 이전 R105 유효한 서식이 주어지고(paragraph 39참조) 환경이 변하지 않은 기존의 NOR 투자자에 의해 개설된 추가계정이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 우리는 ‘Hold Mail’ 주소를 받아들일 것이다.

예를 들어 주소가 ‘Hold Mail c/o XYZ Bank Sheffield branch’라면 이것은 납세신고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주소가 예를 들어 ‘Hold mail c/o XYZ Bank Dubai branch’로서 NFR국가 내에 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것은 공지서가 paragraph 19하에 주어진 곳을 제외하고 납세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미상의 소재(Whereabouts unknown)

34. 당신이 이전에 발생한 이자지불을 보고한다면 수취인은 과거에 알려진 주소에 근거해서 미상의 소재지로 신고하라. 당신이 투자자가 소재지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

문에 이자를 지불할 수 없다면 신고대상이 아니다. 당신이 순차적으로 투자자의 새로운 주소를 발견하여 주요한 이자를 지불한다면 당신은 지불이 이루어진 연도와 새로운 주소지에 대한 지불을 신고해야만 한다.

35. 당신의 시스템이 이자가 지불된 날에 의해 신고한다면 당신이 지불되었던 이자를 신고할 수 있을 것이다(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 사용). 그리고 이러한 사례가 극소수이며 신고를 행하지 않는 것은 어울리지 않게 값비싸게 될 경우 발생된다.
36. 당신이 미상의 소재를 지닌 누군가를 대신해서 받은 이자를 신고한다면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지에 근거해서 신고해야만 한다.

R85 사례(R85 case)

37. 계좌가 R85의 의해서 조치된 과세 없는 이자를 받기 위해 등록될 경우, 혜택을 받는 소유자의 세부사항이 다르다면 당신은 수취인의 세부사항(paragraph 15 참조) 이외에 혜택을 받는 소유자의 세부사항을 신고해야만 한다.

당신은 혜택을 받는 소유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을 신고해야만 한다.

- 성명과 우편번호를 포함한 영구거주 주소
- 출생일
- 제공된 NINO

당신은 또한 지표(indicators)를 신고해야만 한다.

- 수혜자는 R85의 양식을 사용하는 낮은 세율(LRT)의 공제 없는 이자의 지불을 위해 등록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표는 다른 이유로서 LPT의 공제 없이 지불된 이자가 있는 곳에서는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

- 공동예금계좌(joint account)와 계좌와 관련된 당사자 수를 확인하는 것.
- 이자는 예를 들어 부분적 등록이 있는 곳에서 LRT 공제 이후에 부분적으로 지불되고 LRT 공제 없이 부분적으로 지불된다.
- 처음으로 지불된 이자와 관련된 계좌를 확인하는 것.
- 외화를 의미하는 SWIFT 표준코드를 지닌 영국화폐가 아닌 다른 현금으로 지불되거나 신고된 이자를 확인하는 것.

R105 사례(R105 cases)

38. R105 양식에 근거한 신고는 투자자가 영국에서 주로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 NOR(Not Ordinarily Resident)는 기탁수취인(deposit-takers)과 building society에게 조세공제 없이 이자를 지불하는 권한을 부여한다(그것은 투자자가 NOR이 되는 것을 중지되도록 은행이나 building society에게 공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년 4월 6일부터 양식(form)에는 이자와 관련하여 수혜를 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포함해야만 한다.

Declaration on form R105 received on or before 5 April 2001(2001년 4월 5일 이거나 이전에 접수된 R105 양식서의 신고)

39. R105 양식에 근거한 신고가 2001 4월 5일이거나 이전에 접수된다면, 당신은 paragraph 15에서 기술된 정보를 신고해야만 한다. 그러나 R105 양식에 근거한 신고가 이자를 부여받은 수혜자들의 주요 거주 주소를 포함한다면 당신은 수취인의 세부사항 대신에 주소의 세부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Declaration on form R105 received on or after 6 April 2001(2001년 4월 6일 이거나 이후에 접수된 R105 양식서의 신고)

40. R105 양식에 근거한 2001년 4월 6일이거나 이후에 접수된다면 신고서는,

- 수취인 대신에 이자 수혜를 부여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요 거주 주소(paragraph 41)가 명시되어야 한다.
- 2001년 4월 6일 혹은 이후에 접수된 R105 양식에 의해서 전체 이자가 지불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해야 한다.

41. 당신이 납세 신고해야만 하는 주요 거주 주소는 다음 중의 하나이다.

- R105양식에 나타난 주소(당신은 R105가 유효하게 남아 있는 한 이 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 당신은 아래의 대안 중의 하나를 보고할 필요가 없다) 혹은
- 총지불이 R105양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2차연도 혹은 다음 연도에 있어 최근에 주요 거주자 주소로 알려진 주소
- 총지불이 R105양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4차연도 혹은 다음 연도에 있어 통신주소가 당신의 시스템상에서 보유된다. 당신이 하나 이상의 통신주소를 보유한다면 정상적인 주소로 사용하는 주소로 신고하라.

당신에게 있어서 의무는 납세신고한 주소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중 하나라는 것을 점검하는 것으로 국한된다.

추가계정(Additional account)

42. 2001년 4월 5일 혹은 이전에 행해진 신고는 일반적으로 2001년 4월 6일 혹은 이후에 개설된 계좌를 포함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지문할 때까지 추가계정이 당신과 함께 이미 하나 이상의 계좌를 가진 NOR투자자에 의해 개설된다. 그리고 당신은 R105 유효한 양식의 권한에 공제된 과세 없는 계좌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것이다. R105 새로운 양식은 다음 사항을 만족한다면 요구되지 않는다

(i) 당신이 다음과 같은 사실에 충족된다면

- 새로운 계좌가 기존의 소유자와 수혜를 받는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 기존의 NOR 신고가 유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투자자의 환경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ii) 새로운 계좌에 R105 양식으로 초창기 NOR 선서로부터 감사 흔적이 남도록 NOR 감독관과 교차평가(cross-reference)에 의한 결정이 기록된다. NOR 감독관이 신고한 것을 알 수 없다면 기존의 신고가 기록된 것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43. 2001년 4월 6일이나 이후의 계좌가 R105 양식에 의해 총지불이 기록된다면 동일한 투자자가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고 새로운 신고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paragraph 42(i) & (ii)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당신은 새로운 계좌를 기존의 신고를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다룰 수 있다.

파트너십(Partnerships)

파트너십과 공동계좌(Partnerships and joint accounts)

44. 파트너 중의 하나 또는 그 이상 혹은 공동소유자가 즉 영국에서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또 다른 완전히 보고할 수 있는 국가에서 주소를 가진 개인이 신고할 수 있으면 파트너십으로 신고될 수 있다(paragraphs 17 and 18).

45. 파트너나 공동소유자가 단 한 사람이거나 두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 계좌의 이름과 보유직책의 이름으로서의 ‘고객 이름’
- ‘참여자’로서 신고할 수 있는 파트너의 이름
- 알려진 참여자의 총수로서 신고할 수 없는 사람을 포함한 파트너나 공동소유자의 총수

46. 둘 이상의 파트너나 공동소유자가 보고된다면, 그 신고는 아래와 같이 제한된다.

- 계좌 이름이나 소유 타이틀을 보유한 ‘고객 성명’
- 처음의 두 파트너나 공동소유자를 ‘협력자(participants)’로 보고하라.
- 신고되지 않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 ‘협력자의 수(Number of participants)’로 신고하라.

47. 파트너나 공동소유자가 같은 주소로 등록되어 있으면 한 번 신고하나, 다른 주소면 두 개의 다른 신고서를 만들어야 한다.

48. 영국주소를 가진 투자회사나 다른 FR국가의 개인 투자자(Paragraph 17,18 참조)로 section 17에서는 이자(return 분배)에 개의치 않고 제한된다. 여기서 총지급된(paid)/수취해야 할(received) 이자율을 계산하라.

전문가 파트너십(Professional partnerships)

49. 법률회계회사와 같은 ‘전문가 파트너십’을 위해서는 단순이득(a single return)반환은 파트너십 이름으로 만들 수 있다.

50. 이러한 목적에서 독립체(independent body)가 ‘전문가 파트너십’을 제한한다(혹은 영국에 설립된 회사도 제약을 받을 것이다).

외환 계좌(Foreign Currency Accounts)

51.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Foreign Currency Account에 지급된 이자를 신고할 수 있다.

- The currency the account(외환 통화계좌)를 제한하라.- 즉, 수익(the return)은 그것이 foreign currency account와 현금거래를 위한 SWIFT 코드를 보여주는 지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SWIFT 코드는 Appendix 4 참조).

- 파운드화로 보고하라. 외환은, 우리에게 지급을 위해 파운드화로 전환된 세율(Tax rate)을 반영하는 파운드화로 전환되어야 한다. 혹은 매일의 이자율(the rate in force at the date)로 지급하거나 일정 기간율(a period end rate)로 하든 반드시 다른 방법이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예치금의 시간제한(Qualifying Time Deposits; QTDs)

52. QTDs의 이자는 세금감면 없이 지불된다. 투자자가 합법적 R105 form을 제출하고, 이자율(the interest)을 배당금(the return)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면, 2001/01을 포함한 최근까지 QTDs 이자율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2001/02 이후에는 모든 영국 주소를 가진 투자회사에 지급될 이자율은 SECTION 17 returns를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FR국가에 주소를 가진 개인투자자(만약 모든 non-UK 개인 투자자들이 신고되지 않았다면, 19~20 Paragraph를 참고)도 반드시 SECTION 17 returns에 포함해야 한다.

지정된 고객 계좌(Designated client accounts)

53. Paragraph 15에 따라서 일반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LRT의 세금감면 없는 이자의 보상을 위해 등록된 수익권 소유자에 대해서는 Paragraphs 37, 40 그리고 41에 따라 추가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계좌(the account)가 고객의 반 이상이 전문 투자회사로 이루어졌다면, 상세한 사항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신탁자에 대한 보고(Reporting on Trusts)

54. 수익이 신탁자(Trustee)에게 지불된다면, 신탁자(Trustee)는 수취인(payee)의 배당 상세사항을 보고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 만약 그 계좌가 총이윤의 지불을 위한 것이라면 위의 paragraph 37의 form R85를 사용하여 등록하라.
- 만약 이익에 대해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개인투자자들이 없다면, UK나 FR 국가들의 이익관계자는 2001년 4월 6일 이후에는 R105나 R105DAT Form을 사용한 이익 배당 상세사항 정보를 받을 것이다.

55. 때때로 행렬 수탁자(possession Trust)의 이익이나 Life Interest Trust(생명보험)에서의 수익과 수탁자(Bare Trust)의 이익은 그 이자가 직접적으로 배당되는데, 그러한 이익을 보고해야 하고, 수취인은 보고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56. 자유재량 신탁과 저축성 신탁에 의해 만들어진 분배는 '이자'가 없고, 보고할 필요도 없다.

사망한 투자자(Deceased Investors)

57. 사망한 사람이 신고자였다면 과세연도의 시작과 사망의 기간 사이에 사망한 사람에게 지불된 이자는 성명과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신고되어야 한다.

58. 유언집행인에게 지불된 이자는 신고해야 하는 유언집행인이 한 두 사람이라면 지불자(수혜자)에 의해 신고된다. 이것은 기탁수취인(deposit-taker)으로서 은행은 집행가로서 은행에 의해 보유된 계좌의 이자를 지불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한 사람 이상의 집행인이 있다면 공동소유자와 전문가 파트너십을 신고하는 규정이 적용된다(paragraph 44 to 50). 집행인의 전기간 동안 지불된(혹은 받은) 이자는 신고될 수 있다.

59. 유언집행인이 그렇게 행하도록 통지서를 받는다면 section 17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 section 17 통지가 단지 기탁수취인(deposit-taker)과 building society에게 발행

되기 때문에 section 17의 납세신고는 은행이 유언집행인으로서 활동하도록 요구된다.

유언집행인은 자신이 영국에서 주소를 지닌 수혜자 혹은 또다른 FR 국가에서 주소를 가진 개인 수혜자들에게 배당된 자산이 있다면 지불되거나 받은 이자를 신고할 필요가 있다(paragraphs 17과 18). 자산이 배분된 날로부터 지불된 이자만 신고된다. 자산이 배분된 날로부터 지불되거나 받은 이자만이 유언집행인에 의해 신고된다.

연금계획(Pension Schemes)

60. 당신은 우리에게 의해 승인된 SIPP 혹은 SSAS를 포함한 연금계획의 수탁자를 대신해서 지불되거나 받은 이자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61. 당신은 비거주자 연금계획의 수탁자를 대신해서 지불되거나 받은 이자를 보고할 필요가 없다.

감사(Audit)

배경(Background)

62. 2001년 4월 6일 이거나 이후에 지불된 이자의 경우 더이상 기탁수취인 (deposit-taker)과 building society가 외부감사자에 의해 수행된 NOR 계정에 '이자에 관한 조세공제계획'(TDSI)을 가지도록 선택할 법적인 권한이 없다.

새로운 협약(New arrangement)

63. 당신의 신고가 영국에 주소를 둔 투자자들이거나 FR 국가(paragraph 17과 18 참조)로 제한한다면 우리는 당신이 6개월 통지를 조건으로 완전한 정보보고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4. 따라서 협약에 의해 우리는 당신 자신의 비용으로 TDSI와 section 17의 NFR 회계 감사를 수행한다면 당신에게 독립적 감사인을 임명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당신이 모든 사례의 납세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선택하는 곳에서 단지 존재한다. 모든 개인이 완전한 신고를 한다면 국세청은 모든 측면에서 감사를 할 것이다.

65. 독립 감사인은

- NFR 계정이 올바르게 분류되었는지를 입증해야만 한다
- 6개월 통지를 조건으로 미래연도에 모든 계정에 대해 보고하는 것을 준수하는 데 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신을 제공해야만 한다.
- NFR 계정과 관련해 TDSI의 운영을 감사해야 한다.

66. 독립적인 감사 보고서는 TDSI와 section 17 감사의 통합적인 부분으로 될 것이다. 이 보고서는 기탁수취인(deposit-taker)과 building society의 감사를 수행했던 경험이 있는 1989년 회사법에 등록된 감사인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67. 당신이 이러한 협약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문서로 알려야만 한다(paragraph 11에 있는 주소 참조). 그러한 문서는 검토를 수행하기 위한 감사인의 세부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당신은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다. 우리는 영수(receipt)의 30일 이내의 요청을 인정할 수 있다.

68. 첫 번째 회계기간은 2001년 4월 6일부터 시작된다. 독립적인 감사인의 관점의 결과물은 우리 감사보고서의 일부를 형성할 것이기 때문에 업무마감의 21일 이내에 감

사기관에 보내져야만 한다. 이 보고서는 정상적으로 감사마감일 28일 이내에 기관 (institution)에 발행되어야 한다.

69. NFR계정과 관련해 TDSI를 운영하는 독립적인 감사인의 관점의 결과는 감사완료 후 90일 이내에 감사기관에 보내야 한다. 그런 이후에 FR NOR의 감사인의 관점이 기관(institution)에 보내질 것이다.

표본추출(Sampling)

70. 독립 회계감사관은 NFR NOR 보고서의 근거가 확실한 NOR 신고서에 의한 표본 추출방법으로 조사할 것이다. 표본추출방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95%의 신뢰수준을 사용한다. 각각의 사례로 활동하는 국세청과 독립 감사관을 가진 전체 NOR 모집단에서 표본이 추출되거나 보고할 수 있고 보고할 수 없는 사례로부터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적인 두가지 샘플로부터 추출된다.
71. 독립 감사관은 기탁수취인(deposit-taker)에게 있어 어떤 기탁(deposit)이 적절한 기탁이 되거나 building society에 있어 투자는 총지불로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알 수 있다면 기탁수취인(deposit-taker) 혹은 building society는 기탁이 적절한 기탁이 아니거나 투자가 총지불에 적합한 것이라는 것을 점검할 수 있다.
72. 독립 감사관은 또한 작은 표본을 사용하여 기탁수취인(deposit-taker)과 building society가 정확하게 모든 다른 NFR 계좌의 측면에서 TDSI를 정확하게 운영하는지를 조사할 것이다.

결과(Results)

73. NFR과 FR 검토결과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독립 감사관이 더 검토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거나 우리 자신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74. 감사관이 통계적으로 유효한 샘플을 사용하는 곳에서 오차의 수가 통계적으로 많이 존재할 경우, 표본의 결과는 외삽법으로 추정될 것이고 우리는 기탁수취인(deposit-taker)과 building society로부터 보완점을 찾을 것이다.

절차의 검토(Review of procedures)

75. 기탁수취인(deposit-taker)과 building society가 FR과 NFR 계좌 모두를 소유하고 있다면 국세청은 정상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의 계좌의 제도상의 운영과 관련한 절차를 검토할 것이다. 이것은 높은 수준의 검토일 것이고 개인적 사례로 보는 것으로 관련되지 않을 것이다. 국세청 감사관은 절차에 대한 유보권과 절차가 적용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독립 감사관에게 절차가 어떻게 NFR 계좌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NFR 계좌가 없다면 이러한 검토는 독립 감사관에 의해 수행될 것이다.

76. NFR 계좌가 있고 독립 감사관이 임명될 경우 그들은 당신이 미래연도(6개월 공지를 조건으로)에 대한 완전한 정보 보고를 충족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국 국세청은 미래연도에 기탁수취인(deposit-taker)과 building society에 의한 완전한 보고를 요구하는 우리의 의도를 통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77. FR 계좌에 있어 우리는 section 17신고로부터 68% 신뢰수준을 사용할 것이고 장부에 보유된 정보와 신고된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신의 장부를 점검할 것이다. 우리는 납세신고 할 만한 모집단으로부터 68%의 신뢰수준을 사용한 통계 샘플을 가질 것이며 section 17신고에 나타나 정보를 보장하기 위해 점검할 것이다.

벌금(Penalties)

78. 신고를 하도록 통지를 부여받은 기탁수취인(deposit-taker)과 building society는

최대 3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신고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 초창기 벌금부과 이후에 매일 최대 60파운드 이상의 추가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79. 기탁수취인(deposit-taker)과 building society가 부정하거나 태만하게 Section 17 하에 부정확한 납세신고를 한다면 그들은 3,000파운드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것이다.

안내방문(Help visit)

80. 기탁수취인(deposit-taker)과 building society는, 특히 이전의 납세신고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paragraph 11에 나타난 주소로 우리에게 연락함으로써 안내방문을 요구할 수 있다.

문의(Enquires)

81. 문의

- 보고서의 감사문제나 형식은 Chris Sexton에게 제출하면 된다. (주소, 전화, 팩스 번호는 paragraph 11 참조)
- 법률과 보고되어야만 하는 것이 Pat Blanchard에게 제출되어야만 한다(주소, 전화, 팩스 번호는 paragraph 3참조).

Section 18 신고지침규정(Report Guidance Notes)

배경(background)

1. 국세청은 특정 과세연도 동안 이자를 지불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이자를 받는 누구에게나 1970년 세금관리법(Taxes Management Act)의 Section 18하에서

통지서를 발행할 수 있다. Section 18의 통지서는 이자를 지불하거나 지불받는 것의 상세한 설명과, 감면된 세금과 지불되는 이자 또는 이자를 대신해서 지불받는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를 요구한다. 정보는 통지서에 나와 있는 특정 형식 중 하나로 신고되어야 한다.

2. 국세청의 법해석에 기초한 안내서는 국세청이 Section 18규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지부터 시작된다. Section 18 통지는 수혜자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원한다.
3. 만약, 이 설명서를 읽은 후에 당신이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다음으로 연락하십시오.

Section 18의 해설에 관한 정보를 위해서는:

Miss Pat Blanchard

Room S1

West Wing

Somerset House

Stand

London

Wc2R 1LB

Tel: 020 7438 6261

Fax: 020 7438 7752

e-mail: pat. blanchard@ir.gsi.gov.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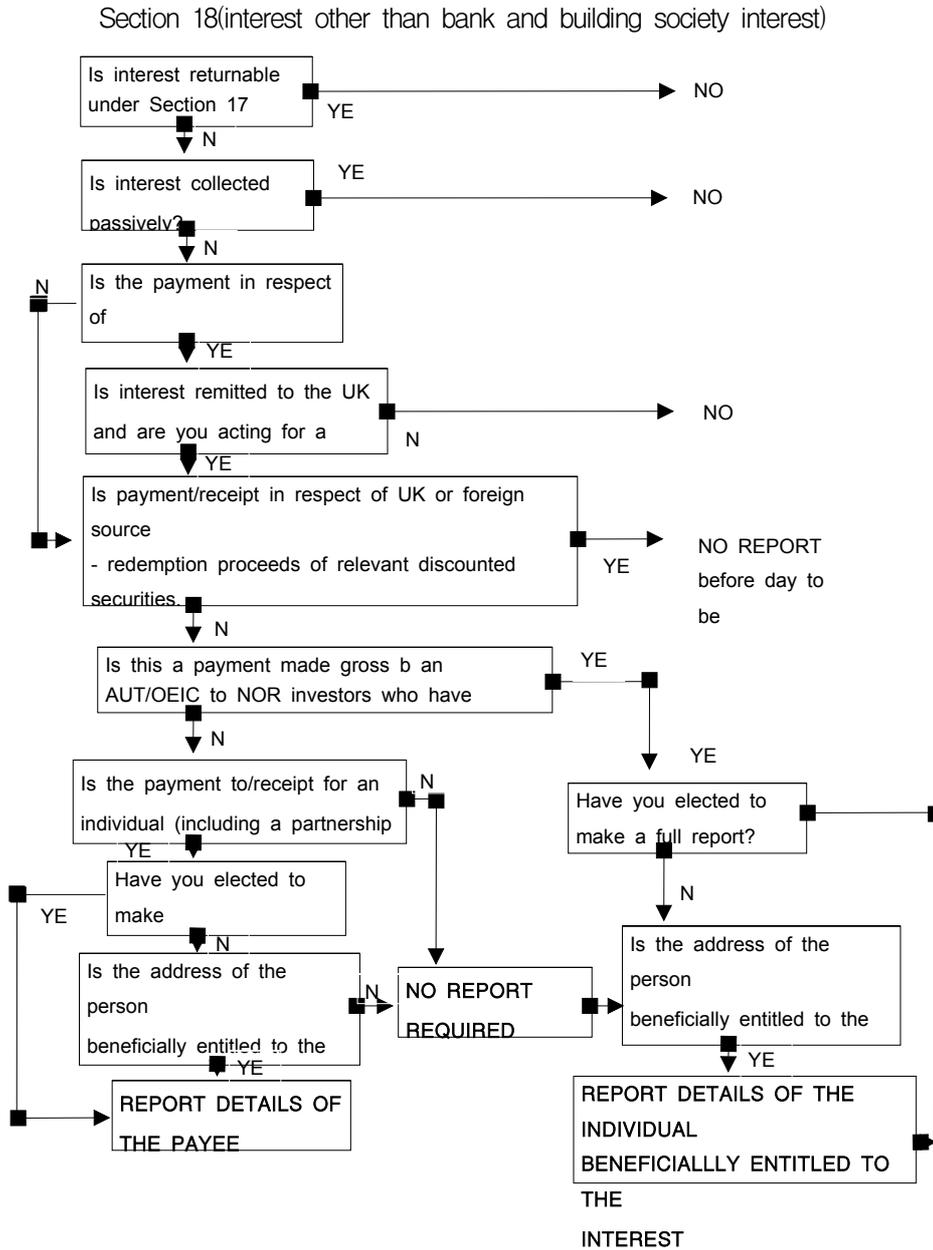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에 관한 정보를 위해서는, 형식을 어떻게 완성할지에 관한 정보나 형식은 다음 주소로 요구하십시오

Mr. Chris Sexton at the address shown in paragraph 14.

e-mail: chris.sexton@ir.gsi.gov.uk

순서도(Flowchart)

5. 다음의 순서도는 언제 보고가 요구되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가 보고되어야만 하는지에 관해 보여준다.



보고(Report)

누가 보고해야 하는가?(Who need to make a report?)

6. section 18 통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사업의 성격과 상관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은 비거주자의 영국의 지사를 포함한다(은행의 비거주자부분에 의해 지불되거나 받은 이자뿐만 아니라 영국의 지사에 의해 지불되거나 받은 이자까지도 보고된다.)
7. 몇몇의 경우 예를 들면, 중개업자와 그들의 청산자가 모두 section 18의 통지를 받는다면 이것은 이자지불이 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 보고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당신이 section 18의 통지를 받고 누군가가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되고, 당신들 중 두 명이 같은 정보를 전적으로 보고할 것이라면, 당신은 paragraph 14에 나타난 주소로 Chris Sexton과 접촉해야 할 것이다.
8. section 17의 TMA하에서 납세신고를 하기 위한 통지는 기탁수취인(deposit-taker)과 building society에게 발행된다. 기탁 수취인과 building society는 section 18의 TMA하에서 또한 통지를 받을 수 있다. section 17하에서 이자가 기록되는 곳은 section 18하에서도 보고되어야 한다.
 - PIBS에 이자를 지불하는 building society는 section 18의 TMA하에서 이 이자를 직접적으로 보고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들이 원한다면, 개인을 위한 PIBS와 그들의 7장의 납세에 지불되는 이자를 포함할 수 있다.
 - 지역적 권한은 section 18하에서 개인들에게 지불되거나 대출된 이자를 엄격하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만약 그들이 원한다면, 그들은 section 17하에서 section 17의 형식과 안내를 사용해서 납세신고를 할 수 있다.
 - 국내 저축과 투자는 section 18하에서 몇몇의 그들의 생산품에 지불되는 이자를 엄격하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만약 그들이 원한다면, 그들은 section 17하에

서 section 17의 형식과 안내를 통해 납세신고를 할 수 있다. section 17에 대한 안내서는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다.

보고할 책임의 이양(Delegation of responsibility to make a report)

9. 보고를 위한 통지를 받는 모든 이는 그들을 대신해서 일을 수행하기 위해 제삼자가 그들을 대신해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지를 받는 사람은 통지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
10. 엄격하게 통지는 각각의 AUT(Authorised Unit Trust)나 OEIC(Open Ended Investment Company)의 수탁인에게 부합되어야 한다. 그러나, 약정을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 통지는 AUTs/OEIC로부터 정보를 요구하는 관리자들에 의해 발행되어야만 한다. 통지를 받는 관리자들은 법적으로 요구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언제 통지서가 발행되는가?

11. 지불되는 이자와, 그 이자로부터 감면되는 세금의 보고를 요구하는 통지서는 일반적으로 보고가 끝나기 전인 2월 말에 국세청에 의해 발행된다. 그러나 보고통지서는 보고연도의 말 이후 3년까지 발행될 수 있다. 통지서는 완성된 납세신고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에 관한 훈령을 포함한다.

보고 하기 위한 시간적 제한은 어떠한가?(What is the time for making reports?)

12.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제출된 매년의 보고를 요구한다. 보고 제출시한은 통지서에 서술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통지서가 관련된 과세연도의 말일 이후 6월 30일이 되거나, 통지서의 발행일 이후 4개월이 된다.

13. 예를 들면, 2002년에서 2003년의 과세연도 동안 통지서는 2003년 2월에 발행된다. 그리고 보고서는 2003년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만약 통지가 2003년 3월 31에 발행된다면, 보고는 2003년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14. 보고는 전자매체나 종이로 이루어진다. 전자매체기록은 국세청에 의해 특정형식으로 제출되어야만 한다. 자료는 1/2인치 자기 테이프와 3.5인치 플로피 디스크 또는 소형 디스크에 받아들여질 것이다. 보고에 대한 안내 양식을 설명하는 내용은 국세청의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다.
15. 서류 보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양식은 이전 paragraph 14의 주소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이용 가능하다. 만기에 대한 설명은 양식과 함께 보내질 것이다. 서류기록은 국세청에 의해 제공된 형식으로 만들어져야만 한다. 사진복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무엇이 보고되는가?(What is reportable?)

보고서에는 어떠한 이자가 포함되어야만 하는가?(What interest should be included in the report?)

16. 개인을 대신해 지불되거나 받은 이자가 보고되어야 한다.

그래서 만약 수령자가 개인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 만약 이자가 개인을 위해 행동하는 수령자회사에게 지불된다면, 보고는 요구되지 않는다. 이것은 AUT 또는 OEIC가 평판이 좋은 중개자에게 지불하는 것에 의한 지불을 포함한다.

그러나

- 비거주자 신고가 있는 AUTs와 OEIS에 의해 지불된 이자는 paragraph 45에서 49까

지 참조

- 개인이 제삼자에게 지불된 이자를 다룬다면 paragraph 50 참조
- R85 양식은 관해서 paragraph 44 참조

17. 간단히 말해 이자의 계좌 보유자/수혜자가 개인보다 오히려 ‘실체(entity)’로서 기관의 회계장부에 나타난다면 보고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장부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여준다면

- G&G 투자클럽- 이것은 개인으로 나타지 않으므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 기관이 한 개인이나 여러 개인인지를 기록을 통해 보고하지 않는다.
- Green과 Griffin- 이것은 2명의 개인처럼 보인다. 그래서 보고해야 한다.- paragraph 54에서 57까지 참조
- Green(treasurer)- 다시 이것은 개인을 나타내므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

18. paragraph 19와 21을 제외한 모든 이자는 보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것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모든 투자가가 영국에서 지불했거나 받은(수동적인 것 제외)이자는 개인에게 또는 개인을 위해 보고할 수 있다
- 외환이자, 다시 말해 비영국자원에서 온 이자
- 유로채를 인용하면 유로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기업에 의해 발행된다.
 - ▶ 이자에 대한 권리를 수반한다.
 - ▶ 공인된 영국증권거래소에 등재되어 있다.
- Building Society PIBS
- 영국 Gilt 이자(그러나 판매/구매 가격에 반영된 이자는 불지 않는다)
- 이자분배가 지급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단위를 얻기 위해 또는 현재 단위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영국 Unit Trusts와 Open Ended 투자회사에 의한 이자 분배
- 수표 · 어음의 지참인 투자에 의한 이자(만일 그 이자가 개인에게 지급된 것이라면)

어떠한 이자가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는가?(What interest should not be included in the report?)

19. 어떤 이자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 다음과 같은 사항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

- 소극적으로 징수된 이자
- 이자로 쉽게 구별될 수 없는 이자, 예를 들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보고가 요구되지 않을 것이다.

은행이

- ▶ 적극적으로 이자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지불을 징수할 경우
- ▶ 어떤 것이 이자이거나 이자가 될 수 있는 credit의 혼합물을 접수하되 어떠한 이자의 금액인지를 추가 조사 없이는 확신할 수 없을 경우
- ISAs에 대한 이자(paragraph 20참조)
- PEPs에 대한 이자(paragraph 20참조)
-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영국외부에서 지점에서 당신이 현금예치금으로 지불한 이자
 - ▶ 영국에 송금된 이자가 아니라면
 - ▶ 당신이 수동적인 것 이상을 받지 않는다면
 - ▶ 당신이 보고할 수 있는 개인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면(paragraph 50참조)
- 보고해야 할 개인을 위해 당신이 이자를 지불받거나 수령하지 않는다면 영국외부에 있는 지점에 보유한 현금예치금이 아닌 투자에 지불된 이자
- 이자가 발생했으나 아직 지불되지 않은 경우
- SAYE/Share Save 계획에 관한 이자
- 개인연금계좌를 포함하여 승인된 연금계획에 지불된 이자(paragraph 70 참조)
- 국가저축 & 투자 증명서와 어린이 채권에 관한 이자. 그러나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이자를 받거나 이자의 유형을 구별할 수 없을 경우 보고되어야 한다.

ISAs, PEPs and TESSAs

20. 실효성이 없는 ISA, PEP, TESSA 혹은 수선된 ISA에게 지불되거나 대출된 이자는 보고되어야 한다. 납세신고가 제출되기 이전에 ISA가 수선되거나 ISA/PEP/TESSA가 실효성 없이 발견된다면 정확한 상황이 납세신고서에 나타나야 한다. 납세신고서가 이미 제출된 경우 또 다른 것이 요구되지 않지만 국세청 요구시 산출물에 대한 세 부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2003/04 보고 제외(Exclusion from reporting for 2003/04)

21. 지불/영수는 다음과 같은 경우 2003/04년 과세연도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 관련된 할인 유가증권의 수익금 환수
- 외환배당금
- 환매이자(repay interest)
- 제조금액(manufactured payments)

어떠한 정보가 보고되어야 하는가(What information must be reported)

22. 일반적으로 보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paragraph 23에 제시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개별 거래
- 관련된 과세연도에 특정개인에 대한 보증 혹은 특정계정 거래의 집합

23. 보고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이자가 지불되거나 대신해서 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
- 과세의 공제 이전에 지불되거나 받은 이자의 금액
- 공제된 영국과세
- 공동계좌/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와 관련된 당사자 수

- 계좌 혹은 담보와 관련된 수 확인
- 외환을 나타내는 SWIFT표준코드를 가지고 파운드가 아닌 다른 현금으로 보고되거나 지불되는 이자를 보여주는 지표

계좌와 관련하여 Section 17양식(paragraph 44참조)에 의거하여 자치단체가 보고하는 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계좌와 관련하여 제공된 개설일과 국가보험수
- 계좌와 관련하여 최초로 지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24. 법 Section 18 notice에 명시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보는 notice에 명시된 정보에만 적용되며 Data Protection Act하에 책임을 이행할 때 notice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완전히 신고의무가 있는 국가('Fully Reportable' countries)

영국과 FR국가에서의 개인들의 보고제한(Restricting reports to individuals in the UK and other 'Fully Reportable' countries)

25. 거래를 제한하도록 국세청이 발행한 표준통지(standard notice)는 영국 또는 다른 'Fully Reportable'(FR)국가에서 보고의무가 있는 주소(address)를 가지는 개인들에게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Appendix 2 참고). 주소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들을 위한 거래관련 보고서 작성은 27~29항을 참고.

26. FR 국가 항목은 Appendix에 있다. FR 국가들 항목상의 변화가 있을 경우 6개월 고시한다.

주소와 불문하고 모든 개인들이 보고하는 것(Reporting on all individuals regardless of address)

27. 영국과 다른 FR 국가들 내의 거주자들의 보고 제한은 불균형적으로 많은 비용이 드는 작업이 될 수 있다. 다른 책무와 함께 제한하고 있는 보고서 작성의 비용상의 균형을 맞춘 후에 수행해야 하며, standard notice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이 제한하고 있는 보고서 작성이 많은 비용을 수반함을 고려해야 한다. 영국과 FR 국가들의 구성원들은 standard notice에서 요구하는 거래관련 보고의 제출기한인 3개월 이내에 11항에 있는 주소록의 감사기관으로 전화해야 한다. 우리는 주소와 상관없이 각 구성원들은 관련거래의 보고를 요구하는 통지서를 제출할 것이다. 통지서는 보고 연도에 발송된 이전의 통지서를 대체할 것이지만, 원본 통지서상에서 보여진 자료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8. 완전한 보고서는 당해연도와 다음연도까지 적용된다. 우리는 매년마다 주소와 상관없이 각 개인에게 거래관련 보고서를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할 것이다.

29. 이 제도의 이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보고하고 정확한 통지서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standard notice를 받고 full 보고서를 작성하면, Data Protection Act(1988)하의 의무불이행이 된다.

30. 해당내용 없음

전자매체를 통한 보고(Report on magnetic media)

31. 단일 테이프 또는 디스크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대안으로, 분리된 테이프와 디스크는 각 보고서 작성의 의무가 있는 국가로 보내질 수 있다.

주소(Addresss)

여러 주소를 가진 고객(Customers with more than address)

32. 보고된 주소는 보통 재정기관에서 사용된 주소와 일치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주소를 가지고 있고, 이자가 지급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주소로 알려져 있으면, 그 주소가 대신에 보고될 수 있다.
33. 이것은 이자는 보고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러시아 투자자로서 프랑스에서의 주소와 일치하면, 당신이 FR 국가에 속하지 않는 러시아에서의 투자자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면 투자자의 회계를 자세히 보고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보고된 주소가 이자를 받거나 대부된 사람의 주소임을 감사기관에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주소변경(Changes of address)

34. 일반적으로 과세연도 4월 5일의 개인의 주소가 결정되든 아니든지 보고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개인이 기한내에 보고해야만 하는 주소를 가진다면, 그들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35. 시스템이 제공되어 있다면, 보고되어야 할 결정인지는 이자의 지불/수령의 기한내에 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받아들여 질 것이다. 지불의 포함/제외가 감사기관에서 의심된다면, 당신은 왜 이자가 보고서에 포함되었는지 또는 포함되지 않았는지를 보여야만 한다.

계좌폐쇄(Closure of accounts)

36. 당해연도에 회계가 마감되면, 당해연도 동안에 지불/수령된 이자는 회계가 마감되

는 기한내에 보고서 작성의 의무가 있는 주소가 있다면 보고하여야 한다.

우편함 주소(P.O. Box addresses)

37. P.O. Box 주소는 해당자나 수취인 주소로 보고될 수 있다. 그러나 R105(AUT) 또는 R105(OEIC)의 경우, 수익을 얻는 개인의 주요한 거주 주소는 보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R105(AUT) 또는 R105(OEIC)는 보관하고 있으며, P.O. Box 주소는 조건에 맞는 거주 주소이고 조사될 수 있는 투자자의 조건에서만 주요 거주 주소로서 보고될 수 있다. 조사의 기록은 감사 목적을 위해 보관된다.
38. 투자자로부터 확인된 P.O. Box 주소는 그들의 거주 주소이며, P.O. Box 주소가 주요 거주 주소로 보고되었는지 모든 경우에 있어서 확인을 해야 하며, 그러한 정보는 감사 목적으로 보관된다.

BFPO and C/o addresses

39. R105(AUT) 또는 R105(OEIC)의 서식은 수익을 얻는 사람의 주요 거주 주소를 포함해야 한다. BFPO 또는 C/o 주소는 그 주소가 주요 거주 주소인지 모든 경우에 있어 조회되어야 한다. BFPO 또는 C/o 주소가 주요 거주 주소인지 투자자로부터 확인을 해야 하며, 그 확인은 감사 목적으로 보관되어야 한다.

'Hold Mail' addresses

40. 2001년 4월 5일 이전에 성립된 수취인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한 'Hold Mail'이 주소가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을 시에 보고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관된 주소가 'Hold Mail c/o XYZ Bank Sheffield branch'이면, 이것은 보고되어야 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NFR 국가일 경우에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

2001년 4월 6일 이후 또는 관계의 개시를 위해, 'Hold Mail'은 수락할 수 없으며, 완전한 주소가 보고되어야 한다.

미상의 소재(Whereabouts unknown)

41. 당신이 수취인이 'Whereabouts unknown'상태가 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이자의 지불을 보고한다면 그들의 최근 주소에 근거하여 보고한다. 투자자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아서 당신이 이자를 지불할 수 없을 경우 보고하지 않는다. 그후에 투자자의 새 주소를 발견하고 미해결의 이자를 지불했을 경우 새 주소에서 이루어진 당해연도의 지불을 보고한다.
42. 당신의 시스템이 이자지불 만기일까지 보고할 경우, 최근의 주소를 사용하여 지불된 것처럼 이자를 보고할 수 있다.
43. 'Whereabouts unknown'인 사람을 대신하여 당신이 수령한 이자를 보고할 경우 최근 주소에 근거하여 보고한다.

R85 cases

44. 몇몇 지방기관은 회계와 관련하여 세금의 경감없이 이자를 수령하도록 등록된 R85s를 유지하고 있다. Section 18의 보고 시스템은 부가적 정보에 대처할 수 없으며, 그러한 경우 지방기관은 Section18 대신에 Section17 서식을 사용하여 보고하는 R85를 유지한다.

R105(AUT) and R105(OEIC) cases

R105(AUT) and R105(OEIC) 서식은 영국에 대개 거주하지 않는(Not Ordinarily Resident; 'NOR') 개인단위(또는 공동) 소유자가 신고한다. 수익을 얻는 개인의 이름

과 주요 거주지의 주소는 형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해외 투자자에게의 이자배분 지급장치 사항에 있어 2003년의 재정법의 변화로, NOR 신고서는 개인 단위(또는 공동) 소유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요구된다. 이익분의 배분은 해외 투자자에게 전체적으로 지불될 수 있으며, 소유자가 회사이거나 신탁기구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일 경우 만족된다.

46. R105(AUT) 또는 R105(OEIC) 서식을 받았을 경우 보고서는

- 수탁자 대신에 이자를 받는 개인의 이름과 주거주지를 기입해야 하며,
- 이자가 R105(AUT) 또는 R105(OEIC)의 서식에 의해 전체 지불되었음을 보여주는 척도를 포함해야 한다.

47. 보고서에 기입된 주거주지는 다음 중 하나이다.

- R105(AUT) 또는 R105(OEIC)의 서식에서 보여지는 주소는 R105(AUT) 또는 R105(OEIC)가 유효한 경우 보고될 수 있다.
- 두 번째 또는 다음 연도의 총 지불액이 새 주거주지가 되는 알려진 주소를 업데이트한 R105(AUT) 또는 R105(OEIC)의 형식으로 확인되며,
- 네 번째 또는 다음연도의 총지불액은 해당주소가 AUT/OEIC의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R105(AUT) 또는 R105(OEIC)의 형식으로 확인된다. 하나 이상의 해당 주소를 보유할 경우, 보고된 주소는 표준 투자자와 일치하는 AUT/OEIC로 사용된다.

48. AUT 또는 OEIC의 수탁자에 있어 채무관계는 보고된 주소가 3가지 개요 중 하나 인지에 대한 감독이 제한된다.

49. 투자자가 당해연도까지 R105(AUT) 또는 R105(OEIC) 신고를 완료하고 세금경감하에 이자를 수령하였을 경우, 두 가지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하는데 세금경감하에 지급된 이자는 수취인의 세부사항을 작성하고, 세금경감없이 지급된 이자는 이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익권자의 세부사항을 작성해야 한다. 당해연도에 단일 보고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수익권자의 세부사항을 작성하고, 전체 연도 동안 지급된 수

이익과 그러한 수익으로부터 경감된 세금을 함께 작성하면 허용된다.

특별한 경우(Particular cases)

다른 경우에서도 통제를 받는 이자 (Interest directed elsewhere)

50. 이자는 그 사람의 지시나 동의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의해 수령한 경우에 그 사람에게 의해 수령한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투자에 대한 이자가 개인투자자의 은행 계좌에 직접 위임된 수령명의자에 의해 보유되는 경우, 그 수익은 수령명의자에 의해 보고되어야 한다.

투자를 기다리는 현금에 지불되거나 받은 이자(Interest paid/received on cash awaiting investment)

51. Section 18 보고서는 'Security Details'의 기장을 요구한다. 이자가 현금으로 수령/지불되었을 경우, Security Details box에 '현금'으로 기장한다.

공동출자된 자산(Pooled assets)

52. 이자가 대신하여 수령되거나 확인가능한 신고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공동출자계정의 방식으로 지급된다면, 그 이자는 Section 18하에 보고의 의무가 있다. 이자가 공동출자계정으로 수령하는 특정개인으로 귀착될 수 없는 경우, 수령에 대해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그후에 신고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지급될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외환계좌(Foreign currency accounts)

53. 이자가 외국화폐로 지급되었을 경우 신고서는,
• 외국화폐- 신고서는 외국통화라는 것을 보여주는 척도와 SWIFT code(appendix 5

참고)를 포함해야 한다.

- 영국화폐- 외국화폐는 세율에 따라, 국세청에 납부하기 위해 영국화폐로 대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한에 유효한 세율에 따라 이자가 지급/수령되었거나 다른 수단으로 시종일관 적용되어야 한다.

파트너십(Partnerships)

파트너십과 기타 공동보유(Partnerships and other joint holdings)

54. 영국 또는 FR 국가에 주소가 있는 하나 이상의 상사/공동소유자들이 보고의 의무가 있을 경우 상사 또는 공동소유는 신고의 의무가 있다.(25, 26 paragraph 참고)

55. 단일 또는 둘 이상의 파트너 또는 공동소유자들이 보고의 의무가 있을 경우 각 개인은 보고해야 한다.

- 계정/소유 자격자의 이름이 되는 '고객명'
- 참여자로서 보고의무가 있는 파트너의 이름
- '참여인원'으로서 보고의 의무가 없는 개인을 포함하는 파트너 또는 공동소유자의 총인원

두 명의 파트너 또는 공동소유자들이 보고의 의무가 있을 경우, 같은 주소를 가지는 경우에는 하나의 보고서만 제출한다. 그러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두 가지 분리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56. 상사 또는 공동소유에 있어 신고의무가 있는 개인이 둘 이상일 경우,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

- 계정/소유 권리명으로서 '고객명' 기록
- '참여자'로서 계정/보유에 있어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로 지명된 최초의 두 명을 기록

- ‘참여인원’으로서 보고의 의무가 없는 개인을 포함하는 파트너 또는 공동소유자의 총인원을 기록

57. Section 18하의 당신의 신고서가 FR 국가들 또는 영국에 신고의무가 있는 주소를 가지는 개인에게 한정되는 경우, 공동계정의 당사자이고 그 주소가 영국 또는 다른 FR 국가들이 아닌 어떤 개인에게의 지불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문가 파트너십(Professional partnerships)

58. 전문적 합자회사인 경우, 예를 들어 법률과 회계사무회사인 경우 보고서 작성은 합자회사 명과 주소로 제한될 수 있다.

59. 전문적 합자회사는 독립기구에 의해 규제되는 합자회사이다.

신탁자에 의한 보고(Reporting by Trusts)

재량 또는 축척과 관리신탁의 수탁자에게 보내진 통지(Notice sent to Trustee(s) of a Discretionary or Accumulation & Maintenance Trust)

60. 그들은 신탁회사를 대신하여 수령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신탁수익자가 그것에 대한 자동적인 권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Section 18에 따라 수령된 이자를 보고하는 자유재량의 수탁자 또는 축척 및 관리신탁회사를 위한 필요조건은 없다.

61. 분배는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수익자들이 신탁수입의 공동소유로 등록되어 있을지라도, 신탁수익자들은 관여하지 않으며 신고의 의무가 없는 자유재량의 수탁자 또는 축척 및 관리신탁회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Notice sent to Trustee(s) of a Bare Trust, or Interest in Possession Trust or Life Interest Trust

62. Bare Trust는 수익자가 신탁회사의 투자에 대해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며, 그들로부터 수입을 증가시키는 신탁회사이다. Life Interest Trust의 경우에 수익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통 사망하기까지의 신탁수입에 대한 이자를 취한다.

Section 18 notice가 Trustees of a Bare Trust, Interest in Possession Trust or Life Interest Trust에 의해 수령된다면, 그들은 수익자가 신탁수입에 대한 권리를 가진 이후에 그들이 수령한 이득을 신고해야 한다.

기간 동안에 수익자에 변화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새로운 피보험자에게 이익이 양도되어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 신고서는 이자가 지급된 시기의 수익자에 근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그것은 즉 각각의 수익자에 대한 두 개의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신탁자를 대신하여 이자를 받는 사람에 대한 통지(Notice sent to persons who pay Interest to or receive interest on behalf of trusts)

63. Trustee of a Discretionary or Accumulation & Maintenance Trust 대신에 이자를 지불하거나 수령한다면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한 명 이상의 수탁자가 있다면 공동 소유자와 전문적 합자회사의 보고서 작성 규정을 적용한다. 수탁자가 company 또는 다른 실체일 경우 보고서는 필요없다.

64. Trustee of a Bare Trust, Interest in Possession Trust or Life Interest Trust 대신에 이자를 지불하거나 수령하는 경우 수익자의 이름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수익자의 성명을 모르는 경우 수탁자가 보고서 작성의 의무가 있는 개인인 경우 수탁자의 성명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

65. 수탁자가 R105(AUT) 또는 R105(OEIC)형식을 갖추었다면 이자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NOR 개인의 세부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66. 수탁자의 대행자에게 지급된 이자는 대행자가 개인 또는 개인들의 합자회사이지만 company 또는 다른 실체가 아닌 경우 보고의 의무가 있다.

사망한 투자자(Deceased Investors)

67. 사망일과 과세연도의 개시일간에 사망자를 대신해 수령하거나 지급된 이자는 사망자가 보고서 작성의 의무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성명과 최근의 주소 보고의 의무가 있다.
68. 집행자 대신에 수령하거나 지급된 이자는 집행자가 한명 이상의 개인인 경우 보고 의무가 있다. 미확정기간에 적용된다. 한명 이상의 집행자가 있다면 공동 소유자와 전문적 합자회사의 보고서 작성 규정을 적용한다.
69. 집행자는 Section 18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 그들이 통지서를 수령하였을 경우
 - 지급 또는 수령을 발생시키는 자산이 영국 또는 다른 FR 국가들에 주소가 있는 개인수익자에게 양도되었을 경우

자산이 양도된 날로부터 수령되거나 지급된 이자만이 보고의 의무가 있다.

연금계획(Pension Schemes)

70. 국세청에 의해 승인된 SIPP 또는 SSAS를 포함하여, Pension Schemes의 수탁자 대신에 수령하거나 지급된 이자에 대한 보고는 필요치 않다.

감사(Audit)

71. 당신의 신고서가 FR 국가 또는 영국에 주소를 둔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제한되는 경우, 우리는 당신이 6개월의 통보를 필요로 하는 완전한 정보 보고서 작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에 확신한다.

72. 따라서, 약정에 의해서 국세청은 독립 회계감사원에 지명된 보고서 작성의 책무를 가진 사람을 인정하고, 자비로 그들의 NFR 회계의 감사를 수행한다. 그러나 이 옵션은 그 사람이 모든 개인들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모든 개인들의 완전한 보고서가 작성된다면, 국세청은 모든 관점에서 감사를 수행할 것이다.

73. 독립적 회계감사인인 다음 조건이 요구된다.

- NFR 회계가 정확하게 분류되었는지 입증
- 그 사람이 다음 연도에 6개월의 통보를 조건으로 모든 계정에 대한 완전한 보고서 작성에 응할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한 확신을 제공
- AUT 또는 OEIC가 영국조세의 감면이 없는 NFR 국가에서 NOR 개인들에게 지급한 이자를 구성하는 경우 적소에 R105(AUT) 또는 R105(OEIC)의 타당한 형식인지 조사

독립 회계감사인의 보고서가 국세청 감사의 필수부분이 된다. 그 보고서는 Companies Act(1989)하에 등록된 감사기관에 의해 준비되어야 한다.

74. 이 약정의 이점을 얻으려면, 감사를 수행할 회계 감사인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작성해서 국세청에 전달해야 한다. 언제든 적용되며, 국세청은 수령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승인한다.

75. 첫 번째 감사기간은 2001년 4월 6일부터 수행한다. 독립 회계감사기관의 감사결과

는 업무의 달성일로부터 21일 이내에 감사단체에 보내야 한다. 보고서는 보통 감사의 달성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제출된다.

표본추출(Sampling)

76. 국세청과 독립 회계기관의 업무로 샘플이 그들 각국의 경우, 또는 두 가지로 분리된 통계학적으로 유효한 샘플, FR의 경우에서 뽑힌 경우와 NFR의 경우에서 뽑힌 한가지의 경우에 따라 총 비영국인 모집단으로부터 선택된다. 샘플은 통계학적으로 유효할 것이며, 신뢰수준은 95%이다.

결과(Results)

77. NFR과 FR 감사 결과 간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우리의 의무이행사항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는 독립 회계감사기관이 더 심층 감사하도록 하거나 우리 스스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78. 회계감사기관이 통계학적으로 유효한 샘플을 사용하고, 그리고 오차범위가 통계학적으로 실행 가능할 경우, 샘플의 결과는 외삽될 것이며, 국세청은 제도로부터 복원을 추구할 것이다.

절차의 검토(Review of procedures)

79. AUT 또는 OEIC가 FR과 NFR 회계인 경우 국세청은 NOR 회계의 운영에 관한 절차를 감사할 것이다. 이것은 높은 수준의 감사가 될 것이며, 어떠한 개인의 경우를 감사하는 것을 수반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세청 감사기관이 어떻게 그들이 적용되는지 절차에 대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절차가 어떻게 NFR 회계에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독립적 회계기관을 필요로 할 것이다. FR 회계가 없을 경우 이 감사는 독립 회계감사기관에 의해 수행될 것이다.

80. 독립적 회계기관으로 지정된 NFR 회계와 독립적 회계감사기관은 당신이 미래 연도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보고할 것에 대한 것을 충족시킬 준비가 되어있음을 납득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세청은 미래연도에 그 기관에 의해 통지서를 완전한 보고서 작성을 요구할 목적으로 제출할 권리를 유보한다.
81. 국세청 FR 회계를 위해 Section 18 보고서로부터 통계학적 샘플을 선택하며, 68% 신뢰수준의 통계학적 샘플은 보고서 작성의 의무가 있는 모집단으로부터 선택될 것이다.

처벌(Penalties)

82.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보고서를 작성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300파운드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최초의 벌금이 부과된 후에 미해결된 보고서가 남아있는 각 날짜마다 6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된다.
83. 부정으로 또는 태만하게 부정확하게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은 3,0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다.

안내방문(Help Visits)

84. 재정기관, 특히 이전에 정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람은 국세청에 접촉 방문하여 도움을 요구할 수 있다.

문의(Enquiries)

85.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한다.
- 보고서의 회계감사 주제 또는 형식은 Chris Sexton에 제출되어야 한다.
 - 기술적 문제는 Pat Blanchard로 제출되어야 한다.

<부록 3> 1967년 자본이득세 시행규칙

1. 이 규칙은 '1967년 자본이득세 시행규칙'이라고 하며, 1967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심판'이란 자본이득세에 대한 부과결정이나 기타 자본이득세와 관련된 결정에 대한 결정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국세청 심판관을 의미한다. '심판관'¹⁵⁾은 (법 17조를 제외하고) 일반 심판관 또는 특별 심판관을 의미한다. '제3 당사자'는 제3의 당사자 또는 이 규칙 제8조에 의하여 참가한 종된 당사자를 의미한다. 1964년 소득세 관리법은 1965년 재정법 제10조제1항에서 자본이득세에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는 법을 말한다. 1965년 재정법 제III장은 동 법 Sch. 6. 내지 10. 과 제III장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을 포함한다. 이 규칙 제15조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기타 용어들은 1965년 재정법제 3장에서와 같은 의미로 이해한다.
(2) 1989년 해석법은 의회에서 제정된 법에 대한 적용례에 따라 이 규칙에 적용한다.

3. 내지 5.(삭제)

6. 서면 제출

심판관은 심판의 심리나 심문에 출석할 권리가 있으나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해

15) Income Tax Commissioner: 영국의 '소득세 심판관'으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심판 기관이다. 이는 다시 소득세 일반 심판관(General Commissioner of Income Tax)과 소득세 특별심판관(Special Commissioner of Income Tax)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대법원이 임명하고 복잡한 법률문제를 취급하며, 후자는 조세공무원 또는 조세전문가로서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재무부가 임명하는 정식직원으로 법률문제를 담당한다.

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사직원과 다음의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a) 원고, 1964년 소득세 관리법 Sch.3.의 규정 또는 재량으로 심판관의 면전에서 심리가 열릴 경우
- (b) 제3 당사자. 심판에 대하여 규칙 제8(6)조에 의하여 신청으로 이송받은 심판관의 면전에서 심리가 열릴 경우

7. 조사직원 직무의 대리

위원회 소속 직원은 심판의 심리나 심문에서 관련 조사직원을 대리할 수 있다.

8. 제3 당사자의 심판참가

- (1) 자산에 대한 특정일의 시장가격 또는 가격의 안분이 심판의 주요한 쟁점이 된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당해 시장가격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자산가액의 안분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청구의 이해관계자로 참가할 수 있다.
- (2)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판에 대한 제3당사자로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직원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a)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 (b)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취지
 - (c) 납부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 (d) 당해 취지를 뒷받침할 주장
- (3) 조사직원은 원고 기타 심판에 관여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신청서 1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 (4) 조사직원은 소정 심리(또는 심문) 기일의 30일 이전에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이 제3 당사자로서 심판에 참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제3당사자로서 참가를 인정하여야 하고 원고와 심판에 관여하는 당사자들에게 당해 참가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5) 조사 직원은 소정의 심리(또는 심문) 기일의 30일 이내이나 아직 심판이 결정되지 아니하는 동안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또는 신청인이 심판에 참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리를 개시하기 전에 신청서를 심판관에게 회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심판관은 재량으로 신청한 심판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6) 심판청구를 접수한 심판관은 제3자의 신청이 있으면 신청한 당사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일반심판관 또는 특별심판관에게 당해 심판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당해 심판청구를 접수한 심판관은 당해 이송이 양 당사자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심판사건을 이송할 수 없다.
- (7) 제3당사자는 심판사건의 심리와 결정에 있어 자신이 이해관계를 가지는 청구취지에는 어느 법정에서든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포함하여 원고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 (8) 제3당사자는 심판사건의 심리에서 원고가 동의하지 아니하면 자신이 이해관계를 가지는 심리를 제외하고는 참가할 권한이 없으며 심판관은 이에 대하여 필요하면 심판사건의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별도의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 (9) 1965년 재정법 제26조제(5)항(사망으로 인한 소송의 승계)에 의하여 심판에서 당사자가 될 자격이 부여되어 있는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9. 시장가격 결정의 신청

- (1) 자산의 특정일의 시장가격 또는 가격의 안분이 특정 기간(동일기간 또는 상이한 기간 여부는 불문한다)동안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나, 이미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심판에 있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이들은 심판관에 대하여 시장가격이나 가격의 안분방법을 결정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 (2)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시 결정에 대한 심문과 심문에 의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타인(원고가 알고 있는 자에 한함)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 조사직원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 (3) 1964년 소득세 관리법 제3조 (심판관에게 쟁송절차에 대한 임무를 부여한 규정)에 근거한 이 규칙에 의한 쟁송절차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쟁송절차가 관련된

평가연도에 원고가 귀속된다는 것은, 신청이 어느 특정 평가연도에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원고가 통상적으로 신청한 때에 귀속한다는 근거로서 해석될 수 있다.

- (4) 조사직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진행되는 쟁송절차에서 당사자가 된다.
- (5) 일반심판관 대신에 특별심판관 (또는 북아일랜드에서의 쟁송절차일 경우 특별심판관 면전을 대신하여 주법원)의 면전에서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쟁송절차를 가져오는 표결은 신청을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이후로 30일 이내에 조사직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6) 이 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관하여, 1965년 재정법 제Ⅲ장과 전술한 Ⅲ장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적용된 법령은 그것을 적용할 수 있고 어떠한 필요에 따라 변형할 수 있는 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평가에 반대하는 심판에 적용하는 것처럼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쟁송절차에 적용할 수 있다.

10. 다른 심판기관에 청구대상인 가격의 참고

- (1) 1965년 재정법 제44조 제(6)항 내지 제(8)항(부동산 또는 비상장주식 가격평가의 문제)에 따라 결정이 될 심판에서의 문제는 심판이 열리기 전에, 조사직원에게 의해 심판의 심리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심판관에 의해 적절한 심판기관에 의뢰될 수 있다.
- (2) (생략)
- (3) 심판에 관한 심문이 1965년 재정법 제44조 제(6)항 내지 제(8)항에 따라 다른 심판기관으로 이송된 경우 심판관은 심판이 제기되기 앞서 심판에 관하여 남아 있는 심문들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어느 일방의 요청에 의하여(결정 직후 결정에 대한 불만족을 표시하든지 간에) 1952 소득세법의 64조에 따라 다른 심판기관에 이송된 심문에 관한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사건에 대해 진술할 수 있다.

11. 심판결정의 종결효과

- (1) 자산의 특정일의 시장가격 또는 당해 가액의 안분(2인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가격이나 이의 안분)은 제14조에 따라 위원회나 위원회의 직원과 다음 각 호의 자 사이에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모든 과정이 종결되어 결정이 이루어질 심판에 의해 결정된다.

(a) 심판의 당사자들

(b) 심판의 제3자로서 참가를 신청하여 자격이 주어지고 이러한 신청기간에 심판과 신청상 자격이 수여될 만한 심판에 관한 심문에 대한 통지를 받은 사람, 부적절하게 지연되도록 신청한 사람은 신청인 자격이 허락되지 않는다.

(2) 이 규칙에서,

(a) 심판이나 심판의 심문에 대한 결정은 결정이 더 이상 심판기관이나 어느 법원의 명령에 의하건 나누어지지 않을 때 최종적으로 다루어진다.

(b) 자산의 특정일의 시장가격이나 물량 또는 가액의 안분은 시장가격이나 이의 안분이 심판에 있어 중대한 심문이 된다면 시장가격이나 안분에 관한 논의가 없어도 최종적으로 심판에서 결정된 것으로 의제될 것이고 심판은 결국 결정이 날 것이다.

(3) 심판관은 심판의 어느 당사자로부터 요청받는다면, 시장가격이나 안분이 심판에 있어 중대한 심문이 된 경우에 특정일의 시장자산가격이나 물량 또는 가액의 안분에 관한 결정을 기록해야 한다.

(4) 특정일의 시장자산가격이나 물량 또는 가액의 안분에 관한 심판에 있어서 최종 결정은 조사직원이나 서기, 심판관의 등록부나 심판이나 심문에 대해 1965 재정법 44조 (6) 내지 (8)항에 따르거나 10조 (3)항 규칙에 따라 결정을 내린 다른 심판기관이 서명한 주요 사항들을 기술한 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어느 과정에서도 입증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증명서를 뜻하는 서류는 더 심화된 증거 없이 어느 소송절차 과정에서도 증거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12. 시장가격이나 안분에 관한 서면합의

(1) 이 규칙과 다른 합의나 통지는 1952년 소득세법 제510조(합의나 철회에 의한 심판의 확정)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합의가 도출되거나 통지가 주어진 시점에서 제3자가 제기한 심문이 결국 심판에서 결정되지 않았거나 이 조 제2항에

의하여 도출된 합의에 의해 처리되지 않은 경우 제3자가 참여한 심판과 관련하여 심판관이 결정내린 심판이 영향력을 가질 수 없는 때와 같다.

- (2) 특정일의 시장의 자산가격이나 가액의 안분이 2인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시장가격이나 가액의 안분이 심판에 있어 중대한 심문 사항이 되었을 경우, 시장가격이나 가액의 안분이 조사직원이나 위원회의 어느 다른 직원과 시장가격이나 가액의 안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책임이 있는 심판의 모든 당사자 사이에서 서면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그 합의는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모든 쟁송절차에서 위원회나 위원회의 어느 임원과 다음 사람들 가운데 종결될 것이다.
 - (a) 합의의 당사자
 - (b) 합의가 관련된 심판에서 심문에 관하여, 심판에서 제3자로 참가 신청할 자격이 인정되고 심판과 심판의 심문에 대한 통지를 합의하기 30일 이내에 받은 자. 다만 합의하기 전에 신청한 자는 제외한다.
- (3) 위 제(2)항에 의하여 체결되고 적절한 보관을 거친 합의서류는 서명인을 의미하는 사람들에 의해 작성된 합의와 같은 더 심화된 증거 없이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모든 쟁송절차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13. 서면 합의나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대인적 범위

- (1) 이 규칙에 의하여 확정된 특정인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의 결정이나 합의는 그의 개인적인 대리인, 그의 수탁자 또는 파산이나 정리시의 양수인에게도 동일한 범위 내에서 동일한 확정 효력이 미친다.
- (2) 이 규칙에 의하여 확정된 양도재산의 수탁자에 대한 양도된 재산과 관련있는 인용 또는 기각의 결정이나 합의는 수탁자에 반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완전한 권리인에게도 동일한 범위 내에서 동일한 확정 효력이 미친다.
- (3) 이 규칙에 의하여 확정된 사망인의 개인적인 대리인에 대한 사망인의 유산이나 사망인이 작성한 유언장의 양도를 구성하는 자산과 관련있는 인용 또는 기각의 결정이나 합의는 유산 수령인으로서 그 자산의 취득인에게도 동일한 범위 내에서 동일한 확정 효력이 미친다.

- (4) 1965년 재정법 Sch.7. 제20항(배우자간의 양도)이나 같은 법 제31조 (4)항(특정 예술 작품 등의 양도)이 자산의 처리에 관하여 적용되는 경우 이 규칙에 의하여 확정된 양도인에 대한 자산과 관련있는 인용 또는 기각의 결정이나 합의는 그 자산의 취득인에게도 동일한 범위 내에서 동일한 확정의 효력이 미친다.

14. 사기 또는 고의에 의한 위반

결정이나 합의를 함에 있어 공헌하거나 초래한 사람의 행위에 의해 사기 또는 고의에 의한 계약위반의 형태로서 당 결정이나 합의가 보여지는 경우 이 규칙에 의하여 해당 개인에 대해서는 확정된 인용의 결정이나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15. 용어의 해석

이 규칙에서,

- (a) 자산의 시장가격 또는 가액의 안분은 다른 시장가격이나 가액 안분을 채택하면 다른 심판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원고와 조사직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심판상 중요한 심문사항으로 본다.
- (b) 개인은 특정 일시에 시장자산가격이나 지불되거나 자산과의 관계에서 지불가능으로 확인된 물량 또는 가액의 안분으로 영향받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 책임이 있는 개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i) 1965년 4월 6일 이후에 도래하는 해당 특정일 이전에 1965년 재정법 제41조 또는 제42조(비거주 회사와 신탁)에 의해 특정인, 개인적인 대리인 또는 회사나 수탁자가 자산의 처분이나 취득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이 당해 자에게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
- (ii) 당해 특정일 또는 당해 자산을 양도나 취득한 과세연도에 영국에 거주하거나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 다만 1956년 재정법 제10조제(3)항(통상적인 거주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이 항에서 발생하는 의문점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c) 1965년 재정법 제 3장에서 독립 별개의 인적 단체로 간주되는 개인적인 대리인이나 수탁자들은 수탁자의 개인적인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개인들과는 별개의 독

립적인 인격으로 본다. 그리고 동일인들이 하나 이상의 유산에 관하여 개인 대리인이 수탁자인 경우 이들은 각 유산 단위로 독립된 별개의 인격으로 본다.

16. 제3당사자에의 통지

조사직원은 특정인이 제3당사자로서 심판에 참가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심판의 계속 사실을 통지하고 동시에 당해 사안의 과세와 결정에 적용한 자산의 시장가격 또는 가격의 안분 (심판대상 이익과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을 공개하여야 한다.

17. 북아일랜드에서의 쟁송절차

1964년 소득세 관리법 제14조제(1)항(북아일랜드에서의 쟁송절차와 관련한 ‘일반 심판관’의 정의)은 1965년 재정법 제Ⅲ장예의 적용에 준하여 이 규칙에 적용할 수 있다.

18. 우편 송달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하는 통지나 문서는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부록 4> 1988년 자본이득세법

제272조 (평가: 일반)

- (1) 이 법에서 특정 자산의 '시장가격'은 당해 자산의 공개시장 거래를 통하여 형성되는 합리적인 가격을 말한다.
- (2) 자신의 시장가격의 산정에는 자산의 전체를 일시 또는 동시에 시장에 판매를 위하여 제시함으로 인한 가격의 하락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 (3) 제4항을 제외하고, 증권거래소 일일 상장거래 리스트(Stock Exchange Daily Official List)에 등재된 주식, 기타 증권의 시장가격은 다음의 가격으로 한다. 다만 당해 리스트에 기재된 가격이 특별한 조건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시장 가격으로 보지 아니하며, 제a호의 가격과 제b호의 가격 중에 저가인 가격을 선택하고, 당해일에 거래가 성립되지 못한 경우에는 제a호의 가격을 선택한다.
 - (a) 당해 평가일에 증권거래소 일일 상장거래 리스트(Stock Exchange Daily Official List)에 등재된 2가지 시장가격중 최저가격에 이들 가격의 차액의 4분의 1을 더한 가격
 - (b) 당해 평가일의 주식, 기타 증권에 형성된 최상의 거래가격과 최저의 거래가격(다만 특별거래가격은 제외함)의 단순평균
- (4) 제3항의 규정은 증권거래소가 제공한 런던 거래소 외에 보다 더 적극적인 시장에서 형성된 주식, 기타 증권의 가격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당해일에 런던거래소가 폐장된 경우에는 폐장 이전 이후의 가장 근접한 날에 형성된 가격 중에서 저가의 가격을 시장가격으로 본다.
- (5) 이 법에서, 계좌단위로 판매하는 신탁(unit trust)의 계좌 보유자의 권리에 대한 '시장가격'은 당해 신탁의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매도가와 매수가를 당해 평가일에 공시된 매수가로 본다. 다만 당해 가격은 최저가인 경우에 한하고, 당해 평가일 또는 직근 일에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때에 한한다.

(6) 이 법 제 272조 내지 제274조에는 Sch. 11. 제2절을 적용한다.

제273조(비상장 주식 기타 증권)

- (1) 제3항의 규정은 제272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산에 대하여 이 조에 의하여 공개 시장 거래를 통하여 형성되는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2) 이 조의 적용을 받는 자산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 목적상 시장가격을 평가할 당시에 공인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기타의 증권으로 한다.
- (3) 공개시장에서 제1항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상 자산에 대하여 합리적인 잠재적 매입자가 필요로 하는 합리적 범위내의 모든 거래 정보를 전제로 한다. 이 경우 거래는 매도자에게 제약이 없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독립 당사자 간의 거래로 한정한다.

<부록 5> 상속세법

1894년 재정법 제7조 제5항

재산가격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이 판단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공개시장에서 당해 재산이 거래되었다면 형성되었을 가격으로 추정하여 산정한다.

1910년 재정법 제60조 제2항

이 법 제60조 제5항에 의하여 1909년 4월 30일 이후 사망한 자의 재산의 원칙적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시장가격에 의하여 자산의 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전체 재산이 시장에서 동일한 시점에 일시에 개체함을 전제로 하여 추산한 가격을 전제로 하는 감액을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재산의 가격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가치가 감소되었음을 세무서장에게 입증한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세무서장은 당해 감손을 고려하여야 한다.

1940년 재정법 제55조(회사의 주식 및 사채의 상속세과세를 위한 평가)

- (1) 이 법의 시행 후 사망한 자의 사망 당시 회사의 주식이나 사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사채의 원칙적인 가격은 1894년 재정법 제7조 제5항에 의하여 추산하는 대신에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회사재산의 순가치를 참작하여 추산한다.
 - (a) 당해 주식이나 사채가 사망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소급하여 7년 이내의 어느 시점에 회사의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던 자인 경우
 - (b) 이하 생략
-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회사재산의 순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a) 회사재산의 순가치는 1894년 재정법 제7조 제5항에 의하여 추산한 가격에 이 법 제46조에서 사망 당시 이전된 회사 재산에 관련된 1894년 재정법 제7

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회사채무를 공제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1894년 재정법 제7조 제5항 제b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는 동항 제a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 공제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 (b)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발행되어 남아 있는 회사의 주식이나 사채의 가격의 합계는 회사 전체재산의 순가치로 본다.
 - (c)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발행되어 남아 있는 회사의 주식이나 사채의 종류가 서로 다른 것이 있는 경우 회사재산의 순가치를 이들 유가증권 간에 당해 증권이 표창하는 권리의 내용을 적절히 감안하여 안분하여야 한다.
 - (d) 개별주식이나 사채 또는 특정종류의 주식이나 사채의 가격은 독립의 별개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유가증권의 권면액을 감안하여 이 항 제a호에 의하여 결정한 회사재산의 순가치에서 안분하여 평가할 수 있고, 이 항 제c호의 경우에는 동호에 의하여 당해 주식, 사채 또는 이들 유가증권의 종류별로 안분한 가격에서 안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 (3) 이 조에서 특정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권한을 어느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때에 직접 또는 승낙권한을 행사하면 회사의 지배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권을 보유한 적이 있다고 본다.
- (a) 전체 결의사항 또는 특정 결의사항을 절대다수로 결의할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b) 생략
- (4) 이 조는 공인된 영국증권거래소의 위원회로부터 거래의 승인을 얻거나 사망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 내에 증권거래소의 통상의 거래절차에서 거래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주식이나 사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당해 종류의 주식이나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제2항 제c호에 의하여 안분하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주식이나 사채에 안분할 회사재산의 가치의 부분은 당해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5) 특정주주가 신인의무를 지는 회사의 지배권은 이 조의 목적에서 무시한다.
- (6) 이 조에서 회사의 재산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으로 본다.
- (7) 1930년 재정법 제37조는 이 법의 시행 후 사망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954년 재정법 제28조(특정기업자산에 대한 경감세율)

- (1) 사망을 원인으로 사업 또는 지분이 이전되는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 또는 보유하는 기업용 재산(hereditament) 또는 사업에 제공되는 기계나 설비에 부과되는 상속세는 다음 각 항에서 정하는 비를 제외하고 상속세율의 55%로 과세된다.
- (2) 상속세 과세대상인 회사의 주식 또는 사채를 1940년 재정법 제15조에 의하여 당해 회사의 재산가치를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하거나 또는 당해 주식 또는 사채를 1966년 재정법 제66조 제13항 제a호에 의하여 원칙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
 - (a) 상속세는 당해 주식 또는 사채의 순가치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이 조 제1항에 의하여 부과한다.
 - (b) 당해 회사가 낙농 또는 임업을 영위하는 경우, 상속세를 당해 회사가 낙농 또는 임업용으로 제공하고 농업용 자산의 (1925년 재정법 제23조에 해당하는) 농업용 가치에 해당하고 안분한 회사의 순가치 또는 낙농 또는 임업용으로 제공된 자산이 실제로는 낙농 또는 임업용에 전부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낙농 또는 임업용에 실제 사용된 부분에 해당하는 가치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비율의 55%로 과세한다.
- (3) 이 조 제2항 제a호에서 주식 또는 사채의 순가치의 안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치의 안분을 말한다.
 - (a) 회사의 사업용으로 사용 및 제공되는 기업용 재산 또는 기계 및 설비
 - (b) 다음에 가치 산정의 기초를 둔 회사의 자회사의 주식 또는 사채
 - (c) 회사가 자회사가 자신으로부터 임대받아 사업용으로 제공 또는 점유하는 사업용 재산 또는 이에 제공한 기계나 설비로 구성된 특정 자산에 대하여 가지는 자회사에 대한 임대 권리
- (4) 사망으로 이전된 회사의 주식 또는 사채에 이 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회사의 사업용으로 제공 및 사용되는 기업용 재산 또는 기계나 설비를 임대한 피상속인의 권리는 제1항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1항은 전단의 규정을 제외하고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권리에 한하여 적용한다.
- (5) 1940년 재정법 제46조에 의하여 사망 당시 이전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회사 재

산의 경우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이 조 제3항 제b호 및 제c호와 제1항에 해당하면 이 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 (6) 이 조에서 사업에 사용된 기계 또는 설비에 관하여 당해 기계 또는 설비의 가치를 감안하여 이 조에서 인정하는 상속세의 경감은 당해 기계 또는 설비가 전적으로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항과는 별도로 국세청의 위원회가 제반 사정 특히 다른 용도(사업용임을 묻지 아니한다)에 제공한 범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범위에 한하여 인정한다.
- (7) 생략
- (8) 생략
- (9) 이 조의 '사업'에는 전문인적 용역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 (10) 이 조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당해 회사의 당해 사업용 자산, 주식이나 사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a) 사업의 매매를 위하여 구속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사업. 다만 당해 회사 주식의 전부나 대부분을 사업의 매매대가로 지급한 회사의 매매는 제외한다.
 - (b) 해산 명령을 받거나 '임의해산'을 결의한 회사 또는 청산중인 회사(다만, 회사의 재구성 또는 합병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사업

1960년 재정법 제66조(특정회사의 자산평가)

- (1) 이 조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1960년 4월 4일 이후 사망한 자의 경우 회사가 사업에 제공한 자산 또는 회사가 사업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원칙적인 가격은 1940년 재정법 55조 (특정 회사의 자산을 참작한 주식 또는 사채의 평가)의 목적상 당해 자산이 당해 사업목적만을 위하여 보유 또는 제공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1894년 재정법제7조 제5항에 의하여) 평가할 재산의 가격을 참작한 매매가 사업 자체의 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평가하여야 한다.
- (2) 회사의 사업이 주로 또는 전적으로 토지·건물이나 주식 기타증권을 거래, 투자 또는 보관하는 사업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에 당해 사업에

속하는 증권·주식·토지 및 건물에는 이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주식 또는 사채의 원칙적 가격이 다음 각 호의 경우와 비교하여 저가인 때에는 이 보다 낮추려는 목적으로는 이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a) 1984년 재정법 제7조 제5항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

(b) 1940년 재정법 제55조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

〈부록 6〉 Schedule- Intangible Fixed Assets(2001. 11. 27)

제A절 총칙

- A1. (무형고정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손익) (1) 무형고정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회사의 수익은 이 별표에 의하여 법인세법상의 과세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2) 무형고정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회사의 손실이 법인세법의 목적상 계산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적용한다.
(3) 달리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이 별표에 의하여 어느 항목에 대하여 계산하여야 할 금액은 법인세과세 목적으로만 계산하여야 할 금액이 된다.
- A2. (무형자산) (1) 이 별표에서 ‘무형자산’이라 함은 기업회계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동일하게 본다.
(2) 이 별표의 무형자산에는 특히 지적재산을 포함한다. 이 경우 ‘지적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a) 특허, 상표, 등록의장, 저작권 또는 의장권, 종자권 기타 1997년 식물변형법 제7조의 권리
(b) 제a호에서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로서 당해 외국의 법률에서 인정하는 권리
(c) 제a호 및 제b호에 해당하는 권리로 보호받지 못하나 산업상·영업상 기타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정보 또는 기술
(d) 제a호 내지 제c호에 해당하는 재산과 관련된 사용실시권 기타 권리
- A3. (고정자산)(1) 이 별표에서 회사의 ‘고정자산’이라 함은 회사가 사업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보유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말한다.

(2) 이 별표의 고정자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a) 내부에서 제작한 고정자산

(b) 다음의 선택권 기타의 권리

(i) 고정자산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선택권 기타의 권리

(ii) 고정자산을 처분할 선택권 기타의 권리

(3)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 별표의 규정들은 고정자산에 적용하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이 회사의 계정에 자본화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A4. (영업권) (1) 다른 규정이 없으면 영업권은 무형고정자산으로 보고 이 별표의 규정들을 적용한다.

(2) 이 별표에서 ‘영업권’이라 함은 기업회계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동일하게 본다.

A5. (‘회계목적’의 정의) 이 별표에서 ‘회계목적’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된 회계목적에 말한다.

A6. (정당하게 회계를 작성하지 않은 회사)(1) 회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회계관행에 따라 회계를 작성(이를 ‘정당한 회계’라고 한다)하지 아니한 경우

(a) 이 별표의 규정들은 정당하게 회계가 작성된 것으로 수정하여 적용한다.

(b) 이 별표에서 회계목적으로 인식된 것으로 언급된 금액은 정당한 회계가 작성되었더라면 인식하였을 금액을 말한다.

(2) (생략)

(3) 이 조의 규정은 회사가 회계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회계가 작성된 경우에 적용한다.

제B절 무형고정자산 관련 차감항목

B1. (통칙) (1) 이 절은 회사가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과세목적상 계상하여야 할

차감항목을 규정한다.

- (a)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회계목적상 상각할 무형고정자산에 지출한 경비(B2 참조)
- (b)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무형고정자산의 자본화된 비용의 상각
 - (i) 회계목적(B3 참조)
 - (ii) 정률법(B4 또는 B5 참조)
- (c) 무형고정자산에 관한 종전 회계공제의 수정(B6 참조)
- (2) 이 절의 규정은 무형고정자산의 실현과 관련하여 계상하여야 할 금액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D절 참조).

B2 (발생하는 비용의 상각) (1) 특정 회계연도중 무형고정자산에 발생한 비용이 회사의 손익으로 인식되는 경우 과세목적상 이를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여 차감하여야 한다.

- (2) 과세목적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목적상 인식된 차감할 금액은 회계목적상 회사가 인식한 손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 (3) 1988년 세법(Taxes Act 1988) 제74조 제(1)(m)항 또는 동항 제(p)호(별표D Case I 또는II에서 규정하는 익금 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하는 연간 대가 및 특허사용료) 또는 동법 제817(1)(b)조 (과세목적상 익금 총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되지 아니하는 연간대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또는 제F절)에 의하여 과세목적상 차감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 (4) 이 조는 종전에 자본화된 경비에 해당하는 손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B3 (기업회계를 반영한 상각; 감가상각 또는 감손비용) (1) 회사의 특정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에서 무형고정자산의 자본화된 경비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 과세목적상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차감하여야 한다.

- (a) 감가상각

(b) 감손감사

- (2) 제1항의 ‘감손감사(impairment review)’에는 최근 자본화된 비용액을 결정하기 위한 자산의 조정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3) 이 조에서 ‘자본화’라 함은 회계목적상 자본화를 말한다.
- (4) 회계목적상 최초로 자본화된 자산에 발생한 경비의 특정회계연도에 차감할 금액의 계상
- (5) 과세목적상 요구되는 조정을 제외하고 과세목적상 인식되는 자산에 대한 경비 금액은 회사가 회계목적으로 자본화한 자산에 대한 경비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 (6) 차기 회계연도의 손금차감(Debits)에 관한 과세목적상 차감금액은 다음의 산식과 같이 계산한다.

$$\text{회계상 결손} \times \frac{\text{과세가액}}{\text{장부가액}}$$

위 산식에서, 회계상 결손(accounting loss)은 회계목적으로 인식한 결손금액을 말한다. 과세가액(tax value)은 상각하기 직전 또는 감손손실(impairment loss)을 회계목적상 인식하기 전의 과세상 상각할 자산가액을 말한다. 장부가액(book value)은 상각액을 계산하거나 감손회계를 실시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회계목적상의 자산가액을 말한다.

- B4 (상각; 정률법의 선택) (1) 회사는 과세목적상 무형고정자산의 상각방법으로 정률법을 선택할 수 있다.
-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은 당해 자산이 회계목적상 감가상각 대상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선택할 수 있다.
 - (3) 이 조의 선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a) 서면으로

- (b) 국세청에 대하여
- (c) 당해 자산을 취득 또는 제작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2년 이내
- (4) 특정자산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 이 방법을 회계목적상 자본화할 자산에 발생한 모든 경비에 적용한다.
- (5) 이 조에 의하여 선택한 방법은 취소하지 못한다.
- (6) 제B3조(회계산정기초의 상각)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방법을 상각방법으로 선택한 자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B5(정률법에 의한 상각; 계산) - B6 (생략)

제C절 무형자산관련 공제

- C1. (통칙) (1) 이 절은 회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목적상 계상하여야 할 익금가산항목(Credits)을 규정한다.
- (a) 발생시점에 손익계정에 인식되고
 - (b) 무형고정자산의 재평가(C1 참조)
 - (c) 부의 영업권에 관하여 회계목적상 인식한 채권(C4 참조)
 - (b) 무형고정자산에 관하여 종전에 차변으로 처리한 금액의 환입(C5 참조)
- (2) 이 절은 제D절에서 정의하는 무형고정자산의 실현과 관련하여 계상할 금액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C2 (수령한 대가; 발생주의로 인식) (1) 특정 회계연도 내에서 무형고정자산과 관련하여 수령한 금액을 표시하는 수익(gain)이 회사의 손익계정에 인식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채권을 과세목적상 계상하여야 한다.
- (2) 과세목적상 조정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에 의하여 과세목적상 인식되는 채권액은 회계목적상 회사가 인식한 수익의 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 C3 (재평가) (1) 특정 회계연도의 회계목적상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가격이 재평가

로 인하여 증가하는 경우 과세목적상 이를 대변항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2) 과세목적상 대변항목으로 계상할 채권액은 다음 각 호의 1로 한다.
 - (a) 과세목적상 증가한 가액에 상응하는 금액(제C3조 제3항 참조)
 - (b) 종전에 부채항목으로 계상한 관련 세액의 순합계액(다만, 제a호보다 금액이 작은 경우에 선택한다; 제C3조 제4항 참조)
- (3) 과세목적상 증가한 가액에 상응하는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text{회계조정액} \times \frac{\text{과세가액}}{\text{장부가액}}$$

위의 산식에서, 회계조정액(accounting adjustment)은 회계목적상 증가한 가액을 말한다. 과세가액(tax value)은 상각하기 직전 또는 감손손실(impairment loss)을 회계목적상 인식하기 전의 과세상 상각할 자산가액을 말한다. 장부가액(Book Value)은 상각액을 계산하거나 감손회계를 실시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회계목적상의 자산가액을 말한다.

- (4) 기존에 계상되어 있는 관련 순차감세액은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종전 차감합계액 - 종전 산입합계액

위의 산식에서, 종전차감합계액은 제B3조에서 자산에 관하여 과세목적상 종전에 계상한 차감항목의 합계액을 말하고, 종전산입합계액은 이 조에서 자산에 관하여 과세목적상 종전에 계상한 산입항목의 합계액을 말한다.

- (5) 이 조의 '재평가'에는 다음의 각 항을 포함한다.
 - (a) 회사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으나 종전에 평가대상이 아니었던 자산의 평가
 - (b) 과거 결손의 회수
- (6) 이 조는 상각방법으로 제B4조(정율상각법의 선택)를 선택한 자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C4 (부의 영업권) (1) 특정사업연도에 사업의 매수로부터 발생하는 부의 영업권이 회사의 손익계산에서 수익으로 인식되는 경우 과세목적상 그에 상응하여 대변(credit)에 계상하여야 한다.

(2) 회계목적상 손익으로 인식되어 대변에 기재한 금액은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무형고정자산에 귀속한다.

C5 (생략)

D절 무형고정자산의 실현

D1 (통칙) 이 절은 회사가 무형고정자산의 실현시점에 과세상 계상할 가산액과 차감액을 규정한다.

D2 (수익실현의 정의) (1) 이 별표에서 무형고정자산의 수익실현이라 함은 거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회계관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이 초과되는 것을 말한다.

(a) 자산에 대한 회사의 대차대조표상의 인식 중지

(b) 회사의 대차대조표에 인식된 가치(carrying value)의 감소

이 경우 '거래'에는 회계목적상 인식하여야 할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실을 포함한다.

(2) 대차대조표상 가격이 없는 무형고정자산은 당해 자산이 대차대조표상 가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3) 이 별표에서 '부분실현(part realisation)'이라 함은 제1(b)항에 해당하는 실현을 말한다.

D3 (과세목적상 상각자산의 수익실현) (1) 이 조는 제B3조 또는 제B4조에 의하여 과세목적상 차감항목을 계상하여야 할 무형고정자산의 수익실현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 (2) 이 조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 (a) 실현의 대가가 당해 자산의 과세목적상 상각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상당하는 가산액은 과세목적상 계상하여야 한다.
 - (b) 실현의 대가가 당해 자산의 과세목적상 상각가치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에 상당하는 차감액은 과세목적상 계상하여야 한다.
 - (c) 실현으로 얻은 대가가 없는 경우 자산의 과세상 상각가치에 상당하는 차감액을 과세목적상 계상하여야 한다.
- (3) 이 조에서 자산의 과세상 상각가치라 함은 실현 직전의 과세상 상각할 가치를 말한다.

D4 (과세상 미상각된 것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의 실현) (1) 이 조는 제D3 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회사의 대차대조표에 가격이 표시된 무형고정자산이 실현된 경우에 적용한다.

- (2) 이 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 (a) 실현의 대가가 당해 자산의 과세 목적상 상각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상당하는 가산액은 과세목적상 계상하여야 한다.
 - (b) 실현의 대가가 당해 자산의 과세 목적상 상각가치를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에 상당하는 차감액은 과세목적상 계상하여야 한다.
 - (c) 실현으로 얻은 대가가 없는 경우 자산의 과세상 상각가치에 상당하는 차감액을 과세 목적상 계상하여야 한다.
- (3) 과세 목적상 조정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 목적상 인식된 자산의 비용은 회계 목적상 회사에 자본화된 자산에 발생한 경비와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D5 (대차대조표에 표시되지 아니하는 자산의 실현) (1) 이 조는 제D조 또는 제D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무형고정자산에 실현된 경우에 적용한다.

- (2) 이 조를 적용하는 경우 실현의 대가에 상당하는 차감액을 과세 목적상 계상하여야 한다.

D6(일부분만 실현된 경우의 배분) : 생략

D7 ('실현의 대가'의 정의) (1) 이 별표에서 자산의 '실현으로 얻은 대가'라 함은 회계 목적상 실현의 대가로 인식된 금액에서 실현의 우발비용으로 인식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들은 과세 목적상 조정대상이 된다.

D8 (채투자 경우 세제 혜택) 이 절의 제D1조 내지 제D7조의 규정에는 제G절(채투자 경우 세제혜택)의 예외가 적용된다.

제E절 과세상 상각대상 가액의 산정(생략)

제F절 익금과 손금의 계상

F1 (통칙) (1) 이 별표에 의하여 과세목적상 계상하여야 하는 익금(credits)와 손금(debits)은 이 절에 의하여 계상하는 경우에만 효력을 인정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서 규정한 목적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익금과 손금은 당해 각 호에 의하여 효력을 인정한다.

(a) 제F2조(거래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b) 제F3조(자산거래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c) 제F4조(Sch.D Case I 에 의하여 규정되는 특정기업용으로 보유하는 자산)

(3) 기타의 손익(비영업손익)은 제F5조 내지 제F8조에 의하여 효력을 인정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손익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

F2 (사업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회사가 특정회계연도에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보유하는 자산에 관하여 계상하여야 할 손익은 과세 목적상 사업으로 얻은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 (a) 사업으로부터 수령한 대가는 익금
- (b)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비용은 손금

F3 (부동산업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1) 회사가 특정회계연도에 부동산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보유하는 자산에 관하여 계상하여야 할 손익은 과세 목적상 사업으로 얻은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 (a) 사업으로부터 수령한 대가는 익금
 - (b)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비용은 손금
- (2) '부동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업을 말한다.
- (a) 통상적인 Sch.A의 사업
 - (b) 휴가 목적의 가구가 있는 건물이나 방의 임대업
 - (c) 해외 부동산업
- (3) (생략)
- (4) 1988년 세법 제503조(휴가 목적의 가구가 딸린 건물이나 방의 임대의 별개 거래로의 취급)는 이 별표에 적용한다.

F4(광산, 운송회사 등의 사업용 보유자산) (생략)

F5 (비영업손익) (1) 회사는 특정회계기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손익이 있으면 그 한도 내에서 무형고정자산에서 발생한 회사의 비영업 손익의 합계를 산정하여야 한다.

- (a) 제F2조 내지 제F4조(비영업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무형고정자산에 관한 수익
 - (b) 제F2조 내지 제F4조(비영업손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무형고정자산에 관한 손실
-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에 대한 비영업이익이 있는 것으로 본다.
- (a) 비영업이익만이 있는 경우

- (b) 비영업손익이 모두 있고 비영업이익의 합계가 비영업손실의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비영업수익 금액은 비영업채권합계액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에 대한 비영업손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 (a) 비영업손실만 있는 경우
- (b) 비영업손실만 모두 있고 비영업손실의 합계가 비영업이익의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비영업손실액은 비영업채무합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 (4) 무형고정자산에서 발생한 비영업이익은 Sch.D.CaseVI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 (5) 무형고정자산에서 발생한 비영업손실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입하면 효력을 인정한다.

제G절 재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G1 (세제혜택) (1) 이 절은 무형고정자산(이를 '구자산(old asset)'이라 한다.)에 수익이 실현되고 다른 무형고정자산(이를 '기타자산'이라 한다.)에 경비가 발생한 경우 세제혜택을 규정한다.

-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절에 의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a) 구자산 및 이의 수익실현에 관하여 제G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b) 기타자산의 경비와 관련하여 제G3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c) 회사가 제G4조에 의하여 조세혜택을 신청한 경우

G2 (구자산과 이의 수익실현에 관한 요건) (1) 구자산과 이의 수익실현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a) 자산은 회사가 당해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과세연도 내내 과세대상 무형자산에 해당하여야 한다.

(b) 자산의 실현으로 얻은 대가는 과세목적상 실현된 자산의 비용을 초과하여야 한다.

(2)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의 과세대상 무형자산인 경우 당해 과세대상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의 부분은 이 절에서 제(1)(a)항의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별개의 자산으로 의제하여 별도로 취급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손익을 배분하여야 한다.

(3) 당해 자산이 과세 목적상 인식된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제(1)(b)항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G3 (기타자산의 경비에 관한 요건) (1) 기타자산의 경비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a) 당해 경비는 다음의 기간 내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i) 구자산이 실현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12월이 되는 날 또는 국세청으로부터 받는 통지(Notice)에 기재된 날부터

(ii) 구자산이 실현된 날로부터 3년 또는 국세청으로부터 받는 통지에 기재된 날까지

(b) 당해 경비는 회계 목적상 회사에 의하여 자본화되어야 한다.

(c) 당해 경비가 발생한 자산을 당해 경비의 발생 직후 당해 회사의 과세대상 자산이어야 한다.

(2) 이 조에서 비용은 회계목적상 인식된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G4 (세제혜택의 신청) 회사가 이 절에 의한 조세혜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a) 신청의 대상인 구자산

(b) 구자산에 관하여

- (i) 세제혜택을 신청한 구자산의 경비
- (ii) 혜택을 받고자 신청한 세액

G5 (세제혜택의 부여) (1) 회사가 이 절에 의하여 신청하는 세제혜택은 이 별표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취급하여 이를 혜택의 전제가 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 (a) 구자산의 실현으로 얻은 대가
 - (b) 과세 목적상 인식한 기타자산의 비용
- (2) 기타자산에 대한 적격경비의 금액이 구자산의 실현으로 얻은 대가 이상인 경우 혜택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세액은 실현으로 얻은 대가에서 구자산의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3) 기타자산에 대한 적격 경비의 금액이 구자산의 실현으로 얻은 대가 이하인 경우 혜택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세액은 기타자산에 대한 적격경비에서 구자산의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4) 이 조에서 ‘구자산비용(the cost of the old asset)’이라 함은 과세 목적상 인식된 자산경비를 자본화한 금액을 말한다. ‘적격경비’라 함은 제G3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비를 말한다.
- (5) 조세혜택은 구자산의 실현 또는 기타자산의 경비의 관련 거래당사자에 대한 각종 세법상 취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G6 (조건부 조세혜택 부여 신고) (1) 무형고정자산이 실현된 회사는 이 절에 의하여 조세혜택의 조건부 부여를 신고할 수 있다.

- (2) 조건부 부여신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사가 실현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납세신고를 하면서 하는 신고를 말한다.
- (a) 당해 회사가 실현된 무형고정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 (b) 당해 회사가 이 절에서 정하는 세제혜택 부여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여
 - (c) 특정액수의 조세혜택을 조건부로 부여받는 경우
- (3) 신고가 계류중인 경우, 이 절에서 정하는 조세혜택 부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이 절을 적용한다.

(4) 조건부 부여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면 그 한도 내에서 효력을 상실한다.

- (a) 신고를 철회한 경우
- (b) 이 절에서 인정하는 조세혜택을 신청한 경우

(5) 조건부 부여의 신고는 당해 신고가 철회되거나 조세혜택이 청구되지 아니한 때에는 실현된 과세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4년간 효력을 상실한다.

(6) 조건부 부여 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자진신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이에 따라 요구되는 과세상 조정을 하여야 한다.

G7 (처분과 재취득) 회사가 자산을 실현하고 실현 직후 이를 재취득한 경우에는 재취득한 자산이 종전에 실현된 자산과 다른 자산으로 의제하여 이 절을 적용한다.

G8 (과세상 고려되지 아니하는 의제수익실현과 의제취득) (생략)

제H절 및 제I절 (생략)

제J절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자산

J1 (통칙) (1) 이 절은 이 별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정자산을 규정한다. 특정자산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당해 자산을 취득 또는 처분할 선택권 또는 기타권리도 이에 준하여 제외한다.

(2) 이 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당해 규정을 적용한다.

- (a) 제J2조 내지 제J6조에 해당하는 자산은 이 별표에서 정하는 사항의 적용이 전부 배제된다.
- (b) 제J7조 내지 제J9조에 해당하는 자산은 이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royalty) 관련규정 이외의 규정에 대하여는 전부 적용이 배제된다.
- (c) 제J10조 또는 제J11조에 해당하는 자산은 이에 대한 이 별표규정의 적용배제 범위는 해당 각 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의 범위에서 이 별표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이 별표의 규정은 당해 자산 중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개별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 (a) 당해 자산이 특정권리를 표창하는 경우
- (b) 당해 자산이 특정자산을 표창하는 경우
- (c) 당해 자산을 특정 목적을 위하여 보유하는 경우
- (d) 당해 자산이 특정 종류의 경비를 표창하고 있는 경우

J2 (규정 전부의 적용이 배제되는 자산: 유형자산에 대한 권리) 이 별표는 무형고정 자산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a) 상속으로 향유하는 권리, 토지에 내재하거나 이에 대한 권원 또는 권리
- (b) 유체동산에 관한 권리

J2 (규정전부의 적용이 배제되는 자산: 석유채굴권) 생략

J3 (규정전부의 적용이 배제되는 자산: 금융자산) (1) 이 별표의 규정은 금융자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이 경우 ‘금융자산’이라 함은 회계목적에서 사용하는 정의를 말한다.
- (3) 이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 (a) 1996년 금융법 제2장(Chp.2) 제4절(Part4) 제81조 제2항(금전대차관계)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금전채무
 - (b) 1994년 금융법 제2장 제4절 제147조 내지 제148조(각종금융채권)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적격금융계약
 - (c) 보험계약 및 증권 또는 상환주식증권
 - (d) 2000년 금융업 및 금융시장법 제235조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집단투자계획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

J5 (규정 전부의 적용이 배제되는 자산: 회사 · 신탁 등에서 인정하는 권리) (1) 이

별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a) 회사의 주식 기타 이익, 지배 또는 해산에 관한 권리
- (b) 신탁에서 인정하는 권리
- (c) 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

(2),(3) (생략)

J6 (규정 전부의 적용이 배제되는 자산: 영리외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등) 이 별표는 다음 각 호의 1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무형고정자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a) 당해 목적이 회사의 사업 기타 영리목적 이외에 해당하는 경우
- (b) 당해 회사의 활동목적이 법인세법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J7 (사용료 관련규정만이 적용되는 경우: 생명보험 또는 공제사업) (생략)

J8 (사용료 관련규정만이 적용되는 경우: 영화 및 음향녹음)

(1) 영화필름 또는 음향녹음의 원판(master version)을 제작 또는 취득하는 회사의 자산에 대하여는 발생한 경비의 처리와 관련하여 사용료 관련 규정을 제외한 기타의 별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생략)

J9 (사용료 관련규정만이 적용되는 경우: 하드웨어비용의 일부로 처리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계목적상 하드웨어비용의 일부로 처리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의 자산에 대하여는 발생한 경비의 처리와 관련하여 사용료 관련규정을 제외한 기타의 별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J10 (사용료 관련규정만이 적용되는 경우: 연구개발) (1) 이 조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연구개발비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생략)

J11 (적용배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산: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적용배제의 선택) (생략)

<부록 7> 1994년 부가가치세법 (Value Added Tax Act 1994)

1994 Chapter c. 23

ARRANGEMENT OF SECTIONS

Part I

과세부과(The charge to tax)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비율(Imposition and rate of VAT)

1.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2. VAT 비율(Rate of VAT)
3. 과세대상자와 등재(Taxable persons and registration)

영국에서의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

(Supply of goods or services in the United Kingdom)

4. 과세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VAT의 범위(Scope of VAT on taxable supplies)
5. 공급의 의미: 재무성 지침에 의한 변경(Meaning of supply: alteration by Treasury order)
6. 공급시기(Time of supply)
7. 공급장소(Place of supply)
8. 해외로부터 받은 공급(Reverse charge on supplies received from abroad)

- 9. 서비스를 소유하고 있는 공급자나 수취인의 장소(Place where supplier or recipient of services belongs)

회원국으로부터의 상품취득(Acquisition of goods from member States)

- 10. 회원국으로부터의 취득에 대한 VAT의 범위(Scope of VAT on acquisitions from member States)
- 11. 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상품취득의 의미(Meaning of acquisition of goods from another member State)
- 12. 취득시기(Time of acquisition)
- 13. 취득장소(Place of acquisition)
- 14. 다른 회원국에 속한 사람으로부터의 취득(Acquisitions from persons belonging in other member States)

회원국 외부로부터의 상품수입

(Importation of goods from outside the member States)

- 15. 수입품에 관련된 일반적 규정(General provisions relating to imported goods)
- 16. 관세법의 적용(Application of customs enactments)
- 17. 자유지역규제(Free zone regulations)

보세지역에 속한 물품(Goods subject to a warehousing regime)

- 18. 취득 또는 공급의 장소와 시기(Place and time of acquisition or supply)

가치 결정(Determination of value)

- 19.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가치(Value of supply of goods or services)

20. 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취득평가(Valuation of acquisitions from other member States)
21. 수입품의 가치(Value of imported goods)
22. 특정상품의 가치(Value of certain goods)
23. 도박기계(Gaming machines)

과세대상자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지불(Payment of VAT by taxable persons)

24. 매입세와 매출세(Input tax and output tax)
25. 매출세에 대한 매입세의 회계기간과 신용과 관련된 지불(Payment by reference to accounting periods and credit for input tax against output tax)
26. 25조에 의해 허용된 매입세(Input tax allowable under section 25)
27. 개인적 목적을 위한 수입상품(Goods imported for private purposes)
28. VAT로 인한 지불(Payments on account of VAT)
29. 상품과 서비스의 수취인에 의해 제공된 송장(Invoices provided by recipients of goods or services)

Part II

소득공제액, 면제, 상환(Reliefs, exemptions and repayments)

Reliefs etc. generally available

30. 영세율(Zero-rating)
31. 면제품과 취득(Exempt supplies and acquisitions)
32. 특정 중고품에 대한 면제(Relief on supply of certain second-hand goods)
33. 특정사례에서의 VAT의 환불(Refunds of VAT in certain cases)
34. 자본재(Capital goods)
35. 특정 건물을 세우는 사람에 대한 VAT의 환불(Refund of VAT to persons

constructing certain buildings)

36. 대손금(Bad debts)

수입품, 해외기업 등(Imports, overseas businesses etc)

37. 상품수입에 대한 VAT의 면제(Relief from VAT on importation of goods)

38. 과세대상자에 의한 상품의 수입(Importation of goods by taxable persons)

39. 해외기업에 있는 사람에 대한 VAT 상환(Repayment of VAT to those in business overseas)

40. 다른 회원국에 제공된 새로운 교통수단과 관련된 환불(Refunds in relation to new means of transport supplied to other member States)

Part III

특정사례에 대한 법 적용(Application of Act in particular cases)

41. 왕실에 대한 적용(Application to the Crown)

42. 지방정부(Local authorities)

43. 기업군(Groups of companies)

44. 그룹에 대한 공급품(Supplies to groups)

45. 파트너십(Partnerships)

46. 비법인체, 개인대표나 부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기업(Business carried on in divisions or by unincorporated bodies, personal representatives etc)

47. 대리인 등등(Agents etc)

48. VAT 대표(VAT representatives)

49. 진행중인 관심사의 이전(Transfers of going concerns)

50. 농산물중앙도매시장(Terminal markets)

51. 건물과 토지(Buildings and land)

- 52. 무역인지계획(Trading stamp schemes)
- 53. 관광운영자(Tour operators)
- 54. 농부 등(Farmers etc)
- 55. 금 등의 공급품에 관한 세금을 책임지는 고객(Customers to account for tax on supplies of gold etc)
- 56.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연료(Fuel for private use)
- 57.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제공된 연료의 고려결정(Determination of consideration for fuel supplied for private use)

Part IV

관리, 징세, 강제집행(Administration, collection and enforcement)

일반적인 관리규정(General administrative provisions)

- 58. VAT의 관리와 징수에 관련된 일반적 규정(General provisions relating to the administration and collection of VAT)

채무불이행에 대한 부가요금과 다른 처벌과 형사범

(Default surcharges and other penalties and criminal offences)

- 59. 채무불이행에 대한 부과요금(The default surcharge)
- 60. VAT 회피: 거짓과 관련된 행동(VAT evasion: conduct involving dishonesty)
- 61. VAT 회피: 관리자 등의 부채(VAT evasion: liability of directors etc)
- 62. 영세율 등에 대한 부정확한 증명서(Incorrect certificates as to zero-rating etc)
- 63. 회계기간 동안 특정 양과 동등하거나 초과한 것에 대한 VAT 손실을 초래한 허위 신고나 태만에 대한 처벌 (penalty for misdeclaration or neglect resulting in VAT loss for one accounting period equalling or exceeding certain amounts)
- 64. 반복적인 잘못된 신고(Repeated misdeclarations)

- 65. EC 판매기술서에서의 부정확함(Inaccuracies in EC sales statements)
- 66. EC 판매기술서제출의 실패(Failure to submit EC sales statement)
- 67. 송장의 비인가된 발행과 공지의 실패(Failure to notify and unauthorised issue of invoices)
- 68. 상권소유협약의 위반(Breaches of walking possession agreements)
- 69. 규제조항의 위반(Breaches of regulatory provisions)
- 70. 제60, 63, 64, 67조 하에서의 처벌 경감(Mitigation of penalties under sections 60, 63, 64 and 67)
- 71. 59조에서 79조의 해석(Construction of sections 59 to 70)
- 72. 위반(Offences)

VAT의 부과와 다른 부과금

(Assessments of VAT and other payments due)

- 73. 반환 등의 실패 (Failure to make returns etc)
- 74. 부과에 의해 되찾거나 되찾을 수 있는 VAT의 이자(Interest on VAT recovered or recoverable by assessment)
- 75. 비과세대상자에 의한 특정 상품 취득시의 부과(Assessments in cases of acquisitions of certain goods by non-taxable persons)
- 76. 처벌, 이자, 혹은, 부가요금의 방식에 의한 예정 금액 부과(Assessment of amounts due by way of penalty, interest or surcharge)
- 77. 부과: 제한시간 그리고, 추가 부과(Assessments: time limits and supplementary assessments)

위원회에 의해 지불될 수 있는 이자 상환보충 등(Interest, repayment supplements etc. payable by Commissioners)

- 78. 공무상 과실의 경우에서의 이자(Interest in certain cases of official error)
- 79. 지연된 지불이거나 환불의 측면에서 상환보충(Repayment supplement in respect

of certain delayed payments or refunds)

- 80. 과다 지불된 VAT의 회수(Recovery of overpaid VAT)
- 81. 신용상계와 신용의 방법에 의한 이익(Interest given by way of credit and set-off of credits)

Part V

항소(Appeals)

- 82. 항소법원(Appeal tribunals)
- 83. 항소(Appeals)
- 84. 항소와 관련된 조항(Further provisions relating to appeals)
- 85. 합의에 의한 항소 해결(Settling appeals by agreement)
- 86. 재항소(Appeals to Court of Appeal)
- 87. 등록되거나 기록된 법원결정의 강제집행(Enforcement of registered or recorded tribunal decisions etc)

Part VI

추가 규정(Supplementary provisions)

VAT 등 비율의 변화와 정보의 공개

(Change in rate of VAT etc. and disclosure of information)

- 88. 변화율의 범위와 관련된 공급품(Supplies spanning change of rate etc)
- 89. VAT 변화에 대한 계약의 조정(Adjustments of contracts on changes in VAT)
- 90. 1968년 조세징수법하에서의 해결실패(Failure of resolution under Provisional Collection of Taxes Act 1968)
- 91. 통계목적의 정보공개(Disclosure of information for statistical purposes)

해석규정(Interpretative provisions)

- 92. 다른 회원국 등의 법률에서의 과세(Taxation under the laws of other member States etc)
- 93. 다른 회원국 등과 관련하여 포함된 지역(Territories included in references to other member States etc)
- 94. 사업 등의 의미(Meaning of 'business' etc)
- 95. 수송의 새로운 수단의 의미(Meaning of 'new means of transport')
- 96. 다른 해석 규정(Other interpretative provisions)

추가규정(Supplementary provisions)

- 97. 지침, 규정과 규제(Orders, rules and regulations)
- 98. 공지 서비스(Service of notices)
- 99. 북아일랜드 정부에 대한 VAT의 상환(Refund of VAT to Government of Northern Ireland)
- 100. 보류와 과도기적 규정, 필수적인 수정과 철회(Savings and transitional provisions, consequential amendments and repeals)
- 101. 시작과 내용(Commencement and extent)
- 102. 부제(Short title)

Schedule 1 조세부과 대상의 등재(Registration in respect of taxable supplies)

Schedule 2 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공급품 등재(Registration in respect of supplies from other member States)

Schedule 3 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취득 등재(Registration in respect of acquisitions from other member States)

Schedule 4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으로 취급된 문제(Matters to be treated as supply of goods or services)

Schedule 5 접수된 장소에서 공급된 서비스(Services supplied where received)

Schedule 6 평가: 특수 사례(Valuation: special cases)

Schedule 7 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취득평가(Valuation of acquisitions from other member states: special cases)

Schedule 8 영세율(Zero-rating)

Part I 상품과 서비스의 영세율 공급품 목록(Index to zero-rated supplies of goods and services)

Part II 그룹(The Groups)

Schedule 9면제(Exemptions)

Part I 상품과 서비스의 면제 공급품 목록(Index to exempt supplies of goods and services)

Part II 그룹(The Groups)

Schedule 10 건물과 토지(Buildings and land)

Schedule 11 관리, 징수, 강제집행(Administration, collection and enforcement)

Schedule 12 헌법과 사법 절차(Constitution and procedure of tribunals)

Schedule 13 과도기적 규정과 보류(Transitional provisions and savings)

Schedule 14 필수적인 수정(Consequential amendments)

Schedule 15 철회(Repeals)

<부록 8> 소득 및 법인세법

Income and Corporation Taxes Act 1988 (c. 1)

1988 Chapter c. 1

Part I

조세부과(The Charge to Tax)

소득세(Income tax)

1. 소득세 부과(The charge to income tax)
2. 파운드의 세분화와 매년 부과(Fractions of a pound, and yearly assessments)
3. 기본율로 부과되는 특정소득(Certain income charged at basic rate)
4. 조세감면에 대한 소득세법의 관련조항의 구성(Construction of references in Income Tax Acts to deduction of tax)
5. 지불일(Date for payment)

법인세(Corporation tax)

6. 법인세의 부과와 소득세와 자본이득세의 배제(The charge to corporation tax and exclusion of income tax and capital gains tax)
7. 특정지불의 처리와 소득세의 환불(Treatment of certain payments and repayment of income tax)
8. 법인세의 일반적 구성(General scheme of corporation tax)

- 9. 소득계산: 소득세원칙의 적용(Computation of income: application of income tax principles)
- 10. 조세지불시기(Time for payment of tax)
- 11. 영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얇은 기업(Companies not resident in United Kingdom)
- 12. 부과와 원칙과 시기(Basis of, and periods for, assessment)

소기업 비율(Small companies' rate)

- 13. 소기업 소득공제(Small companies' relief)

사전법인세(Advance corporation tax)

- 14. 사전법인세와 분배허용(Advance corporation tax and qualifying distributions)

The six Schedules

- 15. Schedule A.
- 16. Schedule B.
- 17. Schedule C.
- 18. Schedule D.
- 19. Schedule E.
- 20. Schedule F.

Part II

Schedule A의 부과와 관련되고 Schedule D 부과와 연관된 규정
(Provisions Relating to the Schedule A Charge and the Associated Schedule D Charges)

General

21. 부과대상(Persons chargeable)
22. 부과(Assessments)
23. 임차인과 대리인으로부터의 징수(Collection from lessees and agents)
24. 파트 II의 구성(Construction of Part II)

소득공제와 다른 방식의 할인(Deductions and other allowances)

25. 사용료 공제: 일반규정(Deductions from rent: general rules)
26. 사용료 공제: 소유지로 관리되는 토지(Deductions from rent: land managed as one estate)
27. 사용료 공제: 역사적 건물을 위한 유지관리기금(Deductions from rent: maintenance funds for historic buildings)
28. 사용료보다 다른 영수증으로부터의 공제(Deductions from receipts other than rent)
29. Sporting 권리(Sporting rights)
30. 방파제 건설지출(Expenditure on making sea walls)
31. 25조에서 30조까지 추가규정(Provisions supplementary to sections 25 to 30)
32. 기계류와 소유지 관리에 사용된 공장에 대한 자본 할인(Capital allowances for machinery and plant used in estate management)
33. 농경지: 과도한 유지지출에 대한 할인(Agricultural land: allowance for excess expenditure on maintenance)

과소 평가되고 있는 프리미엄과 리스(Premiums, leases at undervalue etc)

34. 사용료 또는 Schedule D 이윤으로서의 프리미엄 조치(Treatment of premiums etc. as rent or Schedule D profits)

35. 과소평가된 리스양도에 대한 Schedule D 부과(Schedule D charge on assignment of lease granted at an undervalue)
36. 재양도권을 지닌 토지의 판매에 대한 Schedule D 부과(Schedule D charge on sale of land with right to reconveyance)
37. 지불된 프리미엄 등: 받은 프리미엄과 사용료로부터의 공제(Premiums paid etc: deductions from premiums and rent received)
38. 리스의 기간을 확인하는 규정(Rules for ascertaining duration of leases)
39. 1963년 이전 리스에 대한 유보, 개인에 대한 특별공제(Saving for pre-1963 leases, and special relief for individuals)

보완적인 Schedules A and D(Supplemental: Schedules A and D)

40. 영수증의 조세처리와 토지의 판매 지출(Tax treatment of receipts and outgoings on sale of land)
41. 지불되지 않은 사용료 감면 등(Relief for rent etc. not paid)
42. 34조에서 36조항하에서의 결정에 대한 항고(Appeals against determinations under sections 34 to 36)
43. 비거주자(Non-residents)

Part III

Schedule C부과와 관련된 규정과 정부유가증권에 관련된 일반규정(Provisions Relating to the Schedule C Charge and General Provisions about Government Securities)

General

44. 소득세: 부과방식(Income tax: mode of charge)

45. 파트 III의 해석(Interpretation of Part III)

정부유가증권: 조세면제(Government securities: exemptions from tax)

- 46. 저축성 증권과 조세 보유증권(Savings certificates and tax reserve certificates)
- 47. 비거주자에 의한 영국정부 유가증권(United Kingdom government securities held by non-residents)
- 48. 외국정부의 유가증권(Securities of foreign states)
- 49. 재무성의 이름으로 된 주식과 배당금(Stock and dividends in name of Treasury etc)

정부유가증권: 조세공제 없이 지불된 이자

(Government securities: interest payable without deduction of tax)

- 50. 영국유가증권: 조세공제 없는 재무성의 지불방침(United Kingdom securities: Treasury directions for payment without deduction of tax)
- 51. 북아일랜드의 유가증권에 대한 재무성 방침(Treasury directions as respects Northern Ireland securities)
- 52. 변경된 정부유가증권에 대한 이자와 공제되어야만 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 (Taxation of interest on converted government securities and interest which becomes subject to deduction)

Part IV

Schedule D 부과와 관련된 규정(Provisions Relating to the Schedule D Charge)

Chapter I

보완적인 부과규정(Supplementary Charging Provisions)

53. 삼림지를 제외한 농업과 다른 상업적인 토지의 점유(Farming and other commercial occupation of land (except woodlands))
54. 상업적인 기반으로 관리되는 삼림지(Woodlands managed on a commercial basis)
55. 광산, 채석장, 그리고 다른 사업(Mines, quarries and other concerns)
56. 증권 혹은 부채의 유무와 관련된 공탁된 거래(Transactions in deposits with and without certificates or in debts)
57. 대폭 할인 유가증권(Deep discount securities)
58. 외국인 연금(Foreign pensions)
59. 부과대상(Persons chargeable)

Chapter II

소득세: 부과 근거 등(Income Tax: Basis of Assessment etc)

사례 I 과 II(Cases I and II)

60. 전년도에 근거한 부과(Assessment on preceding year basis)
61. 무역, 사업의 시작에 대한 특별 근거 (Special basis at commencement of trade, profession or vocation)
62. 시작 이후 매년 초의 특별 근거(Special basis for early years following commencement)
63. 중단에 대한 특별 근거(Special basis on discontinuance)

사례 III, IV, V(Cases III, IV and V)

64. 사례 III 부과: 일반적(Case III assessments: general)
65. 사례 IV, V 부과: 일반적(Cases IV and V assessments: general)
66. 신규소득에 대한 특별규정(Special rules for fresh income)

- 67. 소득원이 처분되거나 중지되는 특별규정(Special rules where source of income disposed of or yield ceases)
- 68. 아일랜드 공화국에 위치한 소유권의 특별규정(Special rules where property etc. situated in Republic of Ireland)

사례 VI(Case VI)

- 69. 탐지되지 않을 경우 현재 연도에 근거한 부과(Assessment on current year basis unless otherwise directed)

Chapter III

법인세: 부과의 근거(Corporation Tax: Basis of Assessment etc)

- 70. 부과의 근거 등(Basis of assessment etc)

Chapter IV

Provisions Supplementary to Chapters II and III

- 71. 과세연도에 수익이 없는 소득세 계산(Computation of income tax where no profits in year of assessment)
- 72. 사례 I, II, VI의 목적을 위한 배분(Apportionments etc. for purposes of Cases I, II and VI)
- 73. 사례 III, IV, V의 목적을 위한 유일한 부과(Single assessments for purposes of Cases III, IV, and V)

Chapter V

계산규정(Computational Provisions)

공제(Deductions)

74. 허용할 수 없는 공제에 대한 일반규정(General rules as to deductions not allowable)
75. 관리비용: 투자회사(Expenses of management: investment companies)
76. 관리비용: 보험회사(Expenses of management: insurance companies)
77. 대부자금을 얻는 부수비용(Incidental costs of obtaining loan finance)
78. 환전의 할인 청구서(Discounted bills of exchange)
79. 지방기업의 부담금(Contributions to local enterprise agencies)
80. 외국무역거래 등과 관련된 비용(Expenses connected with foreign trades etc)
81. 무역간의 이동(Travel between trades etc)
82. 비거주자에 지불된 이자(Interest paid to non-residents)
83. 특허 수수료 등과 비용(Patent fees etc. and expenses)
84. 기술교육에 대한 지불(Payments for technical education)
85. 승인된 이윤을 공유하는 계획을 지닌 수탁자에 대한 지불(Payments to trustees of approved profit sharing schemes)
86. 자선사업과 교육적인 시설물에 배치된 종업원(Employees seconded to charities and educational establishments)
87. 세금이 붙는 프리미엄 등(Taxable premiums etc)
88. 수출 신용보증 부서에 지불(Payments to Export Credit Guarantee Department)
89. 중단으로 취급된 사건이후에 회복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된 부채(Debts proving irrecoverable after event treated as discontinuance)
90. 실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불(Additional payments to redundant employees)
91. 공동묘지(Cemeteries)

지역발전과 다른 보조금과 양도된 부채 등의 처리(Treatment of regional development and other grants and debts released etc)

- 92. 지역발전보조금(Regional development grants)
- 93. 1982년 산업발전법하의 다른 국고보조금(Other grants under Industrial Development Act 1982 etc)
- 94. 공제되고 난 이후에 양도된 부채(Debts deducted and subsequently released)
- 95. 자기 소유 기업에 의한 구매시 거래자의 영수증의 과세(Taxation of dealer's receipts on purchase by company of own shares.)

특별규정(Special provisions)

- 96. 농업과 원예시장(변동 있는 이윤에 대한 공제): Farming and market gardening: relief for fluctuating profits.
- 97. 농경가축의 취급(Treatment of farm animals etc)
- 98. 조건이 붙은 부동산(Tied premises)
- 99. 중개업자(Dealers in land)

Chapter VI

**중단, 그리고 계산의 근거 변경
(Discontinuance, and Change of Basis of Computation)**

무역주식 평가 등(Valuation of trading stock etc)

- 100. 무역의 중단에 대한 무역주식 평가(Valuation of trading stock at discontinuance of trade)
- 101. 직업중단에 과정에서의 업무평가(Valuation of work in progress at discontinuance of

profession or vocation)

102. 100조, 100조에 보완적인 규정(Provisions supplementary to sections 100 and 101)

영수증에 대한 사례 VI 부과(Case VI charges on receipts)

103. 중단 이후의 영수증: 수익기본부과와 협정기반에 영향을 주는 관련된 부과
(Receipts after discontinuance: earnings basis charge and related charge affecting conventional basis)
104. 협정기반: 중단 또는 기반의 변화 이후의 영수증에 대한 일반적인 부과
(Conventional basis: general charge on receipts after discontinuance or change of basis)
105. 허용 가능한 공제(Allowable deductions)
106. 이전 지불권에 대한 요금 적용(Application of charges where rights to payments transferred)

공제(Reliefs)

- 107 획득 수입으로서의 영수증 처리(Treatment of receipts as earned income)
- 108 환불선택(Election for carry-back)
- 109 104조의 부과: 1917년 4월 6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에 대한 공제(Charge under section 104: relief for individuals born before 6th April 1917)

추가(Supplemental)

110. 해석 등(Interpretation etc)

Chapter VII

파트너십과 계승(Partnerships and Successions)

General

- 111. 소득세에 대한 파트너십 부과(Partnership assessments to income tax)
- 112. 해외에서 통제된 파트너십(Partnerships controlled abroad)
- 113. 직업, 무역의 소유주의 변화로 인한 소득세에 대한 효과(Effect, for income tax, of change in ownership of trade, profession or vocation)

기업과 관련된 파트너십(Partnerships involving companies)

- 114. 이윤과 손실을 계산하는 특별규정(Special rules for computing profits and losses)
- 115. 114조를 보완하는 규정(Provisions supplementary to section 114)
- 116. 공제를 양도하는 협약(Arrangements for transferring relief)

제한된 파트너(Limited partners)

- 117. 공제에 대한 제한: 개인(Restriction on relief: individuals)
- 118. 공제에 대한 제한: 기업(Restriction on relief: companies)

Chapter VIII

기타와 추가(Miscellaneous and Supplemental)

- 119. 광물, 채석장과 유사한 다른 사업과 관련하여 지불해야할 사용료 등(Rent etc. payable in connection with mines, quarries and similar concerns)

120. 전기선 통행에 대해 지불해야할 사용료(Rent etc. payable in respect of electric line wayleaves)
121. 광물권 소유자의 관리비용(Management expenses of owner of mineral rights)
122. 광물특허권 측면에서의 공제(Relief in respect of mineral royalties)
123. 외국인 배당금(Foreign dividends)
124. 유로 채권으로 거래되는 이자(Interest on quoted Eurobonds)
125. 비과세 고려를 위한 연차지불(Annual payments for non-taxable consideration)
126. 할인율로 발행되는 재무성 유가증권(Treasury securities issued at a discount)
127. 기업수당(Enterprise allowance)
128. 상품과 금융미래 등: 손실과 이득(Commodity and financial futures etc.: losses and gains)
129. 주식 빌려주기(Stock lending)
130. 파트 IV의 목적을 위한 투자기업의 의미(Meaning of 'investment company' for the purposes of Part IV)

Part V

The Schedule E 부과와 관련된 규정 (Provisions Relating to The Schedule E Charge)

Chapter I

Supplementary Charging Provisions of General Application

기타 규정(Miscellaneous provisions)

131. 부과될 수 있는 소득(Chargeable emoluments)
132. 영국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의 의미와 성과부분(Place of performance, and

meaning of emoluments received in the U.K)

- 133. 자발적인 연금(Voluntary pensions)
- 134. 기관에 의해 제공된 근로자(Workers supplied by agencies)

주식소유와 대부 등(Share holdings, loans etc)

- 135. 주식선택으로 인한 감독관과 종업원의 수익(Gains by directors and employees from share options)
- 136. 135조에 보완적인 규정(Provisions supplementary to section 135)
- 137. 분할 분입금에 의한 135조의 조세지불(Payment of tax under section 135 by installments)
- 138. 감독관과 종업원에 의한 주식취득(Share acquisitions by directors and employees)
- 139. 138조에 보완적인 규정(Provisions supplementary to section 138)
- 140. 135에서 139조의 해석(Further interpretation of sections 135 to 139)

상품권 등(Vouchers etc)

- 141. 비현금 상품권(Non-cash vouchers).
- 142. 신용교환권(Credit-tokens)
- 143. 원천 과세하에서 과세해야 하는 현금상품권(Cash vouchers taxable under P.A.Y.E)
- 144. 보완규정(Supplementary provisions)

생활 대부금(Living accommodation)

- 145. 종업원에 제공되는 생활대부금(Living accommodation provided for employee)
- 146. 특정 생활대부에 대한 부과적 요금(Additional charge in respect of certain living

accommodation)

147. Chevening House의 소유(Occupation of Chevening House)

퇴직수당과 질병수당 등(Payments on retirement, sick pay etc)

148. 공직이나 직장에서부터의 퇴직 수당(Payments on retirement or removal from office or employment)

149. 질병수당(Sick pay)

150. 직업구제계획수당, 출산수당과 법령상의 질병수당(Job release scheme allowances, maternity pay and statutory sick pay)

151. 소득지원 등(Income support etc)

152. 151조하에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의 공지(Notification of amount taxable under section 151)

Chapter II

**감독자, 높은 임금을 받는 종업원, 공직소유자에 적용되는 보완적인
부과규정(Supplementary Charging Provisions Applicable to Directors and
Higher-Paid Employees and Office Holders)**

비용(Expenses)

153. 비용측면에서 지불(Payments in respect of expenses)

Benefits in kind

154. 일반적인 부과 규정(General charging provision)

155. 일반적 부과의 면제(Exceptions from the general charge)

- 156. 154조에 의거해 부과된 편익과 동등한 현금(Cash equivalents of benefits charged under section 154)
- 157. 개인적 용도에 이용된 차량(Cars available for private use)
- 158. 차 연료(Car fuel)
- 159. 공동 출자된 차량(Pooled cars)
- 160. 수익권 있는 대부계약(Beneficial loan arrangements)
- 161. 160조의 특례(Exceptions from section 160)
- 162. 종업원 주식소유(Employee shareholdings)
- 163. 생활대부금과 관련된 비용(Expenses connected with living accommodation)
- 164. 고용주에 의해 지불된 관리자 세금(Director's tax paid by employer)
- 165. 장학금(Scholarships)

일반적인 보완규정(General supplementary provisions)

- 166. 무채무 통지(Notice of nil liability under this Chapter)
- 167. 관리자나 고소득 고용의 의미(Meaning of 'director's or higher-paid employment')
- 168. 다른 해석적 규정(Other interpretative provisions)

Chapter III

이윤과 관련된 급여(Profit-Related Pay)

서론(Preliminary)

- 169. 해석(Interpretation)
- 170. 이윤과 관련된 급여의 과세(Taxation of profit-related pay)

공제(The relief)

- 171. 조세의 공제(Relief from tax)
- 172. 조세의 예외(Exceptions from tax)

등재(Registration)

- 173. 등재의 신청인(Persons who may apply for registration)
- 174. 배제된 고용(Excluded employments)
- 175. 등재 신청(Applications for registration)
- 176. 등재(Registration)
- 177. 사업계획 고용주의 변경(Change of scheme employer)
- 178. 등재 취소(Cancellation of registration)

관리(Administration)

- 179. 사업계획 고용주로부터의 세금회수(Recovery of tax from scheme employer)
- 180. 연간 수익금 등(Annual returns etc)
- 181. 다른 정보(Other information)
- 182. 이의제기(Appeals)

보완(Supplementary)

- 183. 파트너십(Partnerships)
- 184. 독립된 회계사(Independent accountants)

Chapter IV

다른 면제와 공제(Other Exemptions and Reliefs)

주식선택과 이윤공유계획(Share option and profit sharing schemes)

- 185. 승인된 주식선택계획(Approved share option schemes)
- 186. 승인된 이윤공유계획(Approved profit sharing schemes)
- 187. 185와 186조의 해석과 Schedules 9와 10(Interpretation of sections 185 and 186 and Schedules 9 and 10)

퇴직 편익 등(Retirement benefits etc)

- 188. 148조의 면제(Exemptions from section 148)
- 189. 퇴직총액편익(Lump sum benefits on retirement)
- 190. 의회구성원, 유럽의회 대표부, 기타(Payments to Members of Parliament, Representatives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thers)
- 191. 소득으로 취급되지 않는 직업구제수당(Job release scheme allowances not to be treated as income)

외국인 보수와 수익, 연금과 특정 여행시설

(Foreign emoluments and earnings, pensions and certain travel facilities)

- 192. 외국인 보수에 대한 세금 공제(Relief from tax for foreign emoluments)
- 193. 외국인 수익과 여행경비(Foreign earnings and travel expenses)
- 194. 다른 외국 여행경비(Other foreign travel expenses)
- 195. 영국에서 지급지가 지정되지 않은 종업원의 여행경비(Travel expenses of employees not domiciled in the United Kingdom)

- 196. 외국인 연금(Foreign pensions)
- 197. 군대에 대한 여행시설허가(Leave travel facilities for the armed forces)

다른 비용, 기부금 등(Other expenses, subscriptions etc)

- 198. 필수비용의 감면(Relief for necessary expenses)
- 199. 공식수당으로 필연적으로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Expenses necessarily incurred and defrayed from official emoluments)
- 200. 의회구성원 비용(Expenses of Members of Parliament)
- 201. 전문기관, 사회단체 등에 대한 수수료와 기부금(Fees and subscriptions to professional bodies, learned societies etc)
- 202. 자선기부금: 지불급료총액 공제 계획(Donations to charity: payroll deduction scheme)

Chapter V

부과, 징수, 반환, 항소(Assessment, Collection, Recovery and Appeals)

- 203. 원천과세(Pay as you earn)
- 204. 원천과세 상환(P.A.Y.E repayments)
- 205. 특정한 상황에서의 불필요한 부과(Assessments unnecessary in certain circumstances)
- 206. 특정한 부과에 대한 부과적인 규정(Additional provision for certain assessments)
- 207. 법상의 주거지 또는 평상시 주거지에 대한 분쟁(Disputes as to domicile or ordinary residence)

Part VI

기업분배금, 세액공제 등(Company Distributions, Tax Credits etc)

Chapter I

기업분배금의 과세(Taxation of Company Distributions)

208. 법인세에 일반적으로 부과되지 않는 영국기업분배금(U.K. company distributions not generally chargeable to corporation tax)

Chapter II

법인세법의 목적상 분배금의 문제(Matters which are Distributions for the Purposes of the Corporation Tax Acts)

209. 분배의 의미(Meaning of 'distribution')
210. 주식자본의 상환에 따른 보너스 문제(Bonus issue following repayment of share capital)
211. 주식자본의 상환으로서 취급되어야 할 것과 취급되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한 문제 (matters to be treated or not to be treated as repayments of share capital)
199. 공식수당으로 필수적으로 발생되거나 지불된 비용(Expenses necessarily incurred and defrayed from official emoluments)
200. 의회구성원 비용(Expenses of Members of Parliament)
201. 전문기관, 사회단체 등에 대한 수수료와 기부금(Fees and subscriptions to professional bodies, learned societies etc)
202. 자선기부금: 지불금료총액 공제 계획(Donations to charity: payroll deduction scheme)

Chapter V

부과, 징수, 반환, 항소(Assessment, Collection, Recovery and Appeals)

- 203. 원천과세(Pay as you earn)
- 204. 원천과세 상환(P.A.Y.E repayments)
- 205. 특정한 상황에서의 불필요한 부과(Assessments unnecessary in certain circumstances)
- 206. 특정한 부과에 대한 부과적인 규정(Additional provision for certain assessments)
- 207. 법상의 주거지 또는 평상시 주거지에 대한 분쟁(Disputes as to domicile or ordinary residence)

Part VI

법인판매금, 세액공제 등(Company Distributions, Tax Credits etc)

Chapter I

기업분배금의 과세(Taxation of Company Distributions)

- 208. 법인세로 일반적으로 부과되지 않은 영국기업 분배금(U.K. company distributions not generally chargeable to corporation tax)

Chapter II

법인세에 일반적으로 부과되지 않는 영국기업분배금(Matters which are Distributions for the Purposes of the Corporation Tax Acts)

- 209. 분배의 의미(Meaning of 'distribution')
- 210. 주식자본의 상환에 따른 보너스 문제(Bonus issue following repayment of share capital)
- 211. 주식자본의 상환으로서 취급되어야 할 것과 취급되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한 문제 (matters to be treated or not to be treated as repayments of share capital)

Chapter III

법인세법의 목적상 분배금이라 할 수 없는 문제(Matters which are not Distributions for the Purposes of the Corporation Tax Acts)

이자의 지불(Payments of interest)

- 212. 특정 유가증권의 측면에서 지불된 이자 등(Interest etc. paid in respect of certain securities)

분할(Demergers)

- 213. 면제된 분배(Exempt distributions)
- 214. 면제된 분배와 관련하여 부과할 수 있는 지불(Chargeable payments connected with exempt distributions)
- 215. 분배와 지불 위원회에 의한 사전 허가(Advance clearance by Board of distributions and payments)
- 216. 수익금>Returns)
- 217. 정보(Information)
- 218. 213조에서 217조의 해석(Interpretation of sections 213 to 217)

자기 주식의 구입(Purchase of own shares)

- 219. 자신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무역회사의 구입(Purchase by unquoted trading company of own shares)
- 220. 거주상태나 소유기간(Conditions as to residence and period of ownership)
- 221. 주식보유자로서 매각인 이익의 공제(Reduction of vendor's interest as shareholder)
- 222. 그룹구성원이 기업을 구매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Conditions applicable where purchasing company is member of group)
- 223. 다른 조건(Other conditions)
- 224. 특정사례에서의 조건완화(Relaxation of conditions in certain cases)
- 225. 위원회에 의한 지불 사전 허가(Advance clearance of payments by Board)
- 226. 수익금과 정보>Returns and information)
- 227. 관련인(Associated persons)
- 228. 연계인(Connected persons).
- 229. 다른 해석적인 규정(Other interpretative provisions)

주식배당금(Stock dividends)

- 230. 주식배당금: 분배금(Stock dividends: distributions)

Chapter IV

세액공제(Tax Credits)

- 231. 한정적인 분배의 특정수혜자에 대한 세액공제(Tax credits for certain recipients of qualifying distributions)
- 232. 비 영국거주자에 대한 세액공제(Tax credits for non-U.K. residents)

- 233. 분배의 특정한 수혜자의 과세와 제한하지 않는 분배의 측면에서의 과세
(Taxation of certain recipients of distributions and in respect of non-qualifying distributions)
- 234. 분배와 관련된 정보(Information relating to distributions)
- 235. 면제된 기금의 분배(Distributions of exempt funds etc)
- 236. 235조에 대한 보충적인 규정(Provisions supplementary to section 235)
- 237. 보너스 문제와 관련된 면제 불허(Disallowance of reliefs in respect of bonus issues)

Chapter V

Advance Corporation Tax and Franked Investment Income

- 238. ACT 용어의 해석과 징수(Interpretation of terms and collection of ACT)
- 239. 법인세에 채무에 대한 ACT의 상계(Set-off of ACT against liability to corporation tax)
- 240. 법인세 보조금 채무에 대한 기업잉여 ACT의 상계(Set-off of company's surplus ACT against subsidiary's liability to corporation tax)
- 241. 법인이 무료투자소득을 받은 ACT의 계산(Calculation of ACT where company receives franked investment income)
- 242. 무료투자소득의 잉여에 대한 손실상계 등(Set-off of losses etc. against surplus of franked investment income)
- 243. 앞으로, 또는 최종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손실상계(Set-off of loss brought forward, or terminal loss)
- 244. 242 또는 243조 하에 소송과 관련된 조항(Further provisions relating to claims under section 242 or 243)
- 245. 법인소유자의 변경시 ACT의 계산 등(Calculation etc. of ACT on change of ownership of company)

246. 새로운 비율이 책정되기 이전까지 이전비율로서 ACT 부과(Charge of ACT at previous rate until new rate fixed, and changes of rate)

Chapter VI

기타와 추가(Miscellaneous and Supplemental)

그룹 소득(Group income)

247. 한 집단이나 다른 집단에 의해 지불된 배당금 등(Dividends etc. paid by one member of a group to another)
248. 247조의 보완 규정(Provisions supplementary to section 247)

주식배당금(Stock dividends)

249. 소득으로서의 주식배당금(Stock dividends treated as income)
250. 수익금>Returns)
251. 249조와 250조의 해석(Interpretation of sections 249 and 250)

추가(Supplemental)

252. ACT 또는 세액공제가 과도한 상계의 수정(Rectification of excessive set-off etc. of ACT or tax credit)
253. 234(5)에서 (9)과 Schedule 13을 수정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권한(Power to modify or replace section 234(5) to (9) and Schedule 13)
254. 파트 VI의 해석(Interpretation of Part VI)
255. ACT를 포함한 배분의 총비율과 총량('Gross rate' and 'gross amount' of distributions to include ACT)

Part VII

개인의 소득과세와 관련된 일반적인 규정
(General Provisions Relating to Taxation of Income of Individuals)

Chapter I

개인공제(Personal Reliefs)

공제(The reliefs)

- 256. 일반(General)
- 257. 개인공제(Personal relief)
- 258. 홀아비와 과부의 관리인(Widower's or widow's housekeeper)
- 259. 어린이와 관련된 추가공제(Additional relief in respect of children)
- 260. 259조하의 공제배분(Appportionment of relief under section 259)
- 261. 결혼한 기간 동안 258조와 259조하의 요구(Claims under sections 258 and 259 for year of marriage)
- 262. 과부사별수당(Widows' bereavement allowance)
- 263. 의존하는 친척(Dependent relatives)
- 264. 자녀의 서비스에 의존하는 사람(Claimant depending on services of a son or daughter)
- 265. 장인에 대한 공제(Relief for blind persons)
- 266. 생명보험 프리미엄(Life assurance premiums)
- 267. 자격을 주는 정책(Qualifying policies)
- 268. 생애 정책의 초창기 전환과 포기(Early conversion or surrender of life policies)
- 269. 4년 이후 정책의 포기(Surrender etc. of policies after four years)
- 270. 268조와 269조의 추가규정(Provisions supplementary to sections 268 and 269)

- 271. 특정 대부의 경우에 간주 포기(Deemed surrender in cases of certain loans)
- 272. 268조와 269조하에 지불해야 하는 총액의 징수(Collection of sums payable under sections 268 and 269)
- 273. 과부와 어린이의 연금을 보호하는 지불(Payments securing widows' and children's annuities)
- 274. 266조와 273조하의 공제한계(Limits on relief under sections 266 and 273)

추가(Supplemental)

- 275. 친척의 의미(Meaning of 'relative')
- 276. 소득부과공제의 효과(Effect on relief of charges on income)
- 277. 파트너(Partners)
- 278. 비거주자(Non-residents)

Chapter II

배우자소득과세(Taxation of Income of Spouses)

일반적 규정(General rules)

- 279. 남편과 아내 소득의 합계(Aggregation of wife's income with husband's)
- 280. 공제의 이전(Transfer of reliefs)
- 281. 아내에 대한 과세상환(Tax repayments to wives)
- 282. 남편과 함께 사는 결혼여성과 관련된 기준의 구성(Construction of references to married women living with their husbands)

독자적 부과(Separate assessments)

- 283. 독자적 부과의 선택(Option for separate assessment)
- 284. 개인공제에 대한 독자적 부과의 효과(Effect of separate assessment on personal reliefs)
- 285. 남편에 부과된 조세를 아내의 소득 때문에 그녀로부터 징수(Collection from wife of tax assessed on husband but attributable to her income)
- 286. 사망한 부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채무를 포기한 남편의 권리(Right of husband to disclaim liability for tax on deceased wife's income)

독자적인 과세(Separate taxation)

- 287. 부인 소득의 독자적인 과세(Separate taxation of wife's earnings)
- 288. 287조하의 선거(Elections under section 287)

Chapter III

기업무역에서의 투자공제: 법인확장계획(Relief for Investment in Corporate Trades: The Business Expansion Scheme)

- 289. 공제(The relief)
- 290. 최소, 최대 기부금(Minimum and maximum subscriptions)
- 291. 공제에 해당되는 개인(Individuals qualifying for relief)
- 292. 대등한 무역(Parallel trades)
- 293. 기업을 제한하는 것(Qualifying companies)
- 294. 토지에 이윤을 지닌 기업(Companies with interests in land)
- 295. 294조(1)(b)의 목적을 지닌 토지이윤 평가(Valuation of interests in land for purposes of section 294(1)(b))

- 296. 약 총 50,000파운드를 인상할 수 없는 294조(Section 294 disappplied where amounts raised total 50,000 or less)
- 297. 무역을 제한하는 것(Qualifying trades)
- 298. 293조와 297조를 보완하는 규정(Provisions supplementary to sections 293 and 297)
- 299. 주식의 처분(Disposal of shares)
- 300. 기업으로부터 받은 평가(Value received from company)
- 301. 300조에 보완적인 규정(Provisions supplementary to section 300)
- 302. 대체자본(Replacement capital)
- 303. 원고보다 사람들에게 의해 받은 평가(Value received by persons other than claimants)
- 304. 남편과 아내(Husband and wife)
- 305. 주식자본의 재조직화(Reorganisation of share capital)
- 306. 소송(Claims)
- 307. 공제보류(Withdrawal of relief)
- 308. 보조금의 적용(Application to subsidiaries)
- 309. 보조금에 대한 상세한 규정(Further provisions as to subsidiaries)
- 310. 정보(Information)
- 311. 수령 명의자, 신탁자, 승인된 투자기금(Nominees, bare trustees and approved investment funds)
- 312. Chapter III의 해석(Interpretation of Chapter III)

Chapter IV

특별규정(Special Provisions)

- 313. 특정하고 제한적인 사업의 고려에 대한 과세(Taxation of consideration for certain restrictive undertakings)

- 314. 다이버와 관리자(Divers and diving supervisors)
- 315. 상해와 장애 연금(Wounds and disability pensions)
- 316. 수당, 상여금, 퇴직금(Allowances, bounties and gratuities)
- 317. 빅토리아 십자훈장과 다른 상(Victoria Cross and other awards)
- 318. 전쟁수행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그 밖의 연금 등(Other pensions in respect of death due to war service etc)
- 319. 공무원: 외국인 급여(Crown servants: foreign service allowance)
- 320. 연방기관-일반적이고 공식적인 기관 등(Commonwealth Agents- General and official agents etc)
- 321. 영사와 그 밖의 다른 공식기관(Consuls and other official agents)
- 322. 영사관 직원과 종업원(Consular officers and employees)
- 323. 주둔군인(Visiting forces)
- 324. 지정된 국제조직(Designated international organisations)
- 325. 국가저축은행에 예치된 이자(Interest on deposits with National Savings Bank)
- 326. 계약저축계약에 의한 이자 등(Interest etc. under contractual savings schemes)
- 327. 장애자의 자동차유지보조금(Disabled persons' vehicle maintenance grant)
- 328. 법정 기금(Funds in court)
- 329. 개인 상해피해에 대한 이자(Interest on damages for personal injuries)
- 330. 국가 사회주의 박해에 대한 보상(Compensation for National-Socialist persecution)
- 331. 장학금 소득(Scholarship income)
- 332. 성직자의 지출과 주택(Expenditure and houses of ministers of religion)
- 333. 개인 자본 계획(Personal equity plans)

Chapter V

개인 주소(Residence of Individuals)

- 334. 연방시민과 일시적으로 해외에 있는 사람(Commonwealth citizens and others

temporarily abroad)

335.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주소(Residence of persons working abroad)

336. 영국에서 일시적인 거주자(Temporary residents in the United Kingdom)

Part VIII

소득세부과와 기업의 부가이익세

(Taxation of Income and Chargeable Gains of Companies)

소득세 부과(Taxation of income)

337. 무역활동을 시작하고 중지하는 기업(Companies beginning or ceasing to carry on a trade)

338. 소득과 자본에 대한 부과 수당(Allowance of charges on income and capital)

339. 소득에 대한 부과: 자선기부금(Charges on income: donations to charity)

340. 소득에 대한 부과: 비거주자에 지불해야 할 이자(Charges on income: interest payable to non-residents)

341. 관련된 기업간의 이자 등의 지불(Payments of interest etc. between related companies)

342. 청산정리기업에 관한 세금(Tax on company in liquidation)

343. 소유권의 변경없는 기업 재건(Company reconstructions without a change of ownership)

344. 기업재건: 추가(Company reconstructions: supplemental)

부과되어야 할 수익금(Chargeable gains)

345. 부가되어야 할 수익금의 계산(Computation of chargeable gains)

346. 부가되어야 할 수익의 자본배분: 주주로부터의 조세환수(Capital distribution of

chargeable gains: recovery of tax from shareholder)

347.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환수될 수 있는 한 그룹의 구성원에 대한 과세(Tax on one member of group recoverable from another member)

Part IX

연간지불과 이자(Annual Payments and Interest)

연간 지불(Annual payments)

348. 소득세에 부과된 수익과 이익에서의 지불(Payments out of profits or gains brought into charge to income tax: deduction of tax)
349. 소득세, 연간이자에 부과된 수익과 이익에서 나오지 않은 지불(Payments not out of profits or gains brought into charge to income tax, and annual interest)
350. 349조하에 이루어진 지불에 대한 과세부과(Charge to tax where payments made under section 349)
351. 소규모 유지지출(Small maintenance payments)
352. 과세공제의 증서(Certificates of deduction of tax)

이자지불에 대한 공제(MIRAS 제외)

(Relief for payments of interest (excluding MIRAS))

353. 일반적인 규정(General provision)
354. 토지 등 구매의 대부금(Loans to buy land etc)
355. 354조에서 제외된 문제(Matters excluded from section 354)
356. 업무와 관련된 대부금(Job-related accommodation)
357. 354조에 의해 공제할 수 있는 대부금액의 제한(Limit on amount of loan eligible for relief by virtue of section 354)

- 358. 사망한 차용자의 공제(Relief where borrower deceased)
- 359. 기계류와 공장의 구매를 위한 대부금(Loan to buy machinery or plant)
- 360. 동족회사의 이자를 구매하기 위한 대부금(Loan to buy interest in close company)
- 361. 협동회사나 종업원통제회사의 이익을 구매하기 위한 대부금(Loan to buy interest in co-operative or employee-controlled company)
- 362. 제휴를 위한 대부금(Loan to buy into partnership)
- 363. 360조에서 362조까지 추가조항(Provisions supplementary to sections 360 to 362)
- 364. 상속세를 지불하기 위한 대부금(Loan to pay inheritance tax)
- 365. 종신연금을 구매하기 위한 대부금(Loan to buy life annuity)
- 366. 정보(Information)
- 367. 354에서 266조까지 추가조항(Provisions supplementary to sections 354 to 366)
- 368. 이중공제 등의 제외(Exclusion of double relief etc)

지급인에서 저당이자공제(Mortgage interest relief at source)

- 369. 조세공제하에 지불해야 할 저당이자(Mortgage interest payable under deduction of tax)
- 370. 관련된 대부 이자(Relevant loan interest)
- 371. 2차 대부금(Second loans)
- 372. 주택개량대부금(Home improvement loans)
- 373. 제한된 최고치를 초과한 대부금과 공동차용자(Loans in excess of the qualifying maximum, and joint borrowers)
- 374. 369조의 적용조건(Conditions for application of section 369)
- 375. 관련 대부금 이자로 중지되는 이자(Interest ceasing to be relevant loan interest etc)
- 376. 한정적 차용자와 한정적으로 빌려주는 사람(Qualifying borrowers and qualifying lenders)
- 377. 특정 대부금의 환불기간의 변경(Variation of terms of repayment of certain

loans)

378. 추가적 규제(Supplementary regulations)

379. 369조에서 378조까지의 해석(Interpretation of sections 369 to 378)

Part X

손실공제와 집단공제(Loss Relief and Group Relief)

Chapter I

손실공제: 소득세(Loss Relief: Income Tax)

무역등 손실(Trade etc. losses)

- 380. 일반소득세에 대한 상계(Set-off against general income)
- 381. 연초 무역 손실에 대한 개인공제(Further relief for individuals for losses in early years of trade)
- 382. 380조와 381조의 추가적 규정(Provisions supplementary to sections 380 and 381)
- 383. 자본공제에 대한 상계권리의 확장(Extension of right of set-off to capital allowances)
- 384. 상계권리의 제한(Restrictions on right of set-off)
- 385. 순차적 이익에 대한 이월(Carry-forward against subsequent profits)
- 386. 기업에 이전된 사업이월(Carry-forward where business transferred to a company)
- 387. 350조하에서 부과된 총액의 손실 이월(Carry-forward as losses of amounts taxed under section 350)
- 388. 최종손실환급제도(Carry-back of terminal losses)
- 389. 최종손실환급제도에 관련된 추가적인 규정(Supplementary provisions relating to carry-back of terminal losses)

- 390. 이월과 환급제도의 목적상 손실로서의 이자처리(Treatment of interest as a loss for purposes of carry-forward and carry-back)
- 391. 해외로 운반되는 무역 등의 손실(Losses from trade etc. carried on abroad)

Case VI의 손실(Case VI losses)

- 392. Case VI의 손실(Case VI losses)

Chapter II

손실공제: 법인세(Loss Relief: Corporation Tax)

무역 등 손실(Trade etc. losses)

- 393. 최종손실보다 많은 손실(Losses other than terminal losses)
- 394. 최종손실(Terminal losses)
- 395. 리스계약과 기업재건(Leasing contracts and company reconstructions)

Case VI losses

- 396. Case VI 손실(Case VI losses)

Chapter III

손실공제: 기타 규정(Loss Relief: Miscellaneous Provisions)

- 397. 농업과 원예시장의 경우에 공제제한(Restriction of relief in case of farming and market gardening)

- 398. 증명서 없이 또는 부채인 상태에서의 예치된 거래(Transactions in deposits with and without certificates or in debts)
- 399. 미래상품의 거래: 손실공제의 유보(Dealings in commodity futures etc: withdrawal of loss relief)
- 400. 정부투자의 가격인하(Write-off of government investment)
- 401. 이전거래지출의 공제(Relief for pre-trading expenditure)

Chapter IV

Group Relief

- 402. 그룹과 컨소시엄의 구성원 사이의 공제양도(Surrender of relief between members of groups and consortia)
- 403. 그룹공제의 방식으로 양도될 수 있는 손실 등(Losses etc. which may be surrendered by way of group relief)
- 404. 이중국적의 거주회사에 관련된 집단공제의 제한(Limitation of group relief in relation to certain dual resident companies)
- 405. 그룹과 컨소시엄 양 구성원의 손실과 관련된 소송(Claims relating to losses etc. of members of both group and consortium)
- 406. 컨소시엄기업 또는 그룹 구성원의 손실과 관련된 소송(Claims relating to losses etc. of consortium company or group member)
- 407. 그룹공제와 다른 공제 사이의 관계(Relationship between group relief and other relief)
- 408. 회계기간과 관련(Corresponding accounting periods)
- 409. 그룹 또는 컨소시엄에 참가하거나 떠나는 기업(Companies joining or leaving group or consortium)
- 410. 또 다른 그룹이나 컨소시엄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이전계약 (Arrangements for transfer of company to another group or consortium)

- 411. 이중수당의 제외(Exclusion of double allowances)
- 412. 소송과 조정(Claims and adjustments)
- 413. 제IV장의 해석(Interpretation of Chapter IV)

Part XI

Close Companies

Chapter I

해석 규정(Interpretative Provisions)

- 414. 동족회사(Close companies)
- 415. 동족회사가 되지 못하는 기업으로 언급되는 기업(Certain quoted companies not to be close companies)
- 416. 합동회사와 통제의 의미(Meaning of 'associated company' and 'control').
- 417. '참여자', '제휴자', '관리자', '채권자'의 의미(Meaning of 'participator', 'associate', 'director', and 'loan creditor')

분배로서 취급할 수 있는 부가적 문제
(Additional matters to be treated as distributions)

- 418. 동족회사의 특정비용을 포함할 수 있는 '분배'(Distribution) to include certain expenses of close companies)

Chapter II

대부금과 연계한 과세부과(Charges to Tax in Connection with Loans)

- 419. 참여자에 대한 대부금(Loans to participators etc)
- 420. 419조의 예외(Exceptions from section 419)
- 421. 양도된 419조하에 대부될 때 차용자의 과세(Taxation of borrower when loan under section 419 released etc)
- 422. 동족회사에 의해 통제된 기업에 의한 대부금에 419조의 확대(Extension of section 419 to loans by companies controlled by close companies)

Chapter III

배분하지 않은 소득의 배분(Apportionment of Undistributed Income etc)

- 423. 특정 소득, 공제와 이자의 배분(Apportionment of certain income, deductions and interest)
- 424. 423조의 예외(Exclusions from section 423)
- 425. 배분방식(Manner of apportionment)
- 426. 개인에게 배분되는 소득세 부과(Charge to income tax where apportionment is to an individual)
- 427. 특정사례에서 426조의 부과공제(Reduction of charge under section 426 in certain cases)
- 428. ACT와 관련하여 배분된 총액의 증가(Increase of apportioned sum etc. by reference to ACT)
- 429. 소득세의 지불과 징수(Payment and collection of income tax)
- 430. 배분결과: ACT (Consequences of apportionment: ACT)

Part XII

기업의 특별 분류(Special Classes of Companies and Businesses)

Chapter I

보험회사, 보험업자와 자본환매사업

(Insurance Companies, Underwriters and Capital Redemption Business)

보험회사: 일반(Insurance companies: general)

- 431. 보험회사와 관련된 해석규정(Interpretative provisions relating to insurance companies)
- 432. 기업의 다른 등급 분리(Separation of different classes of business)
- 433. 보험계약자와 연금수혜자에게 지정된 이익(Profits reserved for policy holders and annuitants)
- 434. 확실한 투자소득 등(Franked investment income etc)
- 435. 보험계약자와 연금수혜자에게 지정된 이익의 과세(Taxation of gains reserved for policy holders and annuitants)
- 436. 연금기업: 이윤에 대한 독자적 부과(Annuity business and pension business: separate charge on profits)
- 437. 일반적인 연금기업(General annuity business)
- 438. 연금기업: 과세면제(Pension business: exemption from tax)
- 439. 제한된 정부유가증권(Restricted government securities)
- 440. 장기간 자산의 증명과 교환(Identification or exchange of long term assets)
- 441. 외국인 생명보험기금(Foreign life assurance funds)
- 442. 영국의 해외기업(Overseas business of U.K. companies)
- 443. 돈은 아니지만 권리를 수반하는 생명보험증서(Life policies carrying rights not in money)
- 444. 1995년 8월 5일 이전에 발행된 생명보험증서(Life policies issued before 5th August 1965)

해외생명보험회사에만 적용되는 규정

(Provisions applying only to overseas life insurance companies)

- 445.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부과(Charge to tax on investment income)
- 446. 연금기업(Annuity business)
- 447. 소득세의 상계와 법인세에 대한 세액공제(Set-off of income tax and tax credits against corporation tax)
- 448. 제한적 분배와 세액공제(Qualifying distributions and tax credits)
- 449. 이중과세협정(Double taxation agreements)

보험업자(Underwriters)

- 450. 부과, 손실과 재보험의 상계(Assessment, set-off of losses and reinsurance)
- 451. 규제(Regulations)
- 452. 특별 적립기금(Special reserve funds)
- 453. 손실로 인한 프리미엄 신탁기금 지불(Payments into premiums trust fund on account of losses)
- 454. 특별적립기금의 지불로 인한 소득세(Income tax consequences on payments into and out of special reserve fund)
- 455. 보험업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득세(Income tax consequences on death of underwriter)
- 456. 협약의 변경과 승인의 취소 등으로 인한 불로소득(Unearned income, variation of arrangements and cancellation of approval etc)
- 457. 450조에서 456조까지의 해석(Interpretation of sections 450 to 456)

자본환매사업(Capital redemption business)

- 458. 자본환매사업(Capital redemption business)

Chapter II

공제조합, 무역조합과 종업원협회 (Friendly Societies, Trade Unions and Employers' Associations)

등록되지 않은 공제조합(Unregistered friendly societies)

459. 과세면제(Exemption from tax)

등록된 공제조합(Registered friendly societies)

460. 기부사업이나 생명의 관점에서 과세면제(Exemption from tax in respect of life or endowment business)

461. 다른 사업 측면에서의 과세(Taxation in respect of other business)

462. 과세면제기업의 조건(Conditions for tax exempt business)

463. 생명 혹은 기부사업: 법인세법의 적용(Life or endowment business: application of the Corporation Tax Acts)

464. 구성원에게 지불될 수 있는 최대 편익(Maximum benefits payable to members)

465. 전통사회(Old societies)

466. Chapter II의 해석(Interpretation of Chapter II)

무역연합과 종업원 협회(Trade unions and employers' associations)

467. 무역연합과 종업원협회의 면제(Exemption for trade unions and employers' associations)

Chapter III

투자신탁계획, 유가증권 거래자 등 (Unit Trust Schemes, Dealers in Securities etc)

투자신탁계획(Unit trust schemes)

- 468. 권한을 부여받은 계약형 투자신탁(Authorised unit trusts)
- 469. 다른 계약형 투자신탁(Other unit trusts)
- 470. 계약형 투자신탁과 관련된 과도기적 규정(Transitional provisions relating to unit trusts)

유가증권, 은행과 보험사업에서의 거래자 (Dealers in securities, banks and insurance businesses)

- 471. 전환운영, 국유화 등과 연계된 유가증권의 교환(Exchange of securities in connection with conversion operations, nationalisation etc)
- 472. 국유화 등과 연계되어 발행된 유가증권의 분배(distribution of securities issued in connection with nationalisation etc)
- 473. 자본으로 순환하는 것으로 유가증권의 전환(Conversion etc. of securities held as circulating capital)
- 474. 비과세소득의 처리(Treatment of tax-free income)
- 475. 비과세 재무성 유가증권: 차관의 이자배제(Tax-free Treasury securities: exclusion of interest on borrowed money)

Chapter IV

주택조합, 은행, 저축은행, 산업과 산업공제조합 등등(Building Societies, Banks,

Savings Banks, Industrial and Provident Societies and Others)

476. 주택조합: 과세지불의 규제(Building societies: regulations for payment of tax)
477. 주택조합투자와 관련하여 시행하거나 중지하게 하는 투자(Investments becoming or ceasing to be relevant building society investments)
478. 주택조합: 과세지불시기(Building societies: time for payment of tax)
479. 은행 등 예치금으로 받은 이자(Interest paid on deposits with banks etc)
480. 구성비율예치금이 되도록 하거나 중지케 하는 예치금(Deposits becoming or ceasing to be composite rate deposits)
481. ‘예치금인수자’, ‘예치금’ ‘관련된 예치금’(‘Deposit-taker’, ‘deposit’ and ‘relevant deposit’)
482. 추가적 규정(Supplementary provisions)
483. 주택조합의 감소율과 은행의 구성비율 결정(Determination of reduced rate for building societies and composite rate for banks etc)
484. 저축은행: 과세면제(Savings banks: exemption from tax)
485. 저축은행: 추가(Savings banks: supplemental)
486. 산업공제조합과 협동조합(Industrial and provident societies and co-operative associations)
487. 소비자 신용조합(Credit unions)
488. 협동주택조합(Co-operative housing associations)
489. 자립사회(Self-build societies)
490. 상호사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업과 그러하지 않은 기업(Companies carrying on a mutual business or not carrying on a business)
491. 상호기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법인 자산의 배분(Distribution of assets of body corporate carrying on mutual business.

Chapter V

석유추출사업활동(Petroleum Extraction Activities)

- 492. 과세목적을 위한 기름추출행위 등의 처리(Treatment of oil extraction activities etc. for tax purposes)
- 493. 특정환경에서 충당되거나 처분되는 기름의 평가(Valuation of oil disposed of or appropriated in certain circumstances)
- 494. 소득의 부과(Charges on income)
- 495. 지역발전보조금(Regional development grants)
- 496. 관세영수증(Tariff receipts)
- 497. 기름추출사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ACT구성의 제한(Restriction on setting ACT against income from oil extraction activities etc)
- 498. 양도된 ACT 환불하는 제한된 권리(Limited right to carry back surrendered ACT)
- 499. 컨소시엄에 의해 소유된 기름추출회사 등에서 ACT의 양도 (Surrender of ACT where oil extraction company etc. owned by a consortium)
- 500. 법인세 목적을 위한 소득을 계산하는 데 있어 PRT의 공제(Deduction of PRT in computing income for corporation tax purposes)
- 501. PRT상환이자(Interest on repayment of PRT)
- 502. Chapter V의 해석(Interpretation of Chapter V)

Chapter VI

기타 사업체와 기관(Miscellaneous Businesses and Bodies)

- 503. 무역으로 취급받는 대부금의 면제기간의 허용(Letting of furnished holiday accommodation treated as a trade)

504. 추가적인 규정(Supplementary provisions)
505. 자선: 일반(Charities: general)
506. 적합한 지출과 부적합한 지출(Qualifying expenditure and non-qualifying expenditure)
507. 국가유산기념기금, 영국의 역사적 기념물 위원회, 영국박물관(The National Heritage Memorial Fund, the Historic Buildings and Monuments Commission for England and the British Museum)
508. 과학적인 연구기관(Scientific research organisations)
509. 시장위원회와 특정한 법률상 단체의 보유금(Reserves of marketing boards and certain other statutory bodies)
510. 농경사회(Agricultural societies)
511. 전력위원회, 북아일랜드전력서비스, 가스위원회(The Electricity 카운슬and Boards, the Northern Ireland Electricity Service and the Gas Council)
512. 핵에너지기관과 국가방사선보호위원회(Atomic Energy Authority and National Radiological Protection Board)
513. 영국항공위원회와 국가화물협회(British Airways Board and National Freight Corporation)
514. 국가부채 감소를 위한 기금(Funds for reducing the National Debt)
515. INMARSAT을 위한 운영협약에 대한 가맹국(Signatories to Operating Agreement for INMARSAT)
516. 비거주자 중앙은행에 의해 소유된 정부유가증권(Government securities held by non-resident central banks)
517. 인디아 연방준비은행과 파키스탄 국가은행의 발행기관(Issue departments of the Reserve Bank of India and the State Bank of Pakistan)
518. 항만 재조직화 계획(Harbour reorganisation schemes)
519. 지방정부(Local authorities)

Part VIII

기타특별규정(Miscellaneous Special Provisions)

Chapter I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특허권과 노하우(Patents and know-how)

- 520. 특허권 구매에 대한 지출 수당: 1986년 3월 31일 이후(Allowances for expenditure on purchase of patent rights: post-31st March 1986 expenditure)
- 521. 520조에 추가적인 조항(Provisions supplementary to section 520)
- 522. 특허권 구매에 대한 지출 수당: 1986년 4월 1일 이전(Allowances for expenditure on purchase of patent rights: pre-1st April 1986 expenditure.)
- 523. 특허권, 판매권의 경과(Lapses of patent rights, sales etc)
- 524. 특허권 판매 영수증 과세(Taxation of receipts from sale of patent rights)
- 525. 자본합계: 사망, 청산, 파트너십 변경(Capital sums: death, winding up or partnership change)
- 526. 비용공제(Relief for expenses)
- 527. 몇 년 동안의 기술료 연장(Spreading of royalties over several years)
- 528. 공제와 부과 방식(Manner of making allowances and charges)
- 529. 특정한 경우에 근로소득에 대한 특허소득세(Patent income to be earned income in certain cases)
- 530. 기술정보의 처분(Disposal of know-how)
- 531. 530조에 보완적인 규정(Provisions supplementary to section 530)
- 532. 1968년도 법의 적용(Application of the 1968 Act)
- 533. 520조에서 532조까지의 해석(Interpretation of sections 520 to 532)

저작권과 공대권(Copyright and public lending right)

- 534. 저작권 지불 등의 공제(Relief for copyright payments etc)
- 535. 약 10년 이후에 팔린 저작권의 공제(Relief where copyright sold after ten years or more)
- 536. 해외 소유자의 특허 사용료 과세(Taxation of royalties where owner abroad)
- 537. 공대권(Public lending right)

예술가 영수증(Artists' receipts)

- 538. 화가, 조각가, 다른 예술가에 대한 공제(Relief for painters, sculptors and other artists)

Chapter II

생명보험, 종신연금, 자본환매보험

(Life Policies, Life Annuities and Capital Redemption Policies)

- 539. 도입부(Introductory)
- 540. 생명보험: 부과되어야 할 경우(Life policies: chargeable events)
- 541. 생명보험: 이익의 계산(Life policies: computation of gain)
- 542. 종신보험계약: 부과되어야 할 경우(Life annuity contracts: chargeable events)
- 543. 종신보험계약: 이익의 계산(Life annuity contracts: computation of gain)
- 544. 이차적이고 이어서 일어나는 생명보험과 계약의 양도(Second and subsequent assignment of life policies and contracts)
- 545. 자본환매보험(Capital redemption policies)
- 546. 540, 542, 545조의 목적상 특정 금액의 계산(Calculation of certain amounts for purposes of sections 540, 542 and 545)

- 547. 세금에 이익을 부과하는 방법(Method of charging gain to tax)
- 548. 특정 대부금의 추정된 양도(Deemed surrender of certain loans)
- 549. 공제로서 허용할 수 있는 특정한 결손(Certain deficiencies allowable as deductions)
- 550. 고액의 비율로서 부가된 이익공제(Relief where gain charged at a higher rate)
- 551. 수탁자로부터 과세를 환수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Right of individual to recover tax from trustees)
- 552. 정보: 보증인이 의무(Information: duty of insurers)
- 553. 비거주자 보험과 국외자본환매보험(Non-resident policies and off-shore capital redemption policies)
- 554. 특정사례에서의 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생명보험의 차용(Borrowings on life policies to be treated as income in certain cases)

Chapter III

연예인과 스포츠선수(Entertainers and Sportsmen)

- 555. 조세지불(Payment of tax)
- 556. 무역 등으로 처리되는 활동과 소득 귀환(Activity treated as trade etc. and attribution of income)
- 557. 이윤과 이익의 부과(Charge on profits or gains)
- 558. 추가적인 규정(Supplementary provisions)

Chapter IV

건설산업에서의 하청계약(Sub-Contractor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 559. 특정한 하청계약자에 대한 지불로부터 조세공제(Deductions on account of tax etc. from payments to certain sub-contractors)

- 560. 제 IV장의 목적상 하청계약자인 사람 또는 계약자(Persons who are sub-contractors or contractors for purposes of Chapter IV)
- 561. 559조의 예외(Exceptions from section 559)
- 562. 개인에 의해 만족되는 조건(Conditions to be satisfied by individuals)
- 563. 개인인 파트너에 의해 만족되는 조건(Conditions to be satisfied by partners who are individuals)
- 564. 상회에 의해 만족되는 조건(Conditions to be satisfied by firms)
- 565. 기업에 의해 만족되는 조건(Conditions to be satisfied by companies)
- 566. 제 IV장하에 규제를 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한(General powers to make regulations under Chapter IV)
- 567. '건설공사'의 의미(Meaning of 'construction operations')

Chapter V

산업을 합리화하는 계획(Schemes for Rationalizing Industry)

- 568. 특정한 계획하에 지불된 기부금의 이윤공제(Deductions from profits of contributions paid under certified schemes)
- 569. 기부금의 상환(Repayment of contributions)
- 570. 기부금의 상환이 아닌 허가받은 계획하의 지불(Payments under certified schemes which are not repayments of contributions)
- 571. 증명서의 취소(Cancellation of certificates)
- 572. 법령상의 실업계획의 적용(Application to statutory redundancy schemes)

Chapter VI

다른 규정(Other Provisions)

무역회사에서 언급되지 않는 손실의 경감

(Relief for losses on unquoted shares in trading companies)

- 573. 기업공제(Relief for companies)
- 574. 개인공제(Relief for individuals)
- 575. 특정사례의 경우에 573조 또는 574조하의 공제에 대한 제외(Exclusion of relief under section 573 or 574 in certain cases)
- 576. 573조에서 575조까지의 추가적인 규정(Provisions supplementary to sections 573 to 575)

기타(Miscellaneous)

- 577. 기업접대비용(Business entertaining expenses)
- 578. 주택보조금(Housing grants)
- 579. 법령상의 퇴직수당(Statutory redundancy payments)
- 580. 579조에 추가적인 규정(Provisions supplementary to section 579)
- 581. 법령상의 법인과 지방정부에 의해 외화를 빌리는 것(Borrowing in foreign currency by local authorities and statutory corporations)
- 582. 특정채무에 대한 관심의 측면에서 발행되는 기금증서(Funding bonds issued in respect of interest on certain debts)
- 583.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584. 경감되지 않은 해외소득의 공제(Relief for unremittable overseas income)
- 585. 송금지체에 대한 세금공제(Relief from tax on delayed remittances)
- 586. 전쟁 위험 프리미엄에 대한 공제 불허(Disallowance of deductions for war risk premiums)
- 587. 종업원에 대한 전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특정한 지불금 불허(Disallowance of certain payments in respect of war injuries to employees)
- 588. 종업원 훈련강의(Training courses for employees)

589. 한정된 훈련강의 등(Qualifying courses of training etc)

Part XIV

연금계획, 사회보장편의, 종신연금 등
(Pension Schemes, Social Security Benefits, Life Annuities etc)

Chapter I

퇴직수혜계획(Retirement Benefit Schemes)

계획의 승인(Approval of schemes)

590. 퇴직수혜계획의 승인조건(Conditions for approval of retirement benefit schemes)

591. 재량 승인(Discretionary approval)

조세공제(Tax reliefs)

592. 면제된 승인계획(Exempt approved schemes)

593. 기부금으로부터의 감면방식으로의 공제(Relief by way of deductions from contributions)

594. 면제된 법령상의 계획(Exempt statutory schemes)

특정사례에서의 조세부과(Charge to tax in certain cases)

595. 종업원에 의해 지불된 특정금액의 조세부과(Charge to tax in respect of certain sums paid by employer etc)

596. 595조로부터 면제(Exceptions from section 595)

- 597. 조세부과: 연금(Charge to tax: pensions)
- 598. 조세부과: 종업원 기부금의 상환(Charge to tax: repayment of employee's contributions)
- 599. 조세부과: 특별한 상황에서의 전체 연금의 지불방법 전환(Charge to tax: commutation of entire pension in special circumstances)
- 600. 조세부과: 종업원을 위해 혹은 종업원에게 비인가된 지불(Charge to tax: unauthorised payments to or for employees)
- 601. 조세부과: 종업원에게 지불(Charge to tax: payments to employers)
- 602. 연금기금 흑자에 관련한 규제(Regulations relating to pension fund surpluses)
- 603. 흑자의 감소(Reduction of surpluses)

추가규정(Supplementary provisions)

- 604. 계획승인 적용(Application for approval of a scheme)
- 605. 정보(Information)
- 606. 계획관리자, 고용주의 책임(Responsibilities of administrator of scheme, and employer)
- 607. 조종사 수혜기금(Pilots' benefit fund)
- 608. 1980년 4월 6일 이전에 승인된 노령퇴직기금(Superannuation funds approved before 6th April 1980)
- 609. 1987년 7월 23일 이전에 승인한 계획(Schemes approved before 23rd July 1987)
- 610. 계획의 수정(Amendments of schemes)
- 611. 퇴직수혜계획의 정의(Definition of 'retirement benefits scheme')
- 612. 다른 해석규정, 그리고 이 장의 목적을 위한 규제(Other interpretative provisions, and regulations for purposes of this Chapter)

Chapter II

다른 연금기금과 사회보장편익과 기부금

(Other Pension Funds and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Contributions)

- 613. 의회연금기금(Parliamentary pension funds)
- 614. 특정한 연금계획의 투자로부터 소득의 측면에서의 면제와 공제(Exemptions and reliefs in respect of income from investments etc. of certain pension schemes)
- 615. 특정연금의 측면에서 조세면제(Exemption from tax in respect of certain pensions)
- 616. 다른 해외연금(Other overseas pensions)
- 617. 사회보장제도와 기부금(Social security benefits and contributions)

Chapter III

퇴직연금(Retirement Annuities)

- 618. 이 장에서의 공제의 종결과 과도기적 규정(Termination of relief under this Chapter, and transitional provisions)
- 619. 프리미엄의 부여 측면에서 조세면제(Exemption from tax in respect of qualifying premiums)
- 620. 프리미엄 부여(Qualifying premiums)
- 621. 다른 승인된 계약(Other approved contracts)
- 622. 대체된 퇴직연금계약(Substituted retirement annuity contracts)
- 623. 관련된 수익(Relevant earnings)
- 624. 후원된 노년퇴직계획과 관리자 통제(Sponsored superannuation schemes and controlling directors)
- 625. 619조하에 익숙하지 않은 공제의 이월(Carry-forward of unused relief under

section 619)

- 626. 50세 이상인 사람과 관련한 619조의 수정(Modification of section 619 in relation to persons over 50)
- 627. 로이드 보험업자(Lloyd's underwriters)
- 628. 파트너십 퇴직연금(Partnership retirement annuities)
- 629. 장관과 다른 공직자의 퇴직 프리미엄(Annuity premiums of Ministers and other officers)

Chapter IV

개인연금계획(Personal Pension Schemes)

서문(Preliminary)

- 630. 해석(Interpretation)
- 631. 계획의 승인(Approval of schemes)

승인제한(Restrictions on approval)

- 632. 계획수립(Establishment of schemes)
- 633. 편익의 범위(Scope of benefits)
- 634. 구성원 연금(Annuity to member)
- 635. 구성원 총액(Lump sum to member)
- 636. 구성원 사망 이후의 연금(Annuity after death of member)
- 637. 구성원 사망시 총액(Lump sum on death of member)
- 638. 승인에 대한 다른 제한(Other restrictions on approval)

조세공제(Tax reliefs)

- 639. 구성원의 기부금(Member's contributions)
- 640. 공제의 최대금액(Maximum amount of deductions)
- 641. 기여금 환급(Carry-back of contributions)
- 642. 공제 이월(Carry-forward of relief)
- 643. 고용주의 기부와 개인연금소득 등(Employer's contributions and personal pension income etc)
- 644. '관련 수익'의 의미(Meaning of 'relevant earnings')
- 645.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고용으로부터의 수익(Earnings from pensionable employment)
- 646. '순관련수익'의 의미(Meaning of 'net relevant earnings')

조세부과(Charge to tax)

- 647. 비인가된 지불(Unauthorised payments)
- 648. 승인받지 못한 협약하의 기부(Contributions under unapproved arrangements)

기타(Miscellaneous)

- 649. 1986년 사회보장법하에서의 최소한의 기부(Minimum contributions under Social Security Act 1986)
- 650. 승인의 보류(Withdrawal of approval)
- 651. 항소(Appeals)
- 652. 지불에 대한 정보(Information about payments)
- 653. 정보: 처벌(Information: penalties)
- 654. 장관과 다른 공직자의 보수(Remuneration of Ministers and other officers)
- 655. 과도기적 규정(Transitional provisions)

Chapter V

구매된 종신연금(Purchased Life Annuities)

- 656. 퇴직연금과 다른 구매된 종신연금(Purchased life annuities other than retirement annuities)
- 657. 656조가 규정하는 구매된 종신연금(Purchased life annuities to which section 656 applies)
- 658. 추가(Supplementary)

Chapter VI

기타(Miscellaneous)

- 659. 금융선물과 거래되는 선택권(Financial futures and traded options)

Part XV

청산(Settlements)

Chapter I

단기간 처분(Dispositions for Short Periods)

- 660. 6년을 초과할 수 없는 기간 처분(Dispositions for period which cannot exceed six years)
- 661. 처분자와 수탁자 사이의 조정(Adjustments between disporor and trustees)
- 662. 둘 이상의 처분자에 의한 처분시 제 I장의 적용(Application of Chapter I to

dispositions by two or more disponors)

Chapter II

아동에 대한 청산(Settlements on Children)

- 663. 일반적 규정(The general rule)
- 664. 축척 양도(Accumulation settlements)
- 665. ‘취소할 수 없는’의 의미(Meaning of ‘irrevocable’)
- 666. 수탁자에 지불된 이자(Interest paid by trustees)
- 667. 처분자와 수탁자 사이의 조정(Adjustments between disponor and trustees)
- 668. 2 이상의 재산양도인에 의한 양도시 제II장의 적용(Application of Chapter II to settlements by two or more settlors)
- 669. 제II장의 정보 수집권(Power to obtain information under Chapter II)
- 670. 제II장의 해석(Interpretation of Chapter II)

Chapter III

무효화할 수 있는 청산 등(Revocable Settlements etc)

- 671. 의무의 해제를 허용할 수 있는 무효화 청산(Revocable settlements allowing release of obligation)
- 672. 재산권 복귀를 허용하는 무효결정(Revocable settlements allowing reversion of property)
- 673. 재산양도인이 이자를 보유할 경우의 청산(Settlements where settlor retains an interest)
- 674. 청산: 재산양도인의 편익에 대한 재량권 등(Settlements: discretionary power for benefit of settlor etc)

- 675. 671조에서 674조까지의 추가규정(Provisions supplementary to sections 671 to 674)
- 676. 재산양도인에 제공되는 특정 금액의 총소득의 공제불허(Disallowance of deduction from total income of certain sums paid by settlor)
- 677. 소득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재산양도인에게 지불되는 총액(Sums paid to settlor otherwise than as income)
- 678. 청산과 관련된 업체에 의해 지불된 자본총액(Capital sums paid by body connected with settlement)
- 679. 제III장의 둘 이상의 재산양도인에 의한 청산 적용(Application of Chapter III to settlements by two or more settlors)
- 680. 제III장의 목적하의 정보 획득권(Power to obtain information for purposes of Chapter III)
- 681. 제III장의 해석(Interpretation of Chapter III)
- 682. 배분되지 않은 소득 확인(Ascertainment of undistributed income)

Chapter IV

고세율과 부가세율에서의 채무 (Liability to Higher Rate and Additional Rate Tax)

재산양도인의 채무(Liability of settlors)

- 683. 1965년 4월 6일 이후에 만들어진 청산(Settlements made after 6th April 1965)
- 684. 1946년 4월 9일 이후, 1965년 4월 7일 이전에 만들어진 청산(Settlements made before 7th April 1965 but after 9th April 1946)
- 685. 638조와 684조의 추가규정(Provisions supplementary to sections 683 and 684)

수탁자의 채무(Liability of trustees)

- 686. 재량신탁의 특정소득의 추가세율에 대한 채무(Liability to additional rate tax of certain income of discretionary trusts)
- 687. 재량신탁하의 지불(Payments under discretionary trusts)
- 688. 주식을 얻기 위한 종업원과 관리자를 위한 계획(Schemes for employees and directors to acquire shares)
- 689. 수혜자로부터 예정된 고율 세금의 재량신탁 수탁자로부터 환수(Recovery from trustees of discretionary trusts of higher rate tax due from beneficiaries)

Chapter V

역사적 건물을 위한 유지기금(Maintenance Funds for Historic Buildings)

- 690. Schedule 4 지침(Schedule 4 directions)
- 691. 재산양도인 등의 소득이 아닌 특정소득(Certain income not to be income of settlor etc)
- 692. 재산양도인의 상환(Reimbursement of settlor)
- 693. 특정목적을 위한 정해진 재산의 계약해지(Severance of settled property for certain purposes)
- 694. 특정사례에서 30%세율로 소득세 부과받은 수탁자(Trustees chargeable to income tax at 30 per cent. in certain cases)

Part XVI

관리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의 재산

(Estates of Deceased Persons in Course of Administration)

- 695. 잔여재산에서의 제한된 이자(Limited interests in residue)
- 696. 잔여재산에서의 절대이자(Absolute interests in residue)
- 697. 잔여재산의 절대이자에 대한 추가규정(Supplementary provisions as to absolute interests in residue)
- 698. 잔여재산의 특정이자에 대한 특별규정(Special provisions as to certain interests in residue)
- 699. 발생한 소득에 대한 상속세에 대한 고세율 공제(Relief from higher rate tax for inheritance tax on accrued income)
- 700. 조정과 정보(Adjustments and information)
- 701. 해석(Interpretation)
- 702. 스코트랜드 적용(Application to Scotland)

Part XVII

조세회피(Tax Avoidance)

Chapter I

**유가증권에서 특정거래로부터의 조세이익의 취소
(Cancellation of Tax Advantages from Certain Transactions in Securities)**

- 703. 조세이익의 취소(Cancellation of tax advantage)
- 704. 규정된 환경(The prescribed circumstances)
- 705. 703조에 위원회 공지에 대한 항소(Appeals against Board's notices under section 703)
- 706. 법정(The tribunal)
- 707. 사전허가절차(Procedure for clearance in advance)
- 708. 정보 획득권(Power to obtain information)

709. '조세이득'의 의미와 다른 표현(Meaning of 'tax advantage' and other expressions)

Chapter II

유가증권의 이전(Transfers of Securities)

발생된 이자가 있을 때의 이전과 없을 때의 이전: 도입부 (Transfers with or without accrued interest: introductory)

710. 711조에서 728조까지의 '유가증권', '이전' 등의 의미(Meaning of 'securities', 'transfer' etc. for purposes of sections 711 to 728).
711. '이자', '발생된 이자가 있을 때의 이전과 없을 때의 이전'(Meaning of 'interest', 'transfers with or without accrued interest' etc)
712. 711조와 728조까지의 '결제일'의 의미(Meaning of 'settlement day' for purposes of sections 711 to 728)

발생된 이자가 있을 때의 이전과 없을 때의 이전: 조세와 공제 부과 (Transfers with or without accrued interest: charge to tax and reliefs)

713. 추정된 총액과 공제(Deemed sums and reliefs)
714. 추정된 총액과 공제의 처리(Treatment of deemed sums and reliefs)
715. 713조와 714조로부터의 면제(Exceptions from sections 713 and 714)
716. 미현실적 이자이전(Transfer of unrealised interest)
717. 변동이자율(Variable interest rate)
718. 채무불이행의 이자(Interest in default)
719. 채무불이행으로 미현실 이자(Unrealised interest in default)

발생된 이자가 있을 때의 이전과 없을 때의 이전: 추가
(Transfers with or without accrued interest: supplemental)

- 720. 임명된 사람, 수탁자 등(Nominees, trustees etc)
- 721. 사망(Death)
- 722. 무역 주식(Trading stock)
- 723. 외국유가증권: 지연된 송금(Foreign securities: delayed remittances)
- 724. 보험회사(Insurance companies)
- 725. 로이드 보험업자(Lloyd's underwriters)
- 726. 주택조합(Building societies)
- 727. 주식 빌려주기(Stock lending)
- 728. 정보(Information)

유가증권의 다른 이전(Other transfers of securities)

- 729. 유가증권의 판매와 재구입(Sale and repurchase of securities)
- 730. 유가증권으로 발생하는 소득이전(Transfers of income arising from securities)

유가증권의 구매와 판매(Purchase and sale of securities)

- 731. 732조에서 734조까지의 적용과 해석(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sections 732 to 734)
- 732. 유가증권 거래자(Dealers in securities)
- 733. 면제가 부여된 사람(Persons entitled to exemptions)
- 734. 유가증권에서의 거래자가 아닌 사람(Persons other than dealers in securities)
- 735. '이자의 측면에서 적절한 금액'의 의미(Meaning of 'appropriate amount in respect of' interest)

유가증권과 관련된 기타 규정(Miscellaneous provisions relating to securities)

736. 유가증권을 취급하는 기업: 보유가치를 감소시킨 분배(Company dealing in securities: distribution materially reducing value of holding)
737. 조성된 배당금: 공제된 조세의 처리(Manufactured dividends: treatment of tax deducted)

추가(Supplemental)

738. 732, 735와 737조를 수정할 권한(Power to amend sections 732, 735 and 737)

Chapter III

해외자산이전(Transfer of Assets Abroad)

739. 소득세 회피예방(Prevention of avoidance of income tax)
740. 비양도인의 채무(Liability of non-transferors)
741. 739조와 740조로부터 면제(Exemption from sections 739 and 740)
742. 739조에서 741조까지의 해석(Interpretation of sections 739 to 741)
743. 추가규정(Supplemental provisions)
744. 이중부과금지(No duplication of charge)
745. 정보획득권(Power to obtain information)
746.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사람(Persons resident in the Republic of Ireland)

Chapter IV

통제된 외국인 기업(Controlled Foreign Companies)

- 747. 통제된 외국인 기업에 부과되어야 하는 이윤과 신용할 만한 조세의 전가 (Imputation of chargeable profits and creditable tax of controlled foreign companies)
- 748. 지시권의 한계(Limitations on direction-making power)
- 749. 주소와 이자(Residence and interest)
- 750. 낮은 과세수준의 영역(Territories with a lower level of taxation)
- 751. 회계기간과 신용할 만한 조세(Accounting periods and creditable tax)
- 752. 부과되어야 할 이윤과 신용할 만한 조세배분(Appportionment of chargeable profits and creditable tax)
- 753. 공지와 항소(Notices and appeals)
- 754. 조세의 부과, 환수, 연기(Assessment, recovery and postponement of tax)
- 755. 통제된 외국인 기업과 관련된 정보(Information relating to controlled foreign companies)
- 756. 제IV장의 해석과 구조(Interpretation and construction of Chapter IV)

Chapter V

재외투자신탁(Offshore Funds)

비적격 재외투자신탁에서의 중요한 이자 (Material interests in non-qualifying offshore funds)

- 757. 비적격 재외투자신탁의 중요 이자의 처분(Disposal of material interests in non-qualifying offshore funds)
- 758. 동등한 협약으로 운영되는 재외투자신탁(Offshore funds operating equalisation arrangements)
- 759. 재외투자신탁의 중요한 이자(Material interests in offshore funds)
- 760. 재외투자신탁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 (Non-qualifying offshore funds)

국외소득수익의 조세부과(Charge to tax of offshore income gains)

- 761. 국외소득수익의 소득세 혹은 법인세 부과(Charge to income tax or corporation tax of offshore income gain)
- 762. 거주자 혹은 해외로 정해진 주소로 발생하는 국외소득수익(Offshore income gains accruing to persons resident or domiciled abroad)
- 763. 자본수익을 결정하는 데 있어 국외소득이익의 공제(Deduction of offshore income gain in determining capital gain)
- 764. 수탁자의 국외소득이익(Offshore income gains of trustees)

Chapter VI

기타(Miscellaneous)

기업의 이주 등(Migration etc. of company)

- 765. 기업의 이주 등(Migration etc. of companies)
- 766. 765조 위반(Offences under section 765)
- 767. 765조와 766조의 해석과 시작(Interpretation and commencement of sections 765 and 766)

기업소유권 변화(Change in ownership of company)

- 768. 기업소유권의 변화: 무역 손실의 불허(Change in ownership of company: disallowance of trading losses)
- 769. 기업소유권의 변경을 확실케 하는 규정(Rules for ascertaining change in ownership of company)

관련자 사이의 거래(Transactions between associated persons)

- 770. 평가절하 또는 평가절상된 판매 등(Sales etc. at an undervalue or overvalue)
- 771. 석유회사의 거래(Transactions by petroleum companies)
- 772. 770조의 목적상의 정보와 항소(Information for purposes of section 770, and appeals)
- 773. 770조와 771조의 해석(Interpretation of sections 770 and 771)
- 774. 거래기업과 관련기업사이의 거래(Transactions between dealing company and associated company)

그 밖의 규정(Other provisions)

- 775. 개인활동으로 초래한 소득 중 개인판매(Sale by individual of income derived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 776. 토지거래: 자본이득과세(Transactions in land: taxation of capital gains)
- 777. 775조와 776조의 추가규정(Provisions supplementary to sections 775 and 776)
- 778. 정보획득권(Power to obtain information)
- 779. 판매와 임대차 계약부 매각: 조세경감의 한계(Sale and lease-back: limitation on tax reliefs)
- 780. 판매와 임대차 계약부 매각: 받은 보수에 대한 과세(Sale and lease-back: taxation of consideration received)
- 781. 무역업자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자산(Assets leased to traders and others)
- 782. 임대한 자산: 특수 사례(Leased assets: special cases)
- 783. 임대한 자산: 추가(Leased assets: supplemental)
- 784. 고용구매협약에 근거하여 임대한 자산(Leased assets subject to hire-purchase agreements)
- 785. 781조에서 784조까지의 '자산', '자본총계', '리스'의 의미(Meaning of 'asset', 'capital sum' and 'lease' for purposes of sections 781 to 784)

- 786. 대부금과 신용과 관련된 거래(Transactions associated with loans or credit)
- 787. 이자지불에 대한 공제제한(Restriction of relief for payments of interest)

Part XVIII

이중과세공제(Double Taxation Relief)

Chapter I

주요 공제 (The Principal Reliefs)

- 788. 다른 나라와의 협약에 의한 공제(Relief by agreement with other countries)
- 789. 예전 법률하에 이루어진 협약(Arrangements made under old law)
- 790. 일방적인 공제(Unilateral relief)
- 791. 788조로 수행되는 규제권한(Power to make regulations for carrying out section 788)

Chapter II

**신용의 방식에 의한 공제 관련 규정
(Rules Governing Relief by Way of Credit)**

일반(General)

- 792. 신용규정의 해석(Interpretation of credit code)
- 793. 만기 신용금액에 의한 영국조세의 경감(Reduction of United Kingdom taxes by amount of credit due)
- 794. 주소지에 대한 요건(Requirement as to residence)

- 795. 외국인세에 영향받는 소득의 계산(Computation of income subject to foreign tax)
- 796. 신용대부에 대한 제한: 소득세(Limits on credit: income tax)
- 797. 신용대부에 대한 제한: 법인세(Limits on credit: corporation tax)
- 798. 특정한 해외대부금에 관한 이자(Interest on certain overseas loans)

조세 기본 배당금(Tax underlying dividends)

- 799. 기본적인 조세계산(Computation of underlying tax)
- 800. 협정에 의해 포함되지 않은 관련기업 사이에 지불된 배당금(Dividends paid between related companies but not covered by arrangements)
- 801. 관련기업 사이에 지불된 배당금: U.K와 제3국가 조세공제(Dividends paid between related companies: relief for U.K. and third country taxes)
- 802. 해외무역 영국보험회사(U.K. insurance companies trading overseas)
- 803. 대부금 이자를 반영하는 기본적인 조세(Underlying tax reflecting interest on loans)

기타 규정(Miscellaneous rules)

- 804. 연초에 발생하는 소득세 공제(Relief against income tax in respect of income arising in years of commencement)
- 805. 신용에 대한 선거(Elections against credit)
- 806. 소송 등에 관한 시간제약(Time limit for claims etc)

Chapter III

기타 규정(Miscellaneous Provisions)

- 807. 발생된 이자의 유무와 관련 없는 유가증권의 판매(Sale of securities with or

without accrued interest)

- 808. 무역소득으로부터 배당금 혹은 이자 공제제한(Restriction on deduction of interest or dividends from trading income)
- 809. 재량신탁의 측면에서의 공제(Relief in respect of discretionary trusts)
- 810. 이중과세 경감을 확보하기 위한 자본공제의 연기(Postponement of capital allowances to secure double taxation relief)
- 811. 부가할 수 없는 외국인세 삭감(Deduction for foreign tax where no credit allowable)
- 812. 단일 국가와 연관된 특정한 비거주자 회사의 세액공제권 취소(Withdrawal of right to tax credit of certain non-resident companies connected with unitary states)
- 813. 부정확하게 지불된 세액공제의 환수(Recovery of tax credits incorrectly paid)
- 814. 812조를 무효로 하는 협약(Arrangements to avoid section 812)
- 815. 문서 감시권(Power to inspect documents)
- 816. 정보의 공개(Disclosure of information)

Part XIX

추가(Supplemental)

기타(Miscellaneous)

- 817. 수익 또는 이익으로 계산이 허용되지 않는 공제(Deductions not to be allowed in computing profits or gains)
- 818. 고정순계 혹은 세금이 아닌 이자 지불협정(Arrangements for payments of interest less tax or of fixed net amount)
- 819. 표준화된 세율에 대한 전통 문헌(Old references to standard rate tax)
- 820. 소득세법의 매년 적용(Application of Income Tax Acts from year to year)
- 821. 연간법 통과 이전에 조성된 지출의 과소 삭감(Under-deductions from payments

- made before passing of annual Act)
- 822. 연간법의 통과 이전에 조성된 대부자금 등 이자의 과다 삭감(Over-deductions from interest on loan capital etc. made before passing of annual Act)
 - 823. 다른 시기에 주어진 공제조정(Adjustments of reliefs where given at different times)
 - 824. 상환 추가: 개인과 기타(Repayment supplements: individuals and others)
 - 825. 상환 추가: 기업(Repayment supplements: companies)
 - 826. 과다지불된 조세의 이자(Interest on tax overpaid)
 - 827. VAT처벌 등(VAT penalties etc)
 - 828. 재무성과 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진 지침서와 규제(Orders and regulations made by the Treasury or the Board)
 - 829. 관공서의 소득세법의 적용과 면제규정의 회피(Application of Income Tax Acts to public departments and avoidance of exempting provisions)
 - 830. 영해와 지정된 지역(Territorial sea and designated areas)

해석(Interpretation)

- 831. 이 법의 해석(Interpretation of this Act)
- 832. 조세법의 해석(Interpretation of the Tax Acts)
- 833. 소득세법의 해석(Interpretation of Income Tax Acts)
- 834. 법인세법의 해석(Interpretation of the Corporation Tax Acts)
- 835. 소득세법에서의 '총수입'('Total income' in the Income Tax Acts)
- 836. 총수입 중 수익>Returns of total income)
- 837. 토지의 '매년 가치'('Annual value' of land)
- 838. 보조금(Subsidiaries)
- 839. 연관인(Connected persons)
- 840. 특정한 문맥에서의 '통제'의 의미(Meaning of 'control' in certain contexts)
- 841. 승인된 주식거래와 승인된 투자거래(Recognised stock exchange and recognised

investment exchanges)

842. 투자회사(Investment trusts)

시작, 보류, 철회 등(Commencement, savings, repeals etc)

843. 시작(Commencement)

844. 보류, 과도기적 규정, 필수적인 수정과 철회(Savings, transitional provisions, consequential amendments and repeals)

845. 소개(Short title)

Schedules:

Schedule 1- Schedule A 공제의 제한(Restrictions on Schedule A deductions)

Schedule 2- Schedules A와 D하에 부과할 수 있는 프리미엄 등: 개인을 위한 특별한 공제(Premiums etc. taxable under Schedules A and D: special relief for individuals)

Schedule 3-Schedule C 그리고 특정한 경우에 Schedule D하에 소득세의 평가, 부과, 지불을 위한 기관(Machinery for assessment, charge and payment of income tax under and, in certain cases, Schedule D)

Part I- 영국은행 혹은 아일랜드 은행에 지불할 수 있고 혹은 영국은행 혹은 국가부채위원회에 지불이 위탁된 공공수입배당금 등(Public revenue dividends etc. payable to the Bank of England or the Bank of Ireland or entrusted for payment to the Bank of England, the Bank of Ireland or the National Debt Commissioners)

Part II- 공공부서에 의해 지불될 수 있는 공적수입배당금(Public revenue dividends payable by public offices and departments)

Part III- 다른 공공수입배당금, 외국인배당금과 쿠폰의 수익(Other public revenue dividends, foreign dividends and proceeds of coupons)

Part IV- 아일랜드 등의 공공수입에서 지불되는 이자(Interest payable out of the public revenue of the Republic of Ireland etc)

Schedule 4- 대폭적인 할인유가증권(Deep discount securities)

Schedule 5- Schedule D의 사례I의 목적상 농장동물의 처리 등(Treatment of farm animals etc. for purposes of Case I of Schedule D)

Schedule 6- 자동차의 경우 관리자와 다른 사람의 과세(Taxation of directors and others in respect of cars)

Part I- 현금과 동등한 고정요금 표(Tables of flat rate cash equivalents)

Part II- 추가규정(Supplementary provisions)

Schedule 7- 고용으로 획득된 대부금으로부터의 편익과세(Taxation of benefit from loans obtained by reason of employment)

Part I- ‘고용으로 획득된 것’의 의미(Meaning of ‘obtained by reason of employment’)

Part II- 대부금 편익과 동등한 현금계산(Calculation of cash equivalent of loan benefit)

Part III- 공제할 수 있는 이자의 예외(Exceptions where interest eligible for relief)

Schedule 8- 이윤과 관련된 지불계획: 등록조건(Profit-related pay schemes: conditions for registration)

Schedule 9- 승인된 주식옵션계획과 이윤공유계획(Approved share option schemes and profit sharing schemes)

Part I- 일반(General)

Part II-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요건(Requirements generally applicable)

Part III- 저축과 관련된 주식옵션계획에 적용될 수 있는 요건(Requirements applicable to savings-related share option schemes)

Part IV- 다른 주식옵션계획에 적용할 수 있는 요건(Requirements applicable to other share option schemes)

Part V- 이익공유계획에 적용될 수 있는 요건(Requirements applicable to profit sharing schemes)

Part VI- 필수적인 이자 검증(Material interest test)

Schedule 10- 이익공유계획에 관련한 자세한 규정(Further provisions relating to profit sharing schemes)

Schedule 11- 공직 또는 고용으로 퇴직시의 지불에 관한 조세경감(Relief as respects tax on payments on retirement or removal from office or employment)

Part I- 일반적 규정(General provisions)

Part II- 1981년 4월 10일 이전에 이행된 지불(Payments in pursuance of pre-10th March 1981 obligations)

Schedule 12- 외국인 소득(Foreign earnings)

Schedule 13- 선납 법인세의 징수(Collection of advance corporation tax)

Schedule 14- 266조에 부수적인 규정(Provisions ancillary to section 266)

Part I- 특정사례에서의 266조의 수정(Modification of section 266 in certain cases)

Part II- 266조에서 공제 보완규정(Supplementary provisions as to relief under section 266)

Schedule 15- 보험허용(Qualifying policies)

Part I- 조건허용(Qualifying conditions)

Part II- 보험허용증명서(Certification of qualifying policies)

Part III- 비거주자 기업에 의해 발행된 보험증서(Policies issued by non-resident companies)

Schedule 16- 분배되지 않는 기업지불에 대한 소득세 징수(Collection of income tax on company payments which are not distributions)

Schedule 17-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이중거주자(Dual resident investing companies)

Part I- 1987년 4월 1일을 포함하고 있는 회계연도 구분(Division of accounting periods covering 1st April 1987)

Part II- 이자의 초창기 지불 등 소득에 대한 부과(Early payments of interest etc. and charges on income)

Part III- 일반(General)

Schedule 18- 그룹공제: 자본 보유자와 분배할 수 있는 이윤이나 자산(Group relief: equity holders and profits or assets available for distribution)

Schedule 19- 동족회사 소득의 할당(Apportionment of income of close companies)

Part I- 관련소득과 배분결정(Determination of relevant income and distributions)

Part II- 절차(Procedure)

Schedule 20- 자선: 투자와 대부금 허용(Charities: qualifying investments and loans)

Part I- 투자 허용(Qualifying investments)

Part II- 대부금 허용(Qualifying loans)

Part III- 초창기 과세할 수 있는 시기에 부적절한 지출의 과도한 권한
(Attribution of excess non-qualifying expenditure to earlier chargeable periods)

Schedule 21- 다른 실업계획과 산업합리화계획과 관련된 과세경감(Tax relief in connection with schemes for rationalizing industry and other redundancy schemes)

Part I- 서문(Preliminary)

Part II- 특정 지불에서의 공제(Relief in respect of certain payments)

Part III- 파트 II하에 주어진 공제 이후에 지불된 기부금의 측면에서의 공제배제
(Exclusion of relief in respect of contributions paid after relief has been given under Part II)

Schedule 22- 연금기금 잉여금의 감소(Reduction of pension fund surpluses)

Schedule 23- 직업연금계획: 1987년 7월 23일 이전에 승인된 계획 (Occupational pension schemes: schemes approved before 23rd July 1987)

Schedule 24- 부과되어야 할 수익, 신용할 만한 과세,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외국인 기업의 영국조세를 계산시의 가정(Assumptions for calculating chargeable profits, creditable tax and corresponding United Kingdom tax of foreign companies)

Schedule 25- 지침 형성적 권한으로부터 배제된 사례(Cases excluded from direction-making powers)

Part I- 수용할 수 있는 분배정책(Acceptable distribution policy)

Part II- 면제된 사업활동(Exempt activities)

Part III- 공공 시가 조건(The public quotation condition)

Part IV- 영국조세에서의 공제와 수익금 전환(Reductions in United Kingdom tax and diversion of profits)

Schedule 26- 부과되어야 할 수익에 대한 조세채무공제(Reliefs against liability for tax in respect of chargeable profits)

Schedule 27- 기금분배(Distributing funds)

Part I- 분배테스트(The distribution test)

Part II- 특정한 사례에서의 인증조건의 수정(Modifications of conditions for certification in certain cases)

Part III- 인증절차(Certification procedure)

Part IV- 추가(Supplementary)

Schedule 28- 국외소득이익의 계산(Computation of offshore income gains)

Part I- 한정적이지 않는 이자의 처분(Disposals of interests in non-qualifying funds)

Part II- 동등한 구성요소와 관련된 처분(Disposals involving an equalisation element)

Schedule 29- 필연적인 수정(Consequential amendments)

Schedule 30- 과도기적 규정과 보류(Transitional provisions and savings)

Schedule 31- 철회(Repeals)

<부록 9> 영국 석유 생산에 대한 과세 (Taxation of UK oil production) 지침서

이 지침서는 2003년 4월로 영국과 영국대륙붕(UK continental shelf: UKCS)에서 석유와 가스 추출행위에 관여하는 기업에 부과되는 과세제도의 주요 특징을 규정한다.

1. 허가(Licensing)

영국과 영국의 영해에서 모든 석유와 가스에 대한 권리는 1934년에 제정된 석유법 이후로 왕실에 속해 있다. 동법은 이러한 자원을 탐험하고 이용하도록 정부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했다. 독자적인 입법은 동일한 규정을 북아일랜드에 적용한다. 1964년 대륙붕법은 1934년 석유(생산)법의 인허가권을 UKCS에까지 확대시켰다. 이러한 법의 효력은 영국과 UKCS에서의 석유생산과 탐사는 무역산업부 장관이 인·허가함으로써 시작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합자회사(컨소시엄 형태)로 허가를 신청한다. 이러한 컨소시엄방식의 신청이 성공하면, 컨소시엄기업 중 하나(일반적으로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허가를 받은 기업들로 구성된 공동운영 위원회 통제하에 책임을 진다.

2. 조세제도(Fiscal Regime)

현재 석유생산관련 조세제도는 세 가지가 존재했거나 존재하고 있다.

가. 석유수입세(Petroleum Revenue Tax: PRT)

석유수입세는 국세청 석유과세국(Inland Revenue's Oil Taxation Office)에 의해 관

리된다. 이 세금은 영국석유와 가스를 개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제적인 지대의 높은 비율에 대해 과세하려는 특별조세 형태이다. 석유수입세는 매장지대(field-based)에 근거한 세금이다. 일반적으로 매장지대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비용은 그러한 지대에 의해 발생될 이윤을 배경으로 설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하지 않은 지출공제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은 불명확하게 매장지대 내에서 소급하거나 이월할 수 있다. 공제의 범위는 다음을 포함한다.

- 석유공제-석유수입세-생산무료부분
- 보충(supplement)-이자와 다른 재정비용의 대응(proxy)
- 관세수입공제(Tariff receipts allowance; TRA)- 자산을 소유하는 참여자, 예를 들어 한 매장지대와 관련된 파이프라인은 때때로 다른 매장지대에서의 생산자에 관세의 지불에 대한 대가로 자산의 사용을 공유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TRA는 석유수입세로 받은 관세의 일부를 공제한다.
- 1975년 7월 이전 영국가스(British Gas)에서 판매되었던 가스에 대한 석유수입조세에 대한 면제
- 조사비용에 대한 총매장지대(cross-field)공제
- 석유수입조세의 개발비용의 최대 10%인 횡단 매장지대 허용은 다른 매장지대의 이윤을 근거로 받을 수 있다(이러한 공제는 단지 1993년 이전 매장지역에 국한된다).

석유수입세는 현재 이러한 허가 이후 수익의 50%로 부과되고 있다. 보장공제(safeguard relief)는 석유수입조세가 매장지대의 생산으로 인한 연초 수입이 역사적으로 자본지출의 30% 미만으로 감소되지 않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적용된다. 석유수입세는 1993년 3월 16일에 폐지되었다. 이것은 75%에서 50%의 석유수입세율의 감소, 그리고 탐사와 평가지출에 대한 석유수입조세의 폐지를 포함하는 일련의 석유수입세 개혁의 한 부분이다.

나. Ring Fence 법인세(Ring Fence Corporation Tax; RFCT)

또한 석유과세국(OTO; Oil Taxation Office)에 운영되는 RFCT는 모든 석유생산회사에 Ring Fence의 추가로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표준기업과세이다. Ring Fence는 석유추출행위로부터의 수익에 대한 법인세가 수익이 발생할 때 영국이나 다른 장소에서 든지 간에 다른 법인활동으로부터 발생된 공제의 다른 형태나 손실에 의해 희석되지 않고 전액 모두를 지불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Ring Fence는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예를 들면 과도한 이자 지불에 규제를 부과한다. 대부분 북대서양에서의 석유탐사에 대한 자본지출, 매장지대개발 그리고 휴업중인 활동에 대한 대부분의 자본지출은 매년 발생하는 100%의 자본비용공제(capital allowance)에 해당된다. 법인세의 세율은 현재 30%이다.

다. Ring Fence에 대한 추가부과(Supplement Charge on Ring Fence Trade)

2002년 4월 17일부터 법인은 Ring Fence 무역으로부터의 수익에 관한 10%의 추가부과금을 지불한다. 이러한 수익은 RFCT와 동일하지만 비용에 자금을 지원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3. 로열티(Royalty)

로열티는 특정한 허가지역에서 이루어진 석유와 가스의 총가치에 특정가격의 고려없이 12.5%로 부과되었으나 로열티는 2003년 1월 1일로 폐지되었다.

4. 행정(Administration)

석유수입세(PRT)는 6개월 부과기간 동안 매장지역 기업에 부과된다. 수익의 두가지 유형(매장지역으로부터 발생된 석유와 가스의 총량, 기업들이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과세매장지역으로부터의 그들 자신의 수입)이 석유과세국(OTO)에 제출된다. 지출

이 허용되기 이전에 참여자들을 위한 책임 있는 사람 혹은 개별참여자에게 평가(assessment)가 이루어져야 한다. 석유과세국(OTO)에 의해 허용된 지출은 지출이 이루어진 이후의 다음 평가에서 공제된다.

대부분의 석유수입세는 6개월간의 동등한 분할금(이전에 부과된 기간 채무의 1/8에 해당되는)으로 지불되며 분할금 지불은 기간 시작 이후에 2개월부터 시작된다. 회계상 지불은 과세영역에서의 수입을 보여주는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참여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석유수입세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관련된 부과시기의 기간종료 이후 5개월째 이루어진다. 더 나아가 평가가 예정된 것으로 보이는 석유수입세는 부과시기 말 6개월 이내(늦어도 평가가 된 이후 30일)에 지불되어야 한다. 표준법인세규정은 RFCT의 평가와 지불 그리고 추가부과에 적용된다.

5. 석유수입세(PRT), Ring Fence 법인세(RFCT)와 추가부과(SC)의 상호작용

RFCT와 추가부과(SC)는 석유수입세의 공제 이후 법인의 ring fence 거래 법인세 이윤에 부과된다(세 가지 모든 세금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이윤을 계산할 때 로열티는 공제된다). 특정한 석유매장지역에 적용할 상황은 개발 동의를 받은 날짜에 달려 있다.

- 1993년 3월 16일 이전에 개발동의를 받은 매장지역은 PRT, RFCT, 그리고 SC의 적용을 받는다. 이러한 매장지역에 1882년 4월 1일 이전에 개발동의를 받았을 경우 2002년 12월 31까지 로열티를 제공해야 한다.
- 1993년 3월 16일 이후에 개발동의를 받은 매장지역은 단지 RFCT와 SC의 적용만 받으면 된다.

현재 최저과세율은 다음과 같다.

- RECT 와 SC - 40%
- PRT, RFCT, 그리고 SC- 70%

<著者略歷>

朴釘洙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Pittsburgh 정책학 박사
서울 시립대학교 교수
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심의관

주요국의 조세제도

- 영국편 -

2004年 6月 25日 印刷

2004年 6月 30日 發行

著者 박정수

發行人 최용선

發行處 韓國租稅研究院

1318-774 서울特別市 松坡區 可樂洞 79-6

電話 : 2186-2114(代), 팩시밀리 : 2186-2179

登錄 1993年 7月 15日 第21-466號

組版및 상 일 인 쇄

印刷

© 韓國租稅研究院 2004

ISBN 89-8191-268-8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15,000원